

예술인의 산업재해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2022-08

정책연구

- 공연예술분야를 중심으로 -

Analysis on Artists' Industrial Accidents
and Research on Direction of Policy
- Focusing on Performing Arts

차민경
이정희
한석진



예술인의 산업재해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공연예술분야를 중심으로 -

Analysis on Artists' Industrial Accidents and Research on Direction of Policy
- Focusing on Performing Arts

차민경·이정희·한석진



연구책임

차민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

이정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한석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예술인의 산업재해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연구개요

1. 서론

가. 연구배경 및 목적

- 안전한 공연예술 현장의 구축과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 개정과 정책지원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공연예술계에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
- 신체 사용이 매우 많은 공연예술분야의 특성상 공연예술인들은 고질적인 직업병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공연 장르에 따라 그 범위가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으로 불리기도 함
- 공연예술인들이 직업현장에서 건강과 안전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는 공연예술분야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며,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체계 구축도 미흡한 상황
- 이에 본 연구는 공연예술인들이 어떠한 산업재해를 겪고 있는지, 그것이 공연예술의 어떤 업무적 특성과 관계하는지 분석하고, 공연예술분야의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함

나. 연구범위 및 방법

- 대상적 범위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의한 ‘문화예술’ 중 음악, 무용, 연극(뮤지컬 포함), 국악으로 하며, 「예술인 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예술인’으로 함
-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관계자 인터뷰, 사례조사, 설문조사로 진행함

2. 공연예술인의 산업재해 보호의 필요성과 지원 현황

가. 공연예술인의 산업재해와 보호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산업화 초기부터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관련 법률 제정도 일찍이 이루어졌으나, 공연예술분야는 산업재해의 주요 논의분야가 아니었음
 - 그러나 우리 공연예술분야는 크고 작은 산업재해를 꾸준히 겪어왔으며 이에 「공연법」 내에 관련 조항을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만들어 옴
- 우리 공연예술분야의 안전현황이나 투자는 아직은 미흡한 상황이며, 이는 우리 공연예술분야의 열악한 환경과 깊이 관계하고 있음. 열악한 재정상황은 충분한 제작 일정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며,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업계 특성상 산업재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게 함
- 많은 공연예술인들이 다양한 직업병을 겪고 있으며 특히 ‘과사용 증후군’은 이들에게 가장 흔한 업무상 질병임. 이러한 부상은 직업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많은 공연예술인들은 그냥 참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음

나. 공연예술인의 산업재해 지원 현황

- 2012년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후 예술인 산재보험이 도입되고 있으며 복잡한 보험가입 행정처리 및 보험료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음. 산재보험은 업무상 연관성이 인정되어 보상이 이루어지면 민간 보험에 비해 보상범위가 넓어 예술인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로 판단됨
-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는 ‘상해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무용수의 직업 수명 단축을 막기 위한 치료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상해예방 지원’과 ‘부상 예방 검진 지원사업’을 통해 예방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음
-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서는 ‘공연장 종합 안전점검 지원’과 ‘공연장 안전교육 수행’을 통해 노후화 된 공연장 설비 개선과 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안전지침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안전에 대한 전문적 지식 보급에 힘쓰고 있음

다. 공연예술인의 업무와 산업재해 분석

1) 공연예술인의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분석

구분		내용
종류	예술인·작업자의 추락(낙상)	무대설치 및 준비(set-up) 또는 철수(strike) 기간 빈번히 발생 무대 및 각종 설비 설치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 미흡 승강무대, 이동무대 등에서 추락 발생 등
	설치물의 낙하	무대조명 등의 낙하로 인한 상해 등
	총돌, 넘어짐, 미끄러짐, 끼임 등의 상해	공연자, 무대기술자 간 총돌로 인한 부상 불량하게 설치된 설치물 사이의 끼임, 넘어짐으로 인한 부상 등
	무대 설비 및 장치로 인한 안전사고	설비의 오작동, 잘못된 설치, 무리한 설치로 인한 안전사고 장비 및 설비의 노후화나 고장으로 인한 감전 무대 연출 및 안전대책 미흡으로 인한 화재 등
	출퇴근 및 투어 중 이동사고	공연 출퇴근 및 투어 이동 중 교통사고 발생 자연재해로 인한 이동 중 사고 등
원인	안전예방의 미흡	관리소홀, 안전관리 의사소통의 부재, 안전계획의 부재, 안전장치, 안전교육의 미 실시 등
	미숙함과 부주의	예술인·작업자의 부주의, 미숙련된 예술인·작업자의 고용 등
	부적절한 작업환경	시설·장치의 노후화, 소음·먼지·오염물질의 발생, 어두운 조명, 설계·설치의 문제, 개인 보호구나 보호장비의 미흡
	공연계의 문화·환경의 문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 무리한 연습·공연·작업 일정, 과도한 업무량, 과도한 근무시간
영향	재해 빈도	무용, 기타 공연예술, 연극/뮤지컬, 음악 순으로 높음 무대기술, 기타, 기획/제작/행정 등, 실연, 창작 순으로 높음
	사고로 일을 쉬 기간	평균 3개월 12일

2) 공연예술인의 업무상 질병 분석

구분		내용	
종류	근골격계 질환	악기연주자의 손 과사용증후군, 손 압박 증후군, 비정상적 자세의 장시간 유지로 인한 국소 근긴장 이상, 손 부상 등	
		목·어깨의 통증·저림·골절	비정상적 자세의 장시간 유지로 인한 목·어깨 근긴장, 디스크, 남성무용수의 여성무용수를 어깨 받히는 동작 등으로 무거운 하중에 의한 어깨 손상
		등·허리의 통증·결림·골절	무대기술 및 실연가들의 무거운 하중에 의한 척추분리증, 천추전방전위증, 신경근 통증, 디스크, 흉 통증 등
		무릎의 통증·골절	점프 반복 및 무거운 하중, 비정상적 자세 반복에 의한 슬개건염, 연골연화증, 슬개골하 건염, 플리카 증후군, 인대부상, 반월판 부상 등

구분		내용	
		다리의 통증·저림·골절, 하지정맥류	장기간 피로 누적에 의한 내측 경골 스트레스 증후군, 피로골절, 하지정맥류 등
		발·발목의 통증·골절	장기간 피로 누적, 과도한 부하 등에 의한 아킬레스건염, 인대 발목 염좌, 비골건병증, 경골건병증, 발목충돌 증후군 등
		골반의 통증·골절	점프 반복, 무거운 하중, 비정상적 자세 반복에 의한 발음성 고관절증후군, 이상근 증후군, 둔부 증후군, 후방 통증 등
		그 외 근골격계 질환	악기연주자의 비정상적 연주자세 반복에 의한 턱 관절 장애, 크레피투스, 턱 디스크 등
	그 외 질병	청력손실	음악, 국악 분야, 무대기술 분야 다수 발생
		영양 불균형	짙은 다이어트로 인해 무용 분야 다수 발생
		그 외 질병	성악가들의 성대결절, 비위생적 환경에 의한 천식, 기관지염, 강력한 조명에 의한 시력장애,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한 생리불순, 관악기 연주자의 구강 궤양, 침샘 감염 등
	정신질환	불안증, 불면증	부상으로 인한 실업, 불안, 생계문제 등
		우울증, 공황장애	신체상해, 커리어 문제, 직장 내 괴롭힘 등
	원인	업무 자체의 특징으로 인한 문제	불편한 자세의 장시간 유지, 비정상적인 동작의 반복, 무거운 하중 등
물리적 환경의 부적절성		부적절한 실내공기 상태, 높은 강도의 소리·빛 등, 청결하지 않은 공간, 부적절한 온도, 어두운 조명, 강력한 전자파 노출 등	
안전예방의 부재		업무방법에 대한 적절한 교육·매뉴얼의 부재, 개인 보호구나 보호장비의 미흡, 안전예방에 대한 규정 부재, 안전예방교육의 미흡	
공연계의 업무환경의 문제		낮은 임금, 무리한 연습·공연·작업 일정, 과도한 업무량, 과도한 근무시간, 임금체불	
영향	재해 빈도	무용, 기타 공연예술, 연극/뮤지컬 순으로 높음 무대기술, 기획/제작/행정, 실연, 창작 순으로 높음	
	사고로 일을 쉬 기간	평균 5개월 2일	

3) 공연예술인의 종사환경 및 산업재해 대처 분석

① 부적절한 종사환경의 문제

- 공연예술인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작업기간은 ‘평균 4개월 11일’이며, 하루 평균 작업(노동) 시간은 평균 7시간 45분으로 나타남. 하루 평균 휴식시간(식사 시간 포함)은 2시간 33분임

- 공연예술인의 주된 작업 장소는 연습실(단체 및 제작사 등 제공)이 제일 많으며, 그 다음으로 개인작업실(연습실), 공연장, 자택 순이었음
- 주된 작업장소의 안전 환경을 살펴보면, 적절한 공간의 크기나 장치 마련, 소방시설 보유, 휴식 공간 마련 등에서 다소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명·소음·실내공기·온도 등도 적절하지 못하고 노후화 된 것으로 평가받음

② 경제적 문제 야기 및 직업생명에 부정적 영향

- 공연예술인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대부분 급한 치료만 받고 재활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재활 비용은 상당수가 자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재활 기간 중 경제활동은 대부분 중단되었으며, 치료·재활 기간 중 캐스팅에 밀리거나 일자리를 잃을 우려와 공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여 무리해서 공연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충분한 치료·재활을 받지 못할 경우 공연예술인의 직업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③ 불충분한 예방교육 및 보상 체계

- 공연예술인의 63.9%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으며, 대부분 국가 및 공공기관이나 협회 및 조합에서 제공하는 것임
 - 교육은 안전사고 예방교육, 소방 안전교육이 가장 많았으나, 예방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음
- 공연예술인들은 민간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었으며, 산재보험 가입률은 17.1%에 그침. 예술인 산재보험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인지는 하고 있었으나, 가입의향은 낮았음
- 공연예술인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의료·재활 비용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았으며, 상급자의 치료·재활에의 적극적 협조, 충분한 연습·공연·작업 일정의 보장, 공연계의 치료·재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노후화 된 시설·장치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힘

라. 공연예술인의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을 위한 정책대응 방향

1) 공연예술인의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를 위한 정책대응 방향

① 안전최우선주의를 적용한 정책방향의 개선

- 공연예술분야의 산업재해의 가장 큰 장애요인 중 하나는 업계 전반의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잘못된 문화라 할 수 있음. 공연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과 이러한 희생을 미덕화하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음
- 공연예술분야의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정책 분야 및 공공 공연예술분야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운영원칙을 세우고 체계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음
 - 국공립 공연장 및 공연단체의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 안전관련 부분의 경우 단가의 하한선을 두거나 기술평가에서 안전점수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고려
 - 공공 공연예술분야부터 합리적인 안전예산 적용기준의 마련 및 적용
-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공연 제작 업무의 특성을 이해하고,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전문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며, 안전관리 담당자의 위상 및 책임성 강화가 필요함
-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안전계획 작성 문화가 확대되는 것이 필요함
 - 테크니컬 라이더나 비상계획 등 개별 공연의 대처 매뉴얼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는 위험성평가서 작성 문화가 조성되어야 함
- 또한 충분한 작업시간을 보장하여 급한 세팅 및 철수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

② 안전 예방교육의 내실화 및 전문화 필요

- 안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크게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는 안전예방 교육을 좀 더 대상별, 상황별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공연예술인들이 실제로 공연·작업할 장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대상별 안전교육을 세분화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안전관리는 각 영역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므로,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및 실무형 예방교육 개발 지원이 필요함. 또한 이와 관련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2) 공연예술인의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대응 방향

① 공연예술인에 맞춤형한 예방·재활의 전문화 및 지원 확대

- 공연예술인들의 상해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연예술분야에 특화된 ‘정기적인 건강 검진 지원’이 필요함
 - 공연예술인들은 일반 근로자보다 업무상 사고 및 질병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검진을 받더라도 일반적인 수준에 머무름
- 공연예술의 장르적 특성을 이해하는 의료진 및 재활트레이너의 처방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예방 및 재활 교육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공연예술분야에 특화된 질병을 연구하는 공연예술의학(Performing arts medicine) 분야에 대한 국내 연구가 보다 활발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공연예술인을 위한 전문화 된 치료·재활·예방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공연예술인의 업무상 질병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실내 공기 상태, 높은 강도의 소리와 빛, 청결하지 않은 공간, 부적절한 온도, 어두운 조명, 강력한 전자파 노출 등을 개선하고, 공연장 및 연습실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 질병 발생률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함

② 직업생활 위협 예방을 위한 환경적·문화적 개선의 필요성

- 공연예술인들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직업생명을 위협받지 않도록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함
- 무엇보다 질환이 있을 때 참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 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급자들의 인식 개선과 공연의 성공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문화가 조성될 필요가 있음

3) 공연예술인의 산업재해 보상을 위한 정책방향

① 산재보험 가입 증진을 위한 인식개선과 지원확대

- 공연예술인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가장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안타깝게도 예술인 산재보험에 대한 존재를 모르거나 보상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증진을 위해서는 산재보험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재보험 비용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② 산재보험 보상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인식 개선

- 예술인들이 산재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험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산재보험의 유용성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음. 그러나 보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술인들의 업무 특성에 대한 이해와 사고 및 질병의 업무연관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예술인에게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예술인의 산재보험 보상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함
- 또한 공연예술이라는 업무가 가진 위험성과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해관계자		역할
정부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방향 마련	대상별, 상황별 구체적인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개발 지원 전문적 안전교육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실무형 예방교육 개발을 위한 공간 및 교육개발 지원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제도 개선
	공공 공연예술분야 운영의 계획 및 평가 기준 개선	공연계의 안전불감증 문화 개선을 위한 공공 공연예술분야 운영 계획 및 평가 기준에 있어 안전최우선 원칙 적용
	공연장·연습실 환경개선 제도적 기준 마련	업무상 질병을 유발하는 공연장 및 연습실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준의 마련
	예술인 산재보험 보상 가이드라인 개발 지원	예술인에게 발생하는 사고 및 질병의 업무연관성을 입증하는 가이드라인 개발 지원 필요

이해관계자		역할
공공 기관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상별, 상황별 구체적인 안전교육 개발·운영 전문적 안전교육 커리큘럼 개발·운영 실무형 예방교육 커리큘럼 개발·운영
	맞춤형 예방 및 재활교육 개발 (전문무용수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의 장르적 특성에 맞춤화 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 개발
	예술인 심리상담 확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의 심리적 문제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사업 확대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확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산재보험에 대한 홍보 확대 산재보험 가입 행정절차 및 가입비 지원 확대
공공 공연예술 분야	경쟁입찰 방식 개선	안전관련 내용의 단가 하한선 도입 기술평가의 안전점수 비중 높이기 위험성평가 및 안전계획 점수 비중 높이기 안전용품 구입, 관련보험 가입 여부 확인
	합리적 수준 안전관리비 적용	합리적인 안전예산 적용기준 마련 및 적용
	안전관리 전문조직 구축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 전문조직의 구축 안전관리 담당자의 위상 및 책임성 강화
	안전계획 작성문화 구축	대처매뉴얼 및 위험성평가서 작성문화 조성
	충분한 작업시간 보장	급한 세팅 및 철수과정의 안전사고 예방
공연계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충분한 작업일정 조정, 휴식시간 설정
	당연히 참는 문화 개선	질환이 있을 때 참는 것을 당연시 하지 않는 문화 조성 상급자의 인식 개선 공연의 성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문화 조성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10
제2장 공연예술인의 산업재해 보호의 필요성과 지원 현황	13
제1절 공연예술인의 산업재해와 보호의 필요성	15
1. 산업재해와 공연예술분야	15
2. 공연예술분야의 산업재해 관련 현황 및 보호의 필요성	34
제2절 공연예술인의 산업재해 지원 현황	44
1. 공연예술인의 산업재해 보상을 위한 지원 현황	44
2. 공연예술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현황	64
제3장 공연예술인의 업무 특성과 산업재해 분석	81
제1절 분석 개요	83
제2절 공연예술인의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분석	85
1. 다양한 안전사고 및 이동사고의 발생	85
2. 안전환경 구축을 위한 환경적·문화적 기반 미흡	104
3. 직업활동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115
제3절 공연예술인의 업무상 질병 분석	118
1. 만성적 근골격계 질환 및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질병의 발생	118
2. 업무 특징으로 인한 문제와 환경적·문화적 부적절성 문제	143

3. 직업활동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상 질병	152
제4절 공연예술인의 종사환경 및 산업재해 대처 분석	155
1. 부적절한 종사환경의 문제	155
2. 경제적 문제 야기 및 직업생명에 부정적 영향	167
3. 불충분한 예방교육 및 보상 체계	183
제4장 공연예술인의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을 위한 정책대응 방향	203
제1절 공연예술인의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를 위한 정책대응 방향	205
1. 안전최우선주의를 적용한 정책방향의 개선	205
2. 안전예방 교육의 내실화 및 전문화 필요	215
제2절 공연예술인의 업무상 질병을 위한 정책대응 방향	221
1. 공연예술인에 맞춤형 예방·재활의 전문화 및 지원 확대	221
2. 직업생활 위협 예방을 위한 환경적·문화적 개선의 필요성	231
제3절 공연예술인 산업재해 보상을 위한 정책방향	233
1. 산재보험 가입 증진을 위한 인식개선과 지원확대	233
2. 산재보험 보상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인식 개선	241
제5장 결론	253
참고문헌 / 259	
ABSTRACT / 265	
부록 / 267	

표 목차

〈표 1-1〉 공연 장르별 창작자의 종류	7
〈표 1-2〉 공연 장르별 실연자의 종류	8
〈표 1-3〉 공연 장르별 무대기술/기획행정 종사자의 종류	8
〈표 1-4〉 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인터뷰 명단	10
〈표 1-5〉 설문지 조사 개요	12
〈표 1-6〉 설문지 조사 내용	12
〈표 2-1〉 4M의 항목별 유해·위험 요인	16
〈표 2-2〉 산재보험 기금적립 규모	20
〈표 2-3〉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22
〈표 2-4〉 산재보험 급여 종류 및 내용	24
〈표 2-5〉 우리나라 공연예술 주요 산업재해	27
〈표 2-6〉 「공연법」의 안전 예방 및 관리 관련 주요 개정	31
〈표 2-7〉 공연장의 무대시설별 안전수준	34
〈표 2-8〉 활동장르, 소속단체별 주당 평균 예술활동 투자시간	40
〈표 2-9〉 분야별 자유계약자(프리랜서) 종사 여부	43
〈표 2-10〉 2021년 등급별 예술인 산재보험료	45
〈표 2-11〉 예술인 산재보험 임의가입 현황(2022년 4월 기준)	46
〈표 2-12〉 연도별 예술인 산재보험 임의가입 현황(2022년 4월 기준)	47
〈표 2-13〉 보험해지자 산재보험 가입기간(2022년 4월 기준)	47
〈표 2-14〉 민간 보험별 구성	53
〈표 2-15〉 산재보험, 민간 실손의료보험, 민간 상해보험 비교	55
〈표 2-16〉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상해 치료비 지원범위	57
〈표 2-17〉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상해 치료비 지원금 신청 서류	58
〈표 2-18〉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서 발간한 공연장 안전예방 관련 출판물	70
〈표 2-19〉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부상 예방 검진의 세부 항목	75
〈표 3-1〉 응답자의 특성	84
〈표 3-2〉 2021 산업재해 발생현황 : 전체	87

〈표 3-3〉 2021 산업재해 발생현황 : 업종별	87
〈표 3-4〉 업무상 사고 : 예술인·작업자의 추락(낙상)	91
〈표 3-5〉 업무상 사고 : 설치물의 낙하	96
〈표 3-6〉 업무상 사고 : 충돌, 부상	97
〈표 3-7〉 업무상 사고 : 넘어짐, 미끄러짐	98
〈표 3-8〉 업무상 사고 : 끼임, 찢림, 베임	98
〈표 3-9〉 업무상 사고 : 감전	100
〈표 3-10〉 업무상 사고 : 화재	101
〈표 3-11〉 출퇴근 재해 : 교통사고	103
〈표 3-12〉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경험 : 계약형태에 따른 차이	110
〈표 3-13〉 2021 산업재해 업종별 질병 재해자수 및 재해율	120
〈표 3-14〉 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시간	159
〈표 3-15〉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주된 작업 장소의 안전 환경	165
〈표 3-16〉 예술인 산재보험 수혜현황	169
〈표 3-17〉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재활 비용 부담 방법	174
〈표 3-18〉 공연예술인이 충분한 치료·재활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179
〈표 3-19〉 예방 교육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 이유	192
〈표 3-20〉 산업재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 여부	194
〈표 4-1〉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시험과목	220
〈표 4-2〉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 수(2013년~2021년)	235
〈표 4-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요사업의 연간 예산 추이(2015년~2021년)	240
〈표 4-4〉 장르별, 유형별 승인/불승인 현황	242
〈표 4-5〉 공연예술분야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강화를 위해 정책방향과 이해관계자의 역할	251

그림 목차

[그림 2-1] 산업재해 발생원인	17
[그림 2-2] 업무상 재해 인정 절차	21
[그림 2-3] 산재보험 보상절차	21
[그림 2-4] 공연장의 무대시설 안전수준 비율	34
[그림 2-5] 공연장의 무대시설별 안전수준 비율(세부)	35
[그림 2-6] 공연단체 설립주체별 재정규모 현황	36
[그림 2-7] 전문 클래식 음악연주자의 과사용 증후군 현황	39
[그림 2-8]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률(공적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42
[그림 2-9] 공연단체 시장규모 비율	43
[그림 2-10] 예술활동 겸업의 이유	43
[그림 2-11]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유지-해지 이유	48
[그림 2-12] 산재보험 신청절차 및 담당 기관	50
[그림 2-1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보험사무 대행과 근로복지공단 역할 이원화 인지 여부	50
[그림 2-14] 산재보험 청구 시 불편한 점	50
[그림 2-15]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사고 사실 확인서	59
[그림 2-16]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재활기관 이용 확인서	60
[그림 2-17] 상해 치료비 지원사업 만족도	61
[그림 2-18] 상해 치료비 지원사업 이용 동기	62
[그림 2-19] 상해 치료비 지원사업 혜택	62
[그림 2-20] 예술인 산재보험 혜택을 받은 경험	63
[그림 2-21] 상해 치료비 지원사업의 기여도	63
[그림 2-22] 공연장안전지원센터의 연도별 안전예방교육 참여인원	69
[그림 2-23] 찾아가는 상해 예방 지원사업 만족도	74
[그림 2-24] 부상 예방 검진 지원사업 만족도	77
[그림 2-25] 부상 예방 검진을 통한 부상 발견 여부	77
[그림 2-26] 부상 예방 검진을 통해 발견된 부상 치료 여부	78
[그림 3-1]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경험	86

[그림 3-2]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경험	86
[그림 3-3] 예술활동 유형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경험	86
[그림 3-4]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종류_사고	88
[그림 3-5]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종류_사고	89
[그림 3-6] 예술활동 유형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종류_사고	89
[그림 3-7]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종류_출퇴근 재해	90
[그림 3-8]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종류_출퇴근 재해	90
[그림 3-9] 예술활동 유형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종류_출퇴근 재해	90
[그림 3-10]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의 원인 : 안전 대책 관련	104
[그림 3-11]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의 원인 : 안전 대책 관련	105
[그림 3-12] 예술활동 유형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의 원인 : 안전 대책 관련	105
[그림 3-13]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의 원인 : 숙련도 및 부주의	108
[그림 3-14]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의 원인 : 숙련도 및 부주의	108
[그림 3-15] 예술활동 유형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의 원인 : 숙련도 및 부주의	108
[그림 3-16]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의 원인 : 작업환경	111
[그림 3-17]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의 원인 : 작업환경	111
[그림 3-18] 예술활동 유형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의 원인 : 작업환경	111
[그림 3-19]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의 원인 : 공연계 문화 및 관례	113
[그림 3-20]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의 원인 : 공연계 문화 및 관례	113
[그림 3-21] 예술활동 유형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의 원인 : 공연계 문화 및 관례	113
[그림 3-22]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빈도	115
[그림 3-23]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빈도	116
[그림 3-24] 예술활동 유형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빈도	116
[그림 3-25]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로 인해 '일(예술활동)'을 쉬 기간	117
[그림 3-26]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로 인해 ' 일(예술활동)'을 쉬 기간	117
[그림 3-27] 예술활동 유형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로 인해 '일(예술활동)'을 쉬 기간	117
[그림 3-28] 업무상 질병 경험	119
[그림 3-29] 예술활동증명분야별 업무상 질병 경험	119
[그림 3-30] 예술활동유형별 업무상 질병 경험	119
[그림 3-31]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종류_근골격계 질환	120
[그림 3-32] 예술활동 증명 분야별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종류_근골격계 질환	121

[그림 3-33] 예술활동유형별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종류_근골격계 질환	122
[그림 3-34] 무용 예술인들의 주요 부상 부위	130
[그림 3-35]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종류_질병	133
[그림 3-36] 예술활동증명분야별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종류_질병	134
[그림 3-37] 예술활동 유형별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종류_질병	134
[그림 3-38]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종류_정신질환	140
[그림 3-39] 예술활동증명분야별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종류_정신질환	140
[그림 3-40] 예술활동유형별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종류_정신질환	140
[그림 3-41]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143
[그림 3-42] 예술활동증명분야별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143
[그림 3-43] 예술활동유형별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원인_근골격	145
[그림 3-44]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원인_외부환경	145
[그림 3-45] 예술활동증명분야별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원인_외부환경	146
[그림 3-46] 예술활동유형별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원인_외부환경	146
[그림 3-47]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원인_안전	148
[그림 3-48] 예술활동증명분야별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원인_안전	148
[그림 3-49] 예술활동유형별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원인_안전	148
[그림 3-50]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원인 : 활동방식	149
[그림 3-51] 예술활동증명분야별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원인 : 활동방식	150
[그림 3-52] 예술활동유형별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원인 : 활동방식	150
[그림 3-53]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원인 : 문화	151
[그림 3-54] 예술활동증명분야별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원인 : 문화	151
[그림 3-55] 예술활동유형별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원인 : 문화	151
[그림 3-56] 예술활동 중 업무상 질병 빈도	152
[그림 3-57] 예술활동증명분야별 예술활동 중 업무상 질병 빈도	152
[그림 3-58] 예술활동유형별 예술활동 중 업무상 질병 빈도	153
[그림 3-59]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일(예술활동)'을 쉬 기간	153
[그림 3-60] 예술활동 증명 분야별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일(예술활동)'을 쉬 기간	154
[그림 3-61] 예술활동 유형별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일(예술활동)'을 쉬 기간	154
[그림 3-62] 문화예술 프로젝트 평균 작업 기간	156
[그림 3-63]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문화예술 프로젝트 평균 작업 기간	156
[그림 3-64] 예술활동 유형별 문화예술 프로젝트 평균 작업 기간	157
[그림 3-65] 하루 평균 작업(노동) 시간	157

[그림 3-66]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하루 평균 작업(노동) 시간	158
[그림 3-67]	예술활동 유형별 하루 평균 작업(노동) 시간	158
[그림 3-68]	하루 평균 휴식 시간(식사 시간 포함)	160
[그림 3-69]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하루 평균 휴식 시간(식사 시간 포함)	160
[그림 3-70]	예술활동 유형별 하루 평균 휴식 시간(식사 시간 포함)	160
[그림 3-71]	주된 작업 장소	162
[그림 3-72]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주된 작업 장소	162
[그림 3-73]	예술활동 유형별 주된 작업 장소	163
[그림 3-74]	주된 작업 장소의 안전 환경	164
[그림 3-75]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주된 작업 장소의 안전 환경	165
[그림 3-76]	예술활동 유형별 주된 작업 장소의 안전 환경	165
[그림 3-77]	산업재해(질병/상해/사고 등) 발생 시 대처	168
[그림 3-78]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산업재해(질병/상해/사고 등) 발생 시 대처	168
[그림 3-79]	예술활동 유형별 산업재해(질병/상해/사고 등) 발생 시 대처	168
[그림 3-80]	예술인 산재보험 불승인 사유	170
[그림 3-81]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재활 비용 부담 방법	173
[그림 3-82]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재활 비용 부담 방법	173
[그림 3-83]	예술활동 유형별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재활 비용 부담 방법	174
[그림 3-84]	업무상 피해 보상 방법	175
[그림 3-85]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재활 기간 중 경제활동	176
[그림 3-86]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재활 기간 중 경제활동	176
[그림 3-87]	예술활동 유형별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재활 기간 중 경제활동	177
[그림 3-88]	공연예술인이 충분한 치료·재활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178
[그림 3-89]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공연예술인이 충분한 치료·재활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178
[그림 3-90]	예술활동 유형별 공연예술인이 충분한 치료·재활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179
[그림 3-91]	적절한 치료·재활을 받지 못한 경우, 직업생명에 미치는 영향	181
[그림 3-92]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적절한 치료·재활을 받지 못한 경우, 직업생명에 미치는 영향	181
[그림 3-93]	예술활동 유형별 적절한 치료·재활을 받지 못한 경우, 직업생명에 미치는 영향	182
[그림 3-94]	예술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수강 여부	184
[그림 3-95]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예술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수강 여부	184

[그림 3-96] 예술활동 유형별 예술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수강 여부	184
[그림 3-97] 예술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수강 장소	185
[그림 3-98]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예술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수강 장소	185
[그림 3-99] 예술활동 유형별 예술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수강 장소	186
[그림 3-100] 예술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방 교육 종류	186
[그림 3-101]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예술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방 교육 종류	187
[그림 3-102] 예술활동 유형별 예술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방 교육 종류	187
[그림 3-103]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189
[그림 3-104] 수강한 예방 교육 빈도	189
[그림 3-105]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수강한 예방 교육 빈도	190
[그림 3-106] 예술활동 유형별 수강한 예방 교육 빈도	190
[그림 3-107] 예방 교육의 효과 여부	191
[그림 3-108]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예방 교육의 효과 여부	191
[그림 3-109] 예술활동 유형별 예방 교육의 효과 여부	191
[그림 3-110] 산업재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 여부	193
[그림 3-111]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산업재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 여부	193
[그림 3-112] 예술활동 유형별 산업재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 여부	194
[그림 3-113] 산재보험 가입 경험	195
[그림 3-114]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산재보험 가입 경험	195
[그림 3-115] 예술활동 유형별 산재보험 가입 경험	195
[그림 3-116]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가능 인지 여부	196
[그림 3-117]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가능 인지 여부	196
[그림 3-118] 예술활동 유형별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가능 인지 여부	197
[그림 3-119] 향후 산재보험 가입 의향	197
[그림 3-120]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향후 산재보험 가입 의향	198
[그림 3-121] 예술활동 유형별 향후 산재보험 가입 의향	198
[그림 3-122] 공연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	199
[그림 3-123]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공연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	200
[그림 3-124] 예술활동 유형별 공연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	201
[그림 4-1] 산재보험 청구관련 절차 인지 여부	236
[그림 4-2] 산재보험 청구 경험	237
[그림 4-3] 예술가들이 겪는 고통이 야기하는 불안의 소용돌이	239
[그림 4-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신체부위별 대표적 근골격계 질병 종류	246

[그림 4-5] 목 부위 각도측정 방법 예시	246
[그림 4-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지침	247

예술인의 산업재해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우리나라의 공연 현장은 그 동안 크고 작은 산업재해를 꾸준히 겪어왔다. 1972년 서울시민회관 화재 사고를 비롯하여, 1992년 뉴키즈온더블록 내한공연 관객 상해 및 사망 사고, 2007년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화재사고, 2012년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스태프 머리 부상 등 미디어를 통해 보도된 큰 사고뿐만 아니라, 무대 세트에서의 추락, 전기 합선으로 인한 감전, 시설물의 추락으로 인한 상해, 지방 투어 중 교통사고 등 크게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사고들도 일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전한 공연예술 현장의 구축과 사고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정부는 관련 법 개정과 정책 지원 사업을 통해 공연예술 현장의 안전대책 마련에 힘써오고 있다. 일반적인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보호하고 있으며, 공연 분야의 주요 법률인 「공연법」에 의해 공연장의 시설안전 강화와 재해예방조치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22년 1월 18일 「공연법」 개정을 통해 공연예술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향후 공연예술 현장의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으로 제10조의2(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제11조의6(사고보고의무 등), 제12조의5(공연안전지원센터) 등이 신설되었으며,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예술 표현과 작품 준비 과정에서 신체 사용이 매우 많은 공연예술분야의 특성상 많은 공연예술인들은 업무상 고질적인 직업병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직업병 중 하나가 ‘과사용 증후군(overuse syndrome)’인데, 장기간 동안 같은

자세를 반복적으로 유지하며, 특정 근육과 힘줄, 뼈 등을 집중적으로 긴장하고 사용하면 서 많은 질병을 가지게 된다. 흔히 신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운동선수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는 예술인들에게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공연 장르에 따라 그 범위도 다양하고 복잡적이어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으로도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공연예술인들은 그들의 직업현장에서 건강과 안전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지만, 공연예술분야가 이렇게 위험한 환경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양한 법제도를 통해 직업인들의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건설업, 광업, 제조업 등의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다수 일어난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연예술분야는 산업재해의 관심 분야가 아니었다. 산업재해와 관련한 보상 체계도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후 예술인들도 산재보험에 중소기업사업주 계정을 통해 임의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번거로운 행정절차와 보험료 부담, 그리고 인식 부족으로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법제도적 지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공연예술업계에서는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The show must go on)”라는 말로 비록 위험하고 불편한 환경일지라도 열정과 투지를 통해 이를 견뎌나갈 것을 강요받고 있다.

2. 연구 목적

이와 같이 공연예술인들은 크고 작은 산업재해에 꾸준히 노출되어 있고, 고질적인 직업병으로 인해 직업생명이 단축되거나 때로는 중단되는 위기를 겪는다. 그러나 아직 우리 공연예술 현장에서 어떠한 종류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며, 그것이 공연예술인들의 어떤 업무적 특성과 관계하는 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연예술인들의 장르적, 예술적 특성과 관계한 것도 있고, 공연예술계의 특유의 문화와 관계한 것도 있으며, 현장의 인식 부족과 관계한 문제도 있다. 또한 현재 관련해 어떠한 안전대책과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떠한 지원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지에 대한 분석도 아직 진행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공연예술분야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공연예술 현장에

서 일어나는 다양한 산업재해를 폭넓게 조사하고 이러한 재해가 어떠한 맥락에서 발생하는지, 공연예술의 어떠한 업무적 특성으로 발생하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조사하고자 하는 산업재해 발생의 주된 맥락은 공연예술인의 업무방식 및 업무주기에 따른 특성과 장르 및 예술표현 방식에 따른 특성, 우리 공연예술계의 근무환경 및 문화 등이다. 이렇게 공연예술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내용과 그를 둘러싼 환경을 폭넓게 조사함으로써, 공연예술계의 산업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의 문제점이나 예상되는 도전은 무엇인지, 또한 어떠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연예술인의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 제도 개선, 지원사업은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예술인들이 보다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향후 더욱 안전한 공연예술 현장 마련을 위한 방안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가.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 전체로 한다. 그러나 참고 사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시에는 일부 해외 국가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나. 시간적 범위

본 연구의 기준년도는 2022년도 현재로 한다. 그러나 공연예술계의 산업재해 사례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공연법」에 공연장 안전진단 의무조항이 신설되고 본격적으로 공연 예술계의 산업재해에 대한 대비를 시작한 199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 공연예술계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의 종류 및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 대상적 범위

본 연구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예술인의 산업재해 관련 근로환경, 직종별 산업재해 조사 및 유형화와 대응현황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인만큼, 예술 분야의 근로환경과 특징, 산업재해 문제 간의 관계를 심도 있게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예술 전 장르의 산업재해를 포괄적으로 조사하기보다, 특정 장르에 집중해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업무 중 안전사고, 질병, 근골격계 질환, 출퇴근 사고 등 산업재해 사고가 특히 많은 ‘공연예술분야’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술 장르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의한 “문화예술¹⁾”의 장르 중 음악, 무용, 연극(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

지컬 포함), 국악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되는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에 규정된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으로 한다.

공연예술인의 직종별 산업재해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위의 해당 장르에서 종사하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의 범위에 따라 예술인을 구분하고, 각 직종별로 어떠한 산업재해가 일어나며 관련한 환경 및 문화가 어떠한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 중 「예술인 복지법」에 규정된 “기술지원 등”은 크게 ‘무대기술’과 ‘기획행정’ 분야로 나뉠 수 있는데, 이에 본 연구는 예술인의 직종별 산업재해를 구분하는 데에 있어 ‘창작자’, ‘실연자’, ‘무대기술’, ‘기획행정’의 4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연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이 겪는 다양한 산업재해 양상을 조사하므로,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국공립 예술단에 근무하는 직업예술인들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연구대상이 되는 공연예술 장르의 종사자를 구분해 보면, 아래 <표 1-1>, <표 1-2>, <표 1-3>과 같다. <표 1-1>의 창작자와 <표 1-2>의 실연자의 경우, 공연예술의 장르별 참여하는 직종이 차이를 보인다. 연출가, 작곡가, 작가, 디자이너 등 겹치는 직종도 있으나, 배우, 무용수, 연주자, 안무가와 같이 장르별로 다른 직종이 참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대기술과 기획행정 분야의 경우 연극/뮤지컬, 음악, 무용이 모두 비슷한 직종 구분을 가지고 있다. 장르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업무의 내용 및 범위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또한 이들 직종은 특정 장르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닌, 프로젝트에 따라 다른 공연예술 장르에도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표 1-3>의 경우 장르별 동일하게 구분하였다.

<표 1-1> 공연 장르별 창작자의 종류

공연 장르	직종
연극/뮤지컬	극작가, 작사가, 각색가, 번역가, 작곡가, 편곡자, 안무가, 디자이너(무대, 조명, 의상, 영상, 음향, 소품), 디자이너 조수
음악	작곡가, 작사가, 대본작가, 편곡자, 디자이너(무대, 조명, 의상, 영상, 음향, 소품), 디자이너 조수
무용	안무가(예술감독), 작곡가/음악감독, 편곡자(음악편집), 대본작가, 디자이너(무대, 조명, 의상, 영상, 음향, 소품), 디자이너 조수
국악	작곡가, 편곡자, 대본작가(창극/마당극의 경우), 디자이너(무대, 조명, 의상, 영상, 음향, 소품), 디자이너 조수

출처: 차민경(2019).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문화예술용역 범위 설정 방안(공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구성.

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함

〈표 1-2〉 공연 장르별 실연자의 종류

공연 장르	직종
연극/뮤지컬	연출, 드라마터그, 조연출, 음악감독, 음악조감독, 조안무, 배우(주연, 조연, 단역) 음악감독, 연주자(지휘자, 연주자)
음악	음악감독(예술감독), 지휘자, 연주자(악기연주, 성악가, 코러스 등), 반주자 ※ 오페라 : 연출가, 조연출, 드라마터그 추가
무용	연출가, 조연출, 조안무/리허설 디렉터(또는 지도위원), 무용수(수석무용수, 솔리스트, 드미 솔리스트, 군무), 지휘자, 연주자(규모, 성격에 따라 오케스트라, 실내악, 밴드, 솔로연주자 등), 반주자(리허설 반주자, 공연 실연 반주자), 드라마터그
국악	음악감독(예술감독), 지휘자, 연주자(악기연주, 창자 등) ※ 창극/마당극: 연출가, 조연출, 드라마터그 추가

출처: 차민경(2019).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문화예술용역 범위 설정 방안(공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구성.

〈표 1-3〉 공연 장르별 무대기술/기획행정 종사자의 종류

분야	직종
무대기술	무대감독, 조명감독, 음향감독, 영상감독, 의상감독, 특수효과 감독, 무대스태프, 조명스태프, 음향스태프, 영상스태프, 의상스태프, 특수효과 스태프 무대 설치 및 철수 인력, 조율사, 분장상, 자막운영, 장비대여업체, 무대/의상 제작소, 촬영 등
기획행정	단장/제작자, 공연기획자, 홍보·마케팅 담당, 인사관리, 행정담당, 재정 부장 및 경리, 하우스매니저, 티켓매니저, 대관담당, 회원관리, 시설운영 및 관리, 안내원(어서)

출처: 차민경(2019).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문화예술용역 범위 설정 방안(공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구성.

또한 본 연구는 공연예술분야의 산업재해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 분석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 규정하는 3가지 범주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크게 3가지로 분류한다. ‘업무상 사고’는 업무와 관계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로, 각종 안전사고, 업무수행 중의 상해, 휴게시간 중의 사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 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요인에 의해 건강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이다.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또는 업무수행을 위한 여행 중 발생한 사고로 흔히 업무 중이나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 가지 범주에 따라 공연예술인의 산업재해 내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공연예술계의 대응 현황을 고찰한다.

산업재해 분석을 위한 분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적용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다. 삭제 <2017.10.24>
-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라. 내용적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산업재해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공연예술계의 산업재해에 대해 고찰하고 관련한 법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공연예술분야의 산업재해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왜 공연예술인을 산업재해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지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공연예술인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기반이나,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시의 보상을 위한 제도, 안전점검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로 공연예술인이 겪는 산업재해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심층 분석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구분한 업무상 재해의 분류에 따라, 공연예술인이 겪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는 공연예술인의 어떤 업무적 특성, 장르 및 예술표현 방식, 그리고 공연예술계의 근무환경 및 문화 등과 관계하는

지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세 번째로 본 연구는 앞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공연예술 현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제안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문화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공연예술 현장의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또는 프로그램이나, 산업재해 발생 이후 보상을 강화하여 예술인들이 산업재해로 인해 직업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literature review)

공연예술인의 산업재해와 관련한 업무환경, 산업재해 종류 및 내용, 관련 대응 지원방안 등을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는 예술인 산업재해 및 근로환경, 예술인 복지정책과 관련한 기존 연구보고서 및 논문 등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공연예술인들의 업무 특성과 환경, 그리고 산업재해(특히 업무상 질병)와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해외문헌을 조사하고, 공연예술인들이 겪는 산업재해의 종류와 원인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적극 활용하였다.

나. 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인터뷰(FGI 및 in-depth interview)

공연예술분야의 산업재해와 관련한 쟁점, 산업재해의 종류 및 내용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예술인의 산업재해에 대해 다루는 기관의 담당자, 관련 전문가와 산업재해 관련 경험 예술인 등을 방문, 자문회의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공연예술분야의 산업재해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과 특징,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도움을 받았다.

〈표 1-4〉 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인터뷰 명단

회차	일시	자문위원
1	2022.04.05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김동균 센터장, 임정호 주임
2	2022.04.15	근로복지공단 전국민고용안전망강화추진TF 이원석 차장
3	2022.05.04	전문무용수지원센터 R&D사업팀 윤정현 과장

회차	일시	자문위원
4	2022.05.0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남희승 팀장, 이광렬 주임
5	2022.05.11	근로복지공단 정진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배종신 부장, 주익노 차장
6	2022.06.13	닥터방스 바디케어 방유선 박사
7	2022.06.16	한국예술종합학교 어경준 교수
8	2022.07.15	서린컴퍼니 서정민 감독
9	2022.07.18	이위형 무용 재할 트레이너
10	2022.07.28	김광욱(음악), 임상호(음악), 예효승(무용), 이정훈(연극), 임정하(무용), 유성희(국악), 고윤진(국악)
11	2022.07.29	이다해(연극), 정성태(무용), 이정현(음악), 박지혜(연극), 서장호(국악), 송해연(국악), 정환희(연극)
12	2022.08.03	고스트LX 류정식 감독

다. 사례조사(case study)

공연예술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사례에 대해 폭넓은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 중에 일어난 공연예술계 산업재해 관련 미디어 자료를 조사하고, 자문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사례를 소개받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근로복지공단, 전문무용수지원센터, 공연예술분야 협·단체 등이 보유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경험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방문 또는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여 공연예술인이 겪는 다양한 산업재해의 사례를 폭넓게 조사하였다.

라. 설문조사(survey)

공연예술인이 직업 활동 중에 겪는 산업재해의 종류와 원인, 관련 환경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업무상 질병의 경험과 종류, 원인, 빈도 등을 조사하였고, 이들의 종사환경과 산업재해 대처 현황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는 구조화 된 설문지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되었으며, 2022년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공연예술인 4,977을 대상으로, 장르별 할당하여 모집단을 선정하였고, 700명을 표본그룹으로 선정해 조사했다.

〈표 1-5〉 설문지 조사 개요

조사대상	공연예술분야(무용, 연극, 연예, 음악) 종사자
모집단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공한 공연예술분야 종사자 리스트 4,977명 - 최초 5,000명 리스트를 제공 받은 후 중복을 제외한 후 4,977명을 대상으로 조사
표본크기	700명
조사방법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22년 7월 11일 ~ 7월 22일

〈표 1-6〉 설문지 조사 내용

응답자 특성	성별, 나이, 예술활동증명 분야, 예술활동 유형, 활동 기간, 계약 형태, 연평균 소득
업무상 질병/상해 경험	업무상 질병/상해 경험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상해 종류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상해 원인 예술활동 중 업무상 질병/상해 빈도 업무상 질병/상해로 인해 '일(예술활동)'을 중단한 기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경험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경험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종류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원인 업무상 사고 빈도 업무상 사고로 인해 '일(예술활동)'을 쉬 기간
공연예술인의 종사환경 및 산업재해 대처 현황	문화예술 프로젝트 평균 작업 기간 하루 평균 작업(노동) 시간 하루 평균 휴식 시간 주된 작업 장소 주된 작업 장소의 안전 환경 산업재해 발생 시 대처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재활 비용 부담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재활 기간 중 경제 활동 공연예술인이 충분한 치료·재활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적절한 치료·재활을 받지 못한 경우, 직업생명에 미치는 영향 공연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 산업재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 여부 산재보험 가입 경험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가능 인지 여부 향후 산재보험 가입 의향 예술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수강 예술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방 교육 수강한 예방 교육 빈도 예방 교육의 효과

예술인의 산업재해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제2장

공연예술인의 산업재해 보호의 필요성과 지원 현황

제1절 공연예술인의 산업재해와 보호의 필요성

1. 산업재해와 공연예술분야

1.1. 산업재해의 개념과 관련 법제도

가. 산업재해의 개념과 분류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8426호) 제2조(정의)에 따르면 ‘산업재해(産業災害)’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913호)에서는 산업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표현하는데, 동 법의 제5조(정의)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일컫는다. 이와 같이 산업재해는 업무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원인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범위는 신체적 인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까지 포함하고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은 근대시대 산업혁명이후 생산방식의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각종 사고와 질병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안전 및 작업환경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부터이다. 이후 각국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규제를 제정해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제76조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보호를 시작하였다. 이후 1963년 11월 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산업재해로부터의 근로자 보호를 구체화하였고, 1981년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면서 산업 안전에 대한 방지, 책임체제, 관리, 벌칙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흔히 4M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 구분되는데, 기계적 요인(Machine factor), 물질·환경적 요인(Media factor), 인적 요인(Man factor), 관리

적 요인(Management factor)로 구분될 수 있다. 기계적 요인은 기계설비의 결합이나 방호장치의 불량, 운반수단의 결합 등으로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사용하는 설비·장비와 관련한 문제들이 이에 해당하며, 물질·환경적 요인은 화학물질로 인한 문제나 작업공간 상태의 불량 등의 문제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 인적요인은 인간이 산업 재해의 요인이 된 것을 가리키는데, 심리적인 문제로 인한 에러, 피로, 수면부족, 질병 등 생리적인 원인, 그리고 직장 내 인간관계나 의사소통 문제 등과 같은 직장 내 원인들도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관리적 요인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관리 계획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관련 조직이 있는지, 교육·훈련이 부족하지 않은지 등을 가리킨다.

〈표 2-1〉 4M의 항목별 유해·위험 요인

항 목	유해·위험요인
Machine (기계적)	기계·설비 설계상의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본질안전화의 부족 사용 유틸리티(전기, 압축공기, 물)의 결함 설비를 이용한 운반수단의 결합 등
Media (물질·환경적)	작업공간(작업장 상태 및 구조)의 불량 가스, 증기, 분진, 흙, 미스트 발생 산소결핍, 병원체,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취급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인
Man (인적)	근로자 특성(장애자, 여성, 고령자, 외국인, 비정규직, 미숙련자 등)에 의한 불안전 행동 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 작업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등
Management (관리적)	관리조직의 결함 규정, 매뉴얼의 미작성 안전관리계획의 미흡 교육·훈련의 부족 부하에 대한 감독·지도의 결여 안전수칙 및 각종 표지판 미게시 건강관리의 사후관리 미흡

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2007). 4M 위험성 평가 절차 및 방법, 한국산업안전공단. p. 9.

프랭크 버드(Frank Bird)는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을 직접원인과 간접원인으로 나누었는데, 직접원인은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물적요인(설비, 기계, 보호구, 조명 등의 결함)과 인적요인(인간의 불안정한 행동을 일으키는 피로, 스트레스 등)으로 나뉘며, 간접원인은 교육(안전교육 등), 관리(관리 소홀 등), 환경(유해물질, 작업환

경 등) 상의 원인으로 나뉜다. 하인리히(Heinrich, H. W.)에 따르면 사고나 재해는 대부분 직접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직접원인이 일어난 원인을 살펴보면 교육, 관리, 환경 등 간접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안전교육, 사업주의 안전관리, 유해물질 관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간접원인을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2-1] 산업재해 발생원인



출처 : 기도형(2020). 산업안전관리론. 한경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르면 산업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그리고 출퇴근 재해의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업무상 사고’란 동 법에 따르면 업무 행위 중에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안전 사고나 업무수행 중이나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각종 사고를 말한다. 그러나 설비나 장비 결함이나 이상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고뿐만 아니라, 설비나 장비 등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업무의 주된 장소에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들도 이에 해당한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²⁾을 통해 건강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경우를 뜻한다. 주로 유해물질이나 적절하지 않은 작업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상이 이에 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거나 건강상의 이상이 온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도 이에 포함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란 업무수행을 위해 출근 또는 퇴근, 업무수행 장소로의 이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주로 교통 관련 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나 방법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일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사업주의 명령이나 지배에 의한 이동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도 인정되고 있다. 산업재해의 종류 중 가장 최근에 신설된 것으로 2017년 10월 24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적용되고 있다.

나. 산업재해 관련 법제도의 마련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산업재해 사건이 다수 발생했는데,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 광업 분야에서 많이 발생했다. 1990년대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후유증을 남긴 원진레이온 사태는 유해물질 관리 소홀로 인해 수백 명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장애판정을 받았으며, 2012년 경북 구미시의 플루오린화수소 저장탱크 폭발과 누출 사건은 유독가스에 대한 관리 소홀이 문제였다. 2018년에는 충남 태안의 화력발전소의 근로자가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계기로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에도 책임을 지우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법률은 1981년 12월 31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³⁾으로 제정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이 산업안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산업재해의 정의나 범위, 책임, 보상 등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반 법률로서 역할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산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동시에 많은 산업재해 피해가 일어나자 산업재해에 대한 효율적 대처가 요

3)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구되었고, 산업안전 및 보건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법이 제정되게 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총칙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체제(제2장), 안전보건교육(제3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제4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5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제6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제7장), 근로자의 보건관리(제8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제9장), 근로감독관(제10장), 보칙(제11장), 벌칙(제12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4조(정부의 책무)를 두어, 정부는 산업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고,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경영 체제를 지원하며, 안전문화 확산과 관련 연구·개발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동 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에서는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에 의거한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만들고 근로자를 위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제167조부터 제175조까지는 벌칙 규정을 만들어 산업 안전과 보건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근로자 등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와 관련한 또 다른 공공 제도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들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1964년에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재해율을 낮추며, 산업재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재활과 복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더불어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될 수 있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킴으로써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를 설치한 이후 적립금 또는 기금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다가 현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 상의 재해보상제도를 보험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보험료 부담을 하지 않고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1년 말 산재보험 기금규모는 22조 3,654억 원이다.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해당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이면서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자격요건이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은 2008년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를 시작으로 2021년 7월 소프트웨어 프

리랜서까지 대상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들어 산재보험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021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하위로 123조의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가 신설되었다.

〈표 2-2〉 산재보험 기금적립 규모

(단위: 억원)

	2017년 말	2018년 말	2019년 말	2020년 말	2021년 말
산재보험 기금규모	166,833	179,728	207,927	221,473	223,654

출처: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기금 자산운용(검색일: 2022.0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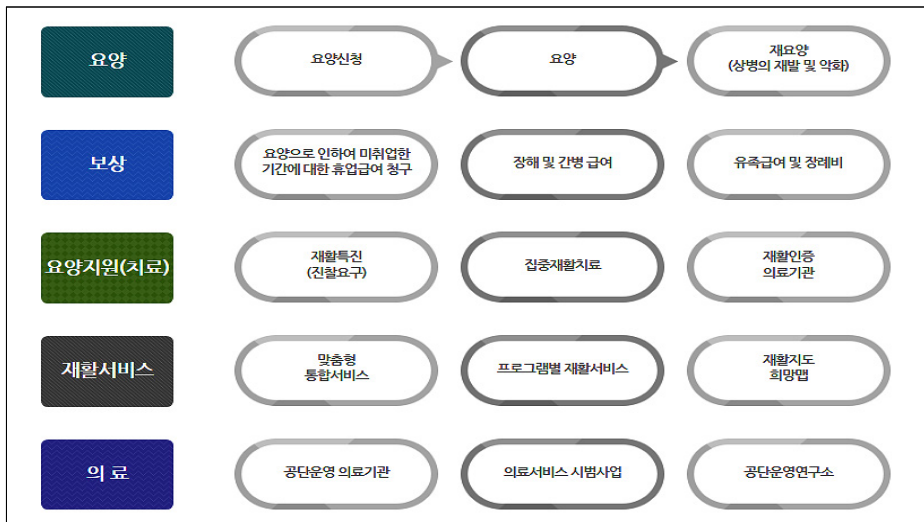
산재보험의 보상 승인의 주요 판단 기준은 ‘업무연관성’이다. 산재보험은 말 그대로 산업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를 보상 대상으로 하므로, 산업현장과 무관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업무상 사고와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사고의 원인과 결과, 증빙자료가 명확한 경우에 보상승인율이 비교적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 해당 질병이 신청자의 산업현장에서 원인이 제공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판정 절차도 복잡하며, 인과관계를 증빙하기도 쉽지 않다. 때문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는 사례는 제조업이나 특수 화학약품으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는 분야와 같이 업무연관성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승인율이 높으며 일반 근로자의 경우 승인율이 높지 않다. 재해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보상을 신청한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으며 위원회에서의 판정이 심사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그림 2-2] 업무상 재해 인정 절차



출처: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그림 2-3] 산재보험 보상절차



출처: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산재보험 지원사업 안내(검색일: 2022.02.10.)

〈표 2-3〉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구분	인정 기준	내용						
업무상 사고	업무수행 중의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출장 중 재해) <p>※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 불인정</p>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휴게시간 중의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기타 업무상 사고	행사 중의 사고,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요양 중의 사고,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업무상 질병	유해위험요인의 취급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유해·위험요인 취급·노출과 해당 질병 간 의학적 인과관계의 성립필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업무상 질병 유형</th> <th>업무상 질병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뇌혈관질환</td> <td> <p>다음의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등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p> <p>① 돌발적인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요인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p> <p>②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요인 →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p> <p>③ 만성적 과중한 업무요인 → 발병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p>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근골격계 질병</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신체부담업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td> </tr> </tbody> </table>	업무상 질병 유형	업무상 질병 내용	뇌혈관질환	<p>다음의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등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p> <p>① 돌발적인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요인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p> <p>②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요인 →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p> <p>③ 만성적 과중한 업무요인 → 발병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p>	근골격계 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신체부담업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업무상 질병 유형	업무상 질병 내용					
		뇌혈관질환	<p>다음의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등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p> <p>① 돌발적인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요인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p> <p>②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요인 →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p> <p>③ 만성적 과중한 업무요인 → 발병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p>					
근골격계 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신체부담업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구분	인정 기준	내용	
		업무상 질병 유형	업무상 질병 내용
			→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 진동 작업 →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기타 질병	○ 호흡기계 질병, 신경정신계 질병, 피부 질병, 눈 또는 귀 질병, 간 질병, 감염성 질병, 직업성 암 등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그 부상과 질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고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닌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기타 업무상 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질병)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 등) -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출퇴근 사고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이동 중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	
	자해행위 및 자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자해행위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 불인정 -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중 자해행위 등은 업무상 재해 인정 	

출처: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이렇게 산재보험이 업무연관성을 까다롭게 따지는 이유는 산재보험에서 제공하는 매우 '폭넓은 보상범위' 때문이다. 산업재해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 판정이 확정되면 상병의 상황에 따라 <표 2-4>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을 경우 이에 대한 장해급여,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등이 제공된다. 무엇보다도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자신의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는 '휴업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충분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 사망의 경우 유족에 대한 급여나 장의비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여타 민간 보험이나 관련 정책 사업에서는 볼 수 없는 폭넓은 지원이므로,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합당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업무연관성'을 까다롭게 판단하게 된다.

〈표 2-4〉 산재보험 급여 종류 및 내용

구분	급여종류	내용									
요양중	요양급여 (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로 승인 - 치료비는 산재요양승인이 나면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수령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로 청구 가능 - 치료비, 간병료, 이송료(통원 교통비), 보조기 비용 등 지급 									
	휴업급여	<p>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근로자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1일 당 평균임금의 70% 지급</p> <p>* 최저기준: 최저임금</p> <p>** (부분휴업급여) 요양 기간 중 취업한 경우 휴업급여 부분 지급</p> <p>- (일평균임금 ÷ 8 × 취업시간 - 취업일 임금) × 90%</p>									
요양종료	장해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을 경우 지급 - 장해등급 심사 후 최고 1급에서 최저 14급으로 장해등급 판정 -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일수 및 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 최고보상기준금액('22년 기준): 232,664원 * 최저보상기준금액('22년 기준): 73,280원(1일 최저임금액과 동일) 									
	간병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를 끝내고 장해상태가 매우 중하여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 - 상시간병, 수시간병으로 구분하여 지급 <p style="text-align: right;">('21년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구 분</th> <th style="width: 35%;">상시 간병급여</th> <th style="width: 35%;">수시 간병급여</th> </tr> </thead> <tbody> <tr> <td>전문간병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44,76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9,840원</td> </tr> <tr> <td>가족·기타간병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41,17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7,450원</td> </tr> </tbody> </table> <p>※ 요양 중 간병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중 간병료를 지급</p>	구 분	상시 간병급여	수시 간병급여	전문간병인	44,760원	29,840원	가족·기타간병인	41,170원	27,450원
		구 분	상시 간병급여	수시 간병급여							
		전문간병인	44,760원	29,840원							
가족·기타간병인	41,170원	27,450원									
상병보상 연금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직업재활 급여	산재장해인(산재 1~12급)의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사망	유족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에게 지급 - 연금*(수급권자가 원할 경우 연금 50%, 일시금 50% 가능)으로 지급하나, 산재보험법 제63조의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지급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 365일) × 연금지급률 									
	장의비	<p>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p> <p>*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22년 기준): 16,775,750원 / 12,082,820원</p>									

출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종류 및 내용 내부자료

많은 근로자가 산재보험 보상 신청 과정에서 사업장에 피해가 가는 것을 우려하거나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기존에는 재해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할 때 사업주의 날인이 필요했으나, 이 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로 삭제되었다. 이 조항 때문에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경우들이 있어 재해자들이 산재보험 신청을 어려워했기 때문이다. 사업주 날인제도를 폐지한 지금은 재해자가 병원 원무과의 산재보험 담당자를 통해서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해자 본인이 직접 공단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산재보험 보상 신청 후 사업주의 산재보험 요율이 다소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30명 이상의 중소기업 이상만 사업주의 산재보험 요율이 상승하게 되어 있어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큰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1.2. 공연예술분야의 산업재해와 법제도의 마련

가. 공연예술분야의 산업재해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하면서 동시에 산업재해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산업재해 관련 법·제도들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산업화 초기인 1964년에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신설할 만큼 일찍부터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이었지만, 산업재해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흔히 판단하는 위험요소가 많은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공연예술분야의 경우 산업재해가 논의되던 초기에 논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 산업분야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 공연예술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꾸준히 있어왔다.

우리 공연예술분야에서 일어난 최초의 대형 산업재해는 1972년 서울시민회관의 화재 사고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세종문화회관 위치에 있던 서울시민회관의 무대 위 조명 장치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방화막이 없던 시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유독가스에 질식했고, 안전피난 규정이 없어 압사 또는 추락하는 사고가 많았다. 이 사고로 53명이 사망·상해를 입었고 76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서울시민회관의 상당수는 불타 없어졌다.

[사례] 서울시민회관 무대조명장치 전기과열 합선 화재 사고

- (1) 사고명: 화재
- (2) 사고일: 1972-12-02
- (3) 장소: 서울시민회관 (현 세종문화회관)
- (4) 사고내용: 오후 8시 27분, 서울시민회관은 문화방송 개국 11주년 10대 가수 청백전 공연이 끝나고 7분 뒤, 관객이 밖으로 나올 무렵 평 하는 소리와 함께 가설된 무대 위 조명 장치가 터지면서 화재 발생하였다. '평'하는 소리와 함께 무대 안에 환하게 비치기 시작하고 불이 발생하자 한 사람이 빨리 대피하라고 손짓하였고, 열기에 의해 내려진 막이 들어 올려지며 그 사이로 무대가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이 보였다. 많은 사람이 옥탑으로 올라가는 통로를 발견하고 용수철 형태 모양의 회전식 계단을 타고 올라가기도 하였다. 연기가 짙어지며 이 과정에서 질식으로 쓰러지는 사람과 인파 속에서 압사하는 사람, 창문이 깨지면서 추락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질식, 압사, 추락 피해자들 대부분 사망하였다. 무대 뒤 또는 옥탑 근처에서 근무 중이던 사람 중에 희생자가 많았으며, 관객 중 일부가 아래층을 포기하고, 옥탑으로 올라가 희생되었다. 관객 대부분은 밖으로 나올 수 있었으나 질식, 압사, 추락 피해자들 및 옥탑 근처에서 근무 중이던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 (5) 사고원인: 무대 위에 가설된 조명 장치의 과열 및 합선으로 인해 불이 붙었고, 주최 측이 급하게 막을 내렸더니 그 막에 불이 붙으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화염이 번지게 되었다. 당시 10대 가수 가요제 세트장 설치에 참여했던 MBC 미술부 소품실장 이근식은 전기기술자 면허가 없는 시민회관 조명실 담당자 이용일과 함께 5W 짜리 조명 전구 240개로 고속도로형 무대조명 장치를 만들었는데, 이 조명 전기사용량이 시민회관 전체 전기사용량의 반 이상이었다. 과다전력 사용으로 인해 오후 7시 15분경 1차 합선으로 두꺼비집 퓨즈가 끊어졌으나, 당시 회관 조명실 담당자였던 이용일이 부품을 갈지 않고 조명시설 전선을 전원에 연결해 2차 합선이 일어나 화재로 이어졌다.
- (6) 사고결과: 연건평 3,432평 중 소강당을 제외한 3천여 평을 모두 태우고 53명이 질식 또는 소사하고 76명이 부상당했다. 부상자 가운데 출연진 문주란, 김상희도 있었는데 문주란은 화장실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뛰어 내리다 제2요추 복합골절의 중상을 입었고, 김상희는 왼손, 왼발에 가벼운 부상을 입음. 사망자 중에 이남용 관장도 있었다. 재산 피해액은 약 2억 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 (7) 사고처리: MBC 소품실장 이근식 등 3명이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성, 1973년 금고형 선고받았다. 1967년 서울특별시청이 MBC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980년 서울시청 측이 패소하였다.

이후 일어난 가장 큰 공연장 사고는 1992년에 있었던 미국 보이그룹 '뉴 키즈 온 더 블럭(New Kids on the Block)' 내한공연 사고였다. 공연 도중 관객이 앞으로 몰려들며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는 수용인원 이상의 관객을 입장시킨 것인데, 수용인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었던 때에 일어난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에도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어나는 사건은 1990년대에 자주 발생하게 되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객 질서 확립과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게 되었다.

2007년에는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무대 연출 도중 화재가 일어나 무대시설이 불에 타고 관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 그러나 공연장에 방화막이 작동하여 유독가스가 공연장 안으로 퍼지지 않았으며, 미리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스태프의 안내로 인명피해 없이 물적 피해만으로 끝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연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2012년에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공연 중 무대장치 추락으로 스태프의 두개골이 깨지는 사고가 있었고, 2018년에는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무대 스태프가 작업 중 승강무대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공연예술인의 추락, 넘어짐, 끼임, 낙하 등의 사고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두 경우 모두 소송까지 가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고 공연예술분야의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일깨우는 사건이 되었다.

〈표 2-5〉 우리나라 공연예술 주요 산업재해

지역	사고일	사고명	장소	주요내용	피해상황		
					사망	부상	물적
서울 종로	1972.12.04	화재	서울시민회관	무대조명장치의 전기과열로 인한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	51	71	2억 5천만
서울 송파	1992.02.18	관객 혼잡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팝 그룹 '뉴키즈온더블록'의 공연 도중 공연장 뒤쪽 소년팬들이 무대 앞으로 몰려 나오다 넘어져 부상	1	60	-
대구 북구	1995.10.28	관객 혼잡	대구 시민운동장	'젊음의 뽀빠 012 콘서트' 공연장에서 1만여명의 관객이 한꺼번에 입장하려다 넘어져 부상	0	8	-
대구 달서	1996.02.16	관객 혼잡	대구 우방랜드	MBC '별이 빛나는 밤에' 공개방송에서 앞으로 몰리던 관객들이 앞쪽 관중들을 덮침	1	5	-
전남 순천	1998.12.04	관객 혼잡	순천 실내체육관	'소년소녀가장동기 콘서트'에서 여학생 팬들이 그룹 HOT 보고 몰려들면서 넘어짐	0	10	-
서울 종로	2001.01.18	화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신파극 '애수의 소아곡' 공연 도중 과열 조명등의 열기가 무대막에 옮겨져 발화	0	0	-
대구 달서	2002.09.22	관객 혼잡	대구 두류공원	한가위 효 콘서트에서 입장 도중 뒤에서 밀린 관객들이 넘어짐	0	4	-
충북 청주	2004.06.04	관객 혼잡	청주대학교 종합운동장	개교 기념 공연에서 공연장 입장 중 뒷 사람에게 밀려 넘어짐	0	13	-
경기 성남	2005.07.11	관객 혼잡	성남 모여고 체육관	음악전문 케이블 방송 녹화 도중 관객들이 무대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넘어짐	0	10	-
경북 상주	2005.10.03	관객 혼잡	상주 시민운동장	MBC 가요콘서트 녹화현장을 보기 위해 입장하던 관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앞사람이 넘어지고 뒤따르는 사람들이 잇달아 넘어지는 압사사고	11	162	-
대전 중구	2006.01.20	조명기구 낙하	대전시 B나이트클럽	높이 5-6m 위에 설치된 지름 8m, 무게 800kg의 원형조명시설이 무대로 추락하여 무대에 있던 손님이 부상	0	24	정보 없음

지역	사고일	사고명	장소	주요내용	피해상황		
					사망	부상	물적
서울 서초	2007.12.12	화재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오페라 '라보엠' 공연 중 무대에 설치된 난로에서 불꽃이 번져 막 등 무대시설을 태움	0	0	100억 4천만
정보 없음	2007.12.18	스태프 추락	모방송국 가요시상식	무대 스피커 철거 작업 도중 음향담당 직원이 높이 12 m의 대형 트러스(철골 구조물) 위에서 추락하여 사망	1	0	-
서울 중구	2008.09.21	스태프 추락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한리교류축제 리허설 도중 한리교류협회 이사장이 준비상태 점검을 위하여 무대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뎠다 무대 약 4 m 아래 오케스트라 석으로 추락하여 사망	1	0	-
서울 영등포	2008.10.22	스태프 추락	KBS홀	근로자 문화예술대상 시상식 세트장에 무대설치를 위하여 유압 사다리에 올라 천장에 철사를 묶던 중 유압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5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1	0	-
서울 강남	2009.12.02	무대세트 추락	코엑스아티움	뮤지컬 '금발이 너무해' 공연 중 세트 전환 시 무대 뒤쪽에서 얇은 목재로 된 무대막이 추락	0	2	-
경기 수원	2011.09.21	스태프 추락	경기도 문화의전당	정기공연 리허설 중 무대에 오르던 객원지휘자가 4.7미터 아래 오케스트라 피트에 떨어져 사망	1	0	-
서울 송파	2012.08.11	화재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가수 사이 콘서트 중 조명시설에서 화재 발생	0	0	정보 없음
경기 고양	2012.12.15	무대장치 낙하	고양 어울림누리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공연 중 무대장치(평형추) 추락으로 조작 스태프가 머리에 평형추를 맞아 크게 다침	0	1	-
서울 서초	2013.01.23	소형 화재	국립국악원 우면당	무대장치 그라인더 작업 중 불티가 착화되어 흡음재 일부에 화재 발생	0	0	10만원
경기 안산	2013.07.26	스태프 감전	대부도 바다향기 테마파크	안산밸리룩페스티벌 행사장 송풍기 설치를 위해 콘센트를 꽂던 행사 관계자가 감전	1	0	-
경기 구리	2014.04.02	출연자 추락	구리아트홀	리허설 중 출연자가 무대 하부 공간으로 추락	0	1	-
경기 성남	2014.10.18	관객 추락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 공연	공연 관객 일부가 환풍구 아래로 추락	16	11	-
부산 연제	2014.10.27	작업자 추락	아시아송 페스티벌	무대 구조물을 설치하던 고소 작업자 추락	0	1	-
서울 송파	2015.01.23	출연자 추락	서울 올림픽 공원	출연자가 무대 하부 공간으로 추락	0	1	-
대구 달서	2015.04.05	출연자 추락	대구 계명아트센터	출연자가 무대 하부 공간으로 추락	0	1	-

지역	사고일	사고명	장소	주요내용	피해상황		
					사망	부상	물적
경북 안동	2015.08.03	무대세트 파손	안동 부용대	리허설 중 무대파손에 의한 출연자 추락	0	5	-
제주 서귀포	2015.10.02	출연자 추락	제주 서커스 공연장	공중 연기 도중 단원 추락	0	2	-
부산 해운대	2016.01.24	무대장치 낙하	부산 소향 씨어터	콘서트 중 설치된 무대장치가 바닥으로 낙하	0	0	정보 없음
부산 남구	2016.05.17	관객 추락	부산 부경대	공연을 관람중인 관객이 채광창 아래로 추락	0	2	-
서울 강남	2016.05.18	무대장치 충돌	서울 LG아트센터	막 장면 전환 중 무대장치 충돌에 의한 파손 및 낙하	0	0	정보 없음
충북 보은	2016.07.06	조명기구 낙하	충북 보은문화회관	리허설 중 조작 실수로 인한 조명기구 낙하	0	0	정보 없음
경북 포항	2016.09.12	객석 구조물 낙하	포항문화 예술회관	지진에 의해 객석 마감재가 떨어져 바닥으로 낙하	0	0	정보 없음
경기 의정부	2016.11.25	출연자 추락	의정부 체육관	콘서트 중 출연자가 무대에서 추락	0	1	-
서울 송파	2017.02.26	출연자 추락	서울 SK올림픽 경기장	콘서트 중 무대장치에서 출연자 추락	0	1	-
강원 강릉	2018.02.14	무대세트 전도	강릉 월화거리	강풍에 의해 야외공연장 전광판 전도	0	8	정보 없음
서울 성북	2018.05.12	출연자 추락	서울 고려대	콘서트 도중 공연자가 무대 아래로 추락	0	1	-
서울 구로	2018.06.02	출연자 충돌	서울 고척스카이돔	콘서트 도중 출연자 2명 충돌	0	1	-
경북 김천	2018.09.06	스태프 추락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무대 작업 중 승강무대로 추락	1	0	-
서울 중구	2019.05.30	관객 혼잡	정화예술대학교	스탠딩 펜스 전도로 인한 관객 부상	0	5	-
충남 예산	2019.08.24	출연자 추락	예산군문화회관	뮤지컬 공연 중 무대로 추락	0	2	-
서울 서대문	2019.10.08	출연자 충돌	이화여대 삼성홀	뮤지컬 공연 중 세트와 충돌	0	1	정보 없음
서울 구로	2019.12.25	출연자 추락	서울 고척스카이돔	리허설 도중 무대 아래로 추락	0	1	-
대구 달서구	2019.12.27	관객 심정지	대구 문화예술회관	음악회 공연 중 관객 심정지 사고	0	1	-
인천 부평구	2020.10.14	무대세트 전도	부평캠프마켓	부평캠프마켓 개방 행사 중 LED 전광판 전도로 관객 6명 부상	0	6	정보 없음
서울 중구	2020.10.27	화재	명동예술극장	4층로비 창고 천장 안쪽 전기문제로 인한 화재 발생	0	0	정보 없음

출처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내부자료

나. 공연예술분야의 산업재해 관련 법제도의 마련

공연예술분야에서도 다수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서 관련한 법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한 법·제도도 마련되었다. 공연예술분야의 대표적인 법률인 「공연법」은 처음 제정된 1961년, 제9조(재해예방조치)를 두고 “공연장을 경영하는 자는 화재 기타 재해발생시에 대한 응급조치 및 관람자의 피난유도에 관한 종업원의 배치, 임무 등을 정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적의한 방법으로 훈련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공연법」에는 재해예방과 안전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이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을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으며, 주로 공연자의 등록, 공연장 설치 및 허가, 공연신고,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등 공연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그쳤다. 이후에도 「공연법」은 수차례 개정되었지만 주로 미풍양속 관련, 공연중개업에 대한 규정, 공연윤리위원회의 폐지, 타 법 개정과 관련한 개정이 있었을 뿐 산업재해 예방과 대책에 관련한 내용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6년 9월 27일, 무대예술전문인 교육 및 검정기관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으나 산업재해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으며, 무대예술전문인의 교육에 안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 후 동 법 제정 이후 약 50년이 흐른 2011년 5월 25일,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조항이 추가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 예방을 위한 담당자의 배치 및 대처계획을 마련할 것을 규정했다. 2015년 5월 18일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정부의 안전관리 방침이 강화됨에 따라 공연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이 정비되었다. 제11조의2에 안전관리비 규정을 추가해 예산적으로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 비용을 책정해 관리의 실효성을 더했고,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해 상시 관리하도록 했다(제11조의 3). 또한 안전교육을 실시,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2017년에는 재해나 위급상황 발생 시 관람객 피난을 위한 절차, 안내도 등 마련의 의무를 추가하였다. 2020년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화재 및 재난 취약성을 위해 제11조의5제1항 중 ‘피난 절차’를 ‘피난 절차,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으로 바꾸어 이들에 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였다.

2022년 1월에 있었던 동 법 개정은 공연예술분야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이 대폭 확

대되었다.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신설하였고, 피난 안내 의무에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자를 포함하였으며, 공연장운영자는 사고 발생 시 지자체장에게 보고할 의무 등을 신설하였다. 또한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기도 하였다. 동 해 5월 「공연법」 개정이 한 번 더 이루어졌는데, 화재예방을 위해 무대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여 현재 일부 공연장에만 한정된 방화막을 모든 공연장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공연법 시행령」은 공연장 안전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법 시행령 제9조에는 공연장운영자나 공연 외 시설이나 장소에서 공연하려는 자의 재해대처계획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필요한 제반 내용들을 규정하였다. 제9조의 2는 공연장의 객석 규모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공연비용 대비 비율을 규정하고, 안전관리비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의 구성이나,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대상, 내용, 횟수, 안전진단기관 지정요건, 안전검사 결과 확인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2-6〉 「공연법」의 안전 예방 및 관리 관련 주요 개정

제·개정 날짜	주요내용
1961.12.31	최초의 제정. 제9조(재해예방조치) 조항 규정
2006.09.27	무대예술전문인 교육 및 검정기관 조항 규정
2011.05.25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지정 공연장 운영자의 화재 등 재해 예방을 위한 담당자 배치 및 대처계획 마련
2015.05.18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비용 계상 의무 공연장의 안전관리조직 의무 공연자, 안정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의 안전교육 의무
2017.11.28	피난 안내 시설, 절차, 안내도 등 규정
2020.12.22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규정
2022.01.18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피난 안내 의무에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자 포함 공연장운영자 등 사고 보고의 의무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22.05.03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화

「공연법 시행령」의 안전 예방 및 관리 관련 내용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5. 17.>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운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6. 5. 17.>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8. 11. 27.> [전문개정 2011. 11. 25.]

제9조의2(안전관리비) ①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공연장운영비의 1퍼센트 이상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비용의 1.15퍼센트 이상
나.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비용의 1.21퍼센트 이상
- ②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2.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3. 보호장비의 구입
4. 법 제11조의4에 따른 안전교육과 그 밖의 안전교육 및 훈련
5. 법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6. 안전 관련 보험
7.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③ 공연장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장운영자: 매년 2월 말일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한 자: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본조신설 2016. 5. 17.]

제9조의3(안전관리조직) ①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한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17.]

제9조의4(안전교육) ①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이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대상자별 시기와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자: 공연 전 1시간 이상
2. 안전총괄책임자

가.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나. 가목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3. 안전관리담당자

가.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나. 가목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②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들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연 안전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공연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 5. 17.]

제10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이란 무대 상부·하부시설에 설치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驅動)되는 무대기계·기구수의 합계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을 말한다. <개정 2015. 11. 18.>

② 법 제1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9년을 말한다. <개정 2015. 11. 18.>

③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와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9. 6. 25.>

1. 정기 안전검사: 법 제1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2. 정밀안전진단: 법 제12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 ④ 공연장운영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체 안전검사의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 ⑤ 법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신설 2015. 11. 18., 2016. 5. 17., 2019. 7. 2.>

1. 설계검토: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공연장 설계 도면 등을 활용하여 무대시설의 구조 및 설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
2. 정기 안전검사: 맨눈이나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시설 및 그 설치 상태의 안전성 등을 조사·검사
3. 정밀안전진단: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시설의 물리적 상태, 기능적 결함 등을 파악하고 그 결함 또는 위험의 원인을 조사·측정·평가(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사항을 포함한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공연장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의 절차·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11. 18.> [전문개정 2011. 11. 25.]

제10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3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5. 17.> [전문개정 2015. 11. 18.]

제10조의3(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①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진단기관의 안전검사등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1. 제10조제7항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절차·방법·기준 등의 준수 여부
2. 안전검사등의 신뢰성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안전검사등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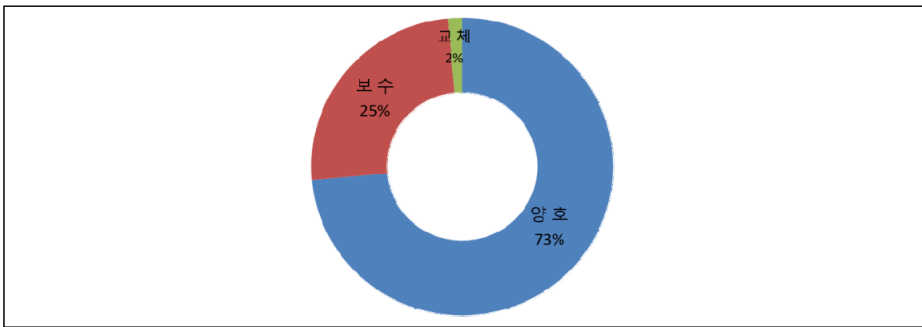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평가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안전검사등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본조신설 2011. 11. 25.]

2. 공연예술분야의 산업재해 관련 현황 및 보호의 필요성

2.1. 공연예술분야의 안전현황과 투자의 미흡

「공연법」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연장들은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공연장안전지원센터(2021)가 2020년 한 해 우리나라 공연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연장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무대시설의 안전수준은 73%가 ‘양호’를 받았지만 27%가 ‘보수’ 또는 ‘교체’를 받을 만큼 아직 많은 시설·장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조명시설’이 가장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했고 그 다음으로 ‘방화막’, 그리고 ‘승강무대’ 순으로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했다. 가장 양호한 시설은 ‘회전무대’였는데, 이 또한 26%는 보수·교체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림 2-4] 공연장의 무대시설 안전수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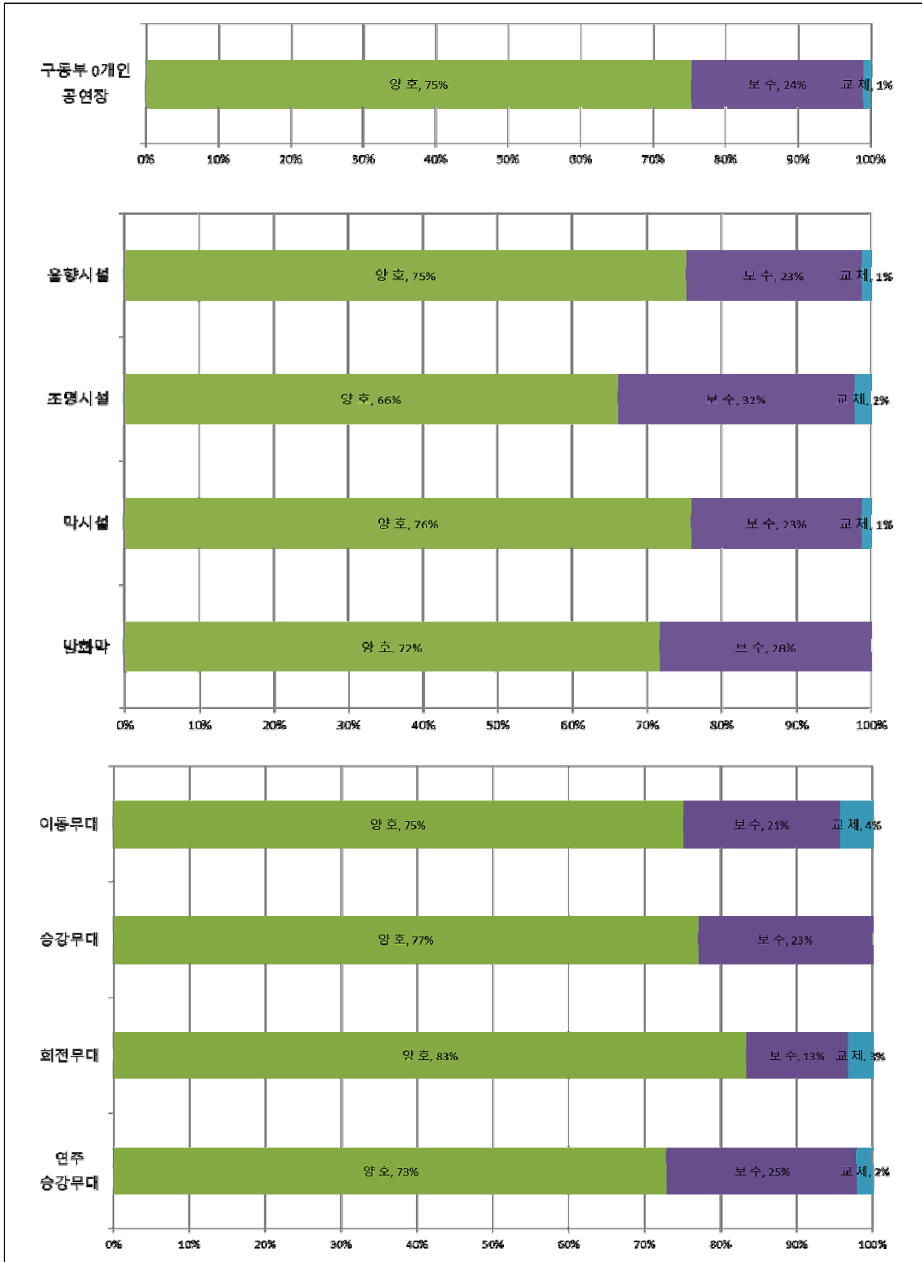
출처 : 공연장안전지원센터(2021). 공연장 안전 통계조사 보고서 : 전국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현황.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표 2-7> 공연장의 무대시설별 안전수준

판 정	상부무대시설				하부무대시설				합 계	무대시설 0개인 공연장
	방화막	막시설	조명 시설	음향 시설	연주승강 무대	회전무대	승강무대	이동무대		
양 호	38	3009	1097	442	35	25	215	51	4,912	210
보 수	15	900	527	137	12	4	64	14	1,673	66
교 체	0	53	37	8	1	1	0	3	103	3
소 계	53	3962	1661	587	48	30	279	68	6,688	279

출처 : 공연장안전지원센터(2021). 공연장 안전 통계조사 보고서 : 전국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현황.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그림 2-5] 공연장의 무대시설별 안전수준 비율(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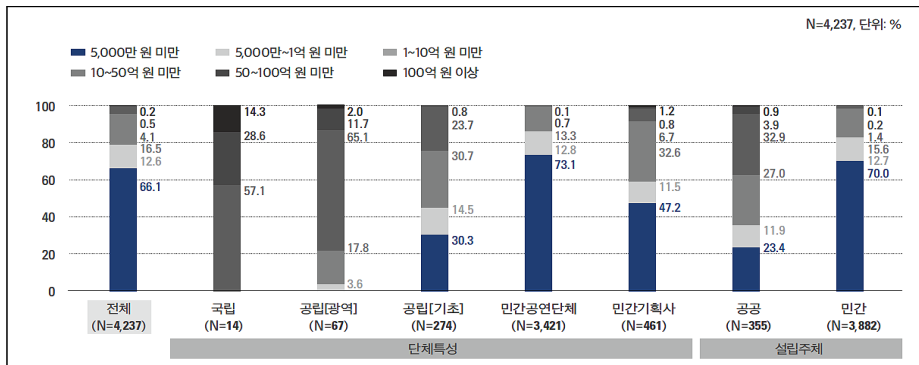


출처 : 공연장안전지원센터(2021). 공연장 안전 통계조사 보고서 : 전국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현황. 분석. 문화체육관광
공부.

방화막 등 안전사고와 관련한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공연장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조명, 회전무대, 승강무대 등의 시설·장비는 수시로 안전을 체크하고 보수·교체하는 것이 필요한데, 위 문헌에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공연장에는 아직 위험성이 보이는 시설·장비를 가진 곳이 일부 있다. 정부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를 통해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제공하고 시설·장비의 보수·교체를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공연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연장 스스로의 정례적인 관리와 예방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 공연장이나 대형 민간 공연장들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시설·장비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많은 공연장들이 시설의 노후화나 장비의 교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이러한 일들을 쉽사리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공연예술단체의 열악한 환경과 깊이 관계하고 있다. [그림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공연예술 단체의 66.1%가 5천만 원 미만의 재정 규모를 가지고 있고, 민간 영역의 경우 70.0%가 이에 해당한다.⁴⁾ 공공 공연장이나 대형 민간 공연장의 경우 공공 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의 설비·장비의 교체를 진행할 수 있지만, 상당수의 민간 공연장의 경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안전시설을 마련하기에는 가용할 재정 자원이 매우 부족하다. 공공 공연예술분야 중에서도 일부 시설의 경우 지자체 등의 지원규모가 적어 안전에 충분한 투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연장뿐만 아니라 공연단체 또한 일부 공공단체를 제외하고는 열악한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연습장 등 이들이 활동하는 주요 시설들의 안전을 위한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림 2-6] 공연단체 설립주체별 재정규모 현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공연예술조사」. 문화체육관광부.

4)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공연예술조사」. 세종 :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영세한 공연예술분야의 상황은 종사자들을 위한 충분히 안전한 환경이 제공하기 어렵게 한다. 2022년 1월 「공연법」의 개정으로 공연장 시설안전과 재해예방조치가 강화되었으나, 예술사업자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공연 현장에 안전대책을 마련할만한 충분한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예술인이 각종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연예술계의 열악한 재정상황은 공연제작의 일정에도 적용되고 있다. 대관료 등 재정적 이유로 많은 공연단체들이 셋업 및 연습 일정을 촉박하게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급박한 일정은 공연 현장의 위험도를 높이게 된다. 무대 설치·철수와 연습 기간이 짧기 때문에 무리한 일정 속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으며, 재정적 이유로 비전문가를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경우도 많아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연을 위한 안전 가이드가 제작되어 배포되고 있지만, 이는 권고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의무화되지 않아 공연현장에서는 아직도 종종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공연예술계의 특징도 예술인들의 산업재해 보상을 어렵게 하는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공연예술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노출되었을 시 공연의 흥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 해 이를 은폐하도록 강요한 사례가 종종 알려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집단 활동을 통해 공연 작품을 완성하는 공연예술의 특성상 한 사람의 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인의 권리나 불편함보다는 ‘공연을 위한 개인의 희생이 우선시’ 되는 문화가 아직 공연예술분야에는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보다 공연의 완성과 성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는 문화는 자칫 예술인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종사할 권리를 빼앗을 수 있으며, 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2. 공연예술인의 직업병과 직업생명의 위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되는데, 그 동안 공연예술분야에서 산업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로 한정해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산업재해에는 업무적 특수성으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심각한 건강 이상이 오는 ‘직업병’의 경우에도 일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공연예술인의 산업재해도 이러한 업무상 질병 관점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해외의 경우 공연예술인들의 직업적 특성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데, 이를 공연예술의학(Performing arts medicine)이라고 한다. 신체를 사용해 예술표현을 하는 공연예술인들의 업무 특성을 연구해, 각 장르별 공연예술인들이 어떤 질병을 겪고 있는 지를 조사한다.

공연예술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직업병 중 하나가 ‘과사용 증후군(overuse syndrome)’인데, 이는 장기간 동안 같은 자세를 반복적으로 유지하며 특정 근육과 힘줄, 뼈 등을 집중적으로 긴장하고 사용하면서 오는 문제이다. 주로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공연 장르에 따라 연주하는 악기의 종류마다, 그리고 주로 작업하는 작품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부위에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공연예술인이 신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운동선수와 비슷한 수준의 과사용 증후군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운동선수와 유사한 질병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⁵⁾

음악가의 경우, 연주와 관련한 근골격계 이상(Playing-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PRMDs)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카우어와 사이(Kaur & Singh, 2016)에 따르면 많은 음악가들이 건염(tendinitis), 과사용 증후군(overuse syndrome), 국소 근긴장 이상(focal dystonia) 및 드퀘르뱅 건활막염(deQuervain tenosynovitis), 근육 힘줄 증후군(muscle tendon syndrome), 과운동성 증후군(hypermobility syndrome), 압박성 신경병증(compressive neuropathy) 등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음악은 안전한 직업처럼 보이지만 음악가들은 직업 고유의 높은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요구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경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은 오랜 시간의 연습(long hours of practice), 과도한 힘(excessive force), 악기의 정적 하중(static loading of instruments), 잘못된 자세(poor posture) 등으로 인해 경력이 쌓일수록 더 다양한 신경근골격 부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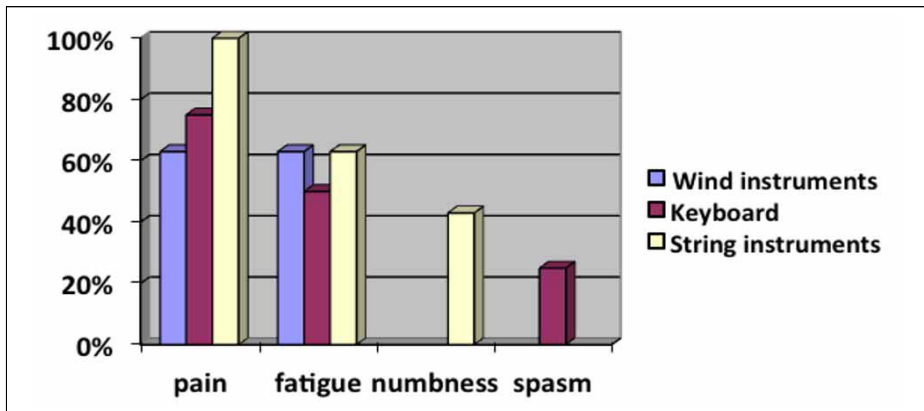
이러한 부상은 직업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프라이(Fry, 1986)에 따르면 음악 연주자들의 64~76%가 연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반복적인 긴장과 부상을 경험하고

5) Athletes and the Arts 홈페이지(검색일: 2022.05.17.)

6) Kaur, J. & Singh, S.(2016), Neuromusculoskeletal Problems Of Upper Extremities In Musicians : A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Therapies and Rehabilitation Research*, 5(2):14.

있다고 하였으며,⁷⁾ 음악가들은 일반 노동자에 비해 93% 많은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⁸⁾ 마릭 외(Maric. D. L., 2019)가 세르비아 국립극장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고용된 50명의 음악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음악가들은 목, 승모근, 등, 어깨, 손목, 손 및 팔 등에 3개월이 넘는 기간에 걸쳐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성적인 통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중 81.8%는 이러한 만성적 통증이 자신의 연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현악기 연주자의 경우 주로 목, 어깨, 승모근, 손목 등의 상부에 통증을 가지고 있었고, 관악기 연주자의 경우 목, 입술, 허리 등에 만성적인 통증을 겪고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러한 통증 완화를 위해 특수(의료)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우리나라 국악기 연주자의 경우 양반다리로 오랜 기간 앉아서 연습 및 공연함에 따라 허리와 무릎관절의 무리가 오며 대금 연주자의 경우 목을 비틀어 악기를 연주하기 때문에 목디스크와 관절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2-7] 전문 클래식 음악연주자의 과사용 증후군 현황



출처: Maric, D. L.; Stojic, M.; Maric, D. M.; Susnjevic, S.; Radosevic, D. & Knezi, N. A (2019). painful symphony: The presence of overuse syndrome in professional classical musicians. *International Journal of Morphology*, 37(3), pp. 1118-1122.

- 7) Fry, H. J. H.(1986). Incidence of overuse syndrome in the symphony orchestra. *Medical Problems of Performing Artists*, 1(2), pp. 51-55.
- 8) Kok, L. M.; Huisstede, B. M.; Voorn, V. M.; Schoones, J. W. & Nelissen, R. G.(2016). The occurrence of musculoskeletal complaints among professional musicians: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Archive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89(3), pp. 373-96.
- 9) Maric, D. L.; Stojic, M.; Maric, D. M.; Susnjevic, S.; Radosevic, D. & Knezi, N. A painful symphony: The presence of overuse syndrome in professional classical musicians. *International Journal of Morphology*, 37(3):1118-1122, 2019.

예술인 중 가장 많은 직업병을 가진 장르는 몸으로 예술을 표현하는 ‘무용’으로 흔히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으로도 불리기도 한다. 이들은 허리디스크, 척추 연골로 인한 마비, 허리-골반-발근육 손상 등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2017)의 조사에 따르면 전문무용수들은 주당 평균 17.9시간을 무용 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무용 교육활동을 12.4시간, 무용 외 수입활동으로 12.5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근로자의 주 40시간을 상회하는 주 42.8시간의 신체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공립과 사도립 무용단에 속한 무용수는 개인적으로 몸을 풀거나 연습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도 주당 25.4시간, 21.2시간을 공식적인 예술활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다음의 <표 2-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음악, 국악, 무용 분야의 전문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주로 10대에 전공을 시작하여 짧게는 5~6년, 길게는 20년 넘게 신체를 활용해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 특정 신체 부위를 과도하게 긴장시키고 활용해야 하는 예술활동의 특성상 이들의 신체는 과사용증후군으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표 2-8> 활동장르, 소속단체별 주당 평균 예술활동 투자시간

(단위: 시간)

구분		무용활동	무용 교육활동	무용 외 수입활동
전체		17.9	12.4	12.5
활동장르	한국무용(전통)	15.9	12.1	11.2
	한국무용(창작)	17.3	12.8	12.5
	발레	18.0	13.1	10.0
	현대무용	19.4	11.8	14.7
소속단체	국공립 무용단	25.4	7.6	5.9
	사도립 무용단	21.2	8.8	7.4
	일반 민간단체	17.1	14.8	14.3
	상주 민간단체	20.4	10.7	20.1
	독립무용수	15.3	11.4	12.7

출처: 전문무용수지원센터(2017). 「2017 전문무용수실태조사」, 21쪽.

이렇게 특정 신체 부위를 과도하게 사용해 직업활동을 해야 하는 공연예술인들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직업병을 가지고 있다. 공연예술은 엄청난 육체적 무리를 요구하는 활동으로 장기간 동안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성 부상(repetitive stress injuries)을 입는 경우가 잦다. 문제는 이러한 부상이 직업생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카우어와 사이(Kaur & Singh, 2016)는 음악가들의 스트레스 부상은 음악가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를 방지할 경우 직업생활을 지속하는 데에 장애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많은 음악가들이 이러한 질병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데, 이는 직업을 지속하는 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적절하게 치료를 해야 한다.¹⁰⁾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공연예술인들이 가진 수많은 질환을 그저 공연예술활동에 따르는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러한 질환이 고질병으로 이어지면서 직업생활을 단축 또는 중단시키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예술인들의 직업유지를 위한 신체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체를 계속 사용해서 예술 표현을 해야 하는 공연예술의 특성상 신체에 가해지는 위험은 직업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연예술인의 신체적 질병을 단순히 직업적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방치하기보다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며 직업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2.3. 산업재해 보상현황과 사회안전망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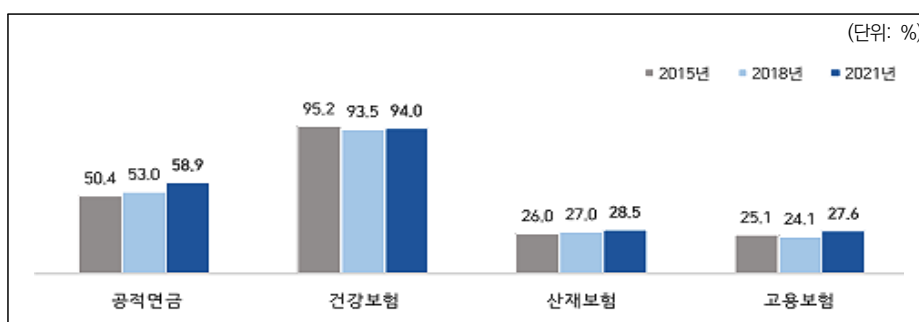
직업인들이 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마련하여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그 대상을 확대하면서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많은 직종들이 포섭되고 있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예술인들은 프리랜서로 종사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며 프로젝트 기반으로 한시적인 노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고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중소기업사업주 계정을 적용받아 임의가입을 해야 하고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2021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예술인의 28.5%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는 국공립 예술단체에 소속된 근로자 예술인도 포함된 수치여서 프리랜서

10) Kaur, J. & Singh, S.(2016), Neuromusculoskeletal Problems Of Upper Extremities In Musicians : A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Therapies and Rehabilitation Research*, 5(2):14.

로 활동하는 예술인의 경우 더 산재보험 비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민간 실비보험을 가입하거나 행사 및 투어에 한정된 상해보험, 화재보험, 여행자 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는 있으나, 고용 및 계약을 기본으로 하여 공적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상황이다. 예술인들이 보험료 납부와 관련해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비용을 경제적 상황에 따라 50~90%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많은 예술인들이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2-8]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률(공적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예술인 실태조사」, 32쪽.

공연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은 많은 예술인들이 그렇듯이 국공립 또는 대형 민간단체에 소속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계약자(프리랜서)'의 형태로 근무하는 비율이 높다. 「2021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업 예술인의 78.2%가 프리랜서이며, 겸업 예술인의 경우 72.2%에 달한다. 공연예술분야의 경우 음악 분야는 전업의 77.8%, 겸업의 71.4%가 프리랜서이며, 국악 분야는 전업의 74.4%, 겸업의 73.9%, 무용 분야는 전업의 72.7%, 겸업의 79.1%, 연극 분야는 전업의 80.2%, 겸업의 80.6%가 프리랜서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¹¹⁾ 예술 분야의 프리랜서들은 프로젝트 단위로 용역 계약을 맺고 활동하다보니, 특정 시기에 프로젝트가 겹칠 때도 있으며 프로젝트 사이에 휴업 기간이 길 때도 있다. 이들은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매우 부정기적인 업무 기간과 방식으로 노동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불안정한 고용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국공립이나 일부 민간단체에 근로자로 일하는 예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업무와 보수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프리랜서의 경우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보장받기 어려

11)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예술인 실태조사」, 세종 : 문화체육관광부. 22쪽.

은 경우가 많다. 「2021 공연예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연단체 중 국공립 단체는 8.4% 수준이고, 민간공연단체가 80.7%, 민간기획사가 10.9%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민간공연단체 중 근로계약을 맺는 단체가 극히 드물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전체 예술인의 70% 이상이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고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많은 예술인들이 겸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겸업을 하는 주된 이유는 [그림 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낮은 소득, 불규칙한 소득, 고용 불안정, 열악한 작업환경 등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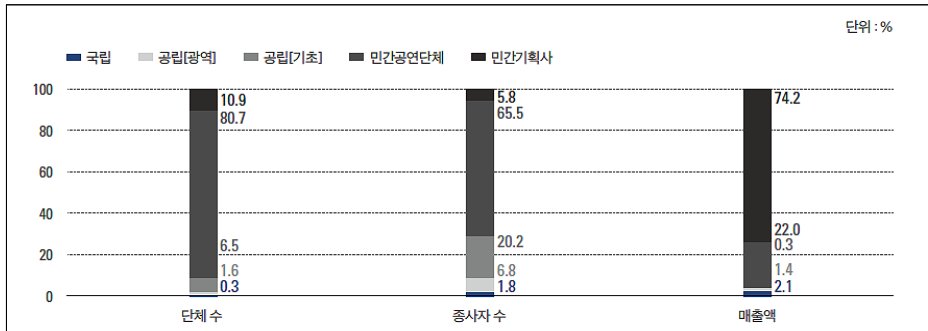
〈표 2-9〉 분야별 자유계약자(프리랜서) 종사 여부

(단위: %)

분야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전업 예술인	77.8	74.4	72.7	80.2
겸업 예술인	71.4	73.9	79.1	8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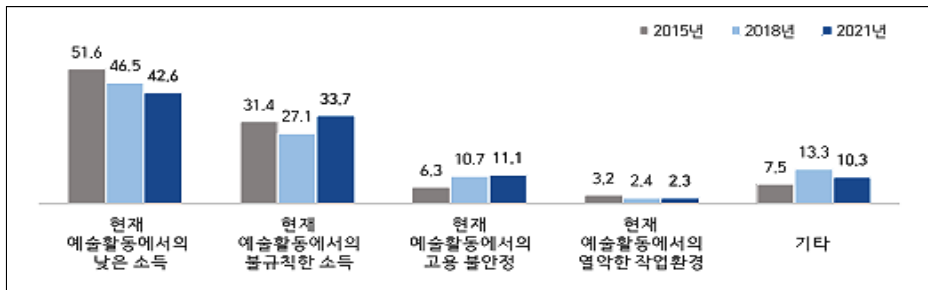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예술인 실태조사」, 22쪽, 재구성

[그림 2-9] 공연단체 시장규모 비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공연예술조사」, 203쪽.

[그림 2-10] 예술활동 겸업의 이유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예술인 실태조사」, 21쪽.

제2절 공연예술인의 산업재해 지원 현황

1. 공연예술인의 산업재해 보상을 위한 지원 현황

1.1.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지원사업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예술인 산재보험)은 2012년 11월 「예술인 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프리랜서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국공립 공연단체에서 근무하는 예술인들은 단체·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4대 보험에 당연 가입하지만, 프리랜서 예술인은 산재보험에서 요구되는 사업주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2012년 「예술인 복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은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들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현재 예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 중 ‘중소기업사업주’ 계정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사업주 계정은 ‘임의가입’ 방식이어서 예술인 스스로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체에서 당연가입을 진행하지만 예술인은 스스로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의 산재보험료와 보험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표 2-10>과 같이 산재보험은 총 12등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중소기업사업주 계정은 본인의 실제 수입이나 계약 금액과 상관없이 보험료의 임의 선택이 가능하다. 예술인 산재보험은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이 모두 가입대상이며,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로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지원된다. 그러나 근로자현장실습자 등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한다. 현재 예술인이 해당하는 중소기업사업주 계정은 종사자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가. 복잡한 보험가입 행정처리 및 보험료 지원

2012년 11월 「예술인 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고 예술인 산재보험이 시작되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정보와 행정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시작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원하는 업무는 예술인 산재보험의 가입신청, 변경, 해지 등의 신고와 기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하여 위임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할 보험 사무 등이다. 중소기업사업주로 임의가입 해야 하는 예술인들은 산재보험의 가입방법과 보험료 및 혜택에 대한 이해, 가입에 필요한 서류 구비, 복잡한 행정 절차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¹²⁾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홈페이지 내 ‘예술인 산재보험 시스템’을 마련하여 예술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활동증명 절차 완료 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원로예술인이나 장애예술인 등 온라인 지원이 어려운 예술인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술인은 1등급부터 12등급으로 중 원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보험료 지원사업은 보험료의 50~90%까지 지원을 하는데, 1등급 신규가입자에 한해 가입 첫 6개월간 90%를 지원하고 이후 50%를 지원한다. 2~12등급 가입자는 납부 보험료의 50%를 해지 전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험료 지원을 받게 되면 1등급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14,640원이지만, 90%를 지원받으면 13,170원을 환급받아 실제로 예술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1,460원인 셈이고, 50%는 절반인 7,320원만 부담하면 되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다.

〈표 2-10〉 2021년 등급별 예술인 산재보험료

구분	기준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월보험료	
			창작/실연/기술지원	사업서비스 직군
1등급	2,092,800	69,760	16,640	18,830
2등급	2,519,430	83,981	17,630	22,670
3등급	2,946,060	98,202	20,620	26,510
4등급	3,372,690	112,423	23,600	30,350

12)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9). 「2019 예술인 산재보험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 서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43-44쪽.

구분	기준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월보험료	
			창작/실연/기술지원	사업서비스 직군
5등급	3,799,320	126,644	26,590	34,190
6등급	4,225,950	140,865	29,580	38,030
7등급	4,652,580	155,086	32,560	41,870
8등급	5,079,210	169,307	35,550	45,710
9등급	5,505,840	183,528	38,540	49,550
10등급	5,932,470	197,749	41,520	53,390
11등급	6,359,100	211,970	44,510	57,230
12등급	6,785,730	226,191	47,500	61,070

출처: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산재보험 지원사업 안내(검색일:2022.02.10.)

나. 가입자의 꾸준한 증가와 일시적 유지

예술인 산재보험의 가입자는 2017년 1,331명이었으나 2021년 4,105명(12월 16일 기준)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체의 98.8%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가입하고 있다. 가입자 중 93.0%는 실연 예술인이며, 이 중에서 음악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분야 공공사업 참여자를 대상¹³⁾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2019년 대비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56.7% 증가했으나, 일시적으로 가입만 하고 유지하지 않는 예술인의 비중 역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2-11〉 예술인 산재보험 임의가입 현황(2022년 4월 기준)

(단위: 건, %)

분야	창작	실연	기술 지원	총계				
				계	비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 가입 여부 (*22.4.20. 기준)		
						해당	비율(%)	비해당
연극	34	848	93	975	23.8	965	99.0	10
무용	40	843	13	896	21.8	867	96.8	29
국악	8	639	9	656	16.0	653	99.5	3
음악	73	1,486	19	1,578	38.4	1,569	99.4	9
총계	155	3,816	134	4,105	100	4,054	98.8	51
비율	3.8	93.0	3.3	100				

※ 4,105건 중 318건은 보험해지 이후 재가입한 수치임

출처: 근로복지공단 내부 자료(2022.4월 기준)

13)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공공기관 발주 행사 참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가입한 후 지원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가입 유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됨

〈표 2-12〉 연도별 예술인 산재보험 임의가입 현황(2022년 4월 기준)

(단위: 건, %)

구분		보험가입 연도									총계
		'13	'14	'15	'16	'17	'18	'19	'20	'21	
연극	정상	35	5	6	12	14	26	94	80	6	278
	해지	122	18	35	38	37	60	238	147	2	697
	소계	157	23	41	50	51	86	332	227	8	975
무용	정상	5	15	2	15	10	2	45	47	1	142
	해지	98	194	8	72	55	8	186	131	2	754
	소계	103	209	10	87	65	10	231	178	3	896
국악	정상	4	1		1		1	68	101		176
	해지	1		2	18	8	2	219	230		480
	소계	5	1	2	19	8	3	287	331		656
음악	정상	4	12	4	4	1	8	118	287	12	450
	해지			3	22	1	4	522	573	3	1,128
	소계	4	12	7	26	2	12	640	860	15	1,578
총계	정상	48	33	12	32	25	37	325	515	19	1,046
	해지	221	212	48	150	101	74	1,165	1,081	7	3,059
	계	269	245	60	182	126	111	1,490	1,596	26	4,105

출처: 근로복지공단 내부 자료(2022.4월 기준)

〈표 2-13〉 보험해지자 산재보험 가입기간(2022년 4월 기준)

(단위: 건, %)

분야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5년 이상	총계
연극	62	144	301	174	8	8	697
무용	65	154	297	204	19	15	754
국악	11	111	224	130	3	1	480
음악	27	267	579	254		1	1,128
총계	165	676	1,401	762	30	25	3,059
비율	5.4	22.1	45.8	24.9	1.0	0.8	100.0
평균가입기간	0.12	0.36	0.66	1.43	3.86	6.09	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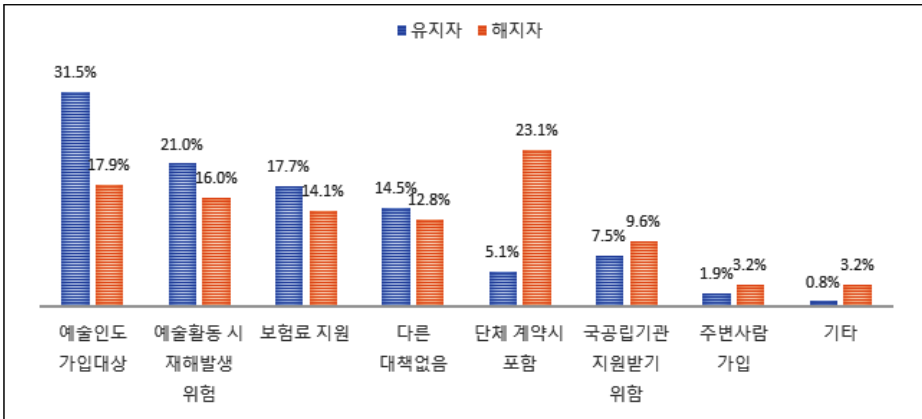
출처: 근로복지공단 내부 자료(2022.4월 기준)

예술인 산재보험의 가입자는 늘어났지만, 이를 유지하는 기간은 짧은 편이다. 전체 해지자 3,059명 가운데 73%인 2,242명은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며, 초단기로 볼 수 있는 6개월 미만 가입자도 841명에 달해 전체의 2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즉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의 상당수가 산재보험의 혜택이나 필요성에 대해 실

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임의가입 방식으로 스스로 가입을 유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가입유지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9)이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예술인들이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예술인도 가입대상이 되므로 (27.5%), 예술활동 시 재해발생 위험(19.5%), 보험료 지원(16.7%) 등의 이유였다. 반면 해지자의 경우 단체 계약시 포함(23.1%), 국공립기관 지원받기 위험(9.6%) 등 타의에 의한 가입이어서 예술인 산재보험 유지의 필요성을 그다지 못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는 향후 막연한 위협에 대한 대비보다는, 당장 현실적으로 와 닿는 보험료나 행정적 번거로움, 보상 등이 이들에게는 더 고려사항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11]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유지-해지 이유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9). 「2019 예술인 산재보험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 37쪽.

다. 업무상 사고의 높은 보상승인을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 직업 예술활동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예술인 산재보험의 보상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4일 이상의 임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산재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이때에는 심사를 통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요양급여(치료비), 장애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이 지급된다.

보상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른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연관성'이 산업재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업무연관성은 산재보험을 가입한 해당 업무에 대한 것으로, 보험가입 이전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때에 ‘보수를 목적으로 한 계약체결 여부’가 산업재해 승인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산재보험은 보수를 받고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수 목적의 계약에 의한 예술활동이 아닌 경우 산업재해로 승인되지 않는다.

2012년 이후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중 보상을 신청한 수는 전체 가입자(4,105명)의 2.85%인 117명이다. 신청자 중 보상을 받은 비율은 91.5%로 승인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106건 중 102건이 승인되어 96.2%의 승인율을 보였고, 출퇴근 사고의 경우에도 5건 중 4건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아직 예술인은 보상 신청 건수가 많지 않고 신청사례가 비교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사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향후 가입자가 늘어나고 보상신청이 늘어날 경우 승인율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산재보험 보상은 고용보험과 같이 특정 프로젝트 근무 기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해당 업무에 종사한 전체 기간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산재보험에 가입을 간헐적으로 했더라도 계속 종사해왔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상당수의 예술인들은 10대 또는 20대부터 장기간동안 예술 분야에 종사하며 신체를 혹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전체 종사기간이 인정되는 산재보험은 예술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라. 이원화된 청구로 인한 불편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예술인의 98.8%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인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보상을 신청할 때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가입과 보상 청구가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간한 「예술인 산재보험 보상 청구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52.3%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이 이원화되어 있는지 모른다고 응답하고 있다. 가입과 보상의 청구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예술인들에게는 다소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산재보험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이로 인해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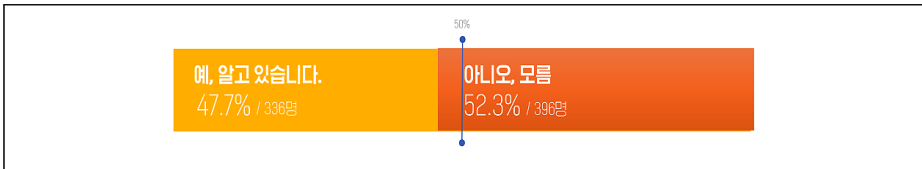
보인다. [그림 2-14]에서 보듯, 산재보험 청구 시 예술인들은 근로복지공단과의 소통이 나 청구절차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예술계 이외의 기관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2] 산재보험 신청절차 및 담당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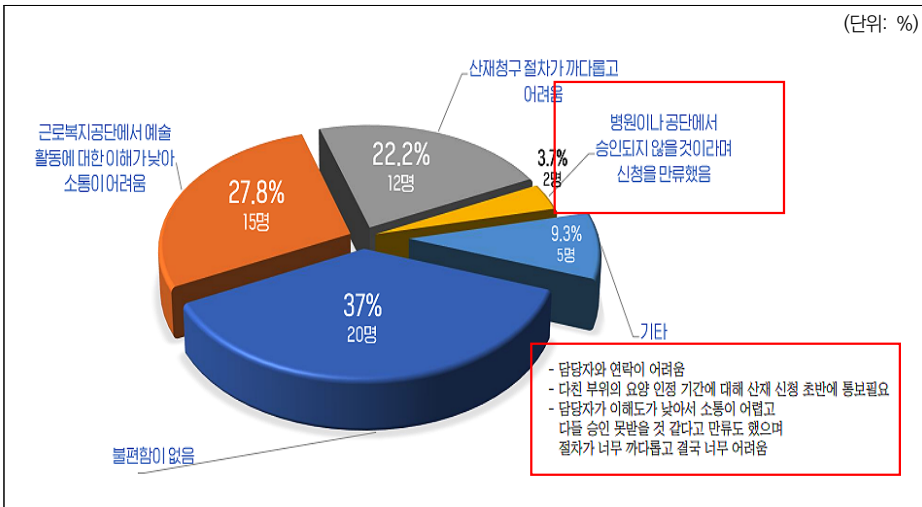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사업안내_예술인 산재보험(검색일: 2022.05.18.)

[그림 2-1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보험사무 대행과 근로복지공단 역할 이원화 인지 여부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21). 「예술인 산재보험 보상 청구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자료」

[그림 2-14] 산재보험 청구 시 불편한 점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21). 「예술인 산재보험 보상 청구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자료」

1.2. 산업재해 대응을 위한 민간 보험

예술인들은 산재보험 이외에도 다양한 민간 보험에 프로젝트별로, 또는 개인적으로 가입하여 산업재해에 대응하고 있다. 예술인의 산업재해 대응을 위한 별도의 민간 보험 사업은 없지만 다른 보험 사업을 통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대비하고 있다. 예술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가입하는 민간 보험은 실손의료보험이며, 그 외에도 상해보험과 여행자보험이 있다.

가. 실손의료보험(4세대)

예술인들이 산업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흔하게 가입하는 민간 보험은 실손의료보험이다.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상한다. 실손형 보험은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비슷한 보험으로 정액형 보험이 있는데, 이는 치료비 금액과 관계없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시 보상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이다.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조건은 각 보험회사 상품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입연령은 최대 64~70세로 제한되는 편이다.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질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을 때 실손의료보험 변경을 시도하려고 해도 보험사에서 이를 거절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50세부터 최대 75세까지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 실손의료보험이나 치료 이력이 있거나 경증 만성질환을 가진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산재보험과 달리 일반적으로 상해급여와 질병급여, 2개의 보장종목으로만 구성되고 있다. '상해급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보상 금액은 한도가 있는데, 상해급여의 실손의료비는 입·통원 합산하여 5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20만원 한도로 보장된다. '질병급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질병급여 실손의료비는 입·통원 합산하여 5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20만원 한도로 보장된다.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의 경우, 상해비급여 실손의료비는 입·통원 합산하여 5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에서 보장된다. 질병비급여 실손의료비는 입·통원 합산하여 5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에서 보장된다. 3대 비급여에 해당하는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는 350만원, 연간 50회 한도로, 주사료는 250만원, 연간 50회 한도, 자기공명영상진단은 300만원 한도로 보장되는데, 각 보험사 상품별로 차이가 있다.

나. 상해보험

예술계에서 안전사고 등과 관련해 많이 가입하는 민간 보험은 상해보험이다. 상해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에 의한 신체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상해의 치료를 위한 비용이나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고도의 장애를 보장한다. 이 보험은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한해 보장을 실시하는데,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장애지급률에 따른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한다.

상해보험은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없는 한 피보험자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여행 중이든 가리지 않고 생긴 모든 상해사고를 담보한다. 산재보험의 경우 업무상 사고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상해보험은 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고를 보상한다. 그러나 보험 상품에 따라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선박 탑승 등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보험료는 각 보험사 상품별로 차이가 나며, 가입 시 본인의 연령, 성별, 직업, 병력 등을 참고하여 비용이 산정된다. 가입조건 또한 각 회사 상품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입연령은 15세부터 70세 또는 80세까지로 제한되는 편이다.

다. 여행자보험

여행자보험은 예술인이 국내외 투어를 위해 여행을 할 때 흔히 가입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의 여행 중 발생한 진찰, 수술, 입원비 등 의료비를 보장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한 상해, 휴대폰 손해(분실제외) 등을 보장한다. 여행자보험의 가입 조건은 각 회사 상품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단기간 여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80세까지로 가입 가능한 편이다. 하지만 가입자의 직업, 여행지 등 사고발생 위험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

여행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지정한 기간의 여행 중 발생한 상해를 직접 원인으로 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나, 또는 여행 도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한 사망 및 후유장해, 여행 중 발생한 상해의료비와 질병의료비, 휴대폰 손해 등이 표준보장 담보 내용이다. 그러나 가입조건에 따라 보장내용 등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보험료는 연령, 성별, 기간에 따라 일 별로 산정하여 전체 기간만큼 보험료가 산정된다. 해외여행 보험료의 경우 1만5000원 안팎(1주일 기준)이 일반적이다.

〈표 2-14〉 민간 보험별 구성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목적	질병·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비 및 처방조제비 보상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에 의한 신체상해를 보장	여행 중 발생한 상해, 질병, 도난, 파손 등을 보장
가입 조건	최대 64~70세 단, 고령자(50~75세) 및 유병력자는 별도 상품	15세부터 70세~80세까지	단기여행에 한해서 최대 80세
보장 내용	- 상해급여 5천만원 한도/통원 회당 20만한도 - 질병급여 5천만원 한도/통원 회당 20만한도	- 상해등급에 따른 치료비 - 장해지급률에 따른 후유장해 보험금 - 사망보험금 지급	- 상해의료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여행 도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질병의료비, 질병사망 및 후유장해 - 휴대폰 손해 - 배상책임
보험료	연령, 성별, 병력에 따라 상이	연령, 성별, 직업, 병력에 따라 상이	연령, 성별, 여행 기간에 따라 상이

라. 민간 보험과 산재보험 보상범위의 차이

공적보험인 산재보험과 민간 보험 상품들은 보험 가입과 재해 보상 측면에서 상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험 가입에 있어서는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경우 의무가입이므로

보험자가 스스로 가입하는 민간 보험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예술인 산재보험의 경우 현재 임의가입이므로 민간 보험과 보험가입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산재보험과 민간 보험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재해의 인정범위와 보상의 범위이다. 재해의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산재보험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민간 보험은 업무와 관계없이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일상 생활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때문에 산재보험은 사안에 따라 보상을 인정받기 어려우나, 민간 보험은 약정된 한도 내에서는 보상처리가 상대적으로 쉽다.

보상의 인정은 어렵지만, 보상을 받게 되었다면 보상범위에 있어서는 산재보험이 민간 보험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지원하고 있다. 민간 보험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산재보험에서 제공하는 휴업급여와 요양급여이다. 민간 보험의 경우 휴업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치료나 입원 등에 관련한 실비만을 보상하고 있지만, 산재보험은 요양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를 지원한다. 때문에 피보험자는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 입원비 등은 물론 치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훨씬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다. 이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비율이 높은 예술인에게는 매우 유용한 것으로, 치료 기간 동안 업무 중단으로 수입이 중단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산재보험과 민간 보험은 모두 요양 급여를 제공하지만, 민간 보험(실손손의료보험, 상해보험)은 의료비 지원의 한도 기준이 있으나 산재보험은 한도 기준이 없다. 소정의 심사 절차를 통해 업무상 재해 여부만 판단이 되면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의 요양급여의 범위 및 기준에 따라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약관에 따라 지급되는 민간상해보험 보다 통상적으로 보상수준이 높다. 그밖에 민간 보험의 경우 특약 사항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치료가 끝난 후 상병이 재발하는 경우 재요양을 지원하며, 가입 연령 제한이나 치료비 상한 한도가 없다. 또한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1~3급)에 해당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요양 종료 후 지급되는 장애급여의 경우 민간 보험(상해보험)은 정액 보상으로 한도 제한이 있는 반면 산재보험은 장애 등급 심사 후 장애 등급에 따른 지급 일수 및 기준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산재보험은 요양급여를 받은 환자가 자기 힘으로 병상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간병급여를 지급하지만, 이는

민간 보험(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내용이다. 그 외에도 재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은 민간 보험에서 제공하지 않는 산재보험의 보장 내용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은 보장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매우 안정적으로 충분히 치료와 요양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안전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예술인에게는 매우 유용한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그 보장범위가 넓은 만큼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는데, 업무연관성을 까다롭게 심사하는 것은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민간 보험은 보장범위는 상대적으로 좁으나 업무와 관계없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예술인 중에서 산재보험과 민간 보험을 중복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인정되나 치료비(요양 급여)의 경우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이 경우 재해 발생 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민간 보험과 산재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게 된다. 다만 일부 민간 보험에서는 특례조항으로 일부 중복 지원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보험의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표 2-15〉 산재보험, 민간 실손의료보험, 민간 상해보험 비교

구분	산재보험	민간 실손의료보험	민간 상해보험
인정 범위	업무상 재해 (사고, 질병, 출퇴근 중 재해)	일상생활에서의 질병 및 상해	일상생활에서의 상해사고
자기부담금	X	O	X
요양급여	O	O (단 지급 한도 있음)	O (보험약관에 따른 정액보상으로 보험한도 있음)
해외치료비	O (단 보수를 목적으로 한 해외 출장인 경우에 한해서 지급)	X	X
휴업급여	O	X	X
장애급여	O	X	O (보험약관에 따른 정액보상으로 보험한도 있음)
간병급여	O	X	X
사망보험금	O	X	O (보험약관에 따른 정액보상으로 보험한도 있음)

1.3.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상해치료비 지원사업

가. 무용수의 직업수명 단축을 막기 위한 치료 지원

보험 이외에도 국고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산업재해를 보상하는 지원사업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신체 활동이 많아 상해 사고가 많은 무용인들을 위해 2008년부터 ‘상해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무용인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무용예술인의 직업 전환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설립된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상해치료비 지원사업’은 순수 무용 공연 연습 또는 공연 중 상해를 입은 무용수에게 병원 치료비 및 재활비를 지원함으로써 무용수들의 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신체가 주된 표현 수단인 무용수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해 직업수명이 단축되는 것을 막고, 이들이 안정적인 치료를 받고 빨리 예술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까지 누적된 상해 치료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500명이 넘으며, 2018년~2021년 기준 연평균 26.75명의 무용수가 상해 치료비를 지원 받았다.¹⁴⁾ 지원 금액은 무용수마다 다르지만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전액 국고지원이다.

본 사업의 지원범위는 무용예술인이 공연 연습 또는 공연 중 당한 상해로 인한 병원 진료비, 치료비 및 재활비이다. 공연 연습중이나 공연 중에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만 지원하므로 산재보험과 달리 출퇴근 관련 재해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을 보상하는 시간적 범위는 다소 넓어 무용수가 직접 부담한 전년부터 당년에 발생한 병원 진료비, 치료비 및 재활비를 지원한다. 전국 의료기관 및 재활기관에서 발생한 치료 및 재활 비용을 신청 가능하다.

유형적으로 정형외과적 부상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병원비는 비급여 항목만 지원하며, 이송료, 간병료, 증명서 발급료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보험 가입 조회서를 통해 민간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된 상품의 보상 항목 등을 검토해 민간 보험에서 보장 받지 못한 치료비 및 재활비를 지원한다. 소득 수준 및 경력을 근거로 최종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14) 전문무용수지원센터(2018, 2019, 2020, 2021),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 서울: 전문무용수지원센터.

〈표 2-16〉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상해 치료비 지원범위

항목	세부내용
병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정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 (급여 항목 지원 제외)
재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의 진단 하에 발급된 진단서를 근거로 한 재활 치료비 (진단서상 재활 치료기간 필히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상의 재활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만 지원
지원불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송비, 간병및간호비, 상급병실료, 증명서발급료 • 보험금으로 보장받은 진료 및 치료비 - 지원요청금액 중 신청자의 개인 실비보험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규정에 따라 지원

출처: 전문무용수지원센터 홈페이지(검색일 : 2022.08.25.)

상해 치료 지원 대상은 지원 전년과 당년 공연 연습 또는 공연 중 상해를 입은 무용수로서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공연에만 해당된다. 재학생은 지원 불가하며, 국공립과 프리랜서 무용예술인 모두 지원가능하다. 치료비 지원 승인이 확정된 무용수에 한하여 신청비 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상해 병원 치료비 및 재활비를 지원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병원 치료비 신청 시, 사고 사실 확인서(그림 2-15)를 필수 서류로 받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로 인해 받은 피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단체장의 직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지원 신청 시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는 단체장 직인의 경우 확인을 위한 용도일 뿐이며, 단체에 대한 불이익이 있지 않다. 재활비 신청 시 재활기관 이용 확인서(그림 2-16)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의사 소견이 담겨야 한다. 재활기관 이용 확인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에 진행된 재활에 한해서 지원한다.

매해 2월부터 ~12월까지 지원 가능하며, 한 해 예산이 정해져 있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상해 치료비 지원은 무용수 개인회원, 찾아가는 상해 예방은 무용단 단체회원, 부상 예방 검진은, 무용수 개인회원과 무용단 단체회원이 신청 가능하다.

〈표 2-17〉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상해 치료비 지원금 신청 서류

병원비 지원금 신청 서류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사고사실확인서 원본 1부
(단체 직인 날인 필수이며, 직인이 없는 프로젝트 단체의 경우 단체장 신분증 사본 첨부 필수)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출연한 프로그램 북 표지(연도 표기되어 있는 페이지)
 - 본인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부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일체(급여, 비급여가 표시된 영수증)
- 보험가입조회서(내 보험 찾아줌 홈페이지에서 발급)
- 보험금 지급 내역서(개인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무용수에 한함)

재활비 지원금 신청 서류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사고사실확인서 원본 1부
(단체 직인 날인 필수이며, 직인이 없는 프로젝트 단체의 경우 단체장 신분증 사본 첨부 필수)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출연한 프로그램 북 표지(연도 표기되어 있는 페이지)
 - 본인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 진단서 원본 1부(소견서 인정 불가)
 - 재활 필요 기간 반드시 명시
- 재활 센터 카드영수증 혹은 현금 영수증 원본
- 재활치료기관 이용확인서 1부
(재활센터 직인 날인 필수이며, 직인이 없을 경우 재활센터 사업자 등록증 첨부 필수)

병원비·재활비 공동 신청 서류

-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 주민등록등본 원본
- 신청자 및 성인 “가구원”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해당 건 일체)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지원자)
 -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지원자)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해당지원자)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주민등록등본 등재 가구원 전체 서명)
- 통장사본

출처: 전문무용수지원센터 홈페이지(검색일 : 2022.08.25.)

[그림 2-15]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사고 사실 확인서

※모든 항목 빠짐없이 기입 바랍니다. 공란이 있을 경우 서류 접수 불가합니다.



사고 사실 확인서

※ 상해 무용예술인 인적사항

상해 무용예술인명		주민번호	
상해일시	년 월 일 시	상해장소	※ 구체적인 장소를 적어주세요.

※ 상해내용 및 피해내용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바랍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내용, 목적) 어떻게 하다가 (경위, 동작, 움직임) 어떤 이유 때문에 (물적,인적 원인) 어떻게 어느 부위에 (아픈 신체 부위) 상해를 당했는지, 자세히 써 주세요.

(예: ○○발레단 연습실에서 호두까기인형 공연 연습 중 그랑제페 동작 후 착지 시 무릎에 통증을 느낌. 이 상해로 인해 점프 동작이 적은 역으로 캐스팅이 바뀜)

위의 상해 무용예술인의 진술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내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아래에 서명,날인함으로써 확인합니다. (※ 확인자는 단체의 대표만 가능, 단체 직인 날인 필수, 직인이 없는 단체의 경우 대표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명	(인)	주민번호	
소속 및 직책		전화번호	
주 소			

출처: 전문무용수지원센터 홈페이지(검색일 : 2022.08.25.)

[그림 2-16]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재활기관 이용 확인서

※모든 항목 빠짐없이 기입 바랍니다. 공란이 있을 경우 서류 접수 불가합니다.



재활기관 이용 확인서			
성 명		연락처	
주 소			
내 용			
날 짜(반드시 날짜별 기입)	재활 내용	트레이너 확인(서명)	청구액
20 년 1 월 1 일			
20 년 1 월 3 일			
20 년 1 월 5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소 계			원
할 인			원
총 계			원
상기의 내용을 확인함.			
년 월 일			
발급 사업장:		(직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관련 의료기관명			

※ 이 확인서는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상해 치료비 지원”을 위한 재활치료기관 이용 증명 서류로, 재활치료기관 담당자께서는 확인서 작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시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으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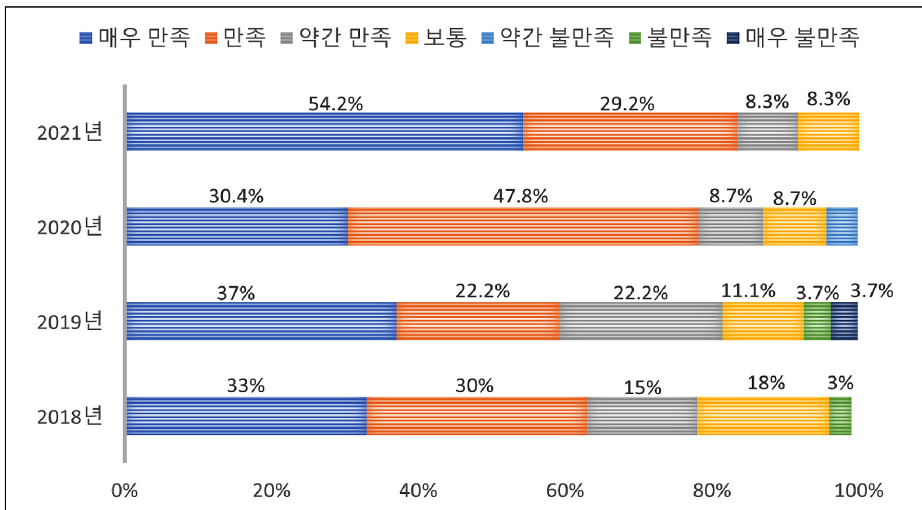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명시된 재활치료기간 동안 재활치료기관을 이용한 금액만 지원 합니다. (소견서는 인정이 불가하며, 안정가로 및 요양기간은 재활치료를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전문무용수지원센터 홈페이지(검색일 : 2022.08.25.)

나. 경제적인 이익과 한정적인 범위에서의 지원

2018~2021년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¹⁵⁾에 따르면 상해 치료 지원을 받은 무용수 33명(2018년), 27명(2019년), 23명(2020년), 24명(2021년)을 대상으로 한 상해 치료비 지원사업 만족도 설문 조사에서 ‘만족’이 평균 84.75%로 높게 나타났다. ‘불만족’으로 답변한 인원은 점점 줄어들어 2021년에는 ‘보통’ 이상이라는 답변이 전체 답변을 차지했다는 점을 볼 때, 상해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만족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17] 상해 치료비 지원사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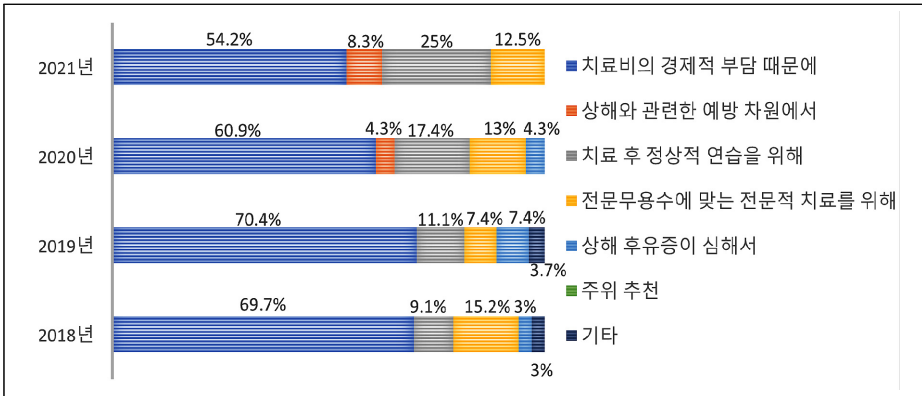


출처: 전문무용수지원센터(2021),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상해 치료비 지원사업의 주된 이용 동기에 대한 응답으로는 ‘치료비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가 연 평균 6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치료 후 정상적 연습을 위해’가 15.65%, ‘전문무용수에 맞는 전문적 치료를 위해’가 11.91%를 차지했다. 상해 치료비 지원사업이 무용수들의 상해 치료비에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주고 있으며, 무용수 활동으로 복귀하고 전문적 치료를 받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5) 전문무용수지원센터(2018, 2019, 2020, 2021),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 서울: 전문무용수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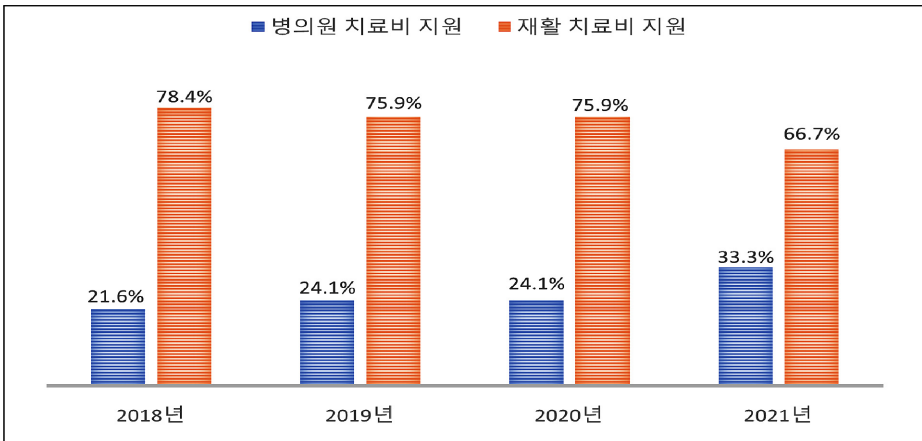
[그림 2-18] 상해 치료비 지원사업 이용 동기



출처: 전문무용수지원센터(2021),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상해 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수혜 받은 혜택으로는 '재활 치료비 지원'이 74.22%로 나타나 '병원 치료비 지원' 25.78% 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용수의 부상에 있어서 병원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 치료의 중요성이 높으며, 따라서 재활을 위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19] 상해 치료비 지원사업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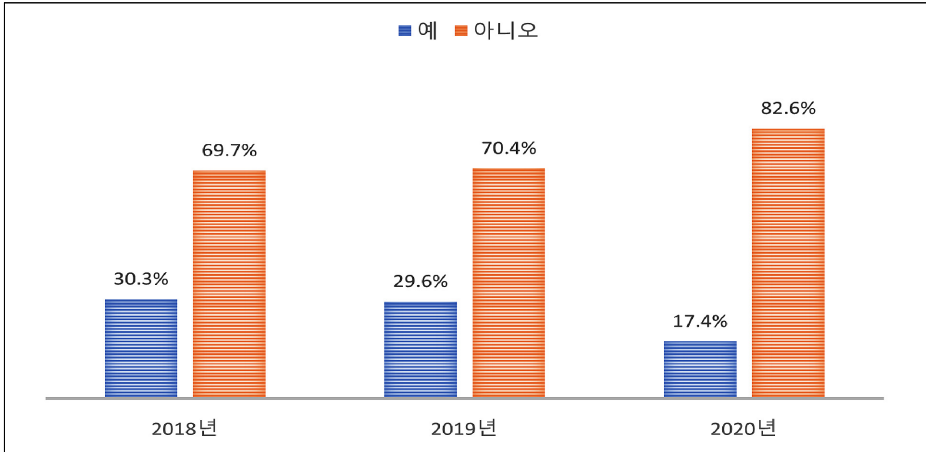


출처: 전문무용수지원센터(2021),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 전문무용수지원센터.

2018~2020년 상해 치료비 수혜자를 대상으로 예술인 산재보험 혜택을 받은 경험 유무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에 대한 응답은 '아니오'가 평균 74.2%로 '예' 25.8%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상해 치료비 지원사업의 전문무용수의 상해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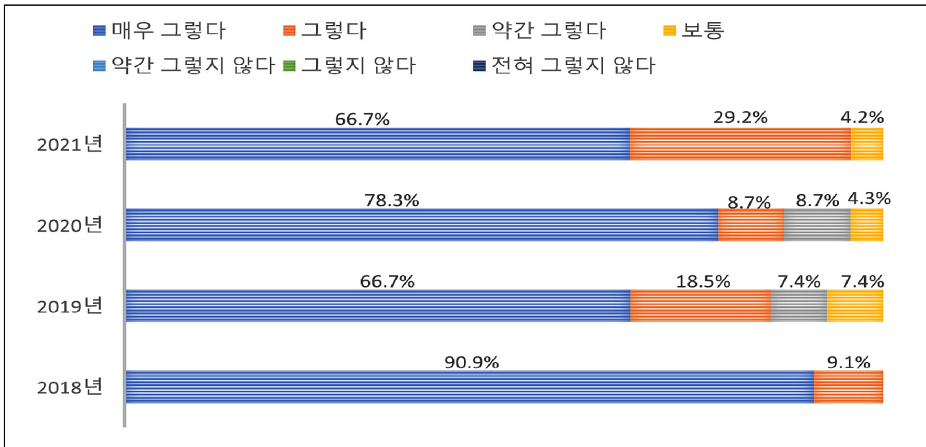
제 기여도에 대한 응답으로는 ‘그렇다’가 96.0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무용수들이 예술인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상해 치료비 지원사업과 개인이 가입한 민간 보험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20] 예술인 산재보험 혜택을 받은 경험



출처: 전문무용수지원센터(2021),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 전문무용수지원센터.

[그림 2-21] 상해 치료비 지원사업의 기여도



출처: 전문무용수지원센터(2021),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상해 치료비 지원사업은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무용수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더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상적인 직무 현장으로 복귀를 위해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요한 무용수들

에게 병원비뿐 아니라 재활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실손의료보험으로 제한적으로 또는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단 몇 가지 측면에서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상해 치료비 지원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무용 중 순수예술장르에 속하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분야에서 활동하는 무용수만이 신청가능하다는 점이다. 여타 대중음악 댄스 무용수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는 문화예술진흥법의 정의에서 정하는 무용 장르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관계있다. 둘째, 정형외과적 부상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정적이다. 출퇴근 시 발생하는 상해 사고는 정형외과적 사고여도 지원이 불가하다. 질병을 가지고 있다가 누적되어 병원에 가거나 정형외과적 부상이 아닌 정신과 질환에 대한 지원 역시 지원이 불가하다. 셋째, 이전에는 상해 치료비 지원사업에 1억~2억씩 배정되기도 했으나, 액수가 점점 줄어들어 2021년에는 5천만 원, 2022년은 3천만 원으로 배정된 예산이 지극히 적은 편이다. 그러나 아직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고 저소득층의 중증 치료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예술인 의료비 지원과는 지원 내용이 다르다는 점에서 크고 작은 상해 사고가 잦아 직업지속을 위협받는 무용수에게는 매우 유용한 지원 사업이라 할 수 있다.

2. 공연예술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현황

2.1. 공연장안전지원센터의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지원

산업재해는 그 발생 이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술 현장의 환경을 안전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9년 「공연법」 개정에 따라 공연장 안전진단 의무조항이 신설되었고, 정기적으로 일상적 공연장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시행해왔다. 공연장안전지원센터는 1999년 「공연법」 개정에 따라 2001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하에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¹⁶⁾ 공연장안전지원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아 전국 공연장의 종합안전 지원, 안전교육 수행, 안전지침 개발 및 보급 등 공연 안전 전반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16) 초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2013년 공연장안전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가. 공연장 종합 안전점검 지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안전취약 공연장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종합 안전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1) 안전점검 지원

공연장 종합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을 대상으로 등록 전 안전검사, 3년 주기의 정기 안전검사, 9년 주기의 정밀 안전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시설 연령 10년 이상 노후 공연장은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공연장 및 공연장 내 위험성이 높은 공연장의 설치상태 및 구조검사, 기계설비 구동검사(소음, 진동, 전류 등), 전기설비 안전검사(절연저항, 접지 등), 문제점 개선에 따른 개보수 내용의 확인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공연 제작 현장 및 야외 공연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공연장 위험성 평가 기술을 지원하고 공연장 및 공연 안전 기술 컨설팅을 제공한다.

2) 안전시설 및 용품 지원

본 사업은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를 지원하고 있다. 심의를 통해 선정된 민간 소규모 공연장에게 해당 공연장이 필요한 안전시설의 공사비용을 지원하거나 안전용품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계기로 2021년에는 시범 사업으로 주기적 환기를 통한 감염병 확산 예방 및 실내공기질 관리/유지를 위한 환기설비 설치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소규모 공연장에 피난안내 의무화에 피난안내도(A3크기), 피난안내방송과 같은 안전용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3) 기타 안전지원

그 외에도 관객 참여 안전훈련 등 사고 상황에 대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객 참여 안전훈련은 소규모 공연장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 체계를 확보하고 관객 참여형 재난 대피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 공연장 안전지킴이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소규모 공연장 내에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4) 성과

2021년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 사업 실적보고서」¹⁷⁾에 따르면, 공연장안전지원센터는 해당 연도에만 142개소의 소규모 공연장에 안전설비 개선을 지원했다. 센터 내 안전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소방·대피시설, 객석, 무대, 조명 거치용 프레임 등 구조시설, 전기시설 등의 안전시설 개보수 공사 지원을 95개소에 제공했다. 또한 신규 등록 공연장 42개소에 피난안내매체를 배포했으며, 5개소에 환기설비 개선을 지원했다. 소규모 공연장 175개소의 무대시설 법정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노후 및 고위험 공연장 안전점검 및 기술지원 등의 현장 지원이 70건 있었으며, 코로나19 대응 긴급 방역용품을 445개소에 보급했다.

소규모 공연장 안전설비 개선 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 80개 중 76개 공연장이 대체적으로 만족함으로 응답했으며 만족도가 95%를 차지하면서 사업 전반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⁸⁾ 2021년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소규모 공연장 환기설비 개선지원 사업은 대부분 창이 없고 지하에 위치한 소규모 민간 공연장의 특징과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환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받았으며, 2022년에는 지원 대상을 50개소로 확대하였다. 시범사업 대상 공연장의 만족도가 95%를 차지하였으며, 지원받은 환기설비로 인해 쾌적한 환경에서 공연을 할 수 있어서 안심된다는 평을 얻었다.¹⁹⁾

나. 공연장 안전교육 수행

노후 및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공연장안전지원센터는 공연 산업 종사자의 안전 관련 지식 향상 및 기초 이론 습득을 통해 공연장이나 공연의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교육 이수를 위한 법정 교육을 마련하고 있다. 안전교육의 대상은 공연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

17) 한국산업기술시험원(2021). 「2021년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사업 실적 보고서」. 안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pp.4-7.

18) Ibid., p.19.

19) Ibid., pp.19-20.

담당자, 공연 산업 종사자, 무대시설,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 등이며, 교육비용은 무료이다. 교육 일시는 연간 교육 계획에 따른 교육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법정교육)은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련 제도와 정책,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방법, 그 외 공연장 및 공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학습한다.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법정교육)은 공연장과 공연의 안전관련 제도와 정책,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의 공연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습득한다. 공연장 관리자 안전 및 기초기술교육(비법정교육)은 공연장 관리 분야별(무대, 조명, 음향)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소규모 공연장 종사자 안전교육(비법정교육)과 야외 공연 안전교육(비법정교육)은 각각 소극장 종사자, 야외공연 종사자의 안전지식 함양을 위해 실시된다.

2) 온라인 안전교육

안전교육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진행되는데, 공연자과정, 안전총괄책임자과정, 안전관리담당자과정 등이 마련되어 있다. ‘공연자 안전교육’은 총 55분간 진행되며, 출연자, 스태프 및 작업자, 어린이 출연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출연자 과정-수어 포함/스태프 및 작업자 과정-수어 포함). 이는 공연환경에 따른 위험 요인과 안전사고 예방 대책, 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출연자와 공연관계자의 소통 중요성, 공연 현장에서의 작업 안전수칙 등 공연 안전에 대한 기초지식과 안전 수칙을 포함한다. ‘안전총괄책임자 안전 교육’은 공연장 근무자 및 공연자 외 공연을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약 4시간 동안 진행된다. 공연에서의 재해 및 안전사고 이론,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 안전한 공연을 위한 상호간의 소통과 노력, 위험성 평가 절차 및 실시 요령, 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 안전제도 안내, 재해대처계획 작성 요령, 방역 안전수칙 등을 학습한다.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은 공연장 근무자 및 공연장 외 공연을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약 8시간 동안 진행된다. 공연단계에 따른 안전수칙(무대장치 반입시, 설치시/셋업-철거), 철거 작업 안전수칙 및 기타 안전관리 사항, 관객 안전관리 요령, 관객 안전을 위한 통제 설비 및 응급 의료 서비스, 공연에서의 재해 및 안전사고 이론, 국내외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 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자체 안전점검 실시 요령, 안전

제도 안내, 재해대처계획 작성 요령, 공연제작 현장에서 적용되는 안전 관련 법규, 방역안전수칙, 무대장치 안전관리 요령(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세트, 특수효과)을 교육한다.

이 외에도 비법정교육으로는 공연법에 따른 공연안전제도 바로알기와 관객관리자 안전교육이 있다. 총 55분간 진행되는 공연법에 따른 공연안전제도 바로알기는 공연장 및 공연장 외 공연의 행정/관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연장, 공연장 외 공연의 안전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교육한다. 마찬가지로 총 55분간 진행되는 관객관리자 안전교육은 공연장 관객관리자를 대상으로 공연장, 공연장 외 공연의 관객관리자의 역할 및 비상시 행동요령에 대해 교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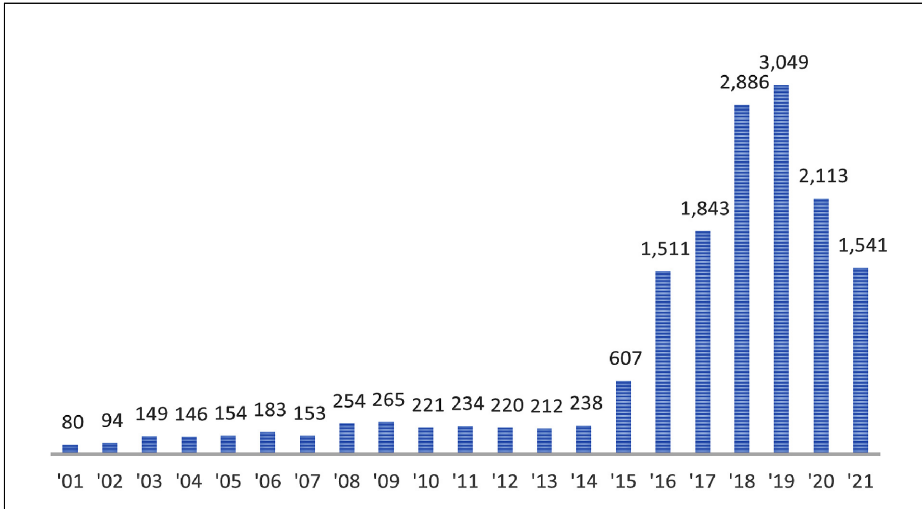
3) 성과

2001년부터 2021년까지 공연장안전지원센터의 연도별 안전예방교육 참여인원은 [그림 2-22]와 같다. 지속적으로 안전예방교육 참여인원이 증가했던 것에 반해 2020년과 2021년에 인원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연이 중단, 축소됨으로써 교육대상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21년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 사업 실적보고서²⁰⁾에 따르면,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공연장 관리, 소규모 공연장 종사자, 하우스 매니저 대상으로 한 법정 안전교육이 총 20회 실시되었으며 1,079명이 수료하였다. 야외공연 안전교육, 무대 리깅 실습, 공연장 위생 관리 및 응급대처, 공연장 안전사고 대응훈련을 포함한 비법정 안전교육이 총 20회 실시되었으며, 462명 수료하였다. 총 15회 진행된 안전사고 대응훈련에는 미래 공연자 및 공연 관객 65명이 참여하였다. 7개 공연장에 공연장 안전훈련 프로그램 기술 지원이 제공되었다. 9종의 온라인 안전교육 시스템이 운영되었으며, 총 15만 8,950명이 수료하였다. 2022년 이후 법정 안전교육 과정을 전체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교육과정에서 교육 콘텐츠 4개 과정, 28개 차시를 추가 개발 완료하였다.

20) 한국산업기술시험원(2021). 「2021년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사업 실적 보고서」. 안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pp.8-14.

[그림 2-22] 공연장안전지원센터의 연도별 안전예방교육 참여인원



출처: 공연장안전지원센터 내부자료

다. 안전지침 개발 및 보급

1) 공연장 안전 평가제도 연구 및 시행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서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및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가 실시되고 있으며, 무대시설 설치 및 안전진단 현황, 소공연장 안전실태조사와 같은 공연장 안전 통계 DB를 구축하고 있다. 안전진단기관 지정심사를 지원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공연 안전 선진화를 위한 안전 개선 연구 및 안전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 공연장 안전 지침 및 기술 기준 개발/보급

아울러 공연장 안전 매뉴얼 및 가이드를 개발하고, 공연장 안전 및 기술 기준 등 기술도서(〈표 2-18〉 참조)를 발간하며, 선진국 기술규격을 조사/분석하여 보급하고 있다. 또한 공연장 무대시설 용어, 안전관리요령, 기술기준 표준화 연구를 실시한다. 무대시설 신기술 연구 개발, 무대시설 성능평가 및 인증, 국가조달 무대시설 품질검사를 통해 공연(무대)산업 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를 지원하고 있다.

〈표 2-18〉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서 발간한 공연장 안전예방 관련 출판물

순번	도 서 명	출판일	저자
1	무대시설 안전진단요령-해설	2002.0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무대시설안전진단지원센터
2	상부무대시설 안전가이드	2003.1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무대시설안전진단지원센터
3	극장공학과 무대기계	2005.11.	원저 : Toshiro Ogawa 번역 : 유진홍, 김상헌
4	공연장 무대시설의 수시검사	2005.12.	유진홍, 김상헌
5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사례분석	2006.05.	유진홍
6	공연장 무대시설분야 안전지침 및 기술기준(10권)	2006.1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무대시설안전진단지원센터
7	공연장 안전 매뉴얼 작성 가이드	2007.12.	유진홍
8	공연장 안전 매뉴얼	2008.12.	유진홍
9	공연장 안전 매뉴얼 2009년 증보판	2008.12	이우섭, 박수홍, 김동균, 박진규, 장홍석
10	하부무대시설 안전가이드	2009.08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무대시설안전진단지원센터
11	공연장 안전매뉴얼 핸드북	2010.12	이우섭, 김상헌, 김동균, 박진규, 장홍석
12	소공연장 안전 매뉴얼	2011.02	이우섭, 김상헌, 김동균, 박진규, 장홍석, 이진환
13	공연 특수효과 사용안전 3 - 안개효과	2012.11.	이우섭, 김상헌, 김동균, 박진규, 장홍석, 임정호
14	공연 특수효과 사용안전 2 - 불꽃	2012.11.	이우섭, 김상헌, 김동균, 박진규, 장홍석, 임정호
15	공연 특수효과 사용안전 1 - 레이저	2012.11.	이우섭, 김상헌, 김동균, 박진규, 장홍석, 임정호
16	무대시설 안전진단 기술기준 해설서	2012.1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무대시설안전진단지원센터
17	공연장 리모델링 추진 절차서	2012.1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무대시설안전진단지원센터
18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제도 안내서	2013.0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19	공연장 안전사고 사례집	2014.1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20	가설무대 안전 가이드	2014.1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21	공연장 안전 매뉴얼:2015년 개정판	2015.12	김상헌, 박수홍, 김동균, 박진규, 장홍석, 류정식, 강민석
22	야외공연장 안전매뉴얼	2015.12	김상헌, 박수홍, 김동균, 류정식, 김기환
23	소공연장 안전 매뉴얼 - 개정판	2015.12	김상헌, 박수홍, 김동균, 장홍석, 류정식, 유정훈
24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2015.12	김상헌, 박수홍, 김동균, 류정식, 강민석
25	객석 설계 안전 가이드	2015.12	김상헌, 박수홍, 김동균, 류정식, 강민석
26	야외공연장 안전매뉴얼 핸드북	2016.10	김상헌, 박수홍, 김동균, 강민석, 민현웅, 김기환, 김성겸
27	공연산업분야 위험성 평가 절차서	2016.12	김상헌, 김동균, 류정식, 임정호
28	공연장 외 공연 안전관리 가이드	2016.12	Donald C. Cooper

순번	도 서 명	출판일	저자
29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2017.04	김상현, 박수홍, 김동균, 강민석, 김기환, 김성겸, 이주연
30	공연 관객 위기 대응 및 관리 매뉴얼	2017.10	김동균, 김영신
31	야외공연 가설구조물 설치, 사용, 해체 안내서	2018.04	최명기, 김근목, 오혜리, 김동균
32	공연장 외 공연 자체 안전점검 안내서	2018.05	김성겸, 김기환, 김동균
33	소규모 공연장 자체 안전검사 안내서	2018.05	김성겸, 김기환, 김동균
34	무대시설 자체 안전검사 안내서 (중·대규모 공연장) 2018년	2018.12	김동균, 김기환, 민현웅, 김성겸, 구자경
35	무대시설 안전진단 해설서 (정기 안전검사) 2018년	2018.12	김동균, 김기환, 민현웅, 김성겸, 구자경
36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공연장 및 공연) 2018년 증보판	2018.12	김동균, 강민석, 이주연, 한진실, 심수, 윤성흠
37	초보자를 위한 공연제작현장 작업안전 핸드북	2019.12	김동균, 심수
38	공연장 외 공연 안전관리 사례 및 적용 가이드	2019.12	김동균, 윤성흠, 강민석
39	공연장 화재감지기 비화재보 저감안내서	2019.12	김동균, 김성겸
40	폭염대응 안전보건관리 안내서	2020.06	김동균, 강민석, 한진실
41	소공연장 안전훈련 안내서	2020.12	-
42	공연장 감염병 대응 매뉴얼 (소규모 공연장 편)	2021.08	김동균, 한진실, 류정식
43	공연장 감염병 대응 매뉴얼 (중대규모 공연장 편)	2021.08	김동균, 한진실, 류정식
44	공연장 안전매뉴얼 개정판	2021.12	김상현, 박수홍, 김동균, 박진규, 장홍석, 류정식, 강민석, 한진실
45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개정판	2021	-
46	공연자 안전 현장교육 안내서	2021	-

출처: 공연장안전지원센터 내부자료

3) 성과

2021년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 사업 실적보고서」²¹⁾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만 안전진단 결과 평가 2회, 안전진단 현황 통계 분석, 안전진단기관 운영실태 조사가 실시되었다. 또한 공연장 등록 정보 및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DB 시스템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공연장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무대시설 안전제도 개선 연구 2종 및 공연장 감염병 대응 매뉴얼과 안전 매뉴얼 개정판을 포함한 공연 안전자료 5건을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더 나은 안전정보 개발을 위한

21) Ibid., pp.15-18.

공연안전 온라인 국제심포지엄, 아시아협의회 온라인 국제교류도 실시하고 있다.

라. 안전교육의 구체성 확보 필요

현재 공연장 안전관리는 「공연법」을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공연법」상 등록공연장은 모두 법적 의무대상으로 등록 전, 정기, 정밀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검사항목은 전기, 소방, 피난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외의 국공립극장 및 LG아트센터와 같은 대형 민간 공연장은 안전관리 및 점검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민간 소극장은 취약한 편이다. 이러한 공연장 현실을 반영하여 공연장안전지원센터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년 동안 전국 420개 소규모 극장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수수료가 없도록 무상 안전진단을 제공하고 더불어 안전시설 및 용품과 같은 인프라를 완비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훈련할 수 있도록 기회 및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장의 필수 안전시설은 공연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의무화하기보다는 권고안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공연현장은 공연장의 특성 그리고 공연장이 주로 다루는 작품마다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일괄적으로 공연장의 필수 안전시설을 규정해버리면 자칫 예술인의 창작에 제한을 주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공연장안전지원센터는 「공연법」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까지 적용한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승강무대 하강 시 경광등 또는 사이렌, 조명시설 과적 시 경고음 설치 등은 필수 안전시설은 아니지만 권장하고 있는 기술적 내용이다. 이를 위해 공연현장 안전 강화 및 예방을 위해 다양한 운영 형태에 따른 안전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공연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공연장에서의 준비 기간이 짧기에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작업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더욱이 해외의 경우 자격증을 가진 전문기사가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나라는 예산 등의 문제로 비전문가들이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공연자 안전교육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기점으로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자가 무대에 오르기 전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하도록 개정이 이뤄졌다.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공연장안전지원센터는 공연자가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안전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인력 이외에 미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4개 대학과 연계하여 특강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집체 교육은 그 특성상 개별 공연장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도모하기 어렵고 온라인 교육은 실습 교육이 어려워 정보 전달 수준에 머무른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현재 안전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위해 공연장안전지원센터는 공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시각화하여 공연자가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²²⁾ 공연장과 동일한 구조의 가상공간을 통해 공연장 관리자가 공연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위험요인을 점검·관리·개선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디지털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다.

2.2.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상해예방 및 부상예방 검진

가. 찾아가는 상해예방 지원 사업

찾아가는 상해예방 지원 사업은 부상이 잦은 무용수들에게 재활 트레이너를 파견하여 무용수들의 부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된 사업이다. 신청한 무용단이 원하는 날짜와 장소에 전문 재활 트레이너를 파견하여 부상 예방 및 재활에 관한 테이핑, 트레이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무용단 공연 연습 기간 또는 공연 당일에 전문 재활 트레이너를 파견해주는 제도로, 부상에 노출되어 있는 무용수들은 개개인에게 맞는 테이핑, 근막 이완 방법을 알려주고 부상 예방을 위한 상담을 제공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2주 뒤 날짜부터 파견이 가능하며 재활 트레이닝을 받을 무용수 인원에 맞춰 파견 시간을 신청해야 한다. 파견 1회 당 3시간 이내로 진행되며, 1시간당 트레이너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무용수 인원은 1~2명, 2시간은 3~5명, 3시간은 6~9명으로 제한된다. 하루에 한 무용단에 파견 나갈 수 있는 트레이너의 최대 인원은 2인인데, 한 무용단은 최대 20회까지 파견 신청 가능하며 1일 트레이너 2인 파견 시 2회로 횟수 차감된다. 재활 트레이너는 물리치료사 출신이거나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직업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무용수에서 트레이너로 직업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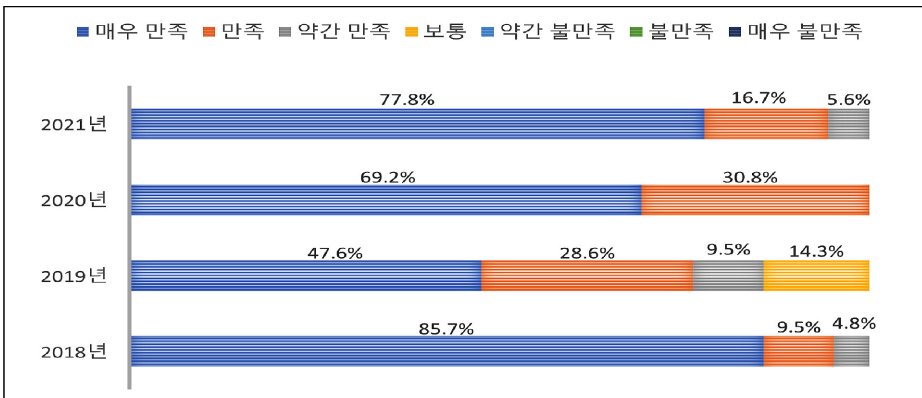
22) 한국산업기술시험원(2021). 「2021년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사업 실적 보고서」. 안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p.21.

환을 한 트레이너가 파견간다. 본 사업은 국공립과 민간단체 모두 지원 가능하다.

찾아가는 상해 예방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이 되는 장르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무용단이다. 파견이 승인된 무용단에 한하여 신청비 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3월~12월에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신청서와 (대표자 이름으로 발급된)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2018~2021년 전문전무용수지원센터 지원 사업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²³⁾에 따르면 찾아가는 상해 예방 지원을 받은 21명(2018년), 21명(2019년), 13명(2020년), 18명(2021년) 중 평균 96.42%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따르면, ‘찾아가는 상해 예방 지원’ 프로그램은 예산 1억 1천만원 가량이 책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공립보다 민간단체에 재할 트레이너를 파견하는 횟수가 더 많다. 국공립단체는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체 예산을 배정하여 사용하기고 상주 트레이너가 정직원으로 있는 경우도 있는 반면, 민간 무용단은 그러한 여건이 마련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찾아가는 상해 예방 지원사업이 민간 무용단 소속 무용수의 상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문무용수지원센터를 통해 트레이너로 직접 전환에 성공한 전직 무용수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무용단은 무용에 대한 이해가 높은 트레이너에게 부상 예방 방법을 교육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그림 2-23] 찾아가는 상해 예방 지원사업 만족도



출처: 전문무용수지원센터(2021),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 전문무용수지원센터.

나. 부상 예방 검진 지원사업

23) 전문무용수지원센터(2018, 2019, 2020, 2021),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 서울: 전문무용수지원센터.

부상 예방 검진 지원사업은 부상을 입기 전 방지할 수 있도록 무용수에게 특화된 검진을 지원한다. 무용수별로 다양한 검진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부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무용수별 맞춤형으로 조기 치료를 진행하여 은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무용수에 특화된 건강 검진을 제공하는 이 사업은 일반 근로자 건강 검진과는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진행된다. 무용수들이 당장 얼마나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능적인 평가가 검진의 핵심이 되는데, 영국의 유사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병원과 협력해 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일반 혈액검사는 물론, 엑스레이로 척추, 골반, 발목 등을 각도별로 찍어 관절, 뼈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움직임, 유연성 기능, 관절 기능 평가 등을 통해 약한 부분을 파악해 부상에 취약한 신체 부위를 진단한다. 여성 무용수의 경우 어릴 때부터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골밀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에 여성 무용수에 한해 골밀도 검사를 진행한다. 검진이 끝나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진료를 보고 부상 예방 상담도 진행한다. 상태가 심각할 경우 도수 치료, 운동 치료를 일회성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지정 병원은 2021년은 1곳(고도일병원)이었고, 2022년은 3곳(고도일병원, 하남 유니티드 병원, 수원 소재 연세CNS재활의학과)을 지정 추진 중에 있다. 검진 세부 항목은 의학적 검사 및 문진, 정형외과적 영상검사, 기능적 검사, 판정 및 상담 순으로 진행된다.

부상 예방 검진은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공연 단체 및 무용수가 신청 가능하다. 검진 희망일 최소 2주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센터 온라인 신청 후 문진표를 작성한다. 온라인 신청 시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검진이 승인된 무용단은 5만원, 무용수는 3만원의 신청비를 납부해야 한다.

〈표 2-19〉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부상 예방 검진의 세부 항목

번호	항목	내용	비고
1	의학적검사 및 문진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 병력 및 생활습관에 대한 조사	
1-2	신체계측	기본적인 신체계측, 신체질량지수 및 체형분석 (근육량, 체지방등)	
1-2	EKG	심전도 검사	
1-3	BMD (Bone Mineral Density)	DXA를 이용한 골밀도검사	여성만
1-4	체지방검사	DXA를 이용한 체지방측정	
2	정형외과적 영상검사	신체정렬 상태 및 관절에 대한 영상검사	
2-1	방사선 촬영	척추 및 골반, 양측 슬관절부, 양측 족관절부	

번호	항목	내용	비고
3	혈액검사	전혈검사 + 간기능 검사 + 신장기능검사	
4	기능적검사	기능적 움직임 및 근육 관절 기능 평가	
4-1	FSST (Functional Strength & Skill Test)	기능적 움직임 평가	
4-2	Tightness & Flexibility	근육 관절 기능 평가	
4-3	Orthopedic Exam	주요관절 정형외과적 평가	
4-4	Gross Posture	중립자세 평가	
5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		
6	치료	검진 및 정형외과 진료를 바탕으로 추가치료 필요 소견 있을 시 심화 검진 진행	심화 검진 해당 무용수만
6-1	교정도수치료	척추와 관절의 바른 정렬을 도와 변형된 상태를 회복시키고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함	
6-2	운동도수치료	통증부위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주어 관절 운동범위의 회복을 돕고, 척추 안정화에 필요한 심부(코어)근육을 강화	
6-3	Class IV Laser 치료	급성 및 만성 통증의 손상된 조직증식과 혈액 순환 개선을 도와 원인을 치료하는 고강도 레이저 치료	
6-4	테이핑치료	탄력 테이프를 통해 통증 부위의 피부층과 근막층을 분리시켜 공간을 확보하고, 순환을 도와 통증 개선 및 재활	

※ 세부항목은 검진병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출처: 전문무용수지원센터 홈페이지(검색일 : 2022.0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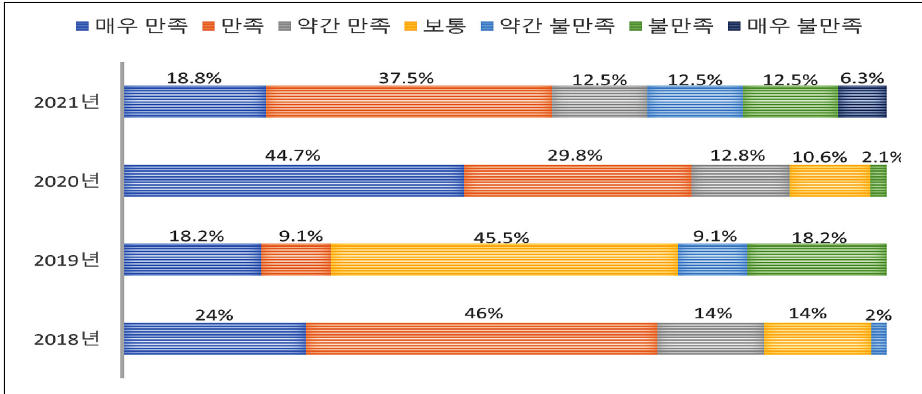
2021년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²⁴⁾에 따르면 부상 예방 검진 지원을 받은 50명(2018년), 11명(2019년), 47명(2020년), 16명(2021년)의 부상 예방 검진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적으로 ‘만족’이 66.82%, ‘보통’이 17.52%, ‘불만족’이 15.67% 순서로 나타났다. 부상 예방 검진을 통해 부상이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네’가 58.07%로 나타났으며 ‘아니오’가 41.93%로 나타났다. 부상 예방 검진을 통해 부상을 발견한 응답자 중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예’가 59%, ‘아니오’가 41%로 나타났다. 이는 부상 예방 검진으로 무용수의 부상을 절반 이상이 발견하고 그들 중 절반 이상이 치료를 받았다는 점에서 지원사업의 예방적 효과를 입증하였다.

무용수에게 신체 한 부위의 부상이 보상 개념으로 다른 부위의 과도한 또는 왜곡된 사용으로 이어져 또 다른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검진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상 예방 검진 지원사업은 치료비 지원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이 사업에 배정

24) 전문무용수지원센터(2021),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 서울: 전문무용수 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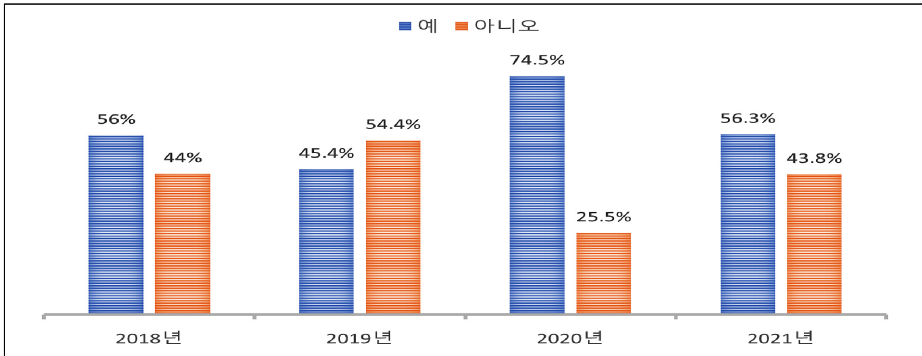
된 연간 예산이 1천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적은 인원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병원이 전국에 3곳뿐이어서 접근성이 낮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2-24] 부상 예방 검진 지원사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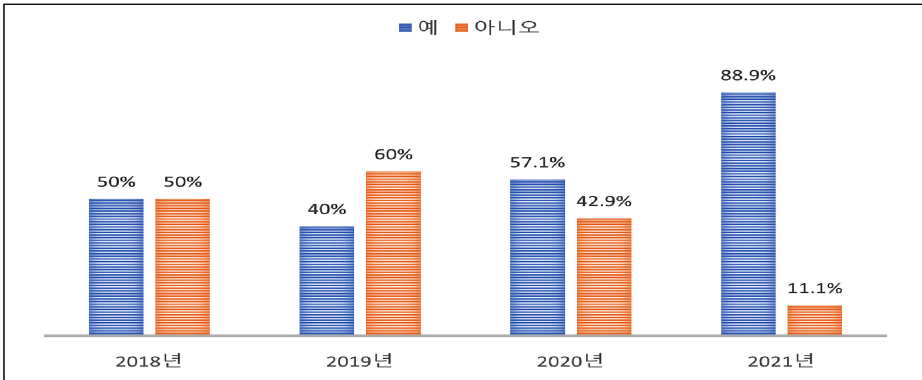
출처: 전문무용수지원센터(2021),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 전문무용수지원센터.

[그림 2-25] 부상 예방 검진을 통한 부상 발견 여부



출처: 전문무용수지원센터(2021),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 전문무용수지원센터.

[그림 2-26] 부상 예방 검진을 통해 발견된 부상 치료 여부



출처: 전문무용수지원센터(2021),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 전문무용수지원센터.

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인력개발원 안전관리 교육

이 외에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부설기관인 예술인력개발원에서도 공연장 안전관리 관련 단발성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왔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9년 아르코챔프아카데미 공연안전관리실습

이 교육프로그램은 공연 준비부터 종료 단계까지의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매뉴얼 구축과 대처 방법 학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공연예술분야 종사자 및 공연장 및 모든 시설 안전관리자 15명을 대상으로 공연안전지원센터 외 각 분야 전문가 7인이 교육을 진행한다.

2019년 7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1일차는 공연법 안전제도의 이해, 공연장 재해 예방조치, 무대시설 위험요소 및 관리요령, 소방기본법의 이해, 2일차는 조명 시설 전기 안전 이론과 실습, 무대시설 안전 이론, 무대시설 매달기 실습, 위급상황 응급 처치를 실습한다. 3일차에는 무대시설 자체 안전점검요령, 군중 관리 요령, 화재, 지진, 정전 발생 관객 대피 실습 등으로 교육내용이 구성된다. 교육장소는 아르코인력개발원 실험무대이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나. 2020년 공연장 뉴노멀 보건관리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한 특별강의로서 뉴노멀 상황에서 현장의 기술인력 및 관객지원 인력들에게 공연장의 새로운 시각을 위한 보건 위험 관리와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한 사례 및 최소한의 지침을 제공하였다. 보건관리 지식 경험자 및 비경험자 50명을 대상으로 하며 평창올림픽 개·폐막식 보건 및 안전 담당자, 미국무대리깅기술사(극장, 아레나)가 강의를 진행하였다. 2020년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걸쳐 총 8시간 동안 온라인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었다.

다. 2022년 아르코무대예술아카데미 “예술가 개인의 안전을 위한” 위험인지강화 교육 과정

본 교육은 창작과 제작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공연장 내 위험요소와 부상, 보건 관련 위험요소와 인지, 개인보호장비 사용, 사다리·고소작업대·주요 공구 사용법, 근골격계 부상에 대한 근육 이완 및 CPR 등 예술가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위험 인지 및 대응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공연예술을 포함한 모든 예술 분야의 종사자 15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과정으로, 2022년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총 10시간 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며 참가비는 2만원이다.

라. 2022년 아르코무대예술아카데미 “무대제작 스태프의 안전을 위한” 프로덕션 리스크 관리실무와 실습과정

본 과정은 무대 제작 과정 및 무대 운영에서 무대기술 스태프의 공연안전보건 인지능력을 높이고 공연안전보건과 무대제작실무를 연결시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전보건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의 중요한 요소인 위험성 평가와 작업계획의 안전시스템(Safe System of Work Plan, SSWP), 작업허가시스템(Permit to Work System, PWS) 작성 훈련을 받는다. 이 교육은 모든 공연예술 제작 분야 종사자(프리랜서, 극장스태프) 10명을 대상으로 한다. 2022년 5월 9일, 17일~19일 간 총 23시간 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에서 진행되며 참가비는 9만원이다.

예술인의 산업재해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제3장

공연예술인의 업무 특성과 산업재해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공연예술인들이 예술활동 중에 어떤 종류의 산업재해를 겪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본 보고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해 종합적으로 공연예술인이 겪는 산업재해의 종류와 세부 내용, 그리고 그 원인과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공연예술인의 산업재해에 대해 다룬 국내외 문헌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실시했다. 해외의 경우 공연예술인들이 겪는 업무상 질병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연예술의학(Performing arts medicine)이라는 별도의 연구 분야로 구축되어 활발한 연구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해외에서 발행된 공연예술의학 관련 다양한 보고서 및 논문을 조사하였고, 공연예술인들의 업무상 질병이 일어나는 맥락과 세부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업무상 사고 및 출퇴근 재해의 경우 국내외 다양한 보고서 및 미디어 자료, 판례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또한 전문가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공연예술인이 겪는 산업재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원인, 맥락, 환경적 요인 등을 자세히 조사했다. 특히 예술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예술인의 업무적 특성과 이러한 산업재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분석하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사례조사를 통해 이러한 산업재해가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아울러 문헌조사 및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공연예술인들의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공연예술인들이 겪는 질병, 상해, 사고, 재해 등의 경험여부, 종류, 원인, 빈도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재해로 인한 영향, 산업재해 처리방법, 보상방법 등을 조사하였다.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공연예술인들이 겪는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업무상 질병, 그리고 종사환경 및 산업재해에 대한 대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연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산업재해와 관련한 현실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응답

자의 특성을 다음 <표 3-1>과 같이 나타냈는데, 국악 분야의 경우 응답자 수가 1인밖에 없어 이는 내용이 비슷한 음악 분야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표 3-1>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비율
■ 전체 ■		(700)	100.0
성별	남성	(361)	51.6
	여성	(339)	48.4
연령	20대(만19세 포함)	(150)	21.4
	30대	(311)	44.4
	40대	(166)	23.7
	50대	(60)	8.6
	60대 이상	(13)	1.9
예술 활동 증명 분야	무용	(31)	4.4
	음악(국악 포함)	(314)	44.9
	연극/뮤지컬	(291)	41.6
	기타 공연예술	(64)	9.1
예술활동 유형	창작	(239)	34.1
	실연	(369)	52.7
	무대기술	(26)	3.7
	기획, 제작, 행정 등	(61)	8.7
	기타	(5)	0.7
활동 기간	5년 미만	(118)	16.9
	5~10년 미만	(235)	33.6
	10~15년 미만	(156)	22.3
	15~20년 미만	(95)	13.6
	20년 이상	(96)	13.7
계약 형태	근로자	(63)	9.0
	프리랜서	(611)	87.3
	단기일용직 등	(26)	3.7
연평균 소득	연 1,000만원 미만	(274)	39.1
	연 1,000만원 이상~ 연 2,000만원 미만	(247)	35.3
	연 2,000만원 이상~ 연 3,000만원 미만	(110)	15.7
	연 3,000만원 이상~ 연 4,000만원 미만	(42)	6.0
	연 4,000만원 이상~ 연 5,000만원 미만	(18)	2.6
	연 5,000만원 이상	(9)	1.3

제2절 공연예술인의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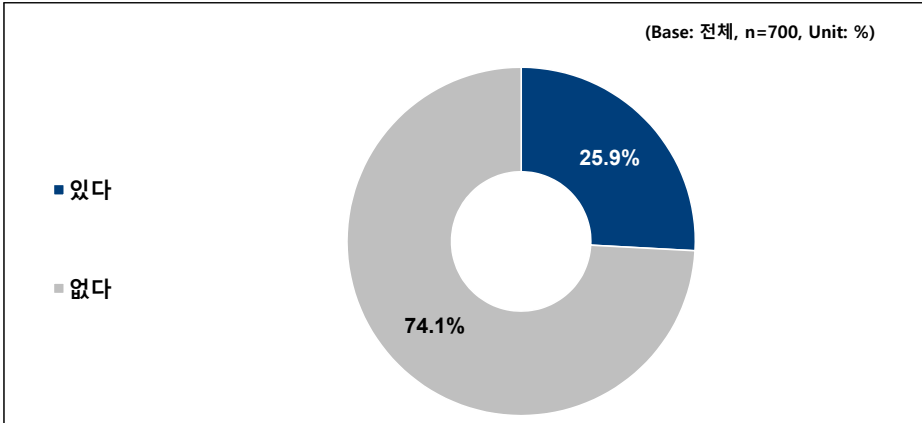
1. 다양한 안전사고 및 이동사고의 발생

본 보고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 규정하는 ‘산업재해’의 분류에 따라 공연예술인들의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가 어떠한 형태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지, 그 빈도와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공연예술의학자인 앨리스 브랜드폰브레너(Alice G Brandfonbrener)는 “공연과 위험은 너무나 가깝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였는데, 이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물리적인 공간과 작업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하였다.²⁵⁾ 공연장이라는 물리적 장소, 각종 설치물, 설비 및 장치 자체가 항상 위험성이 있으며, 이와 가까이 위치하며 신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연예술인들은 안전사고에 빈번히 노출되게 된다. 또한 공연을 위한 여행이 잦은 공연예술인은 출퇴근, 또는 투어 이동 중 다양한 사고를 겪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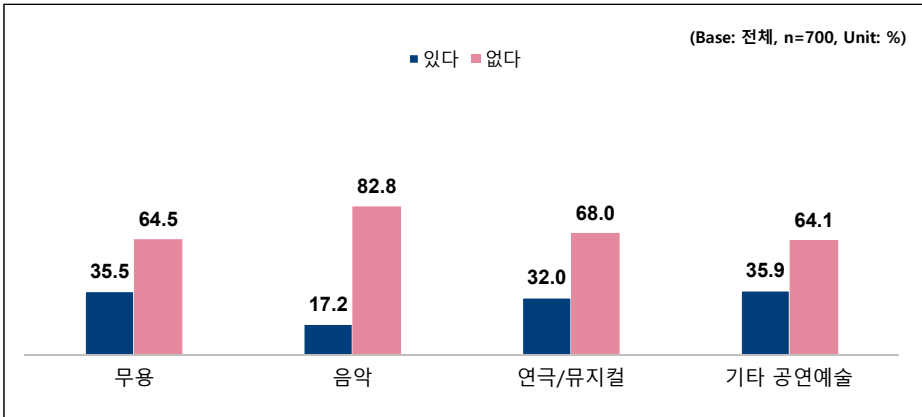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 공연예술인 중 업무상 사고와 출퇴근 재해의 경험이 있는 예술인은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5.9%로 나타났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공연장르별로 교차 분석을 한 결과, ‘기타 공연예술’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무용(35.5%)’, ‘연극/뮤지컬(32.0%)’ 등의 순으로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예술 직종별(예술활동 유형별)로는 ‘무대기술’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획, 제작, 행정 등(32.8%)’, ‘실연(2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대기술 분야의 경우 공연장의 설비, 장비, 설치물 등을 직접적으로 설치 또는 철수하거나 운용하는 업무를 담당하므로 가장 업무 위험성이 높으며, 이에 업무상 사고에도 가장 자주 노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25) Brandfonbrener, A.(2000), All the World's a Stage, *Medical Problems of Performing Artists* 15(1):pp.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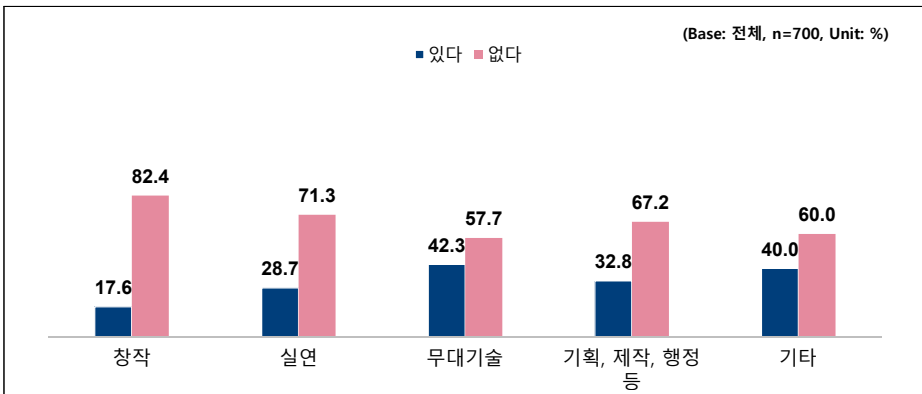
[그림 3-1]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경험



[그림 3-2]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경험



[그림 3-3] 예술활동 유형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경험



〈표 3-2〉 2021 산업재해 발생현황 : 전체

(단위 : %)

구분	2021. 1~12월	전년 동기	증감	증감률
재해율(%)	0.63	0.57	0.06	10.5
사고재해율	0.53	0.49	0.04	8.2
질병발생률	0.11	0.08	0.03	37.5

출처 : 고용노동부(2021). 2021년 산업재해 발생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03.16.

〈표 3-3〉 2021 산업재해 발생현황 : 업종별

(단위 : 명, %, ‰, %P,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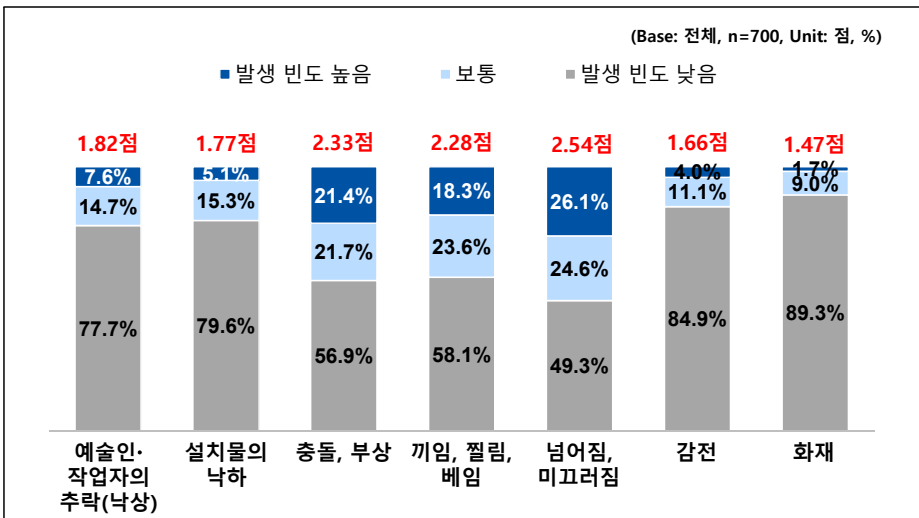
구분	2021. 1~12월			전년 대비 증감률	
	근로자수	사고 재해자수	사고 재해율	사고 재해자수	사고 재해율
총 계	19,378,565	102,278	0.53	10.7	8.2
광업	10,257	133	1.30	-5.7	-1.5
제조업	3,959,780	24,265	0.61	4.9	5.2
건설업	2,378,751	26,888	1.13	9.2	4.6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79,791	102	0.13	17.2	18.2
운수창고 통신업	993,678	9,148	0.92	40.7	33.3
임업	110,395	915	0.83	-8.9	-16.2
기타의 사업	10,980,274	39,833	0.36	10.6	5.9
어업	4,955	67	1.35	52.3	53.4
농업	78,999	630	0.80	6.2	6.7
금융 및 보험업	781,685	297	0.04	15.1	33.3

이와 같이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를 겪는 공연예술인은 전체의 약 1/4 정도의 규모로 그 수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2021년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현황 결과와 비교하면 달리 해석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2021)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우리나라 산업재해 재해율은 전체 근로자의 0.63%를 기록했다. 이 중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율이 0.53%이며, 질병발생률은 0.11%였다. 앞서 공연예술인이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로 25.9%의 재해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그룹 700명 대상의 설문조사이고 지금까지의 경험 여부를 조사한 만큼, 2021년 전수조사를 한 고용노동부의 조사와의 표본그룹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공연예술분야가 산업재해 발생률에 있어 꽤나 높은 확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업종별로 보아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어업' 분야가 1.35%, '광업' 분야가

1.30%, 전통적으로 산업재해가 많은 '건설업' 분야도 1.13%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공연예술분야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꽤 높은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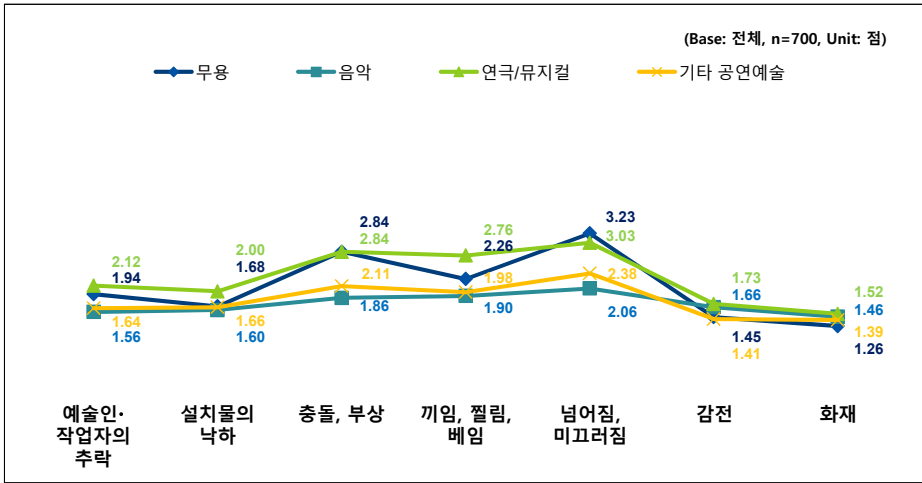
공연예술인들이 주로 겪게 되는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의 종류를 묻는 질문에서, '업무상 사고'의 경우 '넘어짐, 미끄러짐'이 2.5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충돌, 부상'(2.33점), '끼임, 찢림, 베임'(2.2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5점 척도 기준) 업무상 사고의 종류를 공연 장르별로 보면, '예술인·작업자의 추락'과 '설치물의 낙하', '끼임, 찢림, 베임', '감전', '화재'에서 모두 '연극/뮤지컬(각각 2.12점, 2.00점 2.76점, 1.73점, 1.52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끼임, 찢림, 베임'은 '무용'과 '연극/뮤지컬(각각 2.84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넘어짐, 미끄러짐'은 '무용(3.23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예술인·작업자의 추락', '설치물의 낙하', '충돌, 부상', '끼임, 찢림, 베임', '넘어짐, 미끄러짐', '감전', '화재' 모든 유형에서 '무대기술(각각 2.35점, 2.42점, 2.85점, 3.15점, 2.96점 1.96점, 1.69점)' 분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무대기술' 분야가 가장 빈번히 위험한 사고를 겪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4]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종류_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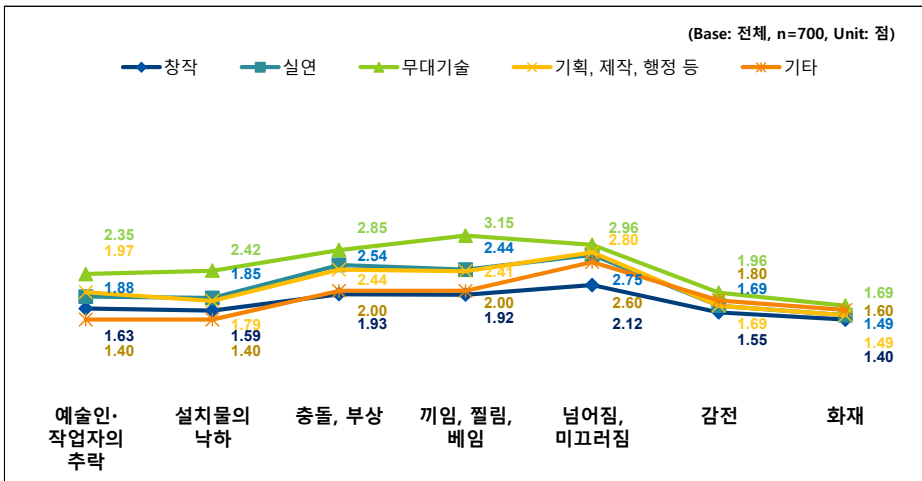


26) 고용노동부(2021). 2021년 산업재해 발생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03.16.

[그림 3-5]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종류_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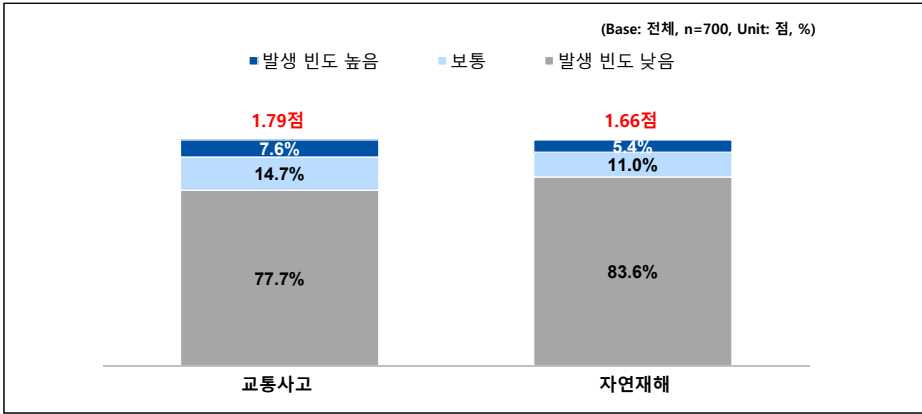


[그림 3-6] 예술활동 유형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종류_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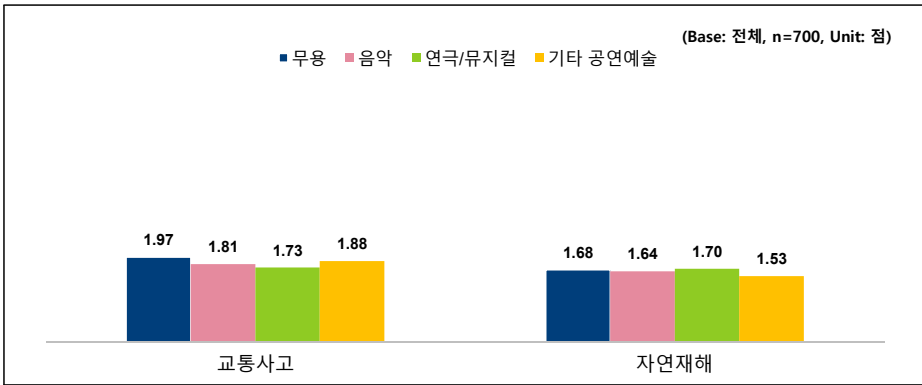


‘출퇴근 재해’의 경우, ‘교통사고’가 1.7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연재해’(1.6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르별로는 ‘교통사고’는 ‘무용’이 1.9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연재해’는 ‘연극/뮤지컬’이 1.7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무대기술’ 분야가 ‘교통사고’에서 2.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연재해’는 기획, 제작, 행정 등이 1.8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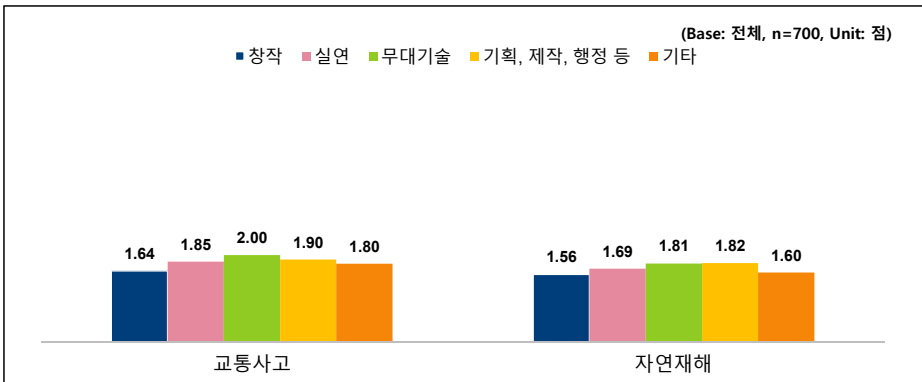
[그림 3-7]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종류_출퇴근 재해



[그림 3-8]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종류_출퇴근 재해



[그림 3-9] 예술활동 유형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종류_출퇴근 재해



1.1. 예술인·작업자의 추락(낙상)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문회의, 예술인 인터뷰, 사례조사 등을 통해 드러난 공연예술인이 현장에서 체감상 가장 빈번하게 겪는 업무상 사고는 예술인 또는 작업자의 추락(낙상)과 관련된 사고였다. 장르별로는 ‘연극/뮤지컬’이 2.12점으로 가장 높았고, 직종별로는 ‘무대기술’ 분야가 2.35점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활동기간’ 별로는 활동경력이 길수록 추락의 경험이 많으며, ‘계약형태’로는 ‘단기일용직 등’이 더욱 자주 추락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업무상 사고 : 예술인·작업자의 추락(낙상)

(단위: %, 점)

		사례수	발생 빈도가 매우 낮다	발생 빈도가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다소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다	매우 발생 빈도가 높다	[5점 평균]
■ 전체 ■		(700)	49.9	27.9	14.7	5.9	1.7	1.82
예술 활동 증명 분야	무용	(31)	35.5	41.9	16.1	6.5	0.0	1.94
	음악	(314)	63.4	22.3	10.2	3.2	1.0	1.56
	연극/뮤지컬	(291)	34.4	33.7	20.3	8.9	2.7	2.12
	기타 공연예술	(64)	60.9	21.9	10.9	4.7	1.6	1.64
예술 활동 유형	창작	(239)	60.7	22.6	11.7	3.3	1.7	1.63
	실연	(369)	44.7	31.7	15.2	7.3	1.1	1.88
	무대기술	(26)	19.2	46.2	19.2	11.5	3.8	2.35
	기획, 제작, 행정 등	(61)	50.8	16.4	23.0	4.9	4.9	1.97
	기타	(5)	60.0	40.0	0.0	0.0	0.0	1.40
활동 기간	5년 미만	(118)	61.9	23.7	11.0	3.4	0.0	1.56
	5~10년 미만	(235)	52.3	29.4	12.8	4.7	0.9	1.72
	10~15년 미만	(156)	48.7	30.1	13.5	4.5	3.2	1.83
	15~20년 미만	(95)	42.1	23.2	20.0	13.7	1.1	2.08
	20년 이상	(96)	38.5	30.2	20.8	6.3	4.2	2.07
계약 형태	근로자	(63)	44.4	39.7	11.1	3.2	1.6	1.78
	프리랜서	(611)	50.4	26.5	15.5	5.7	1.8	1.82
	단기일용직 등	(26)	50.0	30.8	3.8	15.4	0.0	1.85

인터뷰에 참가한 공연예술인들에 따르면 가장 빈번히 추락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무대의 설치 및 준비(set-up) 또는 철수(strike) 기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 기간의 경우 아직 무대가 완벽히 완성이 안 된 상태로 안전장치가 완전히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설치 공정이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무대와 주변에 조명, 기계 등 각종 설비를

설치하는데 설치의 과정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무대 상부 등에서 설치를 진행하다보니 자주 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후된 공연장이나 소극장, 야외 공연장에서 빈번히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 중에는 아차 잘못해서 발이라도 미끄러지면 바로 추락이에요. 큰 공연장은 조명을 달기 위해 무대 상부의 조명 지지대를 아래로 내려서 작업하고 위로 올리는데, 대학로의 작은 공연장이나 지방의 노후 공연장의 경우 작업자가 직접 올라가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공간도 사람 한명 겨우 들어갈 만큼 좁고요. 매우 조심해서 작업하지만, 잠시만 긴장을 늦추면 바로 추락할 수 있어요. 기계 위에서 작업하다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무대기술 분야 자문위원)

“제일 위험한 곳은 야외 공연장이에요. 원래 아무 것도 없는 공간에 트러스를 세우고 각종 무대 장치를 달면서 작업을 하는데, 무대가 다 셋업 완료되면 그래도 안전하지만, 아직 완전히 셋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균형이 안 맞은 상태입니다. 이 때 추락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무대기술 분야 자문위원)

설치 기간뿐만 아니라 철수 기간에도 추락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철수 과정 또한 설치 과정과 동일하게 높은 곳에서 다양한 설비를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하므로 사고가 빈번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를 통해 「공연제작현장 작업안전 핸드북」 등 안전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지만, 매뉴얼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고 현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안전모 착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공중 작업의 경우 허리에 줄을 매달아 혹시 모를 추락 사고를 대비하는 경우가 늘었지만, 아직까지 많은 곳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안전수칙을 세세하게 마련해 이를 의무화하는 방법도 있으나, 공연예술의 특성상 현장의 상황이 매우 달라 이를 표준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표준화 한 안전수칙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의무화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속성상 워낙 다양한 특징을 가진 현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불리 표준화하면 창의력에 제한을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

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의무화보다는 작업자가 지켜야 할 수칙이나 공연장의 안전점검 사항을 만들어 배포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무대기술 분야 자문위원)

최근 무대연출이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승강 무대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승강무대와 관련한 추락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특히 공연 무대는 장면 전환, 각종 설비 설치 등을 위해 승강 무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승강무대 주변에는 반드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펜스 설치가 필요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장 큰 화제가 된 사건은 2018년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일어난 스태프 추락 사건으로, 셋업 기간에 안전바나 안전표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스태프가 내려가 있는 승강무대를 보지 못하고 발을 헛디뎠다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져 김천시가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되었고 관련 담당자들도 처벌을 받았다. 또한 이후 「공연법」 개정으로 이어져(2022년 1월), 법률에 “공연장 운영자 등”의 개념을 추가하고, 공연장 운영자는 중대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설치하며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사례]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스태프 추락 사건

- (1) 사고종류: 스태프 추락
- (2) 사고일: 2018-09-06
- (3) 장소: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 (4) 사고내용: 오후 1시 23분쯤 호남오페라단 창작오페라 '달하 비취시오라' 조연출인 스태프가 김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무대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호남오페라단의 무대감독이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무대감독에게 무대 중간 바닥에 설치된 리프트를 1층으로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회관 무대감독은 기계감독에게 리프트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오페라단 무대감독, 회관 무대감독은 승강무대(스테이지 리프트)가 6.5m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고 페인팅 작업을 하던 조연출 스태프는 색칠 작업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뒷걸음 하다가 리프트가 내려간 높이만큼 아래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다.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피해자는 닷새만에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 안전 관련한 안내 사인 등의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아래로 깊게 뚫린 승강무대 주변에는 지침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안전 펜스가 없었다. 또한 무대에서 작업중인 스태프가 있었지만, 무대 승강기를 내리는 과정에서 해당 스태프에게 현장 감독이 안전에 관해 주의할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
- (5) 사고원인: 현장 안전장치가 부재했고, 승강 무대 주변에 지침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안전 펜스가 없었다. 리프트 조작 담당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가 없었고,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
- (6) 사고결과: 스태프 1명이 사망했다.
- (7) 사고처리: 유족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피해자가 20%의 과실이 있다고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100% 김천시 책임으로 판결이 났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단독은 김천문화예술회관 무대감독 및 호남오페라단 무대감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각 금 10월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를 고용한 호남오페라단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

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김천문화예술회관 및 이 공연장 관리와 공연 진행 업무를 맡았던 김천시에 대해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위험 방지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후 김천시는 이 공연장에 관련 안전 장치를 설치했다.

(8) 그 외 특이사항: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동구남구을)은 2018년 9월 6일 김천문화회관에서 공연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무대 추락사와 관련해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2021년 발의했고, 2022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을 명문화하고, 공연예술진흥계획에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무대예술 전문인 등이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권리, 공연 관람객에게 비상시 피난 절차를 주지시킬 의무를 추가했다. 또한 중대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전담기관으로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연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연장 안전 관련 조항(2020.1월 개정)

제10조의2(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①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무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위하여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18.]

제11조의2(안전관리비) ①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제11조의5(피난안내)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상황,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2. 1. 18.>

②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피난안내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 1.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8.>

제11조의6(사고보고의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연장의 사용중지 등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고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공연장운영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2. 1. 18.]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이 외에도 공연예술인이 무대 세트에서 추락하는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뮤지컬 ‘금발이 너무해’의 경우 세트 전화 도중 얇은 목재로 된 무대막에 배우 2명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뮤지컬 ‘마타하리’ 공연 중 배우 2명이 구조물이 넘어지며 무대 아래 오케스트라 피트석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례] 뮤지컬 ‘금발이 너무해’ 무대세트 추락 사건

- (1) 사고종류: 무대세트 추락
- (2) 사고일: 2009-12-02
- (3) 장소: 코엑스아티움
- (4) 사고내용: 오후 9시 50분 경 삼성동 코엑스아티움에서 열린 뮤지컬 ‘금발이 너무해’ 공연에서 세트 전화 도중 위에서 얇은 목재로 된 무대막이 떨어져 배우 2명(백주희, 김형묵) 부상을 당했다. 사고 후 공연 중지 안내 방송이 나간 뒤 700여 명의 관객이 객석을 빠져나갔고, 공연은 중단되었다. 다음 날 관람객에게 일괄 공연티켓에 대한 환불을 진행했다.
- (5) 사고원인: 세트 전화 중 위의 무대막이 배우 쪽으로 떨어졌다.
- (6) 사고결과: 배우 2명이 부상을 당했다. 배우 백주희는 단순 타박상으로 입원했고, 배우 김형묵은 척과상 진단을 받았고 치료 후 귀가했다.
- (7) 사고처리: 공연이 중단되어 관람객에게 공연티켓에 대한 환불을 진행했다.

[사례] 뮤지컬 ‘마타하리’ 출연자 추락 사건

- (1) 사고종류: 출연자 추락
- (2) 사고일: 2022-07-22
- (3) 장소: 잠실 샤롯데 시어터
- (4) 사고내용: 서울 잠실 샤롯데 시어터에서 뮤지컬 ‘마타하리’ 공연 중 무대 전환 과정에서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윤소호 배우(아르망 역)와 원현빈 배우(피에르 역)가 추락했고, 윤소호 배우의 경우 오케스트라 피트의 지휘 자석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윤소호 배우는 공연을 이어가고 싶다고 했고 원현빈 배우는 정원일 배우로 교체해 공연을 재개했다.
- (5) 사고원인: 세트 전환 중 구조물의 균형이 무너지며 구조물 위의 배우가 떨어졌다.
- (6) 사고결과: 배우 2명이 부상을 당했다. 배우 윤소호 배우는 타박상이 입었고, 원현빈 배우는 치아가 손상되었다.
- (7) 사고처리: 배우가 공연을 지속하기를 희망해 공연 중단없이 완료했다.

1.2. 설치물의 낙하

공연예술인이 겪는 업무상 사고 중에는 추락사고 외에도 설치물이 낙하하는 사고의 빈도도 매우 높다. 장르별로는 역시 ‘연극/뮤지컬’이 2.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직종별로는 ‘무대기술’ 분야가 2.42점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표 3-5〉 업무상 사고 : 설치물의 낙하

(단위: %, 점)

		사례수	발생 빈도가 매우 낮다	발생 빈도가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다소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다	매우 발생 빈도가 높다	[5점 평균]
■ 전체 ■		(700)	49.0	30.6	15.3	4.3	0.9	1.77
예술 활동 증명 분야	무용	(31)	45.2	41.9	12.9	0.0	0.0	1.68
	음악	(314)	59.2	25.5	12.1	2.9	0.3	1.60
	연극/뮤지컬	(291)	35.7	36.4	20.6	6.2	1.0	2.00
	기타 공연예술	(64)	60.9	23.4	7.8	4.7	3.1	1.66
예술활동 유형	창작	(239)	59.8	24.7	13.0	1.7	0.8	1.59
	실연	(369)	43.1	34.7	16.8	4.9	0.5	1.85
	무대기술	(26)	23.1	30.8	30.8	11.5	3.8	2.42
	기획, 제작, 행정 등	(61)	52.5	27.9	9.8	8.2	1.6	1.79
	기타	(5)	60.0	40.0	0.0	0.0	0.0	1.40

국내 공연계에서 설치물 낙하로 인한 가장 큰 사고는 2012년의 고양 아람누리극장에서 발생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무대기술 스태프의 머리 부상 사건이었다. 무대의 평형축이 무너지면서 무대장치 일부가 낙하했고, 이것이 스태프의 머리 위로 떨어지면서 두개골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은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지급 문제로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2심을 거쳐 스태프의 요양급여 지급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사고는 해외에서도 빈번한데 최근 홍콩에서는 아이돌 그룹 ‘미러’의 공연 중 무려 600kg에 달하는 대형 스크린이 낙하해, 27세의 댄서가 목 부분을 가격당하고 두경부가 부상을 입는 등 큰 부상을 입었고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다.

[사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무대장치 낙하 및 관련 소송

- (1) 사고종류: 무대장치 추락
- (2) 사고일: 2012-12-15
- (3) 장소: 고양 아람누리극장
- (4) 사고내용: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리허설 중 무대장치 일부가 10미터 높이에서 떨어졌고, 밑에 있던 무대관리요원의 머리 위로 떨어져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의 진단을 받음.
- (5) 사고원인: 무대장치의 하중으로 인한 낙하
- (6) 사고결과: 무대크루 1명이 큰 부상을 당했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함. 그러나 1심은 무대크루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인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함(2013.07). 그러나 2심은 무대스태프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제작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제작사가 정한 공연(준비)일에 공연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업무 내용, 일정, 장소 등에 관해 모두 제작사가 정하고 스태프는 어떠한 선택권도 없었다는 이유로 스태프가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 이에 근로자성을 인정해 요양급여 지급을 인정함

1.3. 충돌, 넘어짐, 미끄러짐, 끼임 등 상해

공연 또는 연습 중 충돌이나 넘어짐, 미끄러짐, 끼임 등의 상해 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돌 등으로 인한 부상의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르는 ‘무용’과 ‘연극/뮤지컬’이었다. 이 두 장르의 경우 다른 공연 장르에 비해 움직임이 많은 장르로 연습 또는 공연 중 다른 공연자와의 충돌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예술활동 유형 별로도 ‘무대기술’과 함께 ‘실연’ 분야가 충돌 등으로 인한 부상의 정도가 높았는데, 이동 중 동선이 꼬이거나 사인이 잘못 전달되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연습 중에 동료 무용수와 부딪치는 일은 매우 빈번해요. 동선이 서로 안 맞거나 속도가 달라서 일어나는 사고가 많죠. 앞에서 동료 무용수가 어디에 걸려 넘어지면 뒤따라 뛰면서 동작을 하는 무용수도 같이 넘어져서 다쳐요. 매우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무용 분야 예술인)

“연습 중 댄스매트 사이가 벌어져 있는 걸 모르고 턴을 하다가 발가락이 끼어서 발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어요. 애초에 매트를 촘촘하게 제대로 깔아 놓지 않아서 뭔가 불안했는데, 연습 중에 아무리 신경쓰고 조심한다 해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수술 후 한참동안 요양했고, 후유증도 있었습니다.” (연극 분야 예술인)

〈표 3-6〉 업무상 사고 : 충돌, 부상

(단위: %, 점)

		사례수	발생 빈도가 매우 낮다	발생 빈도가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다소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다	매우 발생 빈도가 높다	[5점 평균]
■ 전체 ■		(700)	34.7	22.1	21.7	18.1	3.3	2.33
예술 활동 증명 분야	무용	(31)	12.9	25.8	29.0	29.0	3.2	2.84
	음악	(314)	50.3	23.9	15.9	9.2	0.6	1.86
	연극/뮤지컬	(291)	18.2	19.2	28.9	28.2	5.5	2.84
	기타 공연예술	(64)	43.8	25.0	14.1	10.9	6.3	2.11
예술활동 유형	창작	(239)	51.0	19.2	16.7	11.7	1.3	1.93
	실연	(369)	25.7	23.6	25.2	21.7	3.8	2.54
	무대기술	(26)	11.5	34.6	19.2	26.9	7.7	2.85
	기획, 제작, 행정 등	(61)	34.4	18.0	23.0	18.0	6.6	2.44
	기타	(5)	40.0	40.0	0.0	20.0	0.0	2.00

〈표 3-7〉 업무상 사고 : 넘어짐, 미끄러짐

(단위: %, 점)

		사례수	발생 빈도가 매우 낮다	발생 빈도가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다소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다	매우 발생 빈도가 높다	[5점 평균]
■ 전체 ■		(700)	28.1	21.1	24.6	20.4	5.7	2.54
예술 활동 증명 분야	무용	(31)	6.5	22.6	29.0	25.8	16.1	3.23
	음악	(314)	43.9	22.9	17.8	13.4	1.9	2.06
	연극/뮤지컬	(291)	11.7	19.2	32.0	28.9	8.2	3.03
	기타 공연예술	(64)	35.9	20.3	21.9	14.1	7.8	2.38
예술활동 유형	창작	(239)	46.9	16.7	18.8	12.6	5.0	2.12
	실연	(369)	19.0	23.3	28.2	23.3	6.2	2.75
	무대기술	(26)	3.8	34.6	23.1	38.5	0.0	2.96
	기획, 제작, 행정 등	(61)	19.7	19.7	27.9	26.2	6.6	2.80
	기타	(5)	40.0	20.0	0.0	20.0	20.0	2.60

〈표 3-8〉 업무상 사고 : 끼임, 찢림, 베임

(단위: %, 점)

		사례수	발생 빈도가 매우 낮다	발생 빈도가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다소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다	매우 발생 빈도가 높다	[5점 평균]
■ 전체 ■		(700)	35.6	22.6	23.6	14.9	3.4	2.28
예술 활동 증명 분야	무용	(31)	25.8	38.7	19.4	16.1	0.0	2.26
	음악	(314)	49.7	22.3	18.8	7.0	2.2	1.90
	연극/뮤지컬	(291)	18.2	21.6	31.3	23.7	5.2	2.76
	기타 공연예술	(64)	50.0	20.3	14.1	12.5	3.1	1.98
예술활동 유형	창작	(239)	51.0	20.5	15.9	10.9	1.7	1.92
	실연	(369)	27.9	23.8	28.7	15.7	3.8	2.44
	무대기술	(26)	7.7	23.1	26.9	30.8	11.5	3.15
	기획, 제작, 행정 등	(61)	32.8	21.3	23.0	18.0	4.9	2.41
	기타	(5)	40.0	40.0	0.0	20.0	0.0	2.00

이와 같이 신체를 많이 사용하고 이를 활용해 표현하는 공연예술인들의 특성상 신체에 상해를 입는 사고를 많이 겪게 되는데, 특히 실연 예술인들이 이러한 사고를 많이 겪는다. 무대 설치 및 설비 운영을 담당하는 무대기술 분야 예술인들도 상해 사고를 많이 경험하는 직종이다.

“공연 중에 분장팀과 의상팀은 랜턴을 입에 물고 배우들의 땀을 닦아주거나 의상 교체를 돕습니다. 이 때 많은 분들이 치아가 부러지기도 해요. 머리에 랜턴을 차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던데, 머리에 차면 시선 처리를 잘못하다가 무대나 객석 쪽으로 빛이 가기 때문에 입에 물 수밖에 없어요.” (무대 기술 분야 자문위원)

공연이나 연습 현장에서 겪은 사고의 경우 예술인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데, 업무 장소나 사고 상황이 비교적 명확하여 산재보험 보상승인이 상대적으로 쉽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한다. 산재보험 보상을 받은 예술인들은 치료비와 입원비 이 외에도 휴업 급여 지급을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사례] 공연 중 코뼈 골절의 산재보험 보상 사례²⁷⁾

프리랜서 무용수로 활동하던 무용수 김동현은 프로젝트로 참여하는 무용단에서 단체로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함.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이후 얼마되지 않아, 2015년 공연 중에 동료의 발에 부딪혀서 코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함. 골절 수술 및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지만, 예술인 산재보험과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음.

안정을 위해 3주를 일을 쉬게 되었는데, 예술인 산재보험을 통해 수술비와 입원비 외에도 휴업급여를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했으며, 충분한 휴식을 통해 예술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음

[사례] 공연 연습 중 부상의 산재보험 보상 사례²⁸⁾

배우 이다해는 광주에서 진행한 연극 연습 중, 바닥에 깔린 매트에 발가락이 끼면서 부상을 입게 됨. 부상 정도가 심해 핀을 박아야 하는 골절상을 입었는데, 공연을 못하게 됨은 물론 공연을 위해 광주에 마련한 거처 비용의 문제가 발생. 예술인 산재보험을 신청했으나, 여기에 불공정 계약과 계약 지연 문제가 겹쳐서 산재 승인에 어려움이 있었음.

산재 승인을 받아 수술과 입원으로 청구된 병원비 500만원과 휴업급여를 받았고, 서울에서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 전원 치료를 신청하였음

1.4. 무대 설비 및 장치로 인한 안전사고

공연 무대의 경우 무대의 위, 양 옆, 아래, 뒤편 등에 수많은 설비 및 장치가 설치되어

27)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20). 「예술인 산재보험 혜택 이야기 : 다시 예술가로, 다시 예술현장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구성

28)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20). 「예술인 산재보험 혜택 이야기 : 다시 예술가로, 다시 예술현장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구성

있다. 각종 기계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장치들은 디지털 콘솔 또는 수동으로 조정하는 데, 이러한 설비의 오작동이나 잘못된 설치, 또는 무리한 설치로 인해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잦다. 무대는 전기를 통해 다양한 설비를 연결하고 가동하므로, '감전' 등 전기와 관련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연 장르 중에서는 '연극/뮤지컬' 장르가 가장 감전 사고가 잦으며, 직종별 결과에서는 '무대기술' 분야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감전 사고는 장비나 설비의 노후화나 고장 등으로 발생하거나 전력이 서로 맞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데, 안산밸리록페스티벌 스태프 감전 사건의 경우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사고였다.

〈표 3-9〉 업무상 사고 : 감전

(단위: %, 점)

		사례수	발생 빈도가 매우 낮다	발생 빈도가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다소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다	매우 발생 빈도가 높다	[5점 평균]
■ 전체 ■		(700)	54.1	30.7	11.1	3.4	0.6	1.66
예술 활동 증명 분야	무용	(31)	61.3	32.3	6.5	0.0	0.0	1.45
	음악	(314)	56.1	27.4	11.8	4.5	0.3	1.66
	연극/뮤지컬	(291)	47.8	36.1	12.0	3.4	0.7	1.73
	기타 공연예술	(64)	70.3	21.9	6.3	0.0	1.6	1.41
예술활동 유형	창작	(239)	60.7	25.5	12.1	1.3	0.4	1.55
	실연	(369)	50.4	34.7	10.3	4.3	0.3	1.69
	무대기술	(26)	42.3	30.8	15.4	11.5	0.0	1.96
	기획, 제작, 행정 등	(61)	57.4	26.2	9.8	3.3	3.3	1.69
	기타	(5)	40.0	40.0	20.0	0.0	0.0	1.80

[사례] 안산밸리록페스티벌 스태프 감전 사건

- (1) 사고종류: 스태프 감전
- (2) 사고일: 2013-07-26
- (3) 장소: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
- (4) 사고내용: 오후 5시 8분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안산밸리록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송풍기 설치를 위해 콘센트를 꽂던 스태프(CJ E&M 소속 음악 관련 저작권 라이선스 담당자)가 감전되었다.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관계자는 외부 업체에서 대여한 송풍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인터뷰를 했다.
- (5) 사고원인: 외부에서 대여한 송풍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지만, 직접적 원인은 감전이었다.
- (6) 사고결과: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 (7) 사고처리: 사고와 관계없이 공연은 진행되었다.
- (8) 그 외 특이사항: 피해자는 현장 시공 스태프가 아닌 저작권 라이선스 담당자였다.

또 다른 공연예술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로는 ‘화재’ 사고를 들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재는 ‘연극/뮤지컬’ 분야와 ‘무대기술’ 분야에서 자주 일어난다. 우리 공연예술계는 과거 큰 화재사고가 다수 있었다. 가장 큰 화재사고는 1972년 서울시민회관의 전기 과열로 인한 합선 화재 사고를 들 수 있는데, 3천여 평을 태우고 53명이 질식사(燒死)하고 76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아직 우리나라 공연계에 안전대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때에 일어난 사고로, 공연장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에도 2007년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불을 피우는 장면을 연출하는 도중 화재가 발생하여 194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무대와 객석 간 방화막이 내려오면서 인명 피해를 막았고, 미리 세워진 안전대처 기준에 따라 스태프들이 잘 대처하여 큰 피해를 막은 바 있다.

〈표 3-10〉 업무상 사고 : 화재

(단위: %, 점)

		사례수	발생 빈도가 매우 낮다	발생 빈도가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다소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다	매우 발생 빈도가 높다	[5점 평균]
■ 전체 ■		(700)	66.0	23.3	9.0	1.3	0.4	1.47
예술 활동 증명 분야	무용	(31)	74.2	25.8	0.0	0.0	0.0	1.26
	음악	(314)	67.5	20.7	9.9	1.9	0.0	1.46
	연극/뮤지컬	(291)	61.9	27.1	9.3	1.0	0.7	1.52
	기타 공연예술	(64)	73.4	17.2	7.8	0.0	1.6	1.39
예술활동 유형	창작	(239)	70.7	20.5	7.1	1.7	0.0	1.40
	실연	(369)	63.1	26.3	8.9	1.4	0.3	1.49
	무대기술	(26)	53.8	23.1	23.1	0.0	0.0	1.69
	기획, 제작, 행정 등	(61)	70.5	16.4	9.8	0.0	3.3	1.49
	기타	(5)	60.0	20.0	20.0	0.0	0.0	1.60

[사례] 예술의전당 무대시설 화재 사건

- (1) 사고종류: 화재
- (2) 사고일: 2007-12-12
- (3)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4) 사고내용: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의 '라보엠' 공연 도중 주인공 로돌포 역을 맡은 테너가 성냥불을 켜서 벽난로에 던지는 장면을 연기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다. 자체 긴급상황 대처기준에 따라, 객석으로 화재가 확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시스템 가동되기 전 무대감독의 판단하에 미리 수동으로 무대와 객석 간의 방화막을 내렸다. 인명 피해 없이 20여분 만에 진화되었지만, 출연자 90여명이 호흡 중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 검사를 받았다.

(5) 사고원인: 배우가 성냥불을 켜 벽난로에 던지는 장면 연기 중 공연 대도구인 벽난로에서 화재 발생하였는데, 벽난로 내부에 설치된 팬과 조명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6) 사고결과: 인명 피해는 없었고, 재산 피해액 194억원.

(7) 사고처리: 1년 동안 문을 닫고 개보수작업을 진행하였다. 화재예방 시스템이 강화(안전관리사 채용, 소화기 개수 증가, 소방서 직통전화 설치 등)되었다. 삼성화재에서 예술의전당에 보험금 100억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삼성화재는 국립오페라단에 소송을 제기해 3년간 법정공방 끝에 수리비의 70%인 배상액 48억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 배상 원금은 48억원이지만 법정 공방이 길어지며 연이율 20%로 이자가 붙어 국립오페라단이 삼성화재에 물어주어야 할 돈은 74억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8) 그 외 특이사항: 이후 2012년 화재 이후 처음으로 라보엠을 공연하게 되었고, 이때 난롯불 피우는 장면에서는 전기조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연출이 바뀌었다.

1.5. 공연 출퇴근 및 투어 중 이동 사고

공연과 연습을 위해 장소 이동이 잦은 공연예술인은 출퇴근 및 투어 이동 중 다수의 교통사고를 겪고 있다. 특히 이동 중 공연을 위한 많은 설치물이나 소품, 장비 등을 가지고 이동하게 되는데, 하중으로 인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고가의 악기 및 장비가 손실되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기도 한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는 평균 1.79점으로 ‘예술인·작업자의 추락(낙상) (1.82점)’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동이 많은 직업의 특성상 나올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공연 장르별로는 ‘무용(1.97점)’과 ‘기타 공연예술(1.88점)’이 가장 많으며, 직종별로는 ‘무대 기술(2.00점)’과 ‘기획·제작·행정 등(1.90점)’이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

“공연을 위해 지방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매우 흔한데, 오가는 길에 추돌사고가 정말 많아요. 공연과 공연 사이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 특히 사고가 많이 나죠. 다음 공연을 하기 위해 서둘러 이동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급여가 적다보니 가능한 많은 공연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무용 분야 예술인)

“2020년 11월에 경기도에서 공연 끝나고 공연 의상을 그대로 입은 채로 귀가하던 중, 트럭에 충돌당해서 몸이 날아가는 심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향이 없어서 운전자의 보험으로 처리했는데,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했지만 웬지 안 될 꺼라 지레 짐작해 보상 신청하지 않았어요. 무대에서 난 사고가 아니어서 안 될 꺼라 지레 짐작한 거죠. 주변의 경우도 지방 공연을 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엄청 많이 듣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당장 수술할 정도로 다친 게 아니면 다쳐도 정해진 공연 일정을 그냥 소화합니다. 나를 대신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 다쳤어도 공연해야지 만 내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음악 분야 예술인)

이와 같이 출퇴근 재해는 예술인들이 매우 빈번하게 겪는 산업재해인데, 많은 예술인들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공연계약 등의 이유로 공연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산재보험에 가입했던 예술인의 상당수가 출퇴근 재해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영역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산재보험 보상 사례집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다.

〈표 3-11〉 출퇴근 재해 : 교통사고

(단위: %, 점)

		사례수	발생 빈도가 매우 낮다	발생 빈도가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다소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다	매우 발생 빈도가 높다	[5점 평균]
■ 전체 ■		(700)	52.4	25.3	14.7	6.3	1.3	1.79
예술 활동 증명 분야	무용	(31)	45.2	29.0	16.1	3.2	6.5	1.97
	음악	(314)	54.1	21.0	15.9	7.6	1.3	1.81
	연극/뮤지컬	(291)	51.2	31.3	12.0	4.8	0.7	1.73
	기타 공연예술	(64)	53.1	17.2	20.3	7.8	1.6	1.88
예술활동 유형	창작	(239)	57.7	24.3	14.6	2.9	0.4	1.64
	실연	(369)	50.1	26.6	13.0	8.9	1.4	1.85
	무대기술	(26)	46.2	23.1	19.2	7.7	3.8	2.00
	기획, 제작, 행정 등	(61)	49.2	21.3	23.0	3.3	3.3	1.90
	기타	(5)	40.0	40.0	20.0	0.0	0.0	1.80
계약 형태	근로자	(63)	52.4	30.2	14.3	1.6	1.6	1.70
	프리랜서	(611)	52.5	25.2	14.6	6.7	1.0	1.78
	단기일용직 등	(26)	50.0	15.4	19.2	7.7	7.7	2.08

[사례] 지방공연 이동 중 교통사고 사례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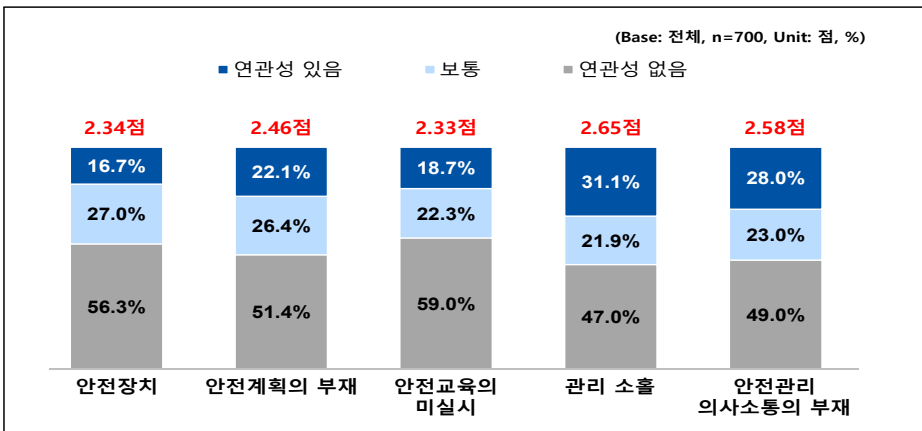
2019년 12월 지방공연을 다녀오던 연극배우 가족이 **고속도로** 나들목 길목에서 블랙 아이스에 차가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을 **받음**. 같이 연극배우로 활동하는 딸은 영구치 앞니가 완전히 부러지고, 아내는 뇌진탕으로 기억 상실을 겪게 됨. 긴 시간 동안 수술, 통원 치료, 재활로 온 가족이 활동이 어려워짐
주변의 권유로 예술인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출퇴근 재해로 보상 처리를 받음. 특히 수술과 입·퇴원, 재활에 많은 혜택을 받음.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 재활비 등의 금액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휴업급여를 통해 원래 수입의 70%를 지원받아 예술현장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치료를 안정적인 상황에서 받을 수 있었음

2. 안전환경 구축을 위한 환경적·문화적 기반 미흡

2.1. 안전예방을 위한 대책의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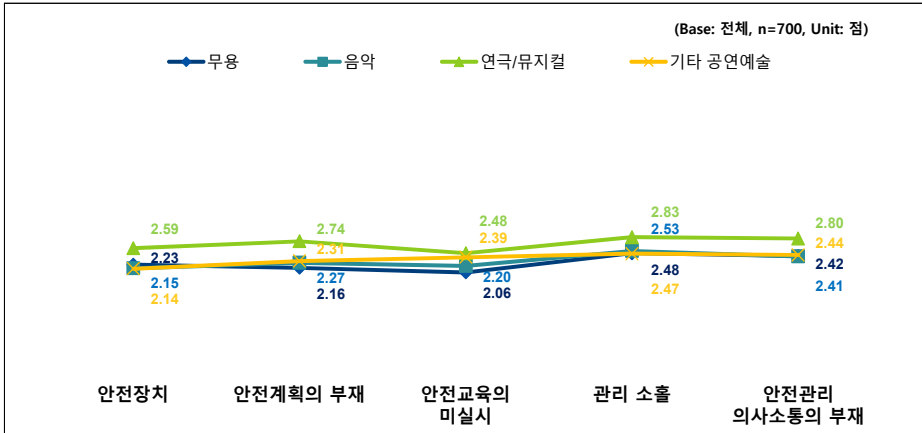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의 원인을 묻는 질문을 ‘안전 대책’, ‘숙련도 및 부주의’, ‘작업환경’, ‘공연계 문화 및 관례’ 등으로 나누어 어떤 부분이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지 조사하였다. 먼저 ‘안전 대책’과 관련한 부분의 경우 ‘관리 소홀’이 2.6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안전관리 의사소통의 부재’(2.58점), ‘안전계획의 부재’(2.4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연 장르별로는 ‘안전장치’, ‘안전계획의 부재’, ‘안전교육의 미실시’, ‘관리 소홀’, ‘안전관리 의사소통의 부재’ 모든 분야에서 ‘연극/뮤지컬’(각각 2.59점, 2.74점, 2.48점, 2.83점, 2.80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관리 소홀’과 ‘안전관리 의사소통의 부재’는 ‘무대기술’(각각 2.85점), ‘안전장치’와 ‘안전계획의 부재’도 ‘무대기술’(각각 2.85점, 2.62점, 2.77점), ‘안전교육의 미실시’는 ‘무대기술’과 ‘기획, 제작, 행정 등’(각각 2.46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우리 공연계의 안전에 대한 안전에 대한 관리 및 대책의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사고에 가장 노출도가 심한 무대기술 분야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무대기술 분야의 상황은 이러한 안전 관리에 대한 인식 및 관리 부족이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0]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의 원인 : 안전 대책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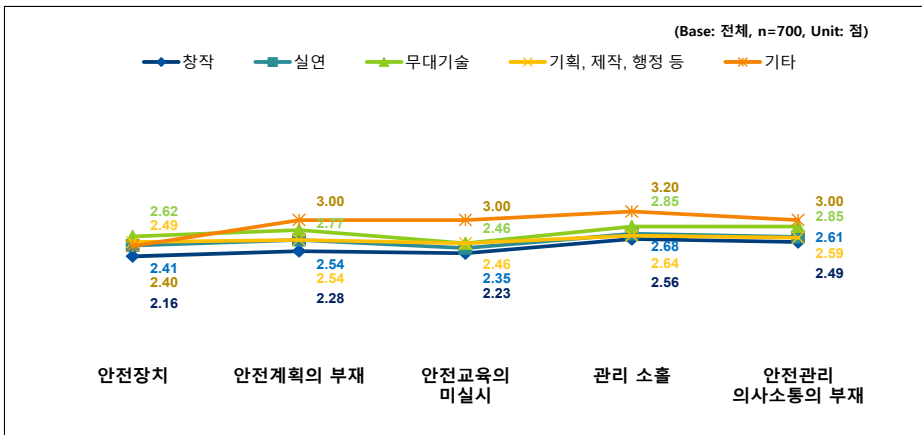


29)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20). 「예술인 산재보험 혜택 이야기 : 다시 예술가로, 다시 예술현장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구성

[그림 3-11]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의 원인 : 안전 대책 관련



[그림 3-12] 예술활동 유형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의 원인 : 안전 대책 관련



그러나 이러한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리 소홀 문제는 무대기술 분야에 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에 참가한 예술인들에 따르면 실연 예술인 또는 기획행정 분야의 예술인들도 이러한 안전의식의 부재에 관련해 다양한 안전사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무대에서 리허설 중이었는데 퇴근 시간이 되었다고 그냥 무대 불을 꺼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직 연주자들이 무대 위에 있는 상태였고 고가의 악기와 악보, 소지품 모두 다 있었죠 왜 그렇게 무작정 안전을 시키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냥 핸드폰 라이

트에 의존해 쟁쟁해지고 나왔어요. 다행히 다친 사람도 없었고 악기도 다치지 않았지만, 자칫 잘못해서 어디에 걸려 넘어지거나라도 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요. 안전에 대한 의식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음악 분야 예술인)

“협소한 라이브 클럽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소규모 공연장은 큰 규모의 공연장처럼 준비가 잘 되어있지 않다보니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연주, 철수할 때까지 주변에 부딪혀 발생하는 찰과상, 타박상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냥 타박상에서 멈추면 다행인데 가끔 크게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환경문제가 어쩔 수 없다는 식입니다.” (음악 분야 예술인)

2011년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일어난 지휘자 추락사망 사건의 경우 이러한 안전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문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다. 리허설임에도 불구하고 오케스트라 피트가 내려가 있는 상태였고, 매우 어두운 조명으로 인해 지휘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추락해 사망하였다.

[사례] 경기도문화의전당 지휘자 추락 사망 사건

- (1) 사고종류: 스태프 추락
- (2) 사고일: 2011-09-21
- (3) 장소: 경기도 문화의전당
- (4) 사고내용: 19일 오후 2시 10분 경 수원시 인계동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관 대극장에서 리허설을 준비하기 위해 무대에 오르던 플루트합주단 지휘자가 4.7m 아래 오케스트라 피트(pit)로 추락하였다. 추락으로 인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를 후인 21일 사망했다. 당시 공연장 안은 무대 앞과 객석 사이에 있는 피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고, 피트 장치가 이미 작동돼 있어 피트가 무대보다 한참 내려가 있었지만, 지휘자는 현장에서 이를 전달 받지 못했다. 리허설 시간이 되어 지휘자가 객석에서 무대로 이동하였고, 이동식 간이계단이 놓여 있어 피해자는 의심하지 않고 무대로 걸어갔으나 당시 피트가 내려져 있는 상태였다. 이후 사망자 유족은 사고가 난 시각은 대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객석 및 오케스트라 피트가 어두웠던 점, 피트가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이동용 간이계단을 두어 현장의 인원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게 한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 (5) 사고원인: 리허설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객석 및 무대조명이 켜져 있지 않았고, 피트가 내려가 있었고, 객석에서 무대로 건너갈 수 있도록 이동식 간이계단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안내 사인 및 안전 펜스나 현장 안전 요원이 없었다.
- (6) 사고결과: 지휘자 1명이 사망했다.
- (7) 사고처리: 보상 및 사과가 없어 유족이 개인적 차원에서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의 실수로 치부한 언론 멘트 등을 바로잡기 위한 청원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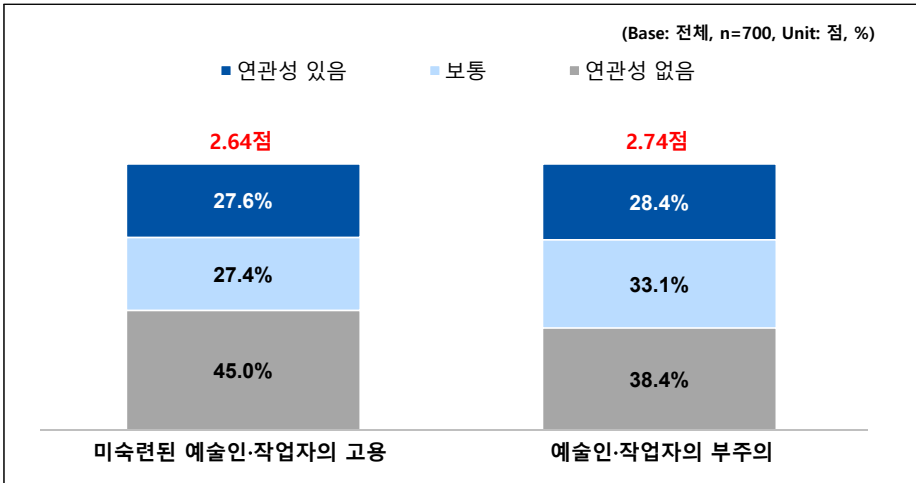
인터뷰에 참여한 예술인과 자문위원들에 따르면 이러한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소홀은 우리 공연예술분야의 안전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오랜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업자의 안전보다는 공연을 올리는 것, 그 자체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전은 공연의 성공적인 개최보다 후순위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안전교육이 의무화된 이후 동영상 강의를 통해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안전을 위한 계획이나 의사소통 구조 등을 통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낙 공연계에서도 안전사고가 많이 나다보니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나아진 편이예요. 그래도 아직도 현장에서는 안전 문제는 후순위입니다. 해외에서는 매우 앞 순위에 있어요. 안전을 책임지는 총책임자가 무대기술 전체 총 책임자이고 안전에 관해서는 연출자도 이들의 의견을 존중하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연출자나 지휘자 등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고,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실현시키는 것이 모든 것의 최우선에 있어요.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는 의문이에요.” (무대기술 분야 자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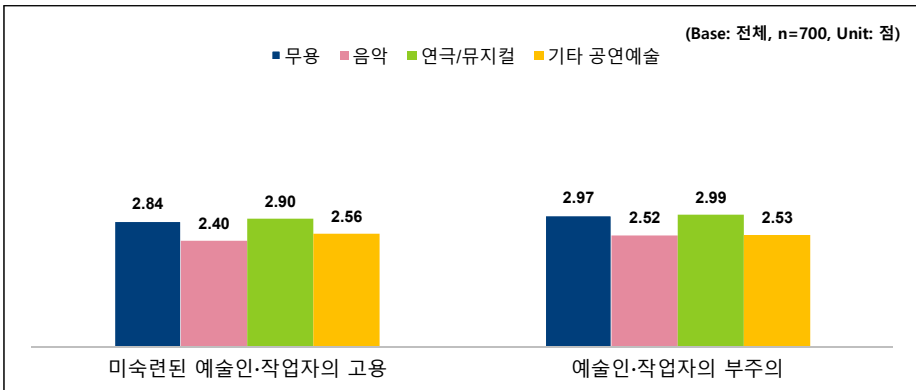
2.2. 미숙함과 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 다른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의 원인 중 숙련도 및 부주의 부분에서는 ‘예술인·작업자의 부주의’가 2.7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숙련된 예술인·작업자의 고용’(2.6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르별로는 ‘미숙련된 예술인·작업자의 고용’과, ‘예술인·작업자의 부주의’ 모두 ‘연극/뮤지컬’이 각각 2.90점, 2.9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미숙련된 예술인·작업자의 고용’과 ‘예술인·작업자의 부주의’ 모두 ‘무대기술’이 각각 3.58점과 3.2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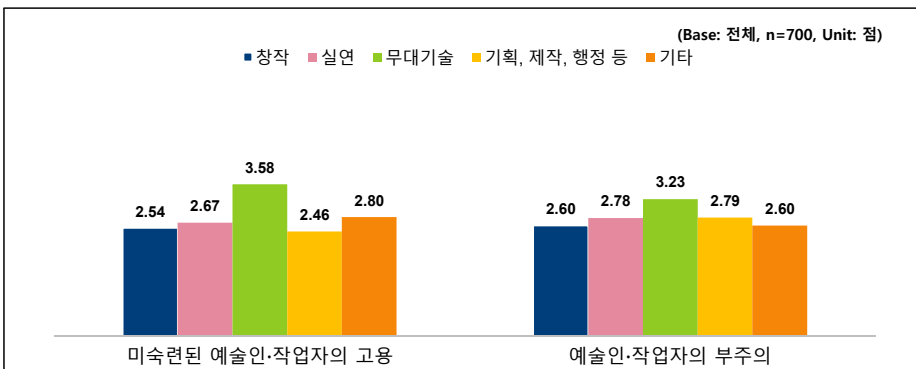
[그림 3-13]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의 원인 : 숙련도 및 부주의



[그림 3-14]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의 원인 : 숙련도 및 부주의



[그림 3-15] 예술활동 유형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의 원인 : 숙련도 및 부주의



인터뷰에 참가한 예술인들에 따르면 ‘예술인·작업자의 부주의’는 철저한 안전교육과 안전관리 체계와 크게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무대 환경에 맞게 안전관리 계획이 잡혀있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자가 존재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철저한 안전교육이 진행된다면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크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의 책임자가 작업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예술인을 교육하며,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수행하면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더라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시설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데에 그쳐요. 하지만 사실은 안전 전반을 계획하고, 관련 예산을 짜고, 관리하는 ‘관리자(manager)’ 급으로 일해야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하위 직급 직원이 안전관리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전관리자는 현장의 모든 작업을 총 책임지는 권한을 가져야 하고, 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스태프와 예술인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대기술 분야 자문위원)

두 번째 원인으로 지적되는 ‘미숙련된 예술인·작업자의 고용’의 경우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험성의 정도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3-12>에 보듯이, 우리 공연예술 분야의 업무상 사고/출퇴근 경험률을 ‘계약형태’에 따라 교차분석을 해본 결과, ‘단기일용직 등’이 근로자나 프리랜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일용직들은 주로 각 분야의 하위 직급에서 일하는 이들이 이런 계약을 많이 체결하는데, 이들은 공연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매우 낮고, 관련한 전공을 하지 않았거나, 아직 학생인 경우도 많다. 단기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참여한 이들이어서 공연장과 무대라는 장소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공연의 진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많아 안전에 가장 취약하다.

그러나 우리 공연예술 현장에서는 이러한 미숙련 예술인·작업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의 문제인데, 모든 스태프를 숙련된 예술인으로 고용하기에는 한정된 제작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공연예술계의 제작사 또는 단체들이 일부 사업체와 공공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매우 영세한 재정구조를 가지다 보니 충분히 비용을 투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로 안전과 관련한 크고 작은 사고가 이들 미숙련 예술인·작업자들에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느끼는 미숙련 스태프의 문제는 그 체감도가 매우 커요. 자살한 사고부터 언론에 보도된 큰 사고들까지 대부분 이 분들한테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사고로 이어 지지는 않았지만 아찔했던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비용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물리적으로 충분한 수의 스태프가 필요한데, 모두 숙련자로 고용하면 예산이 받춰주기 힘들 거예요.” (무대기술 자문위원)

〈표 3-12〉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경험 : 계약형태에 따른 차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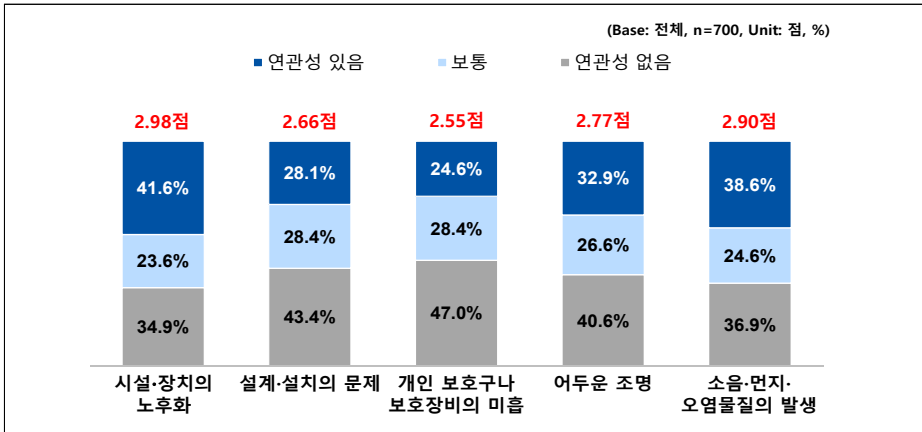
		사례수	있다	없다
■ 전체 ■		(700)	25.9	74.1
계약 형태	근로자	(63)	23.8	76.2
	프리랜서	(611)	25.7	74.3
	단기일용직 등	(26)	34.6	65.4

2.3. 부적절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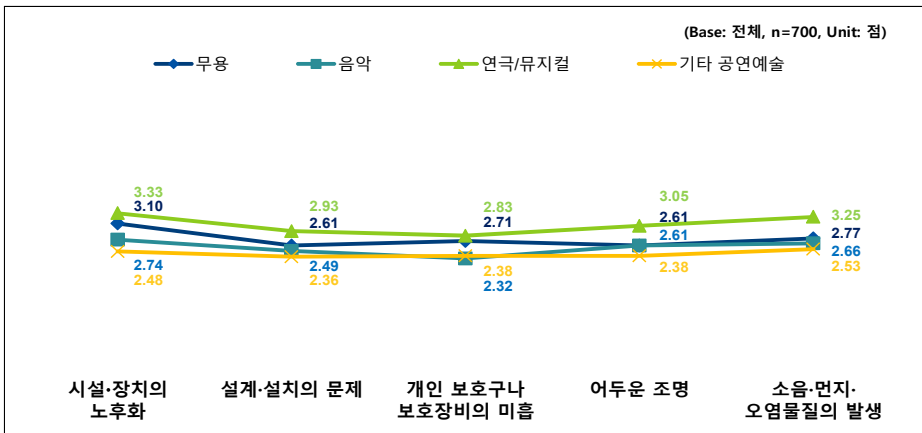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의 원인 중 ‘작업환경’과 관련한 원인은 ‘시설·장치의 노후화’가 2.9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음·먼지·오염물질의 발생’(2.90점), ‘어두운 조명’(2.7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연예술 장르별로는 ‘시설·장치의 노후화’, ‘설계·설치의 문제’, ‘개인 보호구나 보호장비의 미흡’, ‘어두운 조명’, ‘소음·먼지·오염물질의 발생’ 모두 ‘연극·뮤지컬’(각각 3.33점, 2.93점, 2.83점, 3.05점, 3.25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종별로는 ‘시설·장치의 노후화’, ‘설계·설치의 문제’, ‘개인 보호구나 보호장비의 미흡’, ‘어두운 조명’, ‘소음·먼지·오염물질의 발생’ 모두 ‘무대기술’(각각 3.58점, 3.15점, 2.73점, 3.08점, 3.23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극/뮤지컬 분야에서 특히 높게 나타난 것은 대학로를 비롯한 주로 공연되는 소극장들의 환경과 관계있었다. 국내 소극장 중에는 시설이 매우 노후화된 경우가 많으며, 예술인들이 안전하게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게 설계되어 있거나, 먼지 및 오염물질 등의 발생 정도도 높았다. 예술인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는 공연장의 환경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며 연습장의 환경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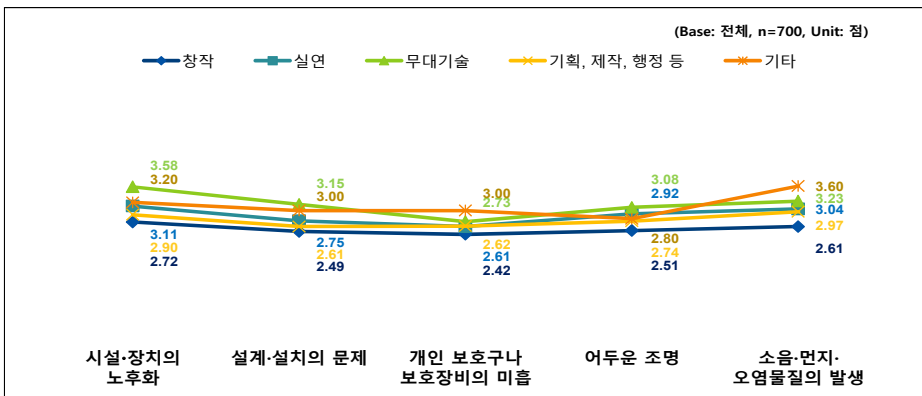
[그림 3-16]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의 원인 : 작업환경



[그림 3-17]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의 원인 : 작업환경



[그림 3-18] 예술활동 유형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의 원인 : 작업환경



“무대 설치를 위해서는 좁고 어두운 곳에 들어가야 할 일이 많아요. 자세가 안 나올 만큼 좁기도 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고 공기도 매우 나쁩니다. 연습장에도 벗겨진 벽이나 천장 등이 보이기도 하는데, 매우 위험해 보여서 겁나기도 해요.”(연극 분야 예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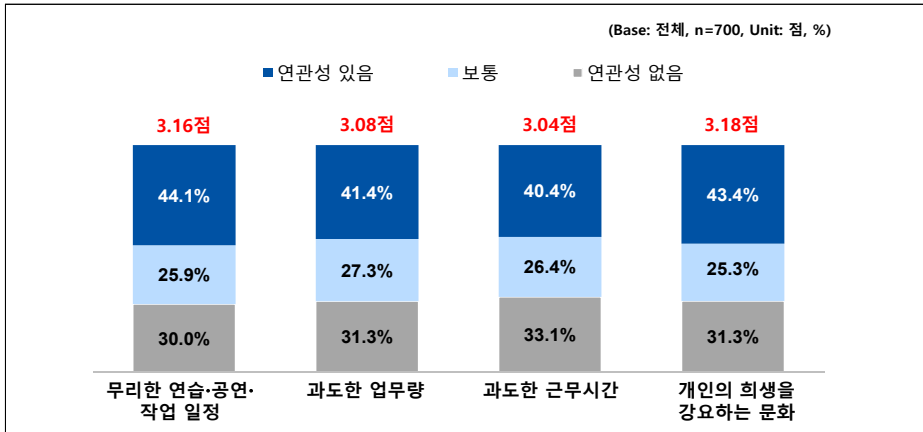
최근에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를 통해 전국의 노후화된 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 점검이나 시설·설비 설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에는 공연장 내 환기 시설 등에 대한 지원도 같이 이뤄지고 있다. 점차 상황이 많이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 현장에 체감하는 정도는 낮은 편인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안전진단 점검은 일반 공연장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예술인들이 느끼는 가장 위험한 작업환경은 야외 공연장과 같은 일반 공연장이 아닌 경우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설치, 설비 등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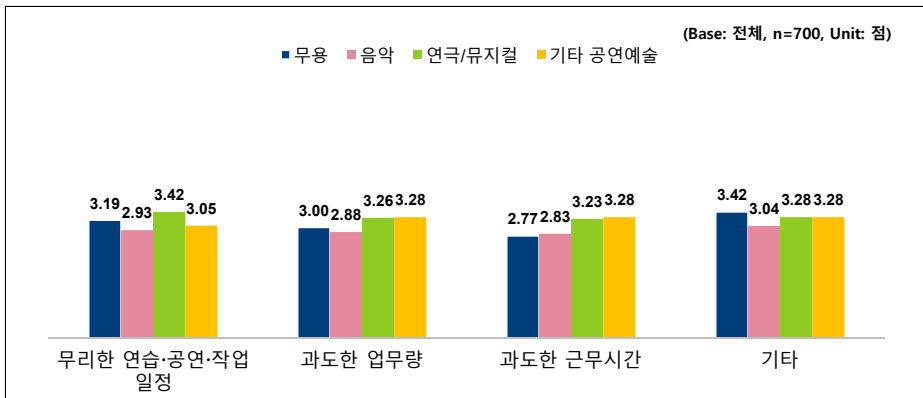
2.4.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공연계 문화의 문제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의 원인 중 ‘공연계 문화 및 관례’와 관련한 문제는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가 3.1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무리한 연습공연작업 일정’(3.16점), ‘과도한 업무량’(3.08점), ‘과도한 근무시간’(3.0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연예술 장르별로는 ‘무리한 연습공연작업 일정’은 ‘연극/뮤지컬’(3.42점), ‘과도한 업무량’과 ‘과도한 근무시간’은 ‘기타 공연예술’(각각 3.28점),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는 ‘무용’(3.42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종별로는 ‘무리한 연습공연작업 일정’, ‘과도한 업무량’, ‘과도한 근무시간’,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 모두 무대기술(각각 3.58점, 3.62점, 3.65점, 3.42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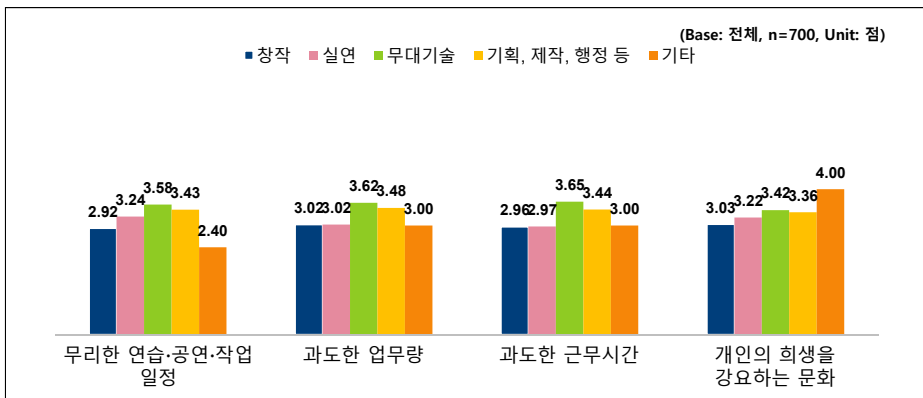
[그림 3-19]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의 원인 : 공연계 문화 및 관례



[그림 3-20]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의 원인 : 공연계 문화 및 관례



[그림 3-21] 예술활동 유형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의 원인 : 공연계 문화 및 관례



가장 큰 점수를 기록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는 인터뷰에서도 지적되었다. 공연예술분야에는 “어떠한 일이 있든 공연은 진행되어야 한다(The show must go on)”는 의식이 지배적이다. 이는 매우 프로페셔널한 의식이지만 때로는 공연을 위해서는 개인이 어느 정도 이상의 위험을 감내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에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불평하면 다음엔 저를 안 부르겠죠 저 말고도 할 사람은 많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현장이라도 그냥 감내하고 해야죠 안전 관련한 것은 모두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열악한 제작사나 단체 입장에서는 충분히 투자하기 힘들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지금의 공연계의 발전은 어쩌면 열의를 가진 수많은 개인들의 희생의 결과물이에요”(연극 분야 예술인)

‘무리한 연습공연작업 일정’ 또한 모든 분야의 공연예술인들이 안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한 문제이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셋업 및 리허설 시간의 부족이었다. 무대기술 분야 예술인의 경우 한정된 시간에 셋업을 완료해야 하다보니 사전 안전교육을 충분히 진행할 수 없음은 물론, 시간에 쫓겨 진행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연 예술인의 경우에도 안전장치가 충분히 설치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무대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시간을 가지지 못해 사고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와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셋업 기간입니다. 장기 뮤지컬의 경우 셋업만 3주하고, 무대 리허설은 1달 정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수도 이후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례상 3~5일, 많아야 7일 정도 셋업 기간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라이선스 공연의 경우 정해진 것이 있어서 그보다 더 가지기도 하고요 철수도 매우 급하게 이루어져서 이 때 사고가 많이 나요. 다 비용의 문제와 관련하기 때문에 영세한 제작사만 탓하기도 어려워요”(무대기술 분야 자문위원)

“배우는 무대 환경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무대 리허설 시간은 짧다보니 충분히 무대 환경에 대해 인지하고 공연을 할 수 없어요. 충분한 리허설과 안전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보니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긴장하고 그냥 공연을 해야 합니다. 배우가 리허설 중 유리에 부딪혀 혹은 난 상태로 그냥 공연을 해야 한 때도 있고, 무대 상단에 묶여 있었는데 제대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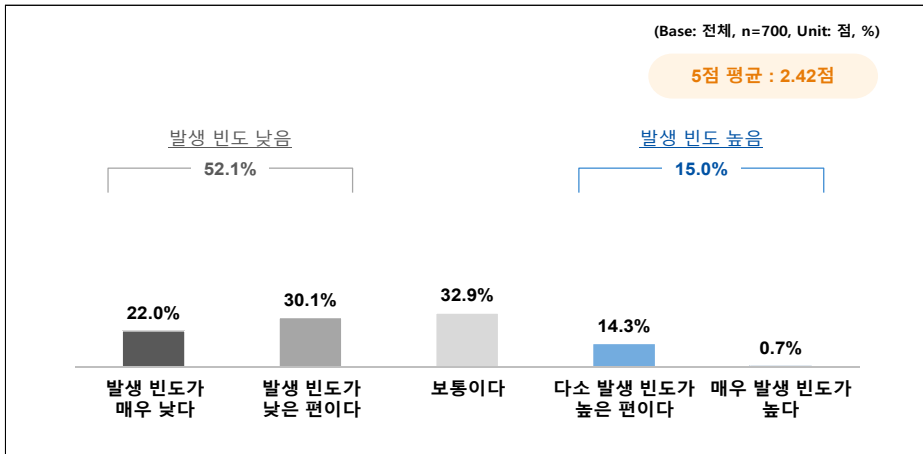
떨어져서 허리수술을 받은 적도 있어요.”(연극 분야 예술인)

3. 직업활동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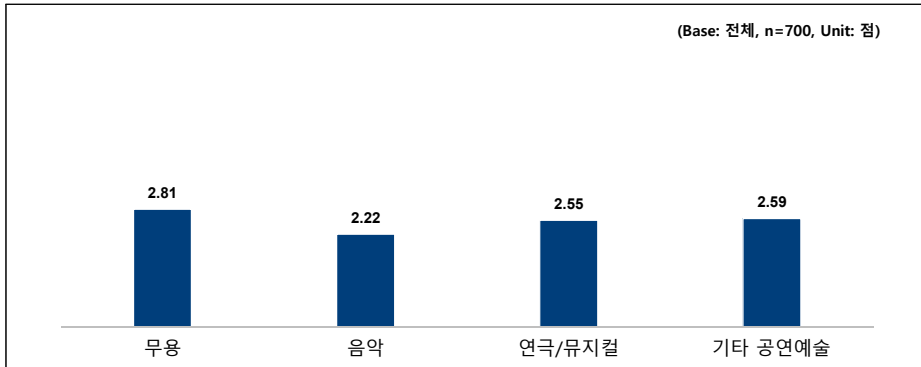
3.1.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의 빈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연예술인들은 다양한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 그 빈도는 (5점 평균 기준) 2.42점으로 나타났다. ‘발생 빈도 낮음’은 52.1%(발생 빈도가 매우 낮다 : 22.0% + 발생 빈도가 낮은 편이다 : 30.1%)로 ‘발생 빈도 높음’(15.0%)(다소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다 : 14.3% + 매우 발생 빈도가 높다 : 0.7%)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르별로는 ‘무용’이 2.8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 공연예술’(2.59점), ‘연극/뮤지컬’(2.55점) 등의 순으로 업무상 사고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무대기술’이 2.8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획, 제작, 행정 등’(2.69점), ‘실연’(2.4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연예술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가 모든 공연예술인이 겪는다할 만큼의 자주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가 빈번히 일어나는 분야의 경우에도 1% 내외인 경우를 감안할 때 공연예술분야 또한 빈번히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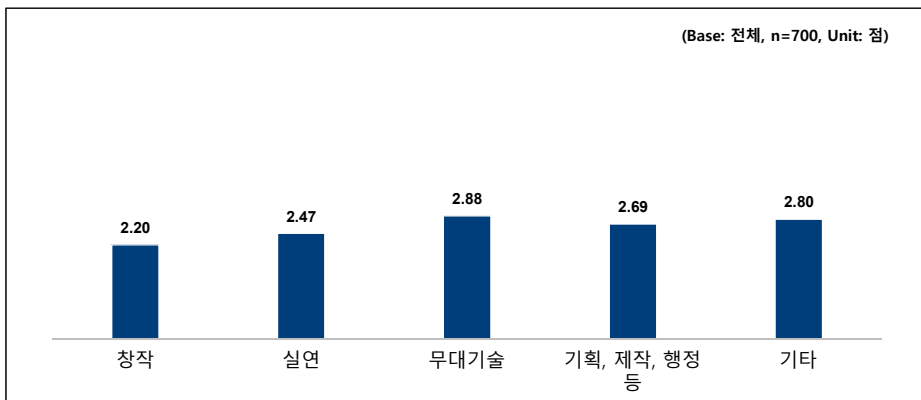
[그림 3-22]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빈도



[그림 3-23]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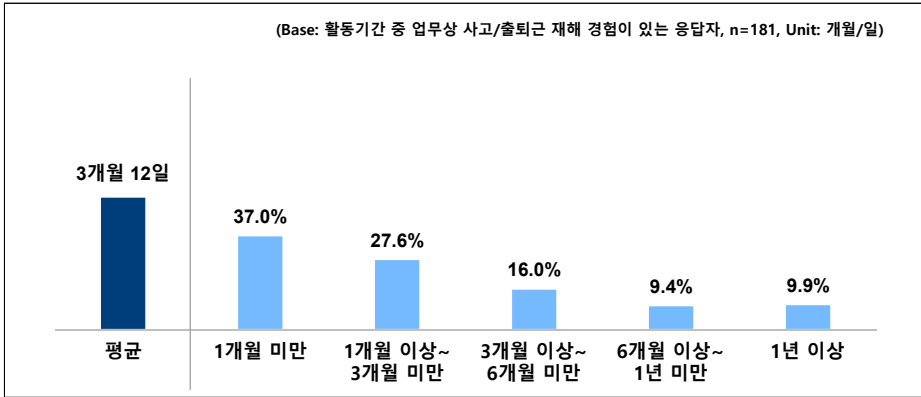
[그림 3-24] 예술활동 유형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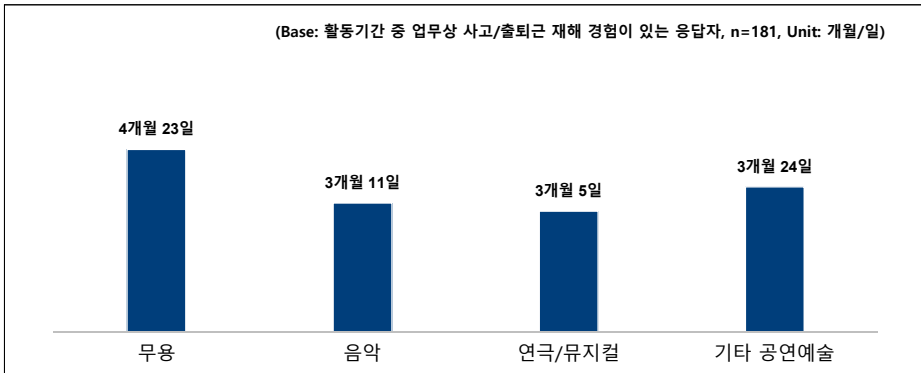
3.2.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로 인해 일(예술활동)을 쉬 기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로 인해 ‘일(예술활동)’을 쉬 기간에 대한 질문에서는 ‘평균 3개월 12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1개월 미만’이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개월 이상~3개월 미만’(27.6%), ‘3개월 이상~6개월 미만’(1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르별로는 신체적 사용이 가장 많은 ‘무용’이 ‘평균 4개월 23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고, ‘기타 공연예술’(평균 3개월 24일), ‘음악’(평균 3개월 11일) 등의 순으로 업무상 사고로 인해 일을 쉬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창작이 ‘평균 4개월 15일’로 가장 길게 나타났고, ‘기획, 제작, 행정 등’(평균 4개월 10일), 실연(평균 3개월 1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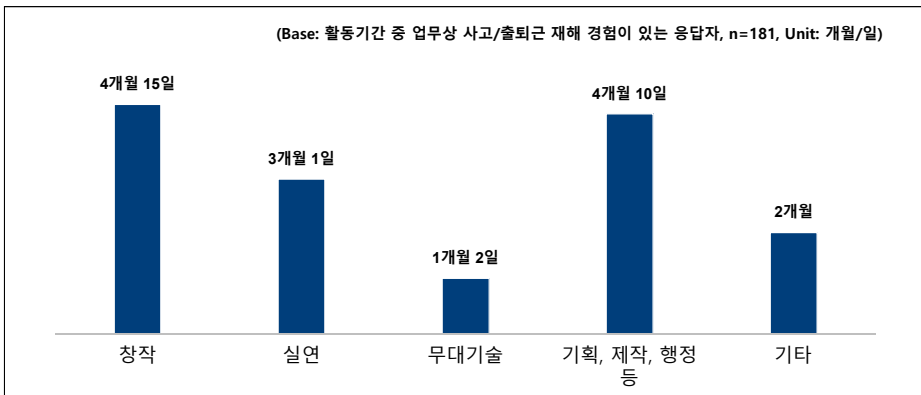
[그림 3-25]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로 인해 '일(예술활동)'을 쉬 기간



[그림 3-26]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로 인해 '일(예술활동)'을 쉬 기간



[그림 3-27] 예술활동 유형별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로 인해 '일(예술활동)'을 쉬 기간



제3절 공연예술인의 업무상 질병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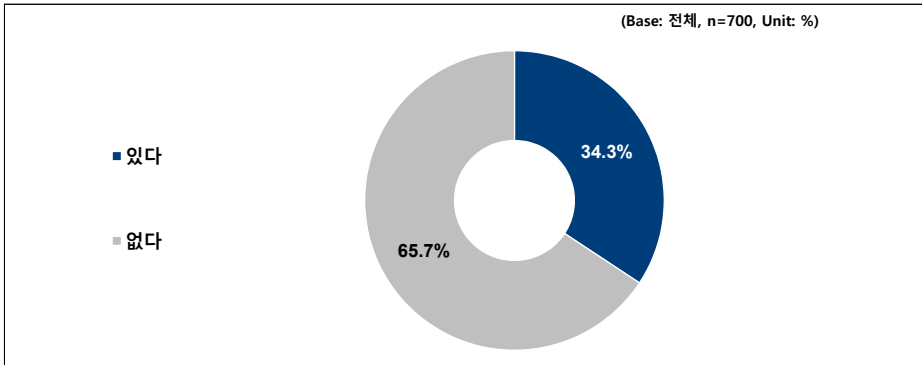
1. 만성적 근골격계 질환 및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질병의 발생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뿐만 아니라 업무상의 이유로 겪는 건강 이상이나 질병도 포함하고 있다. 공연예술인들은 직업 활동의 특성상 상당한 수준의 질병을 겪고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공연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업무상 질병을 설문조사, 인터뷰, 그리고 관련 해외 문헌을 토대로 공연예술인의 업무 특성, 특정한 자세 등과 비교하며 질병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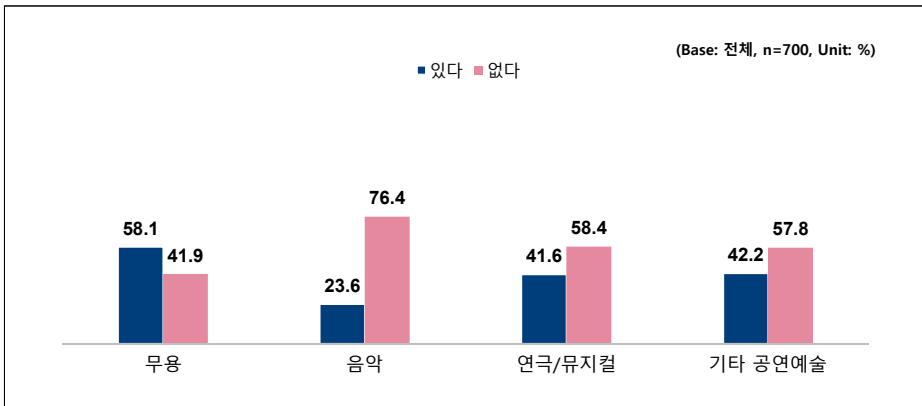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 공연예술인 중 업무상 질병 경험이 있는 예술인은 전체 응답자 중 34.3%를 차지했다. 예술활동 증명 분야별로 살펴보면, '무용'의 경우는 58.1%가 질병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유일하게 질병 경험이 없는 비율보다 있는 비율이 더 높았다. 다음으로는 '기타 공연예술분야'(42.2%), '연극/뮤지컬' 분야(41.6%)가 업무상 질병 경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예술활동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대기술'이 53.8%, '기획, 제작, 행정 등'(44.3%), '기타'(40%), '실연'(36.6%), '창작'(25.9%) 순으로 나타나, 무대기술 분야가 가장 질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표 3-2>의 고용노동부의 「2021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중 업무상 질병발생률은 0.11%를 차지하고 있다. 질병 발생 고위험 직군으로 알려진 '광업'의 경우 질병 재해율은 31.23%를 기록하고 있으며, 광업 외 모든 직군의 질병 재해율은 0.2%를 밑돌고 있다(<표 3-13>).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조사는 각 산업별 한 해 질병 재해율을 전수조사한 결과이고,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는 표본그룹 7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한 해가 아닌 지금까지의 경험여부를 묻는 조사이므로 표본에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예술인의 업무상 질병 경험률 34.4%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 공연예술인들이 겪는 업무내용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꽤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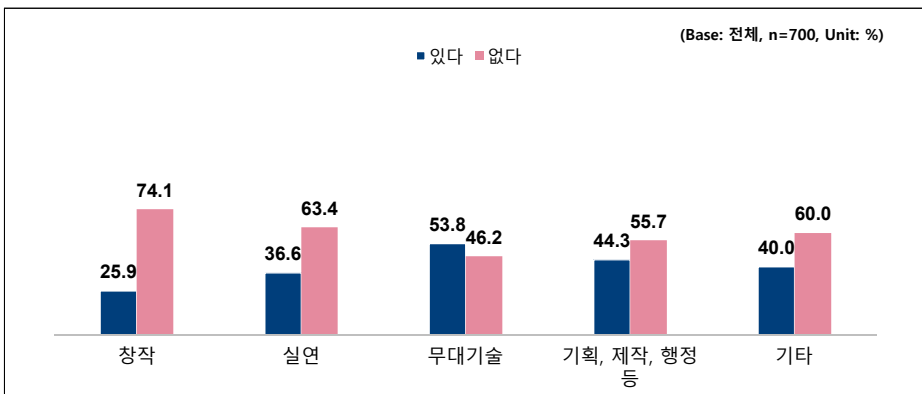
[그림 3-28] 업무상 질병 경험



[그림 3-29] 예술활동증명분야별 업무상 질병 경험



[그림 3-30] 예술활동유형별 업무상 질병 경험



〈표 3-13〉 2021 산업재해 업종별 질병 재해자수 및 재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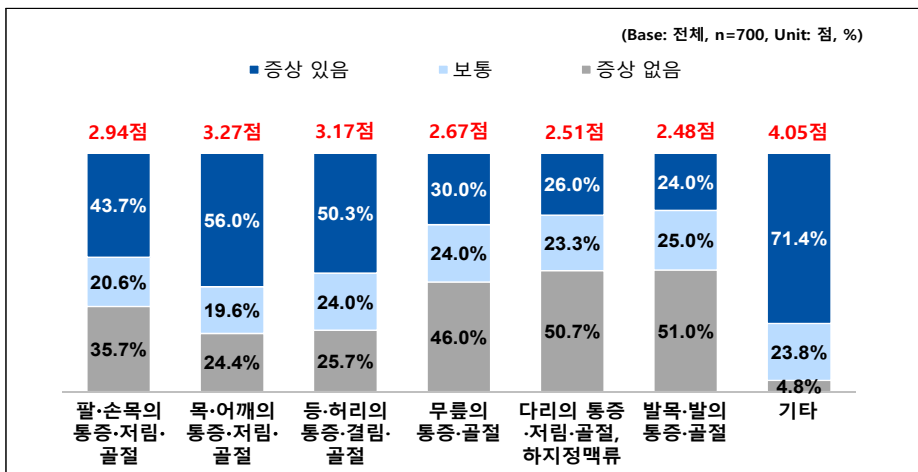
(단위 : 명, %, %₁₀₀, %P, %_{100P})

구 분	2021. 1~12월			전년 대비 증감률	
	근로자수	질병 재해자수	질병 재해율	질병 재해자수	질병 재해율
총 계	19,378,565	20,435	0.11	27.8	37.5
광 업	10,257	3,203	31.23	22.6	27.5
제 조 업	3,959,780	7,444	0.19	30.3	35.7
건 설 업	2,378,751	3,055	0.13	40.0	30.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79,791	28	0.04	55.6	100.0
운수·창고·통신업	993,678	943	0.09	26.2	12.5
임 업	110,395	31	0.03	19.2	0.0
기타의 사업	10,980,274	5,575	0.05	22.1	25.0
어 업	4,955	7	0.14	75.0	75.0
농 업	78,999	38	0.05	-17.4	-16.7
금융 및 보험업	781,685	111	0.01	33.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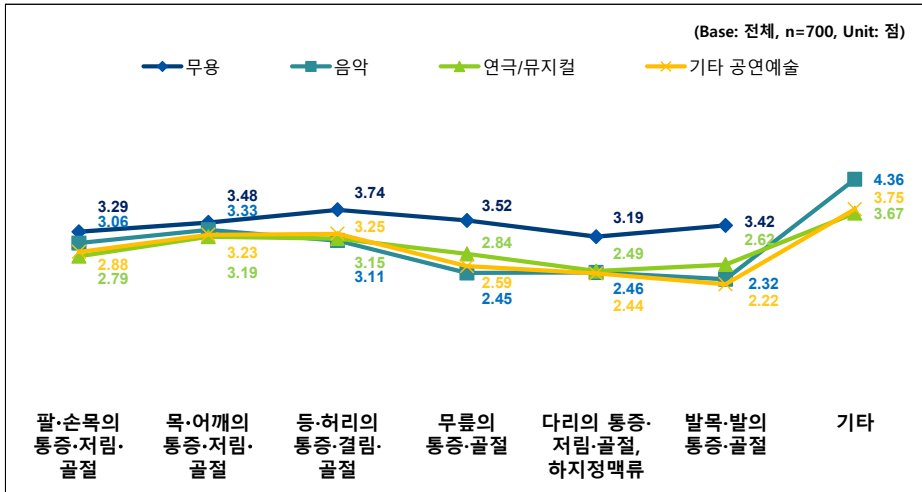
1.1 공연예술인의 업무상 근골격계 질환의 종류 및 내용

공연예술인들이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이다. 신체 부위별로 보면 ‘목·어깨의 통증·저림·골절’이 3.2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등·허리의 통증·결림·골절’(3.17점), ‘팔·손목의 통증·저림·골절’(2.9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31]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종류_근골격계 질환



[그림 3-32] 예술활동 증명 분야별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종류_근골격계 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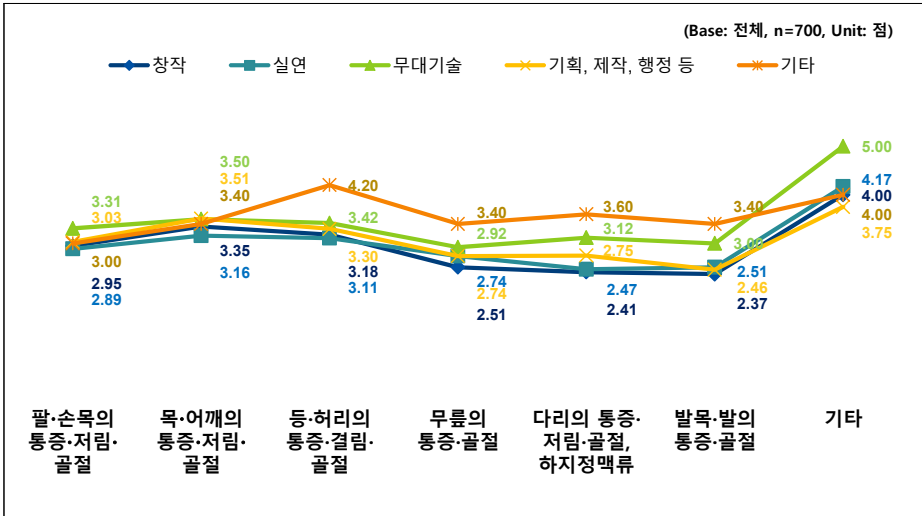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 모든 근골격계 질환에서 ‘무용’ 분야는 타 예술 종사자보다 근골격계 질환을 크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예술 분야의 경우 전반적으로 ‘상지’ 장애 비율이 높은 반면, 무용가들은 상지뿐 아니라 무릎 및 발목, 발의 통증과 골절과 같은 ‘하지’ 장애 역시 높은 비율로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음악’ 분야는 목과 어깨, 등과 허리, 팔과 손목, 다리, 무릎, 발목과 발 순으로 장애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음악가들이 통증, 근력 약화, 저림 등의 광범위한 상지 장애를 일컫는 연주 관련 근골격 장애(Playing-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PRMDs)를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와 동일한 결과였다.³⁰⁾ ‘국악’ 분야의 경우 서양 음악 연주자와는 달리 하지 장애가 발생하는 편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가야금, 거문고, 아쟁, 해금과 같은 국악기 연주자의 경우 양반다리로 오랜 기간 앉아서 연습 및 공연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목, 어깨, 등, 무릎에서도 질환이 관찰된다고 연구된 바 있다.³¹⁾ ‘연극 및 뮤지컬’ 분야 종사자는 목과 어깨, 등과 허리, 무릎, 팔과 손목, 발목과 발, 다리 순으로 질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지뿐 아니라 하지 장애 역시 질병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보

30) Kaur, J. & Singh, S.(2016), Neuromusculoskeletal Problems Of Upper Extremities In Musicians : A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Therapies and Rehabilitation Research*, 5(2):14.

31) Jung Yong Kim, Seung Nam Min, Young Jin Cho, Jun Hyeok Choi(2012). The Prevalence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of Traditional Korean String Instrument Player. *대한인간공학회지*. 제31권 제6호. pp. 749-756.

여주는데 이는 무용과 연극배우로 구성된 웨스트엔드 실연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부상의 50%가 하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해외 연구의 결과와도 유사하다.³²⁾

[그림 3-33] 예술활동유형별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종류_근골격계 질환



예술활동 유형별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무대기술’ 종사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팔·손목의 통증·저림·골절’, ‘등·허리의 통증·결림·골절’, ‘무릎의 통증·골절’은 무대기술, ‘다리의 통증·저림·골절, 하지정맥류’, ‘발목·발의 통증·골절’ 모두 무대기술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목·어깨의 통증·저림·골절’은 ‘기획, 제작, 행정 분야’가 3.51점으로 3.5점인 무대기술 분야보다 근소한 차이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무대기술 스태프의 경우 무거운 무대 설비의 이동 및 설치 과정에서 신체에 무리를 가하는 경우가 많고, 작업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자세를 장시간 취하면서 신체에 과도한 긴장과 무리가 가해지는 경우가 많아 이와 같이 근골격계 질환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기획, 제작, 행정’ 분야 종사자의 경우 실연자나 무대기술 스태프와 같이 격렬한 동작이나 비정상적인 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은 드문 편이며, 목과 어깨의 통증, 결림, 골절 경험 빈도가 다른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업무는

32) Evans, R. W., Evans, R. I., & Carvajal, S.(1998), Survey of injuries among West End performers,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55, pp. 585-593.

일반 사무직과 비슷하게 한 공간에 앉아서 한 가지 자세로 오랫동안 작업하는 편이라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연예술인들이 겪는 근골격계 질환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공연예술인의 상지 근골격계 질환 (upper limb disorders)

상지 근골격계 질환은 <그림 3-32>에서 나타나듯 모든 장르의 공연예술인들에게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음악 분야 종사자들의 경우 특히 상지 근골격계 질환에 집중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음악가들이 악기를 상체 근육을 사용해 연주하는 것과 관계있으며 악기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질환이 다르게 나타난다. 음악가들이 직업활동과 관계해 겪는 근골격계 질환을 ‘연주 관련 근골격 장애(PRMD)’라고 하는데, 통증, 근력 약화, 저림 등의 광범위한 상지 장애를 앓고 있으며, 유병률이 60-80%에 이른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장애는 특정 연주 기술 및 자세(오용), 빈도 및 연습 시간과 관련이 있으며, 연령, 성별, 직업 및 연주 수준(과용)과 관련될 수 있다.³³⁾ 음악가들 이외에도 무용 국악, 무대기술 분야에서도 다양한 상지 근골격계 질환을 발견할 수 있다.

1) 팔·손목의 통증·저림·골절

공연예술인들이 흔하게 경험하는 상지 근골격계 질환 중 하나가 손 장애이다. 과사용 증후군, 손 압박 증후군, 국소 근긴장 이상, 손 부상 등으로 나타나는 손 장애는 손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아마디오와 루소티 (Amadio & Russotti, 1990)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 연령 29세의 음악가 100명 중 40명이 손 관련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피아니스트(56.5%), 바이올리니스트(13.0%), 기타리스트(8.7%), 팀파니 연주자(6.5%), 현악기 연주자(2.0%) 순으로 손 장애가 발견되었다. 가장 흔한 진단은 건염(31%), 상지 압박 신경 증후군(22.5%), 수근관 증후군(13.0%), 원지 회내 증후군(3.5%), 국소 근긴장 이상(9.0%), 방아쇠 손가락 및 엄지(4.4%), 손 관절 불안정성(7.0%), 부상 및 관련 합병증(12.0%), 손 및 손목 신경절(7.0%) 순이었다. 대부분의 환자(84%)에게 보존적 치료(conservative treatment)가 적용되었는데, 이 경우 환

33) Kaur, J. & Singh, S.(2016), Neuromusculoskeletal Problems Of Upper Extremities In Musicians : A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Therapies and Rehabilitation Research*, 5(2):14.

자의 85%는 이전 활동과 음악 상태로 완전히 복구했다고 밝혔다.³⁴⁾

티비아나와 샤마뉴(Tubiana & Chamagne, 1993)도 243명의 피아니스트와 98명의 바이올리니스트에 대한 근골격계 연구를 발표했는데 손 관련 문제가 많았다. 243명의 피아니스트 중 88명은 국소성 근긴장 이상, 73명은 과사용 증후군, 48명은 손 부상 및 압박 신경 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43명(17.7%)만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98명의 바이올리니스트 중 33명이 국소성 근긴장 이상, 36명은 과사용 증후군, 19명은 상지의 부상 및 압박 신경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중 10명(10%)이 외과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³⁵⁾ 이그나티아디스 외 4인(Ignatiadis et al., 2008)의 연구에서도 음악가들이 겪는 손 장애 유형을 분석했다. 과사용 증후군, 신경 포착 증후군과 근긴장 이상증은 흔하게 발생되었으며, 특히 피아니스트와 바이올리니스트에게 더 자주 나타났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음악가들은 일반인보다 과사용 증후군이 2배 더 발생하며 신경 압박 증후군도 동일한 빈도로 발견되었다. 아울러 국소 근긴장 이상(focal dystonia)은 20배 더 자주 발생하고, 손 부상(hand injuries)은 더 흔히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³⁶⁾

2) 목·어깨의 통증·저림·골절

공연예술인들이 자주 겪는 또 다른 근골격계 질환으로는 목·어깨를 들 수 있다. 앞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그림 3-32]) 무용에서 높은 확률로 목·어깨 질환을 겪고 있었으며 음악 분야에서도 이러한 질환이 발견되고 있다. 해외 문헌에서도 음악가들의 목·어깨 질환에 대한 연구가 발견되는데 콕 외 4인(Kok et al., 2016)이 실시한 MPPA(Medical Problems of Performing Artists) 저널의 메타 분석 연구 결과³⁷⁾에 따르면, 전문 음악가의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은 9~68%인데 특히 목과 어깨는 가장 영향을 받는 해부학적 부위임을 발견하였다. 헤밍(Heming)의 연구³⁸⁾에서도 음악가 59명 중 70%가 악기와

34) Amadio, P. C., & Rusotti, G. M. (1990), Evaluation and treatment of hand and wrist musicians' disorders, *Hand Clin*, 6(3), pp. 405-416.

35) Tubiana, R., & Chamagne, P. (1993), Occupational arm ailments in musicians, *Bull Acad Natl Med*, 177(2), pp. 203-16.

36) Ignatiadis, I. A., Mavrogenis, A. F., Vasilas, S., Gerostathopoulos, N., & Dumontier C. (2008), Disorders of Musicians Hand, *EEEXOT*, 59(3), pp. 176-179.

37) Kok, L. M., Huisstede, B. M., Voorn, V. M., Schoones, J. W., & Nelissen, R. G. (2016), The occurrence of musculoskeletal complaints among professional musicians: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Archive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89(3), 373-96.

관련된 부상을 입었고 이 중 1/3은 일정 기간 동안 연주할 수 없었는데, 왼쪽 어깨 뒤쪽과 흉추 위쪽이 이들이 통증과 불편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양음악의 악기를 쥐는 자세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바이올린의 경우 목과 턱으로 바이올린을 누르고 어깨로 악기를 받으면서 연주하므로, 해당 근육에 지속적인 긴장과 무리가 오는 것이다. 첼로나 해금의 경우 지속적으로 팔을 드는 과정에서 어깨에 무리가 오며 목에도 긴장상태가 장시간 유지된다. 무용의 경우에도 남성 무용수의 경우 여성무용수를 어깨에 받히는 동작 등으로 인해 어깨에 무리가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등·허리의 통증·결림·골절

공연예술인들에게 발생하는 또 다른 상지 근골격계 질환으로 요통을 들 수 있는데, 앞서 [그림 3-32]와 같이 무용수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직종별로는 무대기술과 실연가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문제이다. 문헌에 따르면 무용수들이 많이 앓는 요통은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 신경근 통증을 동반한 디스크 문제, 흉추 통증 등인데,³⁹⁾ 일부 연구에 의하면 무용수에게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의 평생 발병률이 70~80%에 이른다고 보고된 바 있다.⁴⁰⁾ 척추 관절 간 부분의 응력 골절을 의미하는 척추분리증이 무용수에게 발병할 비율은 일반 인구의 4배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춤에서 발생하는 증가된 굴곡과 신전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⁴¹⁾ 척추전방전위증은 무용수들 사이에서 흔한 질환으로 척추뼈가 다른 척추뼈로 이탈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리한 동작이 반복되면서 이러한 질환이 반복되며 이는 여성 댄서보다 남성에게 더 흔하게 발견되고 있다.

38) M.J.E Heming(2004). Occupational injuries suffered by classical musicians through overuse. *Clinical Chiropractic*. Volume 7, Issue 2, June 2004, pp. 55-66

39) Malkogeorgos, A. ; Mavrovouniotis, F. ; Zaggelidis, G. ; Ciucurel, C. (2011). Common dance related musculoskeletal injuries.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2011 Vol.11 No.3 pp. 259-266.

40) Mickeli, L. J., & Wood, R. (1995), Back pain in young athletes: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adults in causes and patterns,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49, 15-18; Ramel, E., & Moritz, U. (1994), Self-reported musculoskeletal pain and discomfort in professional ballet dancers in Sweden, *Scandinavian Journal of Rehabilitation Medicine*, 26, pp. 11-6.

41) Mickeli, L. J. (1983), Back injuries in dancers, *Clinics in Sports Medicine*, 2, pp. 473-484.

“발레 전공 남자들은 주로 허리 디스크가 많습니다. 2000년 쯤 무용단 남자 단원을 관리해 주었는데,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이라서 병원 치료를 권장했으나, 리허설 등의 일정으로 병원에 가기보다 침을 맞았다고 해요. 결국 디스크가 터져 마비가 와서 응급으로 수술을 들어갔고, 그 이후 무용수로서의 커리어가 중단되었습니다. 발레에서는 남자 무용수가 여성 무용수를 들어야 하는데, 요즘 여성 무용수가 키가 많이 커졌고, 남자 무용수의 인원은 적은 편입니다. 파 드 되(Pas de Deux, 남성과 여성 듀엣) 동작 시 남자 무용수들의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이로 인해 요즘은 남자 무용수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하곤 합니다.” (무용 분야 자문위원)

또한 무거운 장비를 들거나 하중을 견뎌야 하는 무대기술 분야에서도 등·허리와 관련한 문제들은 자주 발견된다. 장시간 다양한 장비를 들거나 이동하는 일이 많아 발생하는 것으로, 장기간 이러한 업무가 반복되면 허리에 디스크가 걸리는 사례도 있었다.

“대부분 현장에서 기술, 세트 팀은 하중 관련한 일들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모두 허리가 좋지 않아요. 손발이 다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허리 부상은 이 일을 오래 할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해요. 직업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보는지에 대한 답을 하자면,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목소리를 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요.” (무대기술 분야 자문위원)

4) 그 외 상지 근골격계 질환

그 외 공연예술인들이 겪는 상지 근골격계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음악 연주자들에게는 치아 관련 질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관악기 연주자의 경우, 이갈이 및 턱과 두개골을 연결하는 관절(측두하악 관절 또는 턱관절 장애)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입과 턱에 힘을 주며 연주해야 하는 트롬본 연주자와 튜바 연주자의 경우 다른 연주자에 비해 이갈이나 턱 관절의 딸깍거리는 소리(크레피투스, crepitus)의 발생률이 증가하며 해당 근육과 뼈에 붓기와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발견되며 심하면 디스크로 발전되기도 한다. 그 외에도 건조한 입술과 윗입술의 굳은살도 관악기 연주자들에게 흔한 증상이다.⁴²⁾

바이올린과 비올라 연주자에게도 치아와 관련한 증상이 발견되고 있다. 이들은 악기를 어깨와 턱 사이에 쥐면서 압력을 가하고 이를 악물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연주자들은 얼굴 양쪽의 뺨 근육, 턱 등에 통증을 겪거나 어금니 등이 갈라지기도 한다. 오보에, 잉글리시 호른, 파곳과 같이 더블 리드를 사용하는 악기의 경우, 리드와 치아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심하면 구강 궤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구강 내 압력이 증가하면 타액을 분비하는 침샘에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클라리넷이나 색소폰과 같은 싱글 리드 악기의 연주자는 대부분의 무게와 압력이 아래턱에 가 있어 아래 치아의 깨물면서 이가 마모되거나 부서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⁴³⁾

나. 공연예술인의 하지 근골격계 질환

하지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특히 무용인들에게 많이 발견되는 질환인데, 직업적 특성에 따라 다른 장르의 공연예술인에게도 발견될 수 있다. 메킨타이어와 조이(Macintyre & Joy, 2000)의 연구에 의하면, 힙합, 탭, 뮤지컬, 재즈, 포크, 민족, 모던, 클래식 발레와 같은 다양한 댄스 테크닉과 스타일의 대부분의 댄서들은 한 개 이상의 댄스 관련 부상을 겪는데, 모든 댄스 부상 중 80%는 하지에서 발생하고 20%는 척추에서 발생하고 있었다.⁴⁴⁾ 말코저고스 외 3인(Malkogeorgos et al., 2011)의 연구에서 역시 모든 댄스 부상의 대부분은 하지(엉덩이, 다리와 무릎, 발목, 발)에서 발견되었으며,⁴⁵⁾ 브로드웨이 공연 무용수의 경우도 가장 빈번한 부상 부위는 하지(52%), 등(22%), 목(12%) 순으로 조사되었다.⁴⁶⁾ 본 보고서의 인터뷰에서도 많은 무용수들이 어린 시절부터 발목, 다리, 허리 등에 끊임없는 부상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주로 과사용, 근육 긴장, 염좌 등으로

42) New Orleans Musician's Clinic & Assistance Foundation. DENTAL CONCERNS SPECIFIC TO INSTRUMENT GROUPS. <https://neworleansmusiciansclinic.org/health-clinic/health-topics/> (검색일: 2022.07.22.)

43) New Orleans Musician's Clinic & Assistance Foundation. DENTAL CONCERNS SPECIFIC TO INSTRUMENT GROUPS. <https://neworleansmusiciansclinic.org/health-clinic/health-topics/> (검색일: 2022.07.22.)

44) Macintyre, J., & Joy, E. (2000), Foot and ankle injuries in dance, *Clinics in Sports Medicine*, 19(2), pp. 351-68.

45) Malkogeorgos, A., Mavrovouniotis, F., Zaggelidis, G., & Ciucurel, C. (2011), Common dance related musculoskeletal injuries,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11(3), pp. 259-266.

46) Evans, R. W., Evans, R. I., Carvajal, S., & Perry, S. (1996), A survey of injuries among Broadway performers, *Am J Public Health*, 86(1), pp. 77-80.

인한 것이었다. 하지 근골격계 질환은 남녀 모두에게 발견되고 있으나 남성 무용수가 여성 무용수보다 부상 비율이 높은 편이다.⁴⁷⁾ 무용 관련 부상의 원인은 해부학적 정렬의 문제가 일반적인 원인이지만, 그 외에도 열악한 훈련, 기술적 오류, 익숙하지 않은 안무 또는 스타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⁴⁸⁾

1) 무릎의 통증·골절

공연예술인들이 흔히 겪는 하지 근골격계 질환 중 하나는 무릎 관련 질병이었다. 무용인들의 경우 슬개대퇴부 통증(특히 슬개건염), 연골연화증, 슬개골하 건염, 플리카 증후군, 인대 부상, 반월판 부상 등을 흔하게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⁴⁹⁾ 슬개대퇴부 통증은 무릎과 슬개골 전방의 통증을 지칭하는데, 특히 계단을 내려오거나 점프를 하는 등 구부러진 무릎에 체중을 싣는 동작을 할 경우 통증이 발생한다. 사두근을 양 측면으로 동일하게 당기지 않는 나쁜 다리 정렬에 의해 야기되는 무릎 관절의 외회전은 이 부위의 연골을 닳게 할 수 있다. 연골연화증은 슬개골의 아래쪽 표면에 있는 연골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육상선수, 체조 선수에게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무용수에게도 흔하게 발견되고 있었다.⁵⁰⁾ 슬개골하 건염은 높은 점프로부터 유발되는 것으로 직업상 점프가 많은 무용수에게는 흔하게 관찰된다.⁵¹⁾ 플리카 증후군 또는 내측 관절낭 변형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발을 고정할 때 무릎의 내측 부분을 따라 스트레스를 가하는 춤을 추는 무용수에게 흔한 나타나는 문제이다. 인대 부상 중 무용수 무릎에 대한 가장 심각한 부상은 전방 십자 인대의 파열이다.⁵²⁾ 반월상 연골 손상도 전문 무용가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으

47) Luke, A. C., Kinney, S. A., D'Hemecourt, P. A., Baum, J., Owen, Mi. & Micheli, L. J. (2002), Determinants of Injuries in Young Dancers, *Medical Problems of Performing Artists*, 17(3), pp. 105-112.

48) Malkogeorgos, A., Mavrovouniotis, F., Zaggelidis, G., & Ciucurel, C. (2011), Common dance related musculoskeletal injuries,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11(3), pp. 259-266.

49) Malkogeorgos, A., Mavrovouniotis, F., Zaggelidis, G., & Ciucurel, C. (2011), Common dance related musculoskeletal injuries,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11(3), pp. 259-266.

50) Petrucci, G. (1993),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Dance Injuries, *Orthopaedic nursing*, 12(2), pp. 52-60.

51) Hamilton, W. G., Hamilton, L. H., Marshall, P., & Molnar, M. (1992), A profile of the musculoskeletal characteristics of elite professional ballet dancers, *The American journal of sports medicine*, 20(3), pp. 267-73.

며, 무릎을 잠그거나 완전히 펴지 못하는 비틀림 부상의 병력이 보고되었다.⁵³⁾

“(발레 무용수들은) 무릎이 툭 튀어나오지 않게 보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백 니(back knee) 훈련을 시킵니다. 다리를 펼 때 뒤꿈치가 땅에 안 닿고 무릎이 닿도록, 무릎을 뒤로 밀어서 쓰도록 훈련을 받죠. X자 다리가 미적으로는 예쁘지만 이는 부상을 많이 유발합니다. 무릎의 형태 때문에도 부상이 발생합니다. (발레 동작은) 비정상적인 자세를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무용 분야 자문위원)

무릎과 관련한 질병은 예술 장르, 내용, 형식별로 다양한 이유에 의해 발생한다. 국악의 경우 바닥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무릎의 정렬이 틀어져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아동극의 경우 아동의 시선 높이를 맞추기 위해 구부린 자세를 취하는 과정에서 무릎에 무리가 가기도 한다.

“현재 아동극, 영유아 인형극을 하고 있는데, 공연 시 자세로 인한 무릎과 등허리 통증이 많습니다. 영유아 대상이다 보니 무릎을 펴고 진행하는 경우가 없고 구부린 상태에서 30분 이상 지속해야하기 때문에 누적되어 질병으로 이어졌어요. 인형극에서 받을 잡는 사람은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계속 움직여야 하니 무릎, 등, 허리 문제가 심하고, 위쪽을 잡는 사람은 어깨, 팔, 허리 통증이 심하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하기 보다는 아프다는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지나갑니다. 아파서 못하겠다고 할 경우 쉽게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어 활동을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연극 분야 예술인)

2) 다리의 통증·저림·골절, 하지정맥류

또 다른 공연예술인이 자주 겪는 근골격계 질환 부위는 다리였다. 특히 다리를 사용해 각종 표현을 하는 무용수들은 다리 관련한 질병이 많은 편인데 정강이 부목(내측 경골 스트레스 증후군), 피로골절 등이 있다.⁵⁴⁾ 정강이 부목으로도 알려진 내측 경골 스트레

52) Hamilton, W. G., Hamilton, L. H., Marshall, P., & Molnar, M. (1992), A profile of the musculoskeletal characteristics of elite professional ballet dancers, *The American journal of sports medicine*, 20(3), pp. 267-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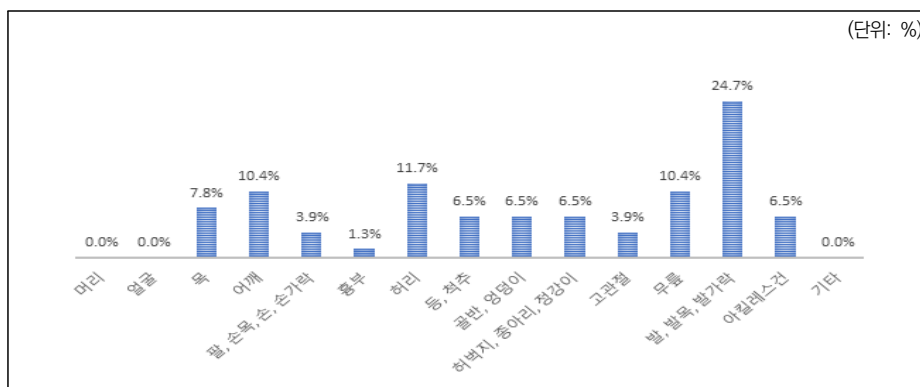
53) Schon, L., & Weinfeld, S. (1996), Lower extremity musculoskeletal problems in dancers, *Current opinion in Rheumatology*, 8, pp. 130-142.

스 증후군은 종아리 앞쪽의 통증을 가리키는 것으로 체육에서는 육상선수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다. 무용수의 경우 무용 바닥과 부딪히며 충격이 가해지면서 정강이 부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⁵⁵⁾ 피로 골절은 단일 특정 사건과의 관계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된 충격과 충격의 결과이다. 다리에 장시간, 장기간 지속적으로 힘을 주고 긴장을 시키는 과정에서 다리 근육 전체에 피로가 쌓이게 되며, 건증 및 스트레스 골절과 같은 남용 부상이 발생하게 된다.⁵⁶⁾

3) 발·발목의 통증·골절

발과 발목 통증과 골절은 특별히 무용수들이 가장 많이 겪는 질환이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 매년 발간되는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무용수들이 부상을 겪는 신체 부위는 발, 발목, 발가락이 6년간 항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림 3-34] 무용 예술인들의 주요 부상 부위



출처: 전문무용수지원센터(2021). 「2021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 90쪽.

54) Malkogeorgos, A., Mavrouniotis, F., Zaggelidis, G., & Ciucurel, C. (2011), Common dance related musculoskeletal injuries,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11(3), pp. 259-266.

55) Weiker, G. (1981), Dancers for the American Ballet Theater may have more stress fractures, *Physician and sports medicine*, 9(5), pp. 36.

56) Nilsson, C., Leanderson, J., Wykman, A., & Strender, L. E. (2001), The injury panorama in a Swedish professional ballet company, *Knee Surgery, Sports Traumatology, Arthroscopy*, 9(4), 242-6; Stretanski, M. F. (2002), Classical ballet: the full-contact sport,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Medicine & Rehabilitation*, 81(5), pp. 392-3.

“발레 무용수에 한해 말하자면, 여자 무용수의 경우 발, 무릎, 골반 순으로 부상이 많고, 남자 무용수의 경우 발, 허리, 어깨 순으로 부상을 많이 입습니다. 발레는 밸런스를 잡거나 하는 모든 동작을 발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발에 가장 무리가 많이 갑니다. 부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공연 리허설 때이고, 오전보다는 오후에 많이 발생하며 이때가 가장 피로가 누적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부상당한 곳을 정확히 치료하지 않고 연습을 이어가 또 다른 부위에 과중한 부하를 줘서 또 다른 부상을 야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모든 점프를 발로 하고 착지하기에 점프 상황에서 가장 많이 다칩니다.” (무용 분야 자문위원)

무용인이 흔히 겪는 발목 관련 질환으로는 아킬레스 건병증, 외측 인대 발목 염좌, 장 무지굴근 건병증, 비골 건병증, 전방 경골 건병증, 후방 경골 건병증, 전방 발목 충돌 증후군, 후방 발목 충돌 증후군, 거골하 아탈구 등이 있다.⁵⁷⁾ 급성기에는 아킬레스건염이 격렬한 신체활동 시 통증을 유발하고, 점프에서 착지하면 증상이 악화된다. 초기 급성 건염 후 통증을 견디며 계속 작업하는 무용수는 힘줄 내 퇴행 및 파열 위험 증가와 함께 만성 건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⁵⁸⁾ 무용수들에게 가장 흔한 급성 부상은 발목 염좌이다. 전방 및 후방 충돌 증후군은 급성 및 과사용 손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다.⁵⁹⁾ 그러나 이러한 증상은 무용수뿐만 아니라 다른 공연예술인들에게도 때에 따라 발생하기도 한다.

“발목은 만성적이라 한 번 삐면 계속 삐고, 동작마다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남성 무용수는 피로가 쌓여 있을 때 점프하고 착지하는 순간 두 다리가 골절을 입어 1년 동안 재활을 한 적도 있었어요 서울 내 대학교 무용과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은 다리에 스트레스 골절이 있고, 어깨와 발목이 모두 안 좋았는데 작년 3월에 발목 수술 하고

57) Malkogeorgos, A., Mavrovouniotis, F., Zaggelidis, G., & Ciucurel, C. (2011), Common dance related musculoskeletal injuries,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11(3), pp. 259-266.

58) Stretanski, M. F., & Weber, G. J. (2002), Medical and rehabilitation issues in classical ballet,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Medicine & Rehabilitation*, 81(5), pp. 383-91.

59) Nilsson, C., Leanderson, J., Wykman, A., & Strender, L. E. (2001), The injury panorama in a Swedish professional ballet company, *Knee Surgery, Sports Traumatology, Arthroscopy*, 9(4), 242-6; Quirk, R. (1994), Common foot and ankle injuries in dance, *Orthopedic Clinics of North America*, 25(1), 123-33; Hardaker, W.T. Jr. (1989), Foot and ankle injuries in classical ballet dancers, *Orthopedic Clinics of North America*, 20(4), pp. 621-7.

나서도 6~8월에도 계속 공연을 해야 했었어요. 다친 발을 깎은 상태에서 다른 부위 재활 훈련을 했고 병원 치료가 모두 종료된 후부터는 다친 부위의 훈련을 진행했죠. 그러다 올해 6월 초에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응급실에 갔을 때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수술 받았던 발이기 때문에 구획증후군을 의심했어요. 정밀 진단을 받았고 결국 구획증후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성 무용수는 인원수가 적어서 학생 때도 워낙 들어갈 작품의 수가 많다 보니 자신을 돌볼 시간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무용 분야 자문위원)

“저는 탈춤, 풍물, 줄타기 등을 하는데, 이 공연들은 굉장히 과격해서 몸이 상당히 많이 다칩니다. 소고놀이를 하는 경우 대부분 아킬레스건이 많이 찢어지는데, 그런 외증에도 공연을 하죠. 부상을 당해도 이게 산업재해니깐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공연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전통연희 분야 예술가)

4) 골반의 통증·골절

또 다른 무용수들이 흔히 겪는 하지 근골격계 질환 부위 중 하나가 골반인데, 발음성 고관절 증후군, 엉덩이 관절순 눈물, 장요근 긴장, 이상근 증후군, 좌골 둔부 증후군 등이 있다.⁶⁰⁾ 발음성 고관절 증후군은 허벅지가 움직일 때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으로, 착지 시 인대가 외측 고관절 위로 미끄러지면서 발생한다. 이는 달리기 또는 점프를 하는 육상선수들에게 많이 발견되는 것인데, 발레 무용수들의 사타구니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⁶¹⁾ 고관절의 깊은 외부 회전근인 이상근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상근 증후군은 무용수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다. 대개 좌골신경통과 혼동되는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충격을 동반한 후방 고관절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근육 긴장으로 인해 좌골 둔부 증후군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엉덩이 주변의 후방 통증으로 나타난다.⁶²⁾

국악 분야에서도 이러한 골반과 관련한 통증이 흔하게 나타난다. 본 보고서의 인터뷰

60) Malkogeorgos, A., Mavrouniotis, F., Zaggelidis, G., & Ciucurel, C. (2011), Common dance related musculoskeletal injuries,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11(3), pp. 259-266.

61) Reid, D.C. (1988), Prevention of hip and knee injuries in ballet dancers, *Sports Medicine*, 6(5), 295-307; Teitz, C. (2000), Hip and knee injuries in dancers, *Journal of Dance Medicine and Science*, 4(1), pp. 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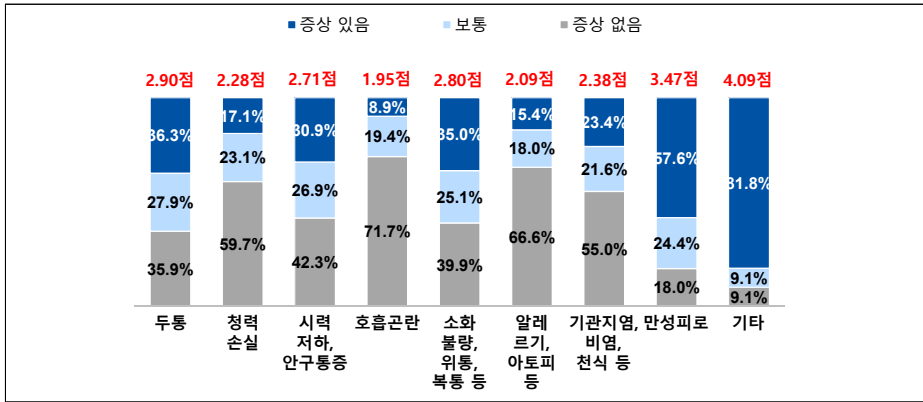
62) Schon, L., & Weinfeld, S. (1996), Lower extremity musculoskeletal problems in dancers, *Current opinion in Rheumatology*, 8, pp. 130-142.

에 따르면 많은 국악 분야 연주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바닥에 앉아 장시간 연주를 하면서 엉덩이 관절이 벌어지고 주변 부위에 상당한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업무상 문제로 인한 공연예술인의 질병

공연예술인들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이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직업적 특성으로 유발되는 질병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성피로’가 3.47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두통’(2.90점), ‘소화불량, 위통, 복통 등(소화기)’(2.8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35]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종류_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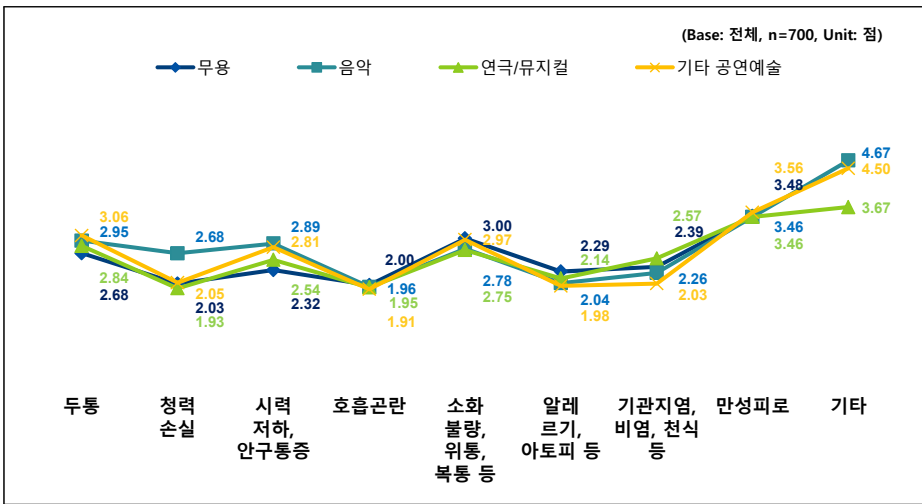


장르별로 살펴보면, 두통, 청력손실, 시력저하 안구통증은 ‘음악’(각각 2.95점, 2.68점, 2.89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호흡곤란(2.00점), 소화불량, 위통, 복통 등,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무용’(각각 2.00점, 3.00점, 2.29점), 기관지염, 비염, 천식 등은 ‘연극/뮤지컬’(2.57점) 만성피로는 ‘기타 공연예술’(3.56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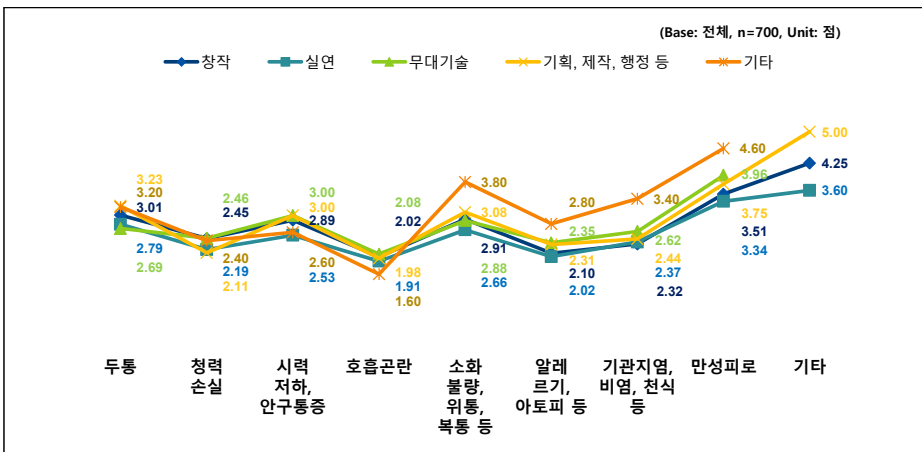
모든 공연예술분야에서 다양한 질병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며 수치상으로는 질병 종류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음악’ 분야의 경우 ‘청력 손실’이 타 예술장르 분야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는 점, 마른 체형이 이상화된 문화 속 다이어트를 요구받는 ‘무용수’들에게서 소화불량, 위통, 복통과 같은 ‘소화기 질환’이 가장 높은 수치로 경험하고 있다는 점, 목소리 사용량이 많고 환기가 안 되고 먼지가 많은 소극장 공연이 많은

‘연극’ 분야의 경우 ‘기관지염, 비염, 천식’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점 등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술활동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대기술’은 청력손실(2.46점), 시력저하, 안구통증(3.00점), 호흡곤란(2.08점), 알레르기 아토피 등(2.35점), 기관지염 비염 천식 등(2.62점), 만성피로(3.96점)에서 다른 예술활동 유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획, 제작, 행정’ 등은 두통(3.23점), 시력저하 안구통증(3.00점), 소화불량, 위통, 복통 등(3.08점)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림 3-36] 예술활동증명분야별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종류_질병



[그림 3-37] 예술활동 유형별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종류_질병



가. 청력 손실

청력과 관련한 질환은 음악이나 국악 등의 분야 공연예술인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다. 디나카란 외 2인(Dinakaran et al., 2018)의 연구에 따르면, 음악가들은 청력 상실과 이명을 자주 경험하고 일반인보다 이명에 더 취약하며, 음악으로 인한 청각 과민 및 이중 청각 장애도 보고되었다.⁶³⁾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유해한 소음 노출이 하루 8시간 근무 시 평균 85dB(A) 이상이 되면 소음노출을 시작한다고 보고 있는데, 라이브 콘서트 및 연습 세션 동안 측정된 사운드 레벨은 qhxd 102.5dB(A)에서 106dB(A)까지 다양하여 안전 한계를 초과하고 있다고 조사된 바 있다.⁶⁴⁾

이러한 높은 수준 소음뿐 아니라 많은 연습 시간은 청력 문제를 발생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음악가는 생계를 청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청각 기능의 변화는 생계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가의 청각 손상에 대한 위험 인식과 청력 보존을 위한 귀보호장치(EPD) 착용 등과 같은 예방 조치는 부족한 상황이다.⁶⁵⁾

“오케스트라 구성 상 목관 악기 뒤에 금관악기 연주자들이 있는데 요즘 큰 공연장에는 오케스트라 공연 시 목관과 금관 사이 가림막을 해주지만 모든 공연장이 이를 해주지는 못하죠. 공연을 하면서 목관악기 연주자가 뒤 금관 악기 소리가 시끄럽다고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고 지휘자의 영역도 아니고, 이는 공연장에서 보완해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유럽에서는 연주자 개인이 보청기를 쓰기도 하는데 연주 처음부터 끝까지 시끄러운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조절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보청기를 끼는 사람까지는 보지 못했고, 가림막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음악 분야 예술인)

“저도 연습실에서 귀마개 없이 하다 보니 청력이 좋지 않아요. 현재 연주보다는 음향, 믹스 마스터 위주, 악기 렌탈- 피트 쪽에 들어가는 일도 하는데, 음향기술 쪽 사람들이 확실히 청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실감할 때가 많아요.” (음악 분야 예술인)

63) Dinakaran, T., Deborah, D. R., & RejoyThadathil, C. (2018), Awareness of Musicians on Ear Protection and Tinnitus: A Preliminary Study, *Audiology Research*, 8(1), pp. 9-12.

64) New Orleans Musician's Clinic & Assistance Foundation. THE EFFECTS OF LOUD NOISE ON MUSICIANS.

<https://neworleansmusiciansclinic.org/wp-content/uploads/2019/08/Hearing-Effects-of-Loud-Noise.pdf> (검색일: 2022.07.22.)

65) Dinakaran, T., Deborah, D. R., & RejoyThadathil, C. (2018), Awareness of Musicians on Ear Protection and Tinnitus: A Preliminary Study, *Audiology Research*, 8(1), pp. 9-12.

음악인들뿐 아니라 무대기술 스태프 역시 공연장에서 장시간 한쪽 청력에 의존하게 만드는 음향 장비 및 인터컴 사용으로 청력 손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전 연주뿐 아니라 기획, 음향, 장비 설치, 교육(강의)까지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음향 작업의 경우 공연장에서 개인 모니터로 들을 때 항상 왼쪽으로 모니터를 줄 때가 많아 왼쪽 귀의 청력에 문제가 생겼고, 이제 안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오른쪽으로 바꿔서 모니터를 하는데 그래서 오른쪽 귀도 안 좋아지고 있어요.” (국악 분야 예술가)

“인터컴을 한 쪽에 끼기 때문에 이게 누적되다 보면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생겨 번갈아가며 끼우기도 하고, 조명의 광원을 계속 받다보니 눈도 안 좋아지죠. 이것들이 산업재해로 볼 수 있지만 이야기 하긴 어려운 상황이죠. 두통도 만성으로 있습니다.” (무대기술 분야 자문위원)

나. 영양 불균형

신체를 매체로 하는 무용의 예술적 특성상 무용수들은 외형적 체형을 중요시 하게 되고 뛰어난 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과 더불어 식이요법을 병행한다. 깡마른 몸을 선호하는 무용계 분위기를 따라 과도하고 잘못된 식이요법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영양 불균형으로 건강을 해치고 무용수에게 요구되는 최상의 운동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무용수들은 영양 측면에서도 많이 부족합니다. 직업 무용수들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계속 훈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대에 서야한다는 강박으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죠.” (무용 분야 자문위원)

무용수들의 영양 섭취 문제는 이들에게 빈혈, 성장 저하, 기초 대사량 감소, 신경성 거식증 및 폭식증 등의 섭식 장애를 가져오며 심한 경우에는 월경 불순과 같은 생식기 장애, 그리고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장애 등을 겪을 수 있다. 국내 발레전공 여대생의 영양 상

태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무용대학생들의 평균 단백질 섭취량은 권장량의 86.5%에 머물렀으며 지방 섭취량은 23.1%로 대조군 25.2%보다 낮은 편이었다. 비타민 C를 제외하고는 모든 영양소의 섭취량이 권장량보다 낮은 상태였다. 월경주기가 '규칙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발레전공군은 52.2%로 나타나 '규칙적'이라고 답한 대조군 87.5%와 큰 차이를 보였다.⁶⁶⁾ 초경 지연은 여성 무용수의 70%에서 발생하며, 무월경은 청소년 무용수의 50%, 성인 무용수의 78%에서 나타나고, 이는 신체적,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⁶⁷⁾ 해밀턴(Hamilton)은 무월경과 스트레스 골절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⁶⁸⁾ 무월경은 에스트로겐 감소 및 골밀도 감소와 관련이 있으며 낮은 칼로리 섭취, 낮은 칼슘 수치, 격렬한 운동,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식이요법으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양 불충분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을 갖게 되고 만성 소화기관 장애를 앓게 되는 사례들은 종종 발견할 수 있다.

“한 여자 무용수는 어릴 때부터 피로 골절이 있었는데, 대학 졸업 후 오디션 통해 단원이 되었어요. 개인 차이는 있지만 그 친구의 경우 운동을 좋아하기보다는 피로가 쌓이면 마사지 등으로 푸는 편이었어요. 다이어트로 무용단을 들어가기는 했지만,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살이 찌고 허리 디스크까지 발생해 단원 생활을 그만두고 1년 반 넘게 재활 중이고 프리랜서로서 무용을 하고 있어요.” (무용 분야 자문위원)

“피로 골절이 온 경우 유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통증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뼈가 부러지는 것이 급성이고 스트레스성 골절은 미세하게 자극을 주다가 뼈에 손상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무용수들은 자극은 있는데 영양이 채워지지 않아서 스트레스성 골절이 많은 것입니다.” (무용 분야 자문위원)

66) 김나영·김희경·김석지·박명주·김석환·이정숙(2005), 발레전공 여대생의 영양상태조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0권 6호, pp. 835-844.

67) Liederbach, M., Gleim, G. W., & Nicholas, J. A. (1994), Physiologic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s of performance stress and onset of injuries in professional ballet dancers, *Medical Problems of Performing Artists*, 9(1), 10-14; Ostwald, P. F., Baron. B. C., Byl, N. M., & Wilson, E. R. (1994), Performing arts medicine, *Western Journal of Medicine*, 160(1), 48-52.

68) Hamilton, L. H., Hamilton, W. G., Meltzer, J. D., Marshall, P., & Molnar, M. (1989), Personality, stress, and injuries in professional ballet dancers, *American Journal of Sports Medicine*, 17(2), pp. 263-267.

“9살 때부터 주변으로부터 다이어트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어와서 이제는 스스로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겨 소화불량 등은 일상적으로 달고 사는 부분이고, 요즘 남자배우들도 이러한 이유로 소화불량 문제를 다들 가지고 있어요.” (연극 분야 예술인)

다. 그 외 공연예술인의 업무상 질병

공연예술인은 자신이 활동하는 예술 장르의 매체적 특성, 공연 환경의 특수성, 직무 유형 등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은 다양한 양상을 띤다. 먼저 성대결절은 성악가와 배우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지만 현장에서 항상 목소리로 큐를 외치는 무대감독 역시 목소리 관련 질병이 경험하기 쉽다.

“노래하는 사람의 경우 과도한(누적된) 연습으로 성대가 상하는 것이 흔하고, 성악가의 경우 잠을 잘 못자면 목소리부터 잠기기 때문에 잠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불편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악 분야 예술가)

“배우뿐만 아니라 감독들도 성대결절, 허리/목 디스크가 있습니다. 감독도 시작과 끝까지 큐를 주는데 늘 긴장하고 소리를 내다보니 감독들에게 성대결절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허리와 목디스크도 매우 많죠. 그런데 이것 탓하거나 이야기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어요.” (무대감독 분야 자문위원)

예술 장르의 매체적 특성이 아닌 공연장의 환경적 조건에 따라 천식, 기관지염, 시력 장애 등의 질병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특수효과 장비를 다수 사용하면서 이와 관련한 유해 물질 노출이나, 공기 오염 등으로 인해 기관지 관련 질환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다.

“공연장 내 먼지가 많아 천식, 기관지염도 많이 발생합니다. 서서 장시간 공연을 하다 보니 하지정맥류 문제를 겪는 동료 예술인들도 많고요. 예술인에게 요구하는 것과 달리 현장을 가보면 조건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가 많아요. 관악기 연주자의 경우, 기관지염, 천식이 많아요. 특히 공연장에서 스모그를 쓰면 연주자 및 악기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생황은 스모그가 조금만 있어도 안에 있는 날이 끊어집니다. 연주자들은 보컬이

아니기 때문에 스모그 등으로 인해 기관지가 안 좋다고 느껴도 무대에서 물을 마시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국악 분야 예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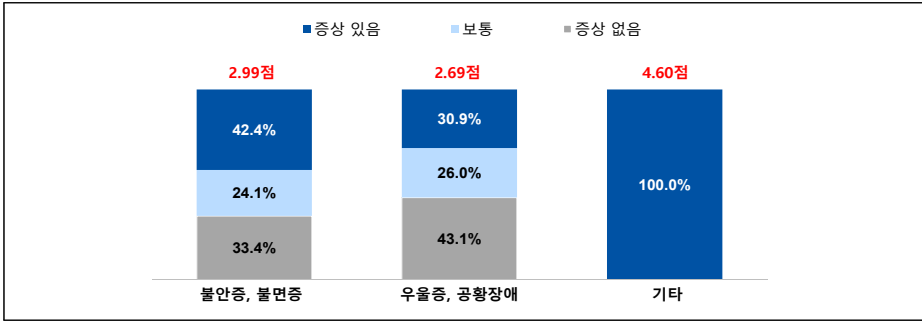
“동료 중 공연장 조명을 오랫동안 쬐어 와서 시력에 문제가 생겼고, 주변에서도 수고를 하지만 병원 진단 시 시력 저하의 원인이 ‘조명 때문이다’라고 소견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누적된 문제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죠.” (음악 분야 예술인)

1.3. 공연예술인의 업무상 정신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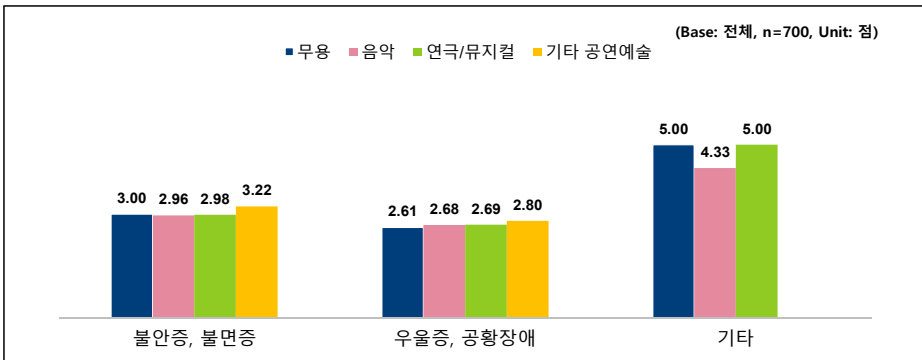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질병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포함된다. 최근 공연예술계에는 업무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인한 정신질환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활동 중 겪는 정신 질환은 ‘불안증, 불면증’이 2.9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우울증, 공황장애’(2.6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 증명분야별로 살펴보면, ‘불안증, 불면증’은 기타 공연예술(3.22점), 무용(3.00점), 연극/뮤지컬(2.98점), 음악(2.96점) 순으로, ‘우울증, 공황장애’는 기타 공연예술(2.80점), 연극/뮤지컬(2.69점), 음악(2.68점), 무용(2.61점)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술활동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안증, 불면증’은 ‘기획, 제작, 행정 등’이 3.0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우울증, 공황장애’는 ‘무대기술’(2.88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신질환의 경우 아직 산재보험 보상 승인을 받은 사례가 많지 않은 편인데, 이는 해당 정신질환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무상 문제로 인한 정신질환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한 의료기록이 있어야 하며, 업무상 문제로 인한 질병임을 밝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마련이 필요하다. 외부 기관의 판단이나 판결 기록이 있으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유리한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및 성폭력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은 노동위원회나 법원 등의 판결이 활용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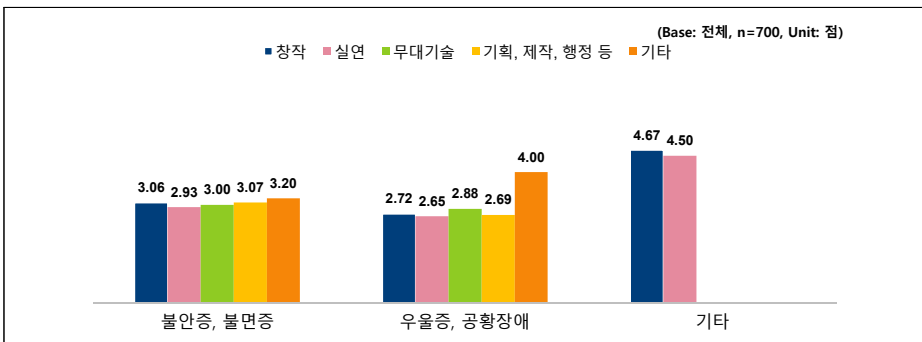
[그림 3-38]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종류_정신질환



[그림 3-39] 예술활동증명분야별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종류_정신질환



[그림 3-40] 예술활동유형별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종류_정신질환



가. 불안증, 불면증

인터뷰에 따르면 공연예술인들이 겪는 불안증, 불면증은 상당수가 직업적 불안정에서 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켈만(Kelman)의 연구에서

도 발레 무용수는 장시간의 연습, 잦은 투어, 늦은 공연 시간에 따른 육체적 부담과 함께, 부상으로 인한 실업, 오디션과 공연에 대한 불안과 같은 정신적 어려움을 마주한다고 하였다.⁶⁹⁾ 심리적 불안은 근육 긴장, 호흡 곤란, 떨림, 심계항진, 구강 건조 및 팔약근 조절 상실과 같은 신체적 증상을 유발하는데 이러한 신체적 증상 경험 가능성은 다시 불안을 증가시킨다.⁷⁰⁾

많은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으로만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입 창출을 위한 다른 일을 해야 할 때 오는 괴리감과 낮은 자존감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이어지곤 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의 기회가 급격하게 줄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하지만 정신적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고 이겨내야 하는 문제로 여기는 분위기 때문에 스스로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배우에게)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정신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들은 모두 프리랜서로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생계를 위한 직업을 갖지 않고 배우만으로도 생계가 되는 유형이 아니라면 이 불안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힘들죠. 본업이 배우인데, 생업을 위해 다른 일을 할 때의 괴리감과 선택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박탈감, 우울감, 공황장애 등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신 질환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낮은 자존감은 스스로 지키고 이겨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어 스스로 인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연극 분야 예술인)

“최근 1년 사이 가장 많이 체감하는 예술인들의 질병은 정신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캐스팅 되지 못할 때, 그리고 생업을 위해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시간을 할애해야 할 때의 괴리감도 있어 스스로 초라하다고 느낄 때도 많아요. 예술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자기 인지가 잘 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보이고, 그조차도 인지 못하는 심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로 심해졌다고 보이고요.” (연극 분야 예술인)

예술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임금체불의 문제도 예술인들에게 큰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

69) Kelman, B. B. (2000), Occupational stress in classical ballet: The impact in different cultures, *Medical Problems of Performing Artists*, 9(2), pp. 35-38.

70) Ostwald, P. F., Baron, B. C., Byl, N. M., & Wilson, E. R. (1994), Performing arts medicine, *Western Journal of Medicine*, 160(1), pp. 48-52.

용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보고된 예술인 신문고의 주된 신고 내용은 임금 체불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정신상담을 통해 예술인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주요한 문제는 창작과정에서 겪는 극도의 스트레스인데 이 또한 예술인들이 겪는 업무상 스트레스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나. 우울증, 공황장애

최근 많은 공연예술인들에게 우울증 또는 공황장애가 발견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무용수들에게 신체 상해는 우울증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⁷¹⁾ 노화로 인해 신체 능력의 저하 및 체형의 변화, 기회, 자부심 또는 인기의 상실, 높은 성과와 평범한 일상의 차이 등은 급성 우울증이나 기타 부적절한 감정을 유발하는 이유가 된다. 하지만 자신의 평판을 나빠진 것을 우려하여 우울증 또는 기타 부정적 감정을 타인에게 드러내지 않거나 부인하기도 한다.⁷²⁾ 2022년 국립발레단 드미솔리스트인 발레리나 김희선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인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고인이 최근 병가를 냈고 평소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업무상 질병 중 정신질환의 원인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들 수 있다. 상사와 동료의 폭언이나 의도적 배제, 사업장 내 폭력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되며, 성희롱 및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공연예술계는 오랫동안 도제식 문화와 엄격한 상하관계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인데, 특히 미투 운동을 통해 드러난 성희롱 및 성폭력의 만연과 이를 은폐하려는 문화는 공연예술인들에게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공연계 무대 쪽 사람들이 평범하지 않다보니 스트레스로 인해 직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스태프, 배우 대우가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이전에 스태프들이 하대를 받았었죠.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요즘 배우들 갑질도 많아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신적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 시간 때문에 (공연계로) 쉽게 진입하지만 반면 쉽게 떠나기도 합니다.” (무대기술 분야 자문위원)

71) Kelman, B. B. (2000), Occupational stress in classical ballet: The impact in different cultures, *Medical Problems of Performing Artists*, 9(2), pp. 3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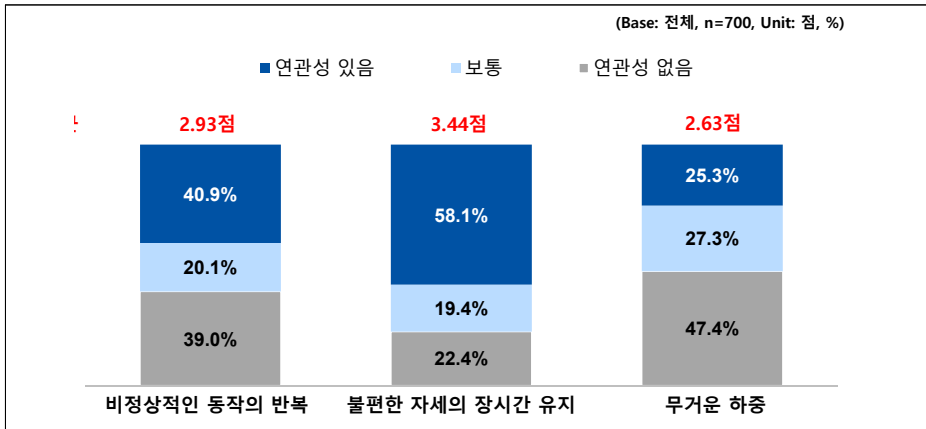
72) Ostwald, P. F., Baron. B. C., Byl, N. M., & Wilson, E. R. (1994), Performing arts medicine, *Western Journal of Medicine*, 160(1), pp. 48-52.

2. 업무 특징으로 인한 문제와 환경적·문화적 부적절성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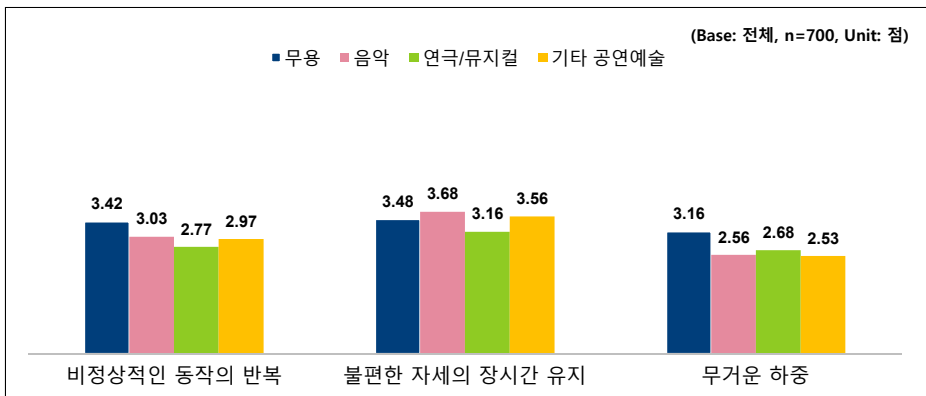
2.1 업무 자체의 특징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

공연예술인들이 겪는 업무상의 질병의 원인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많은 공연예술인은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으로 '불편한 자세의 장시간 유지'를 꼽았으며 3.4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정상적인 동작의 반복'(2.93점), '무거운 하중'(2.6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41]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그림 3-42] 예술활동종증명분야별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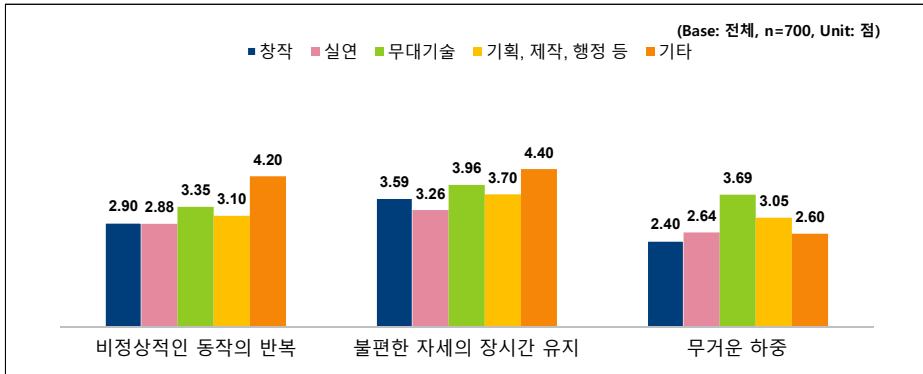
예술활동 증명 분야별로는 ‘비정상적인 동작의 반복’과 ‘무거운 하중’은 ‘무용’(각각 3.42점, 3.16점)에서, ‘불편한 자세의 장시간 유지’는 ‘음악’(3.68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르별 신체활동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무용이라는 장르는 다양한 움직임 표현을 위해 해부학, 역학적으로 비정상적인 범주의 움직임 활동을 수행한다. 그리고 무용수 간의 서로 체중을 완전히 맡기는 등의 무거운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경우가 잦고 특히 남성 발레리노의 경우 여성 무용수를 들어 올리고 어깨에 앉히는 등의 동작을 자주 수행한다. 음악의 경우 대부분의 연주자는 악기를 몸에 끼거나 지탱한 상태 그리고 팔과 손목 등을 든 상태로 장시간 연습하고 공연한다. 이러한 ‘불편한 자세의 장시간 유지’로 인해 근골격계 문제가 생기기 쉽다.

“현대무용은 기본 가동 범위를 벗어나는 동작들이 많고, 또 표현을 다양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연출가나 안무가가 무리한 요구를 해 무용수가 본인의 기량 이상의 것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더해져 부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무용 분야 예술인)

“털어웃은 골반, 고관절로 돌아가야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부터 트레이닝을 해야 해요. 단순히 (발 또는 무릎만) 털어웃을 시키면 골반이 전반경사가 돼서 척추, 요추 부위가 전만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안 맞는 상태로 시행을 하면 만성적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허리, 골반 모두 다치지는 않았지만 통증이 있다는 호소가 많아요. 특히 초등, 중학교 학생들에게 주로 발생하는데, 이 경우 학부모들이 마사지로 풀라고 하는데, 개인적 의견으로는 마사지를 통해 근본적으로 골반을 세우거나 약해진 근육을 강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골반이 약한 것은 코어 힘이 약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안쪽, 허리, 등, 옆구리 등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이 모두 코어인데, 코어 트레이닝을 하고 본인의 신체 관리를 하는 방법을 스스로 알 수 있다면 더 건강하게 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무용 분야 자문위원)

예술활동 유형별로 살펴보면, ‘비정상적인 동작의 반복’, ‘불편한 자세의 장시간 유지’, ‘무거운 하중’ 모두 ‘무대기술’ 분야가 각각 3.35점, 3.96점, 3.69점을 기록하면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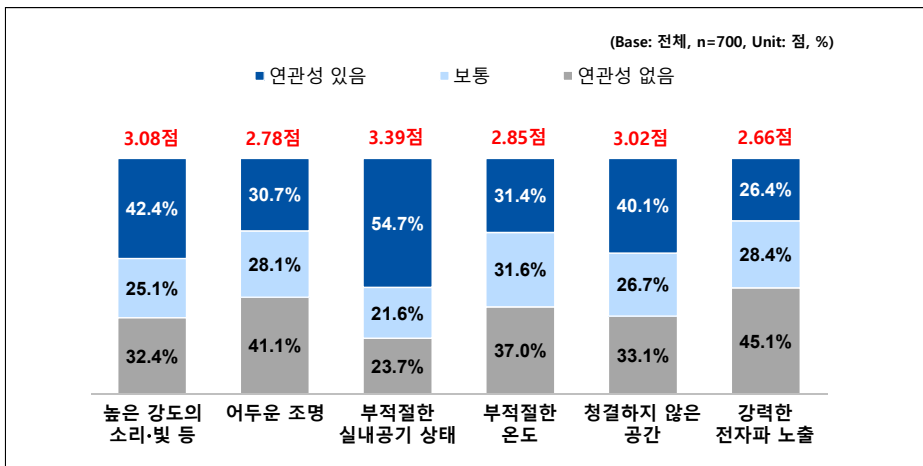
[그림 3-43] 예술활동유형별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원인_근골격



2.2. 물리적 직업 환경의 부적절성으로 인한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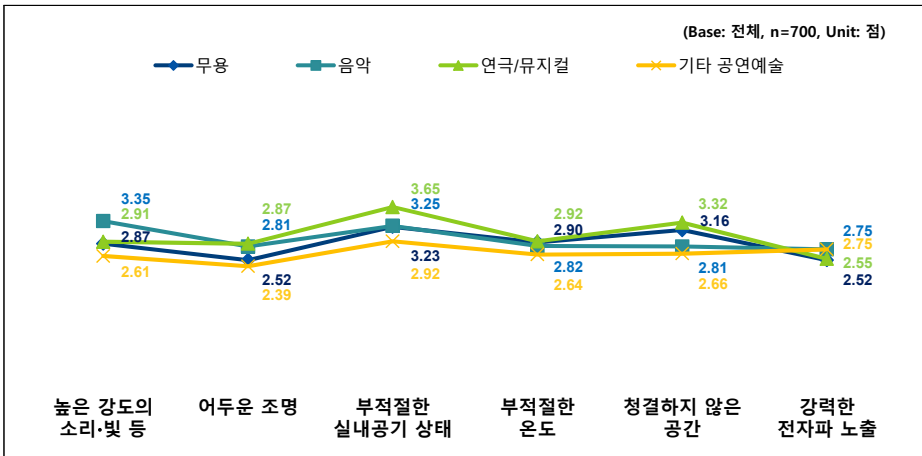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예술활동 자체가 가진 특성으로 인한 질병이지만, 그 외 외부환경으로 인해라도 공연예술인들은 많은 질병을 얻게 된다. 설문조사 결과 예술활동 중 겪는 질병 중 외부환경의 원인으로는 ‘부적절한 실내공기 상태’가 3.39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음으로 ‘높은 강도의 소리·빛 등’(3.08점), ‘청결하지 않은 공간’(3.02점), ‘부적절한 온도’(2.85점), ‘어두운 조명’(2.78점), ‘강력한 전자파 노출’(2.66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44]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원인_외부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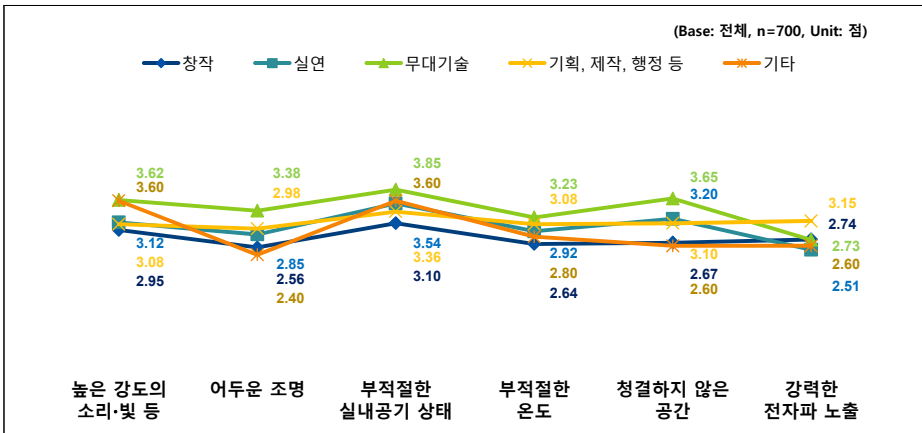


예술활동 증명 분야별을 살펴보면, '높은 강도의 소리·빛 등'은 음악이 3.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어두운 조명', '부적절한 실내공기 상태', '부적절한 온도', '청결하지 않은 공간'은 '연극/뮤지컬'(각각 2.87점, 3.65점, 2.92점, 3.32점), '강력한 전자파 노출'은 음악과 '기타 공연예술'(각각 2.75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 유형별로는 '높은 강도의 소리·빛 등', '어두운 조명'은 '무대기술', '부적절한 실내공기 상태', '부적절한 온도', '청결하지 않은 공간'은 모두 '무대기술'(각각 3.62점, 3.38점, 3.85점, 3.23점, 3.65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력한 전자파 노출'은 '기획, 제작, 행정 등'(3.15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45] 예술활동증명분야별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원인_외부환경



[그림 3-46] 예술활동유형별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원인_외부환경



음악 분야 중 오케스트라, 라이브 밴드 공연 등은 장시간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은 제거가 불가능하기에 보청기, 귀마개, 가림막 등과 장치를 착용하는 등의 경제적 지원과 개인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기 청정도, 온도 적절성, 공간 청결도, 장비의 안전도와 같은 문제는 개선의 가능성을 지닌 요인이라는 점에서 공연계 내 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동반한다면 산업재해 예방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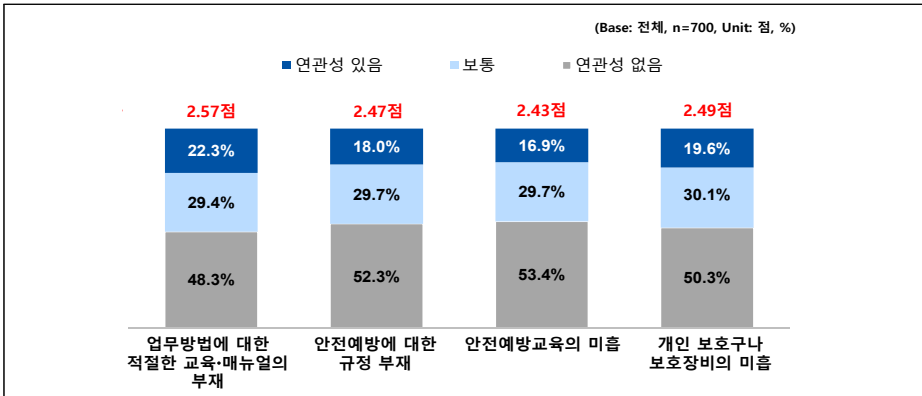
2.3. 안전예방의 부재로 인한 질병 발생

또 다른 예술활동 중 겪는 질병의 원인은 안전예방과 관련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 ‘업무방법에 대한 적절한 교육매뉴얼의 부재’가 2.5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인 보호구나 보호 장비의 미흡’(2.49점), ‘안전예방에 대한 규정 부재’(2.47점), ‘안전예방교육의 미흡’(2.43점) 순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 수치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설문조사 결과는 안전 관련 규정이나 교육 자체의 부재 또는 미흡 보다는 그것을 교육받는 방식에 대한 문제가 더 큰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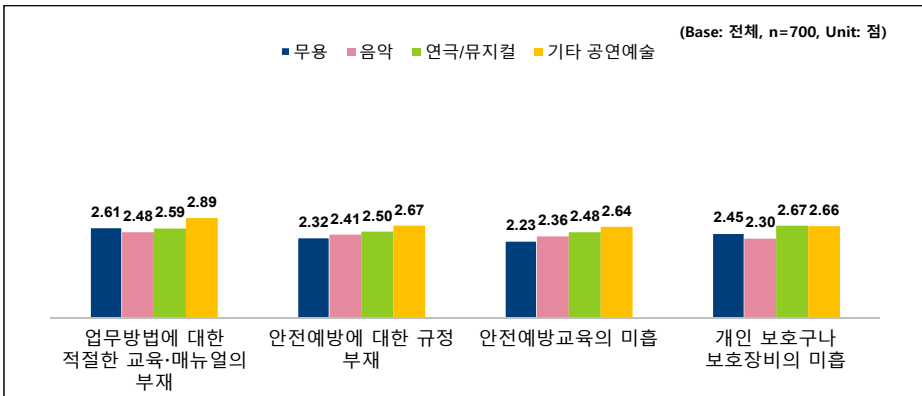
예술활동 증명 분야별로는 ‘업무방법에 대한 적절한 교육매뉴얼의 부재’는 기타 공연 예술을 제외하고는 ‘무용’(2.61점)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안전예방에 대한 규정 부재’, ‘안전예방교육의 미흡’, ‘개인 보호구나 보호장비의 미흡’ 모두 ‘연극/뮤지컬’이 각각 2.50점, 2.48점, 2.64점을 기록하면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 다양한 무대 장치를 동반하는 무용, 연극/뮤지컬의 경우에 안전 교육 및 예방 조치에 대한 부족함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술활동 유형별로는 ‘업무방법에 대한 적절한 교육매뉴얼의 부재’, ‘안전예방에 대한 규정 부재’, ‘안전예방교육의 미흡’, ‘개인 보호구나 보호 장비의 미흡’ 모두 ‘기획, 제작, 행정 등’(각각 3.21점, 2.79점, 2.80점, 2.80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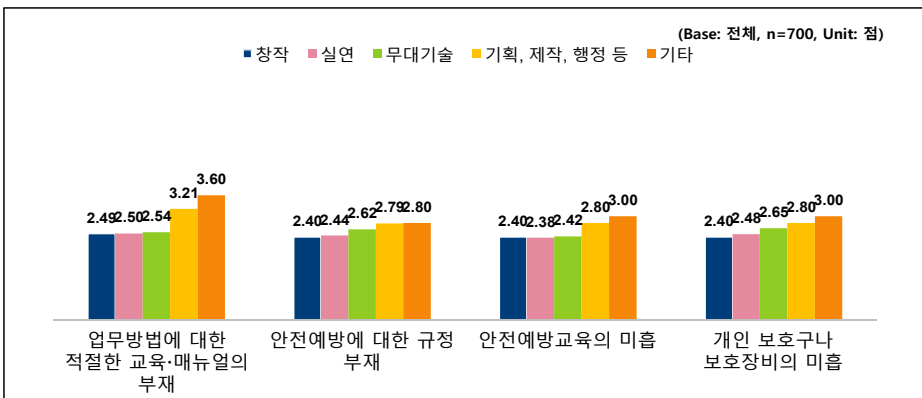
[그림 3-47]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원인_안전



[그림 3-48] 예술활동증명분야별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원인_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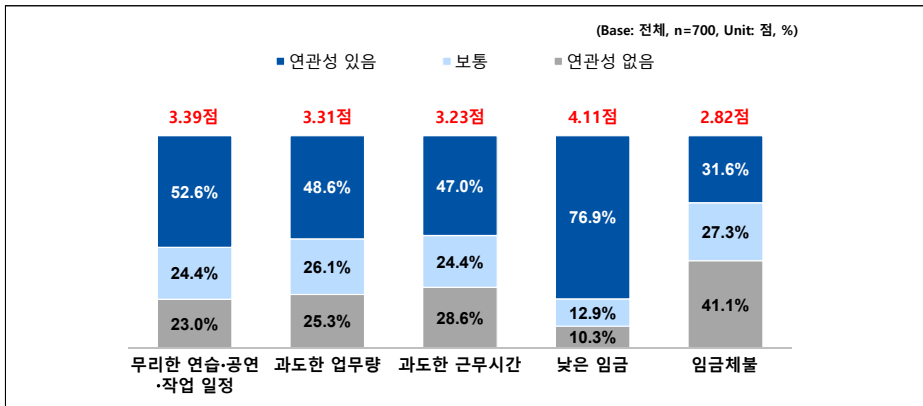
[그림 3-49] 예술활동유형별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원인_안전



2.4. 부적절한 업무 환경으로 인한 질병 발생

업무상 질병을 경험하는 원인 중 공연계의 업무 환경과 관련하여 활동방식과 문화로 나눠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연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중 겪는 질병의 원인 중 활동방식과 관련한 요인으로 ‘낮은 임금’이 4.1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무리한 연습·공연·작업 일정’(3.39점), ‘과도한 업무량’(3.31점), ‘임금 체불’(2.82점) 순이었다.

[그림 3-50]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원인 : 활동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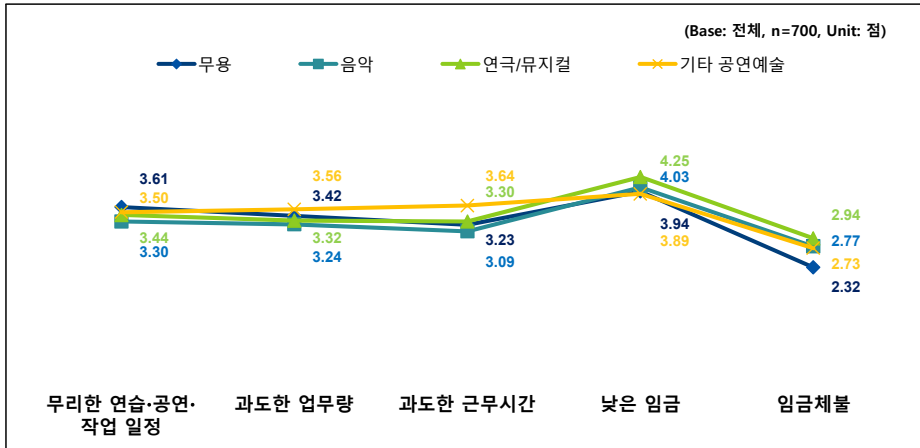


예술활동 증명 분야별로는 ‘무리한 연습·공연·작업 일정’은 ‘무용’이 3.6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과도한 업무량’과 ‘과도한 근무시간’은 ‘기타 공연예술’(각각 3.56점, 3.64점), ‘낮은 임금’과 ‘임금체불’은 ‘연극/뮤지컬’(각각 4.25점, 2.94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 유형별로는 ‘무리한 연습·공연·작업 일정’은 무대기술(3.73점), ‘과도한 업무량’, ‘과도한 근무시간’, ‘임금체불’은 ‘기획, 제작, 행정 등’(각각 3.95점, 4.00점, 2.97점), ‘낮은 임금’은 ‘실연’(4.20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약간의 상이한 차이가 있으나, 낮은 임금 문제는 모든 예술 장르, 직무 유형에 질병을 경험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체적으로 업무량과 근무 시간 자체보다는 무리한 업무 일정이 더 큰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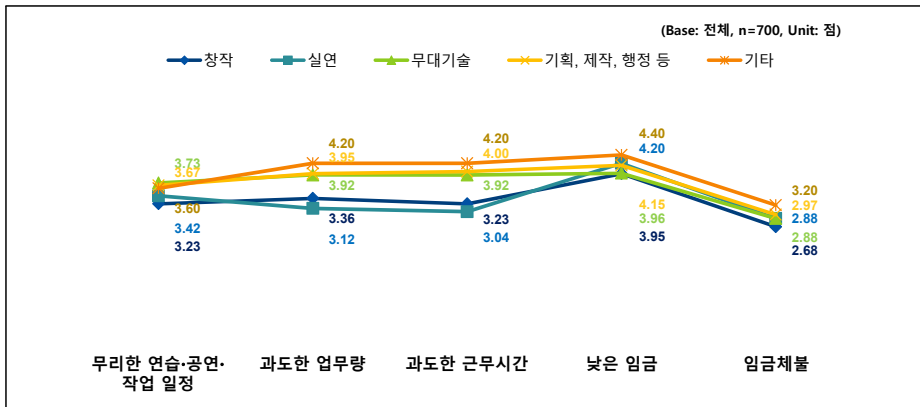
“[치료와 재활과 관계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당장의 공연 일정이 중심이 되죠. 계속 공연이 잡혀서 쉴 시간이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못합니다. 본인의

재활은 마사지, 풀어주는 위주로 해결하게 되죠. 부상을 당해 재활이 필요한 무용수의 경우 공연을 빠질 수는 없어 군무 또는 주로서 있는 무대의 배경이 되는 역할을 맡아서 하기도 하죠. 때문에 공연 연습으로 인해 더 악화된다기보다는 그 시간에 재활에 집중할 수 없다는 점이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무용 분야 자문위원)

[그림 3-51] 예술활동증명분야별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원인 : 활동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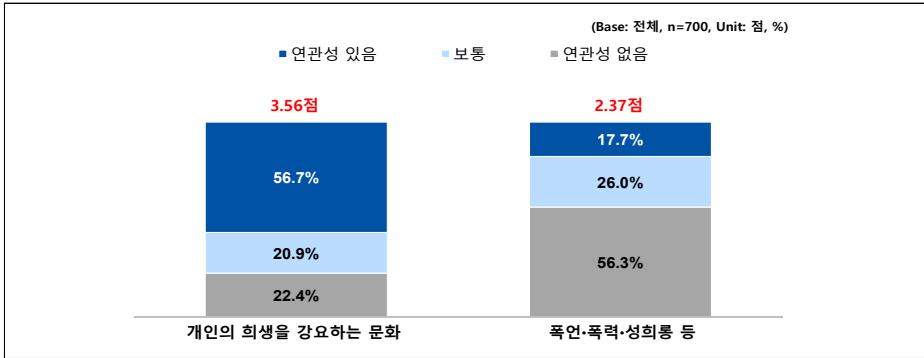
[그림 3-52] 예술활동유형별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원인 : 활동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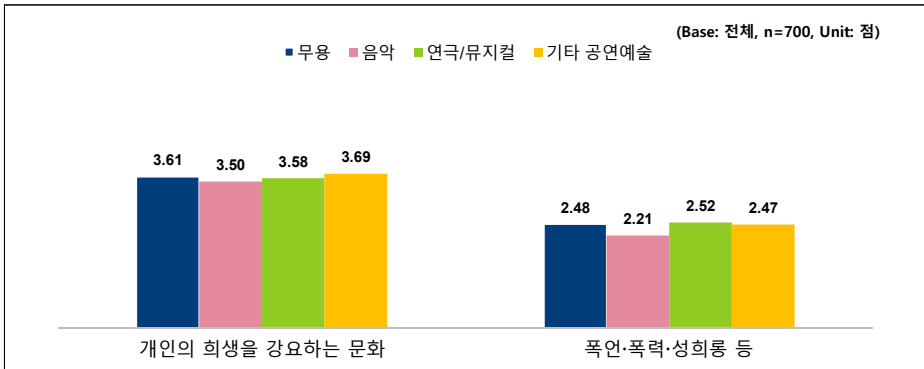
예술활동 중 겪는 질병의 문화적 원인으로는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가 3.5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폭언·폭력·성희롱 등’(2.3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 증명 분야별로는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는 기타 공연예술이 3.6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폭언·폭력·성희롱 등’은 연극/뮤지컬이 2.5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예술활동 유형별로는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는 기획, 제작, 행정 등이 3.8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폭언·폭력·성희롱 등’ 문제는 무대기술 분야가 2.54점으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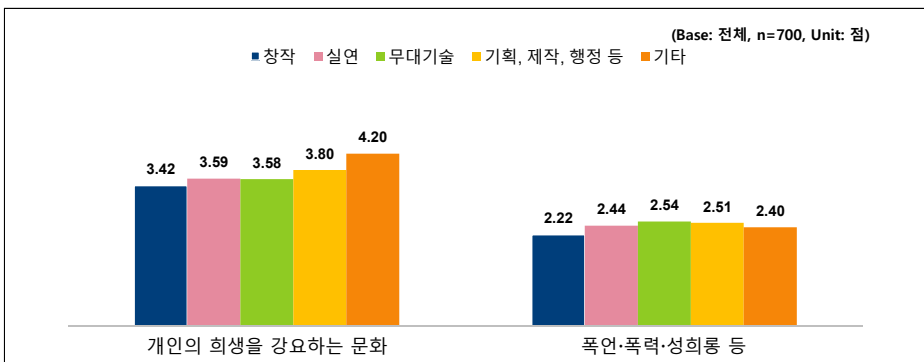
[그림 3-53]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원인 : 문화



[그림 3-54] 예술활동증명분야별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원인 : 문화



[그림 3-55] 예술활동유형별 예술활동 중 겪는 주된 질병 원인 :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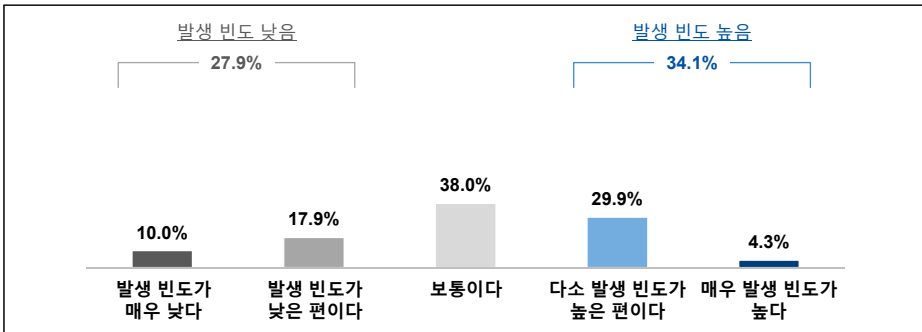


3. 직업활동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상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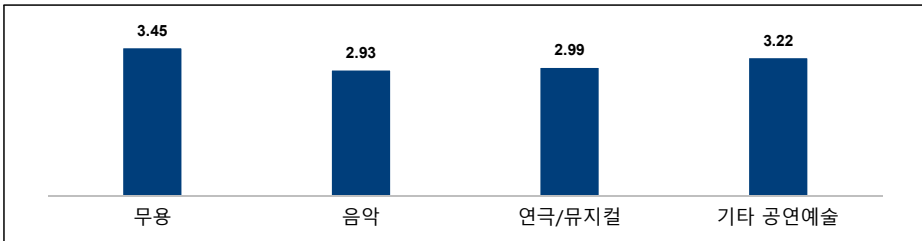
3.1 업무상 질병 빈도

공연예술인의 예술활동 중 업무상 질병 빈도는 5점 평균 기준으로 3.01점으로 나타났다. ‘매우 발생 빈도가 높다’는 4.3%, ‘다소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다’는 29.9%, ‘발생 빈도가 낮은 편이다’는 17.9%, ‘발생 빈도가 매우 낮다’는 10.0%를 차지하였다. ‘발생 빈도 높음’은 34.1%로 ‘발생 빈도 낮음’(27.9%)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는 점에서 공연예술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업무로 인한 질병 발생률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예술활동 증명 분야별로는 ‘무용’이 3.4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 공연예술’(3.22점), ‘연극/뮤지컬’(2.99점), ‘음악’(2.93점) 순으로 업무상 질병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예술활동 유형별로는 ‘무대기술’이 3.3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기획, 제작, 행정 등’(3.26점), ‘실연’(2.96점), ‘창작’(2.95점) 등으로 이어졌다. 높은 수준의 신체 능력을 요구하거나 신체적 과부하 및 부담감을 안고 가야 하는 장르(무용)와 직군(무대기술)이 업무상 질병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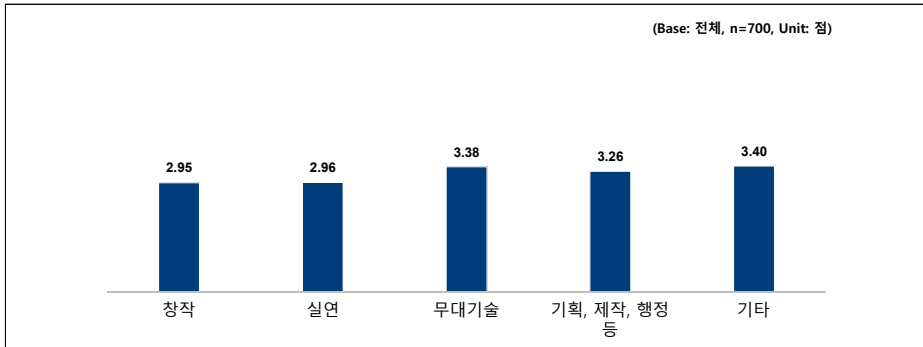
[그림 3-56] 예술활동 중 업무상 질병 빈도



[그림 3-57] 예술활동증명분야별 예술활동 중 업무상 질병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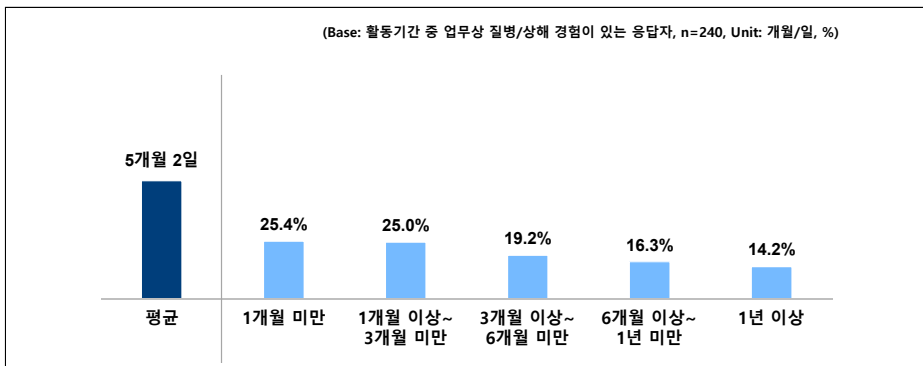
[그림 3-58] 예술활동유형별 예술활동 중 업무상 질병 빈도



3.2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일(예술활동)을 쉬 기간

공연예술인들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일(예술활동)’을 쉬 평균 기간은 5개월 2일로 나타났다. 그 중 ‘1개월 미만’이 2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개월 이상~3개월 미만’(25.0%), ‘3개월 이상~6개월 미만’(19.2%), ‘6개월 이상~1년 미만’(16.3%), ‘1년 이상’(14.2%) 순으로 높았다.

[그림 3-59]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일(예술활동)’을 쉬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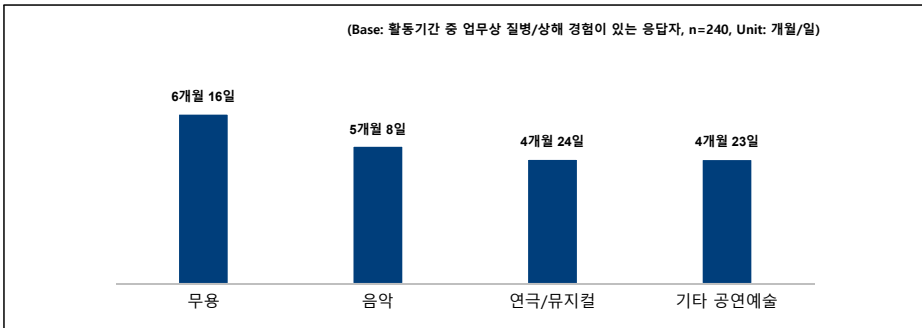


예술활동 증명 분야별로 살펴보면, ‘무용’이 평균 6개월 16일로 가장 길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음악’(평균 5개월 8일), ‘연극/뮤지컬’(평균 4개월 24일) 순이었다. 무용가들은 질병 빈도가 높을 뿐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 가장 긴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는 질병으로 인해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적 여건상 쉴 수 없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작업에 계속 참여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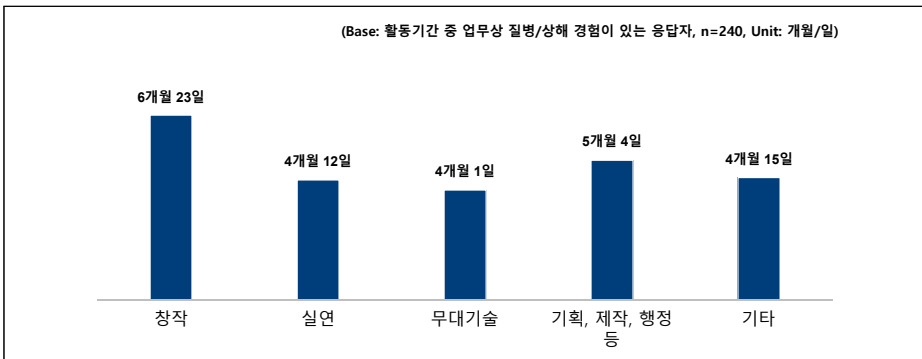
“일을 완전히 안하고 쉴 수는 없어요. 한 달 동안 움직이지는 않지만 연습은 가서 눈으로 보고 참여합니다. 아픈 상태로 수업도 가고 아예 일을 안 하고 쉬진 않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쉬었죠. 다리가 부러져도 나가서 눈으로라도 보려고 합니다. 안무자들과 작업을 진행한다든지, 다리가 부러져도 같이 공연을 해요. 공연을 못하면 돈을 못 받으니까 그냥 하게 됩니다. 아주 심하게 다치지 않는 이상은.. 말이 쉬는 것이지 나가긴 않습니다.” (무용 분야 예술인)

예술활동 유형별로 살펴보면 ‘창작’이 ‘평균 6개월 23일’로 가장 길게 나타났고, ‘기획, 제작, 행정 등’(평균 5개월 4일), ‘실연’(평균 4개월 12일), ‘무대기술’(평균 4개월 1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60] 예술활동 증명 분야별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일(예술활동)’을 쉬 기간



[그림 3-61] 예술활동 유형별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일(예술활동)’을 쉬 기간



제4절 공연예술인의 종사환경 및 산업재해 대처 분석

1. 부적절한 종사환경의 문제

공연예술인들이 연습하고 공연하며, 작업하는 환경과 산업재해는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공중보건학자(MD/MPH) 데이비드 힌캠프(David Hinkamp) 외 10명이 쓴 ‘산업보건 및 공연예술(Occupational Health and the Performing Arts)’에 따르면 “공연예술분야의 많은 작업장 위험이 독성 물질과 관련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공연예술가들과 스태프들이 급성 및 만성 장애와 근골격계 장애, 그리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⁷³⁾ 이들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공연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과 스태프들이 종사하는 ‘환경의 취약성’이 산업재해의 노출 가능성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종사환경을 살펴보는 것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연예술인은 개인연습과 단체연습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대작업 스태프의 경우에는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게 작업해야 하는 등 정해진 시간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에 더 많이 노출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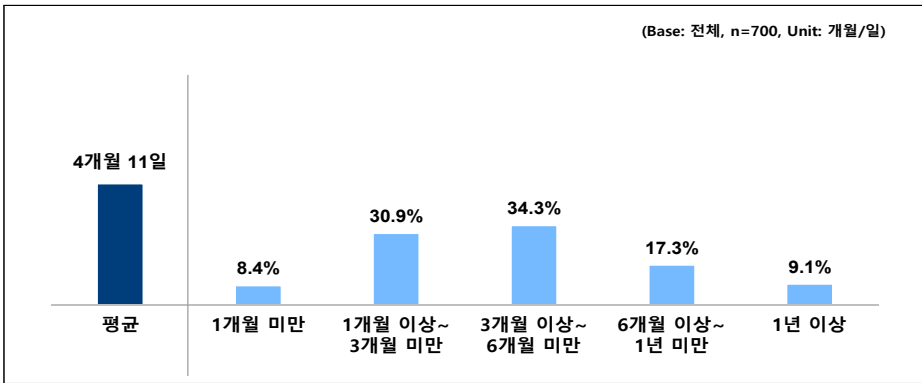
1.1 공연예술인 작업기간 및 작업시간

설문조사 결과 공연예술인들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작업 기간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4개월 11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 나누어 보면,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개월 이상~3개월 미만’(30.9%), ‘6개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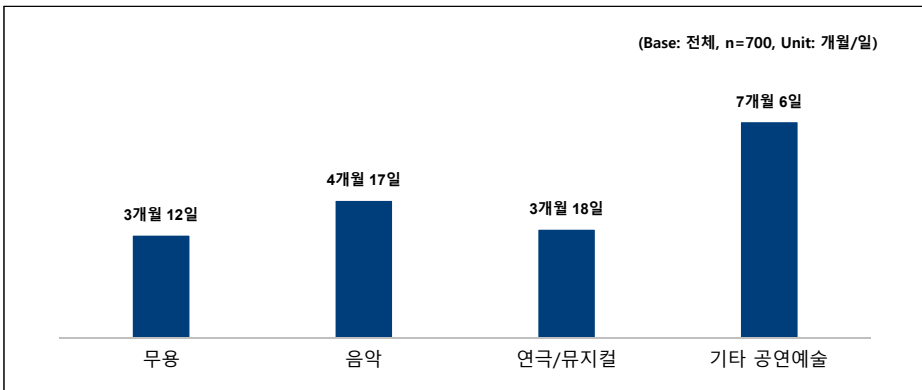
73) Hinkamp, David; Morton, Jennie; Krasnow, Donna H.; Wilmerding, Mary Virginia; Dawson, William J.; Stewart, Michael G.; Sims, Herbert Steven; Reed, Jan Potter ; Duvall, Katherine; McCann, Michael(2017). Occupational Health and the Performing Arts,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59(9), pp. 843-858.

상~1년 미만(17.3%) 등의 순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예술활동증명 분야별로는 ‘기타 공연예술’이 평균 7개월 6일, ‘음악’ 평균 4개월 17일, ‘연극/뮤지컬’이 3개월 18일의 순으로 프로젝트 작업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의 유형별로 보면 ‘창작’분야가 평균 5개월 20일로 가장 길게 나타났고, ‘기획, 제작, 행정 등’이 평균 4개월 25일, ‘실연’분야가 가장 짧은 평균 3개월 15일 순으로 나타났다. ‘창작’영역에 속해 있는 공연 예술인의 경우 대체로 오랜 기간 작업을 하는 극작가, 연출가, 작곡가, 안무가 등이 포함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별 작업 기간이 가장 긴 것을 알 수 있으며, ‘창작’분야의 결과물을 무대 위에 실현시켜 주는 ‘기획, 제작, 행정’분야가 뒤를 잇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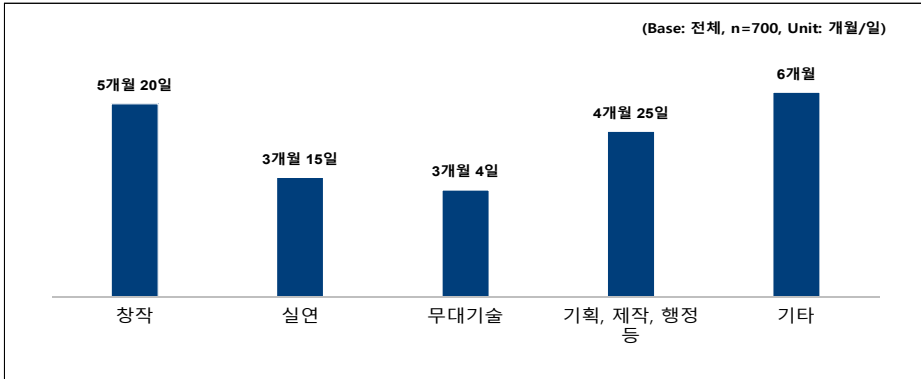
[그림 3-62] 문화예술 프로젝트 평균 작업 기간



[그림 3-63]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문화예술 프로젝트 평균 작업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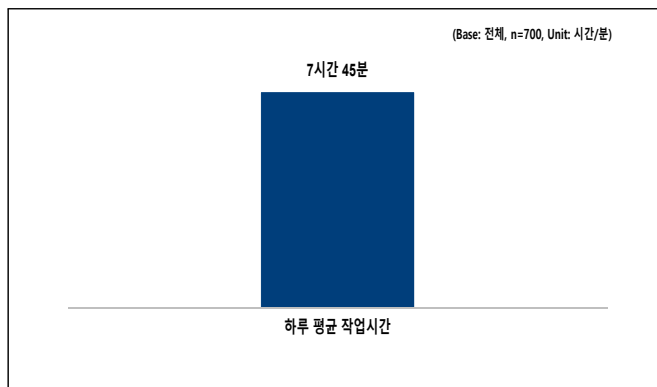


[그림 3-64] 예술활동 유형별 문화예술 프로젝트 평균 작업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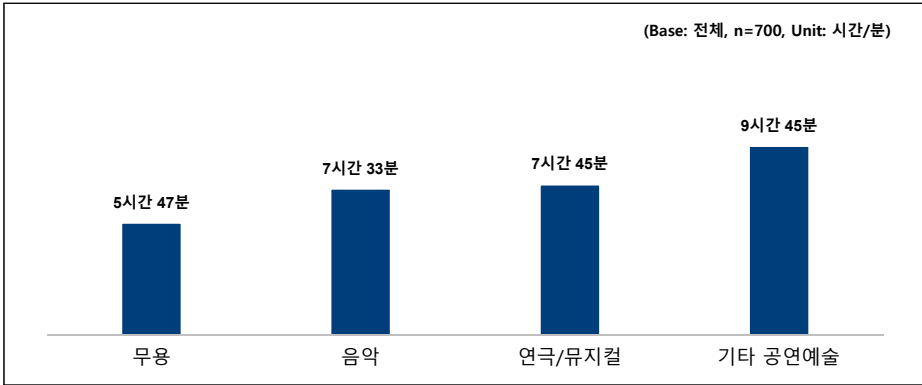


예술인들의 하루 평균 작업(노동)시간은 평균 7시간 45분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중 명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타 공연예술’분야가 평균 9시간 45분으로 가장 길었고, 다음으로 ‘연극/뮤지컬’이 7시간 45분, ‘음악’이 7시간 32분으로 집계되었다. 직종별로는 ‘무대기술’이 평균 10시간 11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고, ‘기획, 제작, 행정 등’이 평균 9시간 21분, ‘창작’분야가 평균 8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대기술 분야의 경우 무대의 설치 및 철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이 무대 위에서 연습을 하는 도중에도 무대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무대기술 분야 예술인이 작업시간, 즉 노동 강도가 가장 센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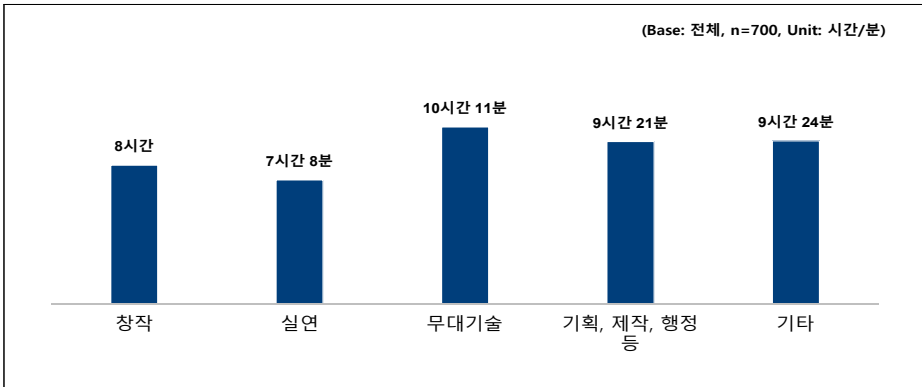
[그림 3-65] 하루 평균 작업(노동) 시간



[그림 3-66]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하루 평균 작업(노동) 시간



[그림 3-67] 예술활동 유형별 하루 평균 작업(노동) 시간



고용노동부에서 매월 발간하는 <표 3-14>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상용근로자의 일(日) 평균 근로시간이 약 8시간 정도로 나타나 예술가들의 7시간 45분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상용근로자가 대부분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매일 유사한 형태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⁷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간의 변화가 다양하고, 제공하는 노동의 유형이 다양하며, 창의성을 발휘해야 하는 예술가들의 작업의 특성상, 상용근로자보다 더 집약적인 작업을 하는 동시에 동일 시간 내 작업강도가 훨씬 더 세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74) 고용노동부(2022). 「2022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49쪽.

〈표 3-14〉 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시간

	'22.2월	3월	4월	5월
월 평균 근로시간	141.4	160.4	162.3	161.8
근로일수	17.4	19.8	20.0	20.0
일 평균 근로시간	8.13	8.10	8.12	8.09

고용노동부(2022). 「2022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연구자 재구성

그러나 대부분의 실연 예술가들이 매일 개인연습에 투자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평균적인 작업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예술활동에 투입된다. 하루에 16시간씩 연습한다는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사례처럼 일상이 곧 연습이기 때문에 예술가에게 있어 평균 작업시간은 근로자의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음악가는 많은 시간 동안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음악가가 첫 번째 콘서트를 열 수 있려면 10,000시간 이상의 연습이 필요합니다.”⁷⁵⁾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한 발레를 자는 시간 빼고 19시간 동안 연습한 때가 있었다.”
(발레리나 강수진)⁷⁶⁾

국내에서 주로 활동하는 공연예술인들의 활동 시기는 대체로 4월부터 11월까지인데, 연초에 지원했던 공공사업에 선정되어 3월 정도부터 교부금이 지원되기 시작하고 연말 전에 정산이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흔히 시즌이라 불리는 이 시기에는 평균 작업시간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바쁘게 활동을 하게 된다.

“하루에 공연이 두 개 이상이 잡히는 경우도 있고, 전날 서울에서 공연을 하고 난 후, 다음 날 바로 지방에서 공연이 있어 밤새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국악 분야 예술인)

“실연자의 경우 내가 공연을 하는 만큼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여러 개의 공연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용 분야 예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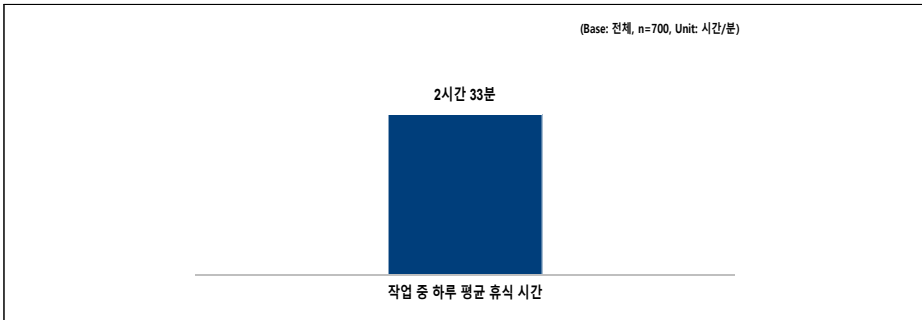
그러나 예술가들에게 있어서의 하루 평균 휴식시간은 2시간 33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75) Ignatiadis, I.A. , Mavrogenis, A.F. ,Vasilas, S. , Gerostathopoulos, N. and Dumontier C. (2008) Disorders of Musicians Hand. EEXOT.59(3);176-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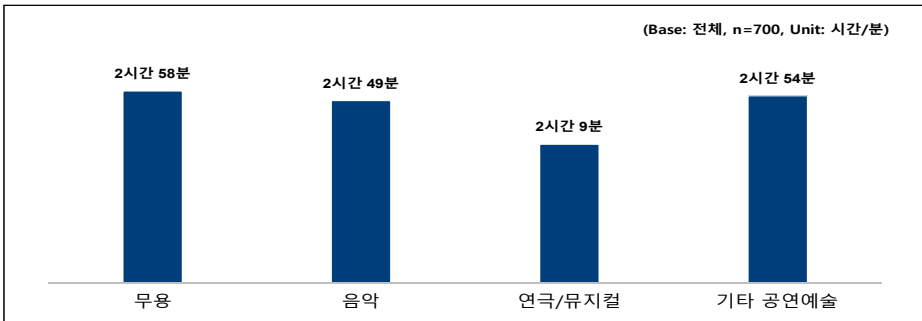
76) 뉴스핌 2016.02.24.기사(<https://www.newspim.com/index.php/news/view/20160224000352>)

데, 이는 식사시간을 포함한 수치이다. 장르별로 보면, '무용'이 평균 2시간 58분으로 가장 길고, '기타 공연예술'이 평균 2시간 54분, '음악'이 평균 2시간 49분의 순이었다. 대체로 몸을 많이 움직이는 장르일수록 몸의 회복을 위해 휴식시간을 더 길게 갖는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창작'이 평균 3시간 2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무대기술'이 평균 2시간 31분, '실연'이 평균 2시간 16분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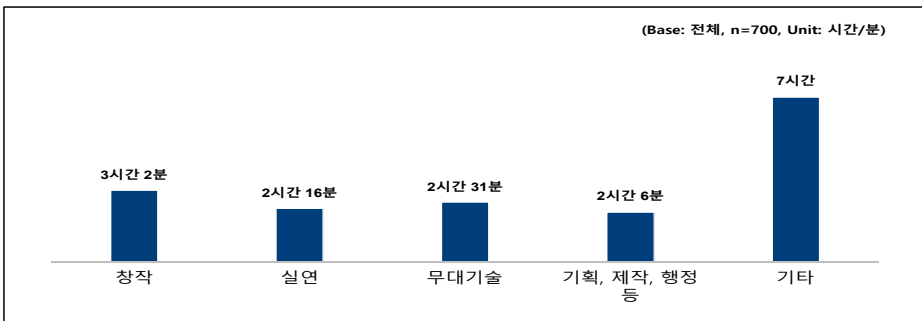
[그림 3-68] 하루 평균 휴식 시간(식사 시간 포함)



[그림 3-69]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하루 평균 휴식 시간(식사 시간 포함)



[그림 3-70] 예술활동 유형별 하루 평균 휴식 시간(식사 시간 포함)



예술활동에 있어서 휴식은 필수적이다. 창작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신체를 활용하여 이를 표현하는 작업의 특성상 적절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예술가로서의 삶을 오랜 기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흔히 비시즌이라 불리는 연초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경제적인 이슈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활동하는 기간동안 충분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서 이 기간에도 교육활동이나 비예술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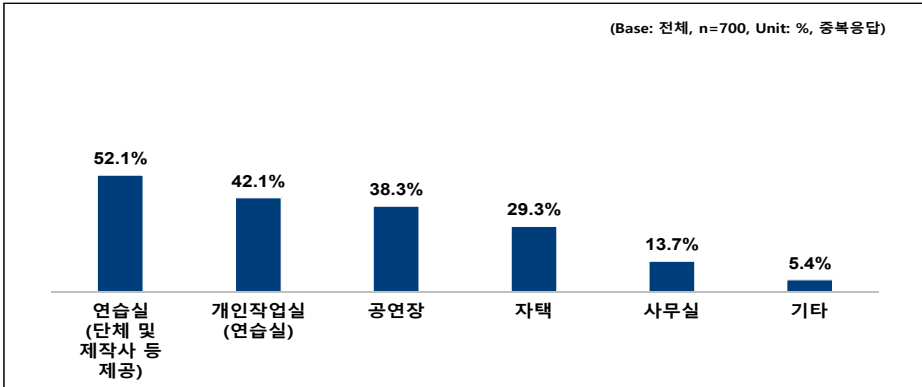
“운동선수들과 비교해서 보면, 운동선수들은 시즌(season)과 비시즌(off season)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운동선수들은 시즌(3~10월- 6개월) 외에는 전지훈련을 가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면서 몸을 만드는 반면에, 비슷하게 몸을 쓰는 무용수들은 3주~1달 정도의 비시즌(off season)만 있어 쉬는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특히 무용수들은 비시즌에 자신의 신체를 돌아볼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재활분야 자문위원)

“휴식기간이 필요하고 휴식을 해야 좋은 창작물이 나온다는 것도 알지만, 마냥 쉬기에는 마음이 너무 불안하죠. 그러니까 자꾸 일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음악 분야 예술인)

1.2. 공연예술인의 작업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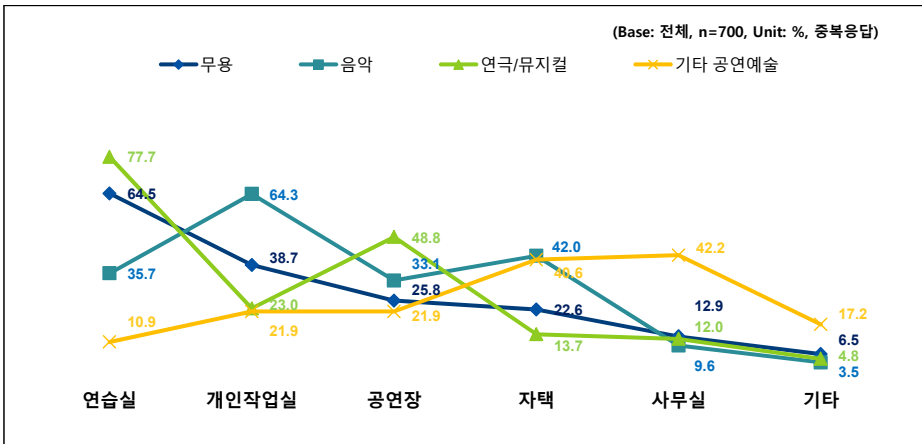
공연예술인들은 일반근로자들처럼 지정된 장소에 출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 개인연습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을 하듯이 정기적으로 동일한 공간에서 연습을 진행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연이 잡히면 그때그때 연습실을 대관해서 사용한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연예술인들의 주된 작업 장소는 단체나 제작사 등에서 제공하는 ‘연습실’이 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작업실(연습실)’ 42.1%, ‘공연장’ 3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연장을 응답한 경우가 높다는 것은 연습실을 대관하여 연습을 하지 못하고 공연 당일 공연장에서 연습하는 상황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주된 작업 장소 중 기타로는 ‘촬영장’, ‘학원/학교’, ‘스튜디오 카페’, ‘스튜디오/야외촬영장’ 등을 응답하였다.

[그림 3-71] 주된 작업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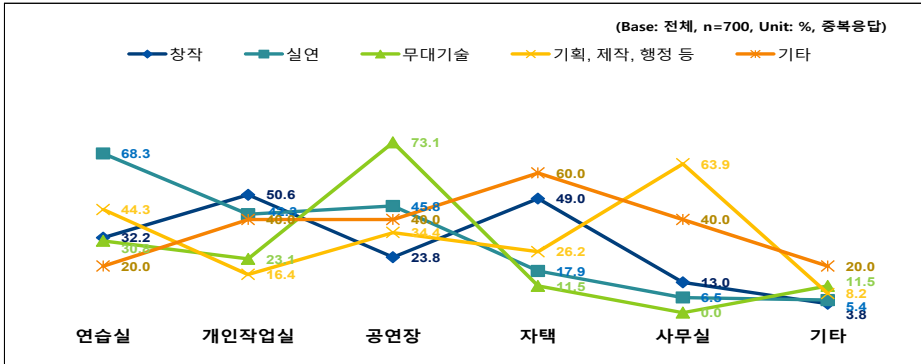


예술활동증명 분야별로 보면, 무용과 연극/뮤지컬은 ‘연습실’이 64.5%, 77.7%로 가장 높았고, 음악은 ‘개인작업실’과 ‘주택’이 각각 64.2%, 42.2%를 기록하였다. 기타 예술공연은 ‘사무실’과 ‘주택’이 42.2%, 40.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연습을 해야 하는 장르의 특성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음악의 경우 개인연습의 비중이 높고 악기를 이동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반면에, 무용이나 연극/뮤지컬의 경우는 단체연습이 많고 출연진 간에 합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넓은 연습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술활동 유형별로는 창작분야 종사자는 ‘개인작업실’(50.6%)과 ‘주택’(49.0%)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실연분야는 ‘연습실’(68.3%), 무대기술은 ‘공연장’(73.1%), 기획, 제작, 행정 등은 ‘사무실’(63.9%)이 각각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그림 3-72]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주된 작업 장소



[그림 3-73] 예술활동 유형별 주된 작업 장소



1.3. 작업장소의 안전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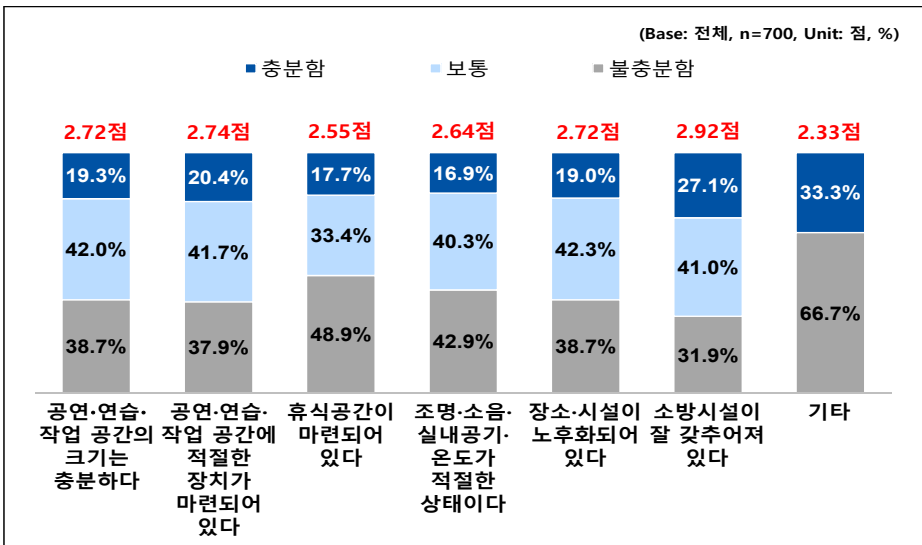
작업 장소는 공연예술인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작업환경의 안전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에 장르별, 분야별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업 장소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일 것이다.

공연예술인들이 활용하는 주된 작업 장소의 안전 환경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소방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가 2.9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연·연습·작업 공간에 적절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가 2.74점, ‘공연·연습·작업 공간의 크기는 충분하다’, ‘장소·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가 각각 2.7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증명 분야별로는 ‘공연·연습·작업 공간에 적절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조명·소음·실내공기·온도가 적절한 상태이다’, ‘장소·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 ‘소방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모두 무용 분야 종사자들에게서 각각 2.77점, 2.68점, 2.77점, 2.87점, 2.90점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공연·연습·작업 공간의 크기는 충분하다’라는 문항에 무용과 연극/뮤지컬이 각각 2.77점을 주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각 항목에 대해서 다른 응답을 보였다. 기획, 제작, 행정 등의 유형에서는 ‘공연·연습·작업 공간의 크기는 충분하다’, ‘공연·연습·작업 공간에 적절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와 ‘소방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가 각각 2.90점, 2.79점, 2.9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창작 유형에서는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다’와 ‘조명·소음·실내공기·온도가 적절한 상태이다’가 각각 2.68점, 2.69점으로 집계되었다. 실연 분야 종사자들은 ‘장소·시설이 노후화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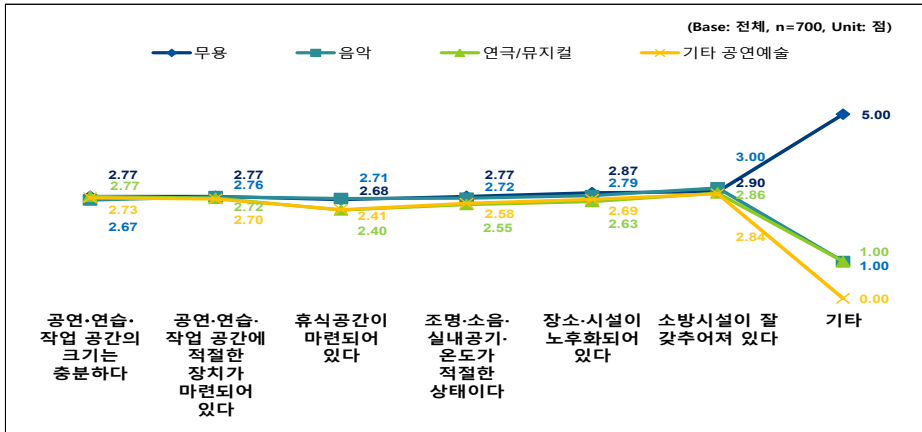
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항목별 응답률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활동 장르와 유형별로 작업 장소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사무실에서 주로 활동하는 기획, 제작, 행정 등의 분야는 실연분야 종사자나 무대기술 분야 종사자에 비해서 정해진 일정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실연분야 종사자는 연습실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소규모 극장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다'와 '공연·연습·작업 공간의 크기는 충분하다'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대기술 분야 종사자들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작업공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항목인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조명·소음·실내공기·온도가 적절한 상태이다'에 가장 낮은 점수를 주어 여전히 무대기술 분야 종사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74] 주된 작업 장소의 안전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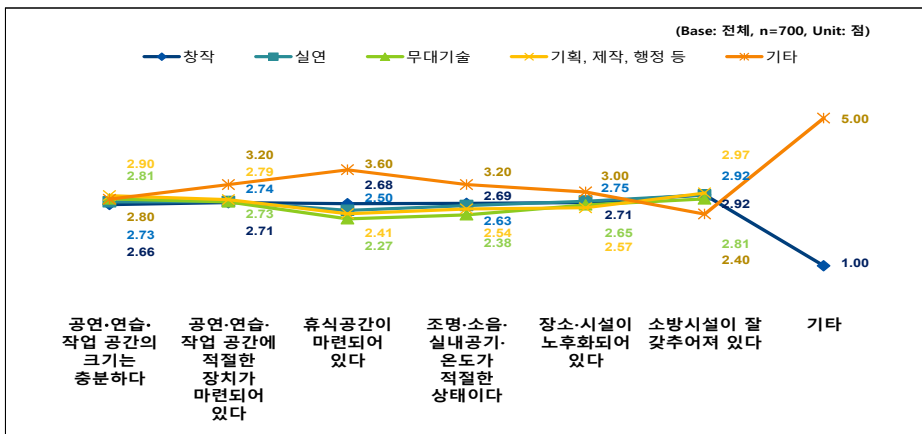
[그림 3-75]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주된 작업 장소의 안전 환경



[표 3-15]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주된 작업 장소의 안전 환경

	사례수	공연·연습·작업 공간의 크기는 충분하다	공연·연습·작업 공간에 적절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조명·소음·실내공기·온도가 적절한 상태이다	장소·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	소방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기타
무용	(31)	2.77	2.77	2.68	2.77	2.87	2.90	5.00
음악	(314)	2.67	2.76	2.71	2.72	2.79	3.00	1.00
연극/뮤지컬	(291)	2.77	2.72	2.40	2.55	2.63	2.86	1.00
기타 공연예술	(64)	2.73	2.70	2.41	2.58	2.69	2.84	-
전체	(700)	2.72	2.74	2.55	2.64	2.72	2.92	2.33

[그림 3-76] 예술활동 유형별 주된 작업 장소의 안전 환경



“공연장 환경은 그나마 좋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대기장소요 문화재 같은 공간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며 공연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공연 때까지 약 6시간 이상을 계속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나마 좋은 곳이 대기하라고 천막을 쳐주는 곳인데, 그마저도 공연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한 컨디션을 만들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국악 분야 예술인)

“라이브 클럽은 큰 규모의 공연장처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연주, 철수할 때까지 주변에 부딪혀 찰과상이나 타박상을 입는 스태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라이브 공연장에는 먼지가 많지만 환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호흡기나 기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음악 분야 예술인)

“공연장 내 먼지가 많아 천식, 기관지염을 달고 사는 예술인들도 많이 봤습니다. 서서 장시간 공연을 하다보니 하지정맥류 문제를 겪는 동료 예술인들도 많고요. 또 공연장보다는 대기실의 문제도 있는데, 지원사업들 중 전문 공연장이 아닌 야외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지면서 의자 없이 5시간 이상을 대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주자뿐만 아니라 악기에도 무리가 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국악 분야 예술인)

해외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공연예술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공간인 공연장에서의 작업도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관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보이기 위해서 극장의 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연장 안에서 작업을 하는 예술가나 스태프들에게는 위험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리프트, 사다리, 좁은 통로 등에서 작업을 하거나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할 때 사용하는 소품이나 안개효과(fog)와 같은 물질들이 무대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돌출 무대나 회전 바닥, 전동식 리프트 등은 무대를 시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흔하게 사용되는 것들이지만, 바닥 높이의 미묘한 차이로 인하여 예술인들이 넘어지거나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무대장치로 돌변하기도 한다. 특히 순간적으로 사람이 움직이거나 조명이 없는 무대에서의 급격한 변화 등은 충분한 연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나 스태프들에게 최소한의 연습 시간도 주어지지 않아서 늘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연장 역시 예술가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주지 시킬 필요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⁷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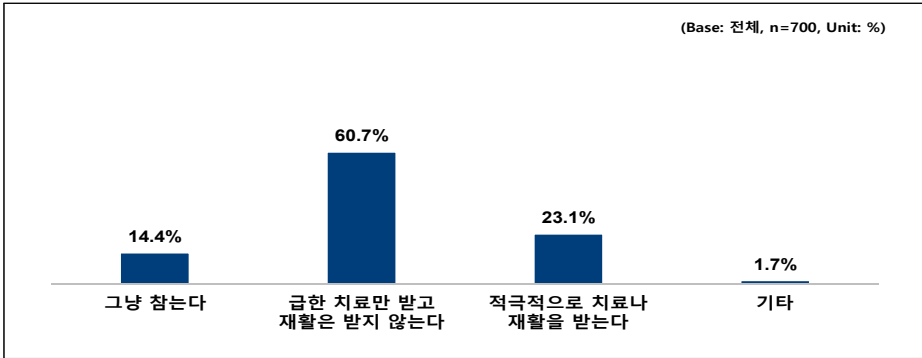
2. 경제적 문제 야기 및 직업생명에 부정적 영향

2.1. 참는 것이 당연한 업무상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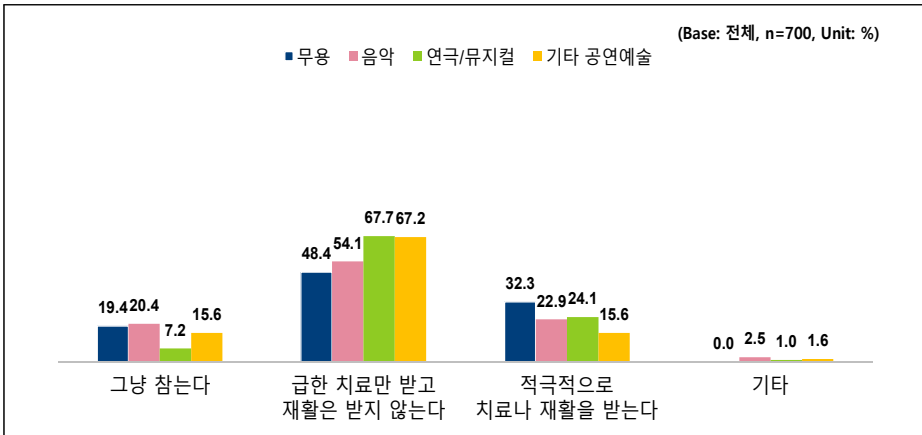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연예술인 및 종사자들은 다양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그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던 중이나, 연습 중에, 또는 무대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산업재해 발생 시 대처 방법으로는 ‘급한 치료만 받고 재활은 받지 않는다’가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적극적으로 치료나 재활을 받는다’가 23.1%, ‘그냥 참는다’ 14.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하루정도 휴식을 취한다’, ‘상황과 장소에 따라 다르다’, ‘동료와 정보를 교환한다’, ‘관리자와 상의한다’ 등이 집계되었다. 공연예술 장르별로 살펴보면 ‘그냥 참는다’는 음악 분야 종사자에게서 2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급한 치료만 받고 재활은 받지 않는다’는 연극/뮤지컬(67.7%)이 가장 높았다. 예술활동 유형별로 보면 창작 분야에서 ‘그냥 참는다’가 1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무대기술 분야는 ‘급한 치료만 받고 재활은 받지 않는다’가 80.8%, ‘적극적으로 치료나 재활을 받는다’는 실연 분야 종사자의 25.5%가 응답하였다.

77) Hinkamp, David; Morton, Jennie; Krasnow, Donna H.; Wilmerding, Mary Virginia; Dawson, William J.; Stewart, Michael G.; Sims, Herbert Steven; Reed, Jan Potter ; Duvall, Katherine; McCann, Michael(2017). Occupational Health and the Performing Arts,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59(9), pp. 844-8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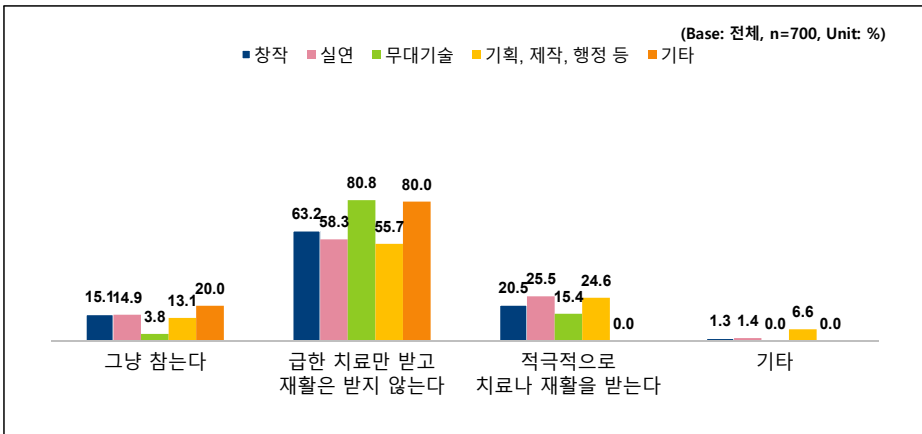
[그림 3-77] 산업재해(질병/상해/사고 등) 발생 시 대처



[그림 3-78]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산업재해(질병/상해/사고 등) 발생 시 대처



[그림 3-79] 예술활동 유형별 산업재해(질병/상해/사고 등) 발생 시 대처



예술인 산재보험의 가입을 대행해주고 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통계를 보면, 산재보험의 보상 수혜현황은 평균 9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공연장이나 연습실에서의 사고의 경우 산업재해로 승인받아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표 3-16〉 예술인 산재보험 수혜현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승인자 수(명)	9	22	19	20	34	33	45	69
불승인자 수(명)	1	6	2	1	4	3	1	3
승인율	90%	78.6%	90.5%	95.2%	89.5%	91.7%	97.8%	95.8%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부자료

그러나 일정한 공간으로 출퇴근을 하지 않는 예술분야 활동의 특성상, 공연예술인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환경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산업재해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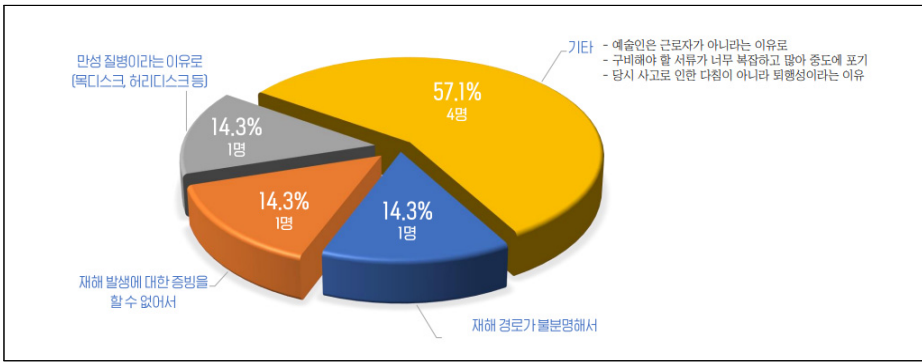
“실제로 공연을 오가는 길에 나는 사고가 있었는데, 렌트카로 당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을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연 도중이나 리허설 중에 난 사고가 아니었고, 또 공연하고 오는 길이긴 했으나 자정이 넘어가 공연 당일도 아니어서 당연히 산재보험을 신청해도 못 받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산재보험 보상을 받으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음악 분야 예술인)

“2020년 11월 경기도에서 공연이 끝나고 공연 의상을 그대로 입고 귀가하던 중에 길가에서 트럭에 치여 몸이 날아가는 심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향이 없어 해당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했는데, 당시 이게 산재 처리가 되는지 궁금했지만 안 될 거라 생각해서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공연 끝나고 귀가하던 중 난 사고였지만, 무대에서 난 사고가 아니고 공연장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지레짐작했거든요.”(국악 분야 예술인)

이렇듯 예술인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공연예술인들조차 사고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인지 인지하지 못하여 보험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인터뷰를 통해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다.

공연예술인이나 스태프들이 산업재해라고 판단하여 보험을 신청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근로자성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이거나 만성 질병으로 인한 사유 등으로 산재보험의 불승인사례들이 예술분야 종사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면서 예술인들에게 산재보험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림 3-80] 예술인 산재보험 불승인 사유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21). 「예술인 산재보험 청구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10쪽.

[사례] 뮤지컬 공연 중 발생한 산업재해 인정 사건

- (1) 소송종류: 서울행정법원 2014.8.1., (2013구단8809) 최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 (2) 소송개요: 뮤지컬 공연 중 무대장치에 머리를 다친 프리랜서 무대제작 스태프가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의 상병명에 대해 최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함
- (3) 산재처리: 최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원고 승소(산재 인정)
- (4) 쟁점: 공연 현장 스태프의 '근로자' 인정 여부
 - 뮤지컬 제작사와 고용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급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냈지만, 이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뮤지컬 제작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함. 해당 스태프가 정식 직원들과 달리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뮤지컬 제작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고, 업무 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례] 공연예술인의 근로자성과 산업재해 인정 사건

- (1) 소송종류: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8.08.21., (2017누89119)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 소송개요: 공연장에서 줄타기 공연을 하던 중 미끄러져 3m아래로 추락. 이로 인해 요양급여를 신청.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불승인 결정을 받음
- (3) 산재처리: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산재 인정)
- (4)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 원고와 피고의 인정 사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자신이 담당하는 공연시간 외에는 이와 별도로 시간적 구속을 받는 출 퇴근시간의 정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원고는 ○○○○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점, 공연계약의 내용상 원고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공연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원고를 ○○○○의 근로자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기는 함.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증거들에 (중략) 위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 ○○○○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대부분의 공연예술인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전공을 하기 시작하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20대와 30대를 지나게 된다. 공연예술인들은 젊은 시절부터 만성적인 질병들을 달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특정 신체 부위에서 발견되는 과사용 증후군이나 레이노 증후군, 디스크, 하지정맥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신체적인 문제들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한계가 오면 질병으로 이어지게 된다. 아주 오랜 기간을 통증과 질병을 일상화했기 때문에 공연예술인 스스로 산업재해라고 느끼는 경우도 많고, 산재보험에서 질병과 산재와의 연계성이 적다는 이유로 불승인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해외 문헌을 살펴보면, 공연예술인이나 스태프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신체적인 문제들을 연구하여 어떤 장르에서 어떠한 유형의 질병이 자주 발생하고, 그 빈도는 어떠하며, 이를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젊은 무용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미국 문헌에 따르면 무용수 개인이 생각하는 부상의 정도와 전문가가 의학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부상 간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개인의 인지와 전문가의 소견이 계속 어긋나게 될 경우 중국에는 예술활동을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⁷⁸⁾

78) A.C. Luke, S. A. Kinney, P.A. D'Hemecourt, J. Baum(2002). Determinants of Injuries in Young Dancers, *Medical Problems of Performing Artists*, 17(3): pp. 105-112.

“물론 개인이 속한 장르별로도 다르고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모든 예술인들이 아파도 참고 공연하는 것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는 현실적인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아프다고 해도 이해받을 수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예술가들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렇게 하면 몸이 고장난다와 같은 정보들을 알고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예전에는 연출가/안무자들이 무식하게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에 12시간씩 연습을 시키곤 했어요. 이게 당연한 시대도 있었고요. 그런데 새로운 동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리한 움직임을 하게 되면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되어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지만, 그때는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무용 분야 예술가)

“관악기를 너무 오랫동안 연주하다 보니까 귀가 너무 안 좋아져서 일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가 안 좋아지니 제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게 되고, 악기 소리도 안 들리니 피치를 맞추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니 보청기를 낄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악 분야 예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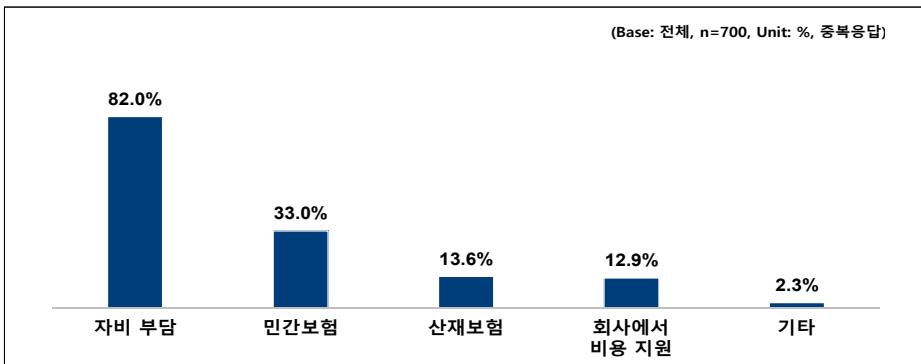
“내가 아파서 공연을 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누군가가 내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아프다고 해서 공연을 안 하는 건 없습니다. 공연장을 가는 길에 사고가 나더라도 무대에서 공연은 하거든요. 아파도 그냥 참는 거예요. (음악 분야 예술인)

2.2. 자비 부담으로 인한 치료·재활의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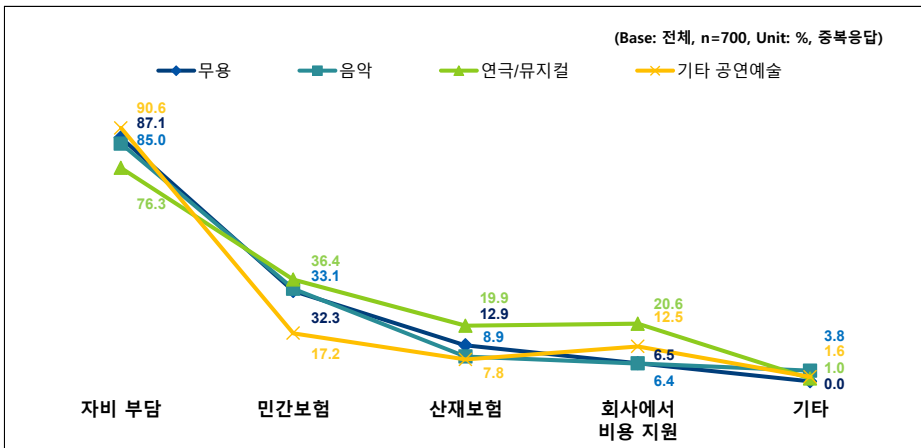
공연예술인이 산업재해를 경험한 후 치료·재활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자비 부담’이 8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민간보험’ 33.0%, ‘산재보험’ 13.6%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기타에서는 ‘보험 처리한다’, ‘공연측과 협의한다’, ‘당장은 보험 처리하고 재활은 개인부담 한다’ 등을 응답하였다. 즉 대부분의 공연예술인들은 치료나 재활 시에 자신이 비용을 감당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비로 들었던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은 경우는 13.6%밖에 되지 않아, 공연 예술인들에게 산재보험은 아직 접근하기 쉽지 않은 치료·재활방법이라고 인식하는 점을 알 수 있다. 예술활동증명 분야별로는 무용, 음악, 연극/뮤지컬, 기타 공연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자비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른 분야에 비해 연극/뮤지컬은 '회사에서 비용 지원'이 20.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극/뮤지컬 분야는 시장의 규모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뮤지컬의 경우에는 해외 라이선스 작품의 영향으로 제작사기획사들이 공연예술인과 스태프들의 안전에 예전에 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활동 유형은 창작, 실연, 무대기술, 기획, 제작, 행정 등 모두에서 '자비 부담'이 각각 88.3%, 81.8%, 61.5%, 65.6%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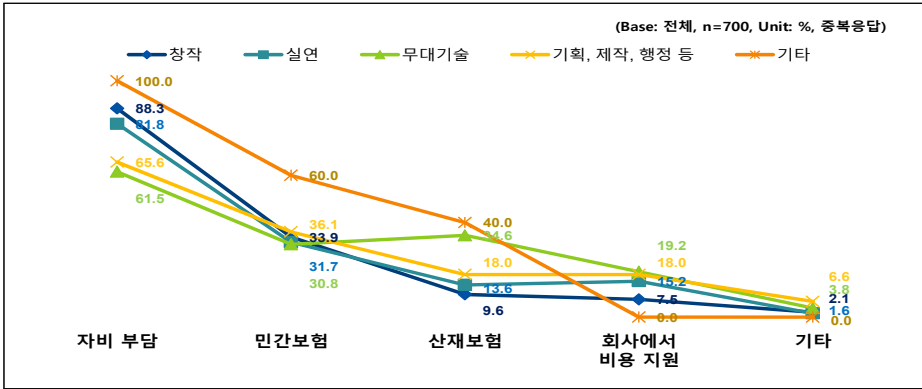
[그림 3-81]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재활 비용 부담 방법



[그림 3-82]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재활 비용 부담 방법



[그림 3-83] 예술활동 유형별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재활 비용 부담 방법



<표 3-17>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재활 비용 부담 방법

(단위: %, 중복응답)

		사례수	자비 부담	민간보험	산재보험	회사에서 비용 지원	기타
■ 전체 ■		(700)	82.0	33.0	13.6	12.9	2.3
계약 형태	근로자	(63)	66.7	47.6	28.6	20.6	3.2
	프리랜서	(611)	83.5	31.6	12.1	12.4	1.8
	단기일용직 등	(26)	84.6	30.8	11.5	3.8	11.5
연평균 소득	연 1,000만원 미만	(274)	83.2	29.2	10.9	10.6	4.4
	연 1,000만원 이상~ 연 2,000만원 미만	(247)	84.2	35.2	15.0	11.7	0.8
	연 2,000만원 이상~ 연 3,000만원 미만	(110)	80.0	35.5	17.3	17.3	0.9
	연 3,000만원 이상~ 연 4,000만원 미만	(42)	66.7	38.1	11.9	11.9	2.4
	연 4,000만원 이상~ 연 5,000만원 미만	(18)	88.9	38.9	11.1	22.2	0.0
	연 5,000만원 이상	(9)	66.7	22.2	22.2	44.4	0.0

산재보험의 경우 업무상 질병들은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아 예술인이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예방하거나 치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무용전공자의 직업병 현황에 따른 보험대책 방향 연구」에서 한국무용 전공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한국무용 전공자들의 경우 진료비 부담 주체를 본인 또는 가족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91.5%였고, 기타가 8.5%인 것으로 집계되었다.⁷⁹⁾ 「2021 예술인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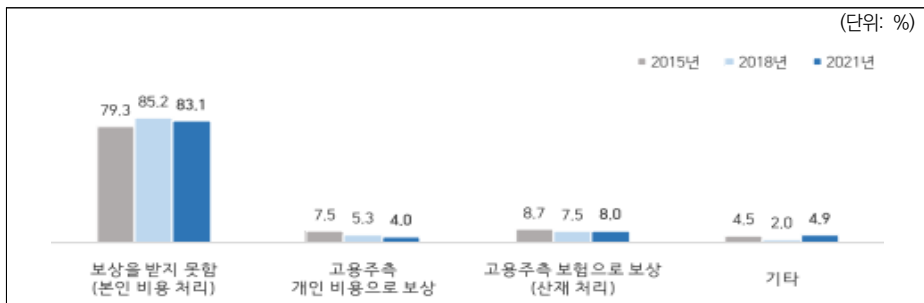
79) 김지현(2009). 「한국무용전공자의 직업병 현황에 따른 보험대책 방향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태조사」에서도 업무상 사고를 입은 경우에 보상을 받지 못하여 본인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응답이 83.1%에 달하며, 고용주 측 보험으로 산재 처리되었다는 응답은 8.0%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 중에 2.5m 높이에 묶여 있었는데, 그 상태로 바닥에 떨어져 허리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에 개인적으로 들어두었던 상해보험으로 그 비용을 처리했는데요, 제가 들었던 상해보험의 월 보험료가 약 2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연극 분야 예술가)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개인마다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을 유발한 원인이 명확해야 연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림 3-84]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재해경로가 불분명하거나, 만성질병이라는 이유로 보험지급이 거부된 것들이 이러한 업무상 질병과의 연관 여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림 3-84] 업무상 피해 보상 방법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예술인 실태조사」, 105쪽.

“회전골격계 근육이 찢어져서 근육이 파열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고 어깨 수술을 한 후 산재보험 청구를 했는데,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질병으로 인한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요구받았던 서류의 양이 너무 많았고, 이를 혼자서 준비하기가 너무 어려워 결국 산재보험 청구를 포기했어요.”(연극 분야 예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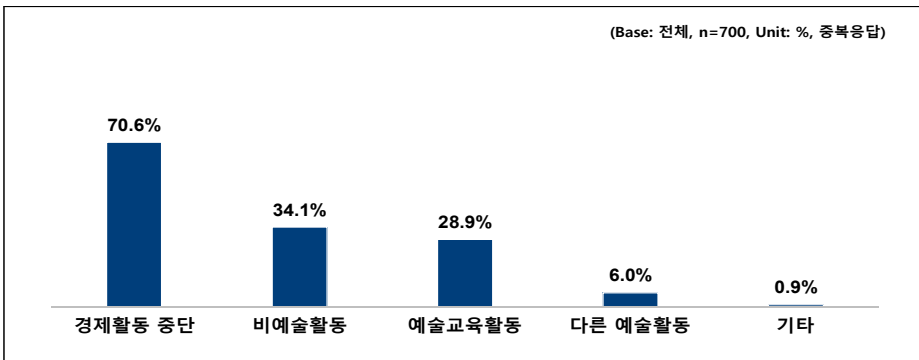
논문, 60-61쪽.

2.3. 경제적 위기로 인한 부족한 치료·재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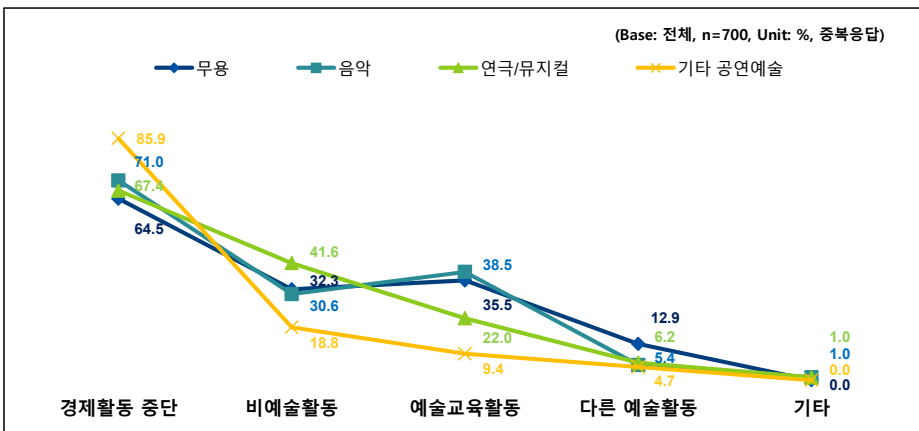
가.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재활 중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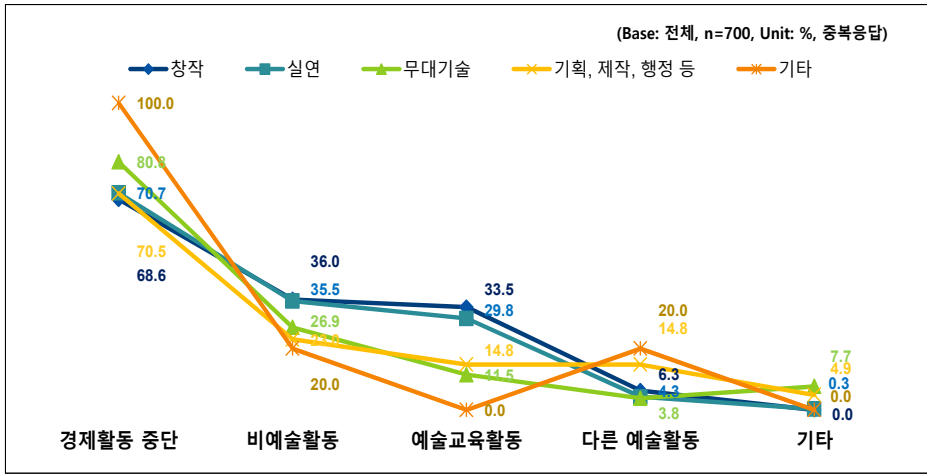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재활 기간 중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중단’이 7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예술활동’(34.1%), ‘예술교육활동(레슨 등)’(2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중명 분야별로는 무용, 음악, 연극/뮤지컬, 기타 공연예술 모두 ‘경제활동 중단’이 각각 64.5%, 70.9%, 67.4%, 8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술활동 유형별로는 창작, 실연, 무대기술, 기획, 제작, 행정 등 모두 ‘경제활동 중단’이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즉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공연예술인과 스태프들은 당장의 수입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림 3-85]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재활 기간 중 경제활동



[그림 3-86] 예술활동중명 분야별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재활 기간 중 경제활동





[그림 3-87] 예술활동 유형별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재활 기간 중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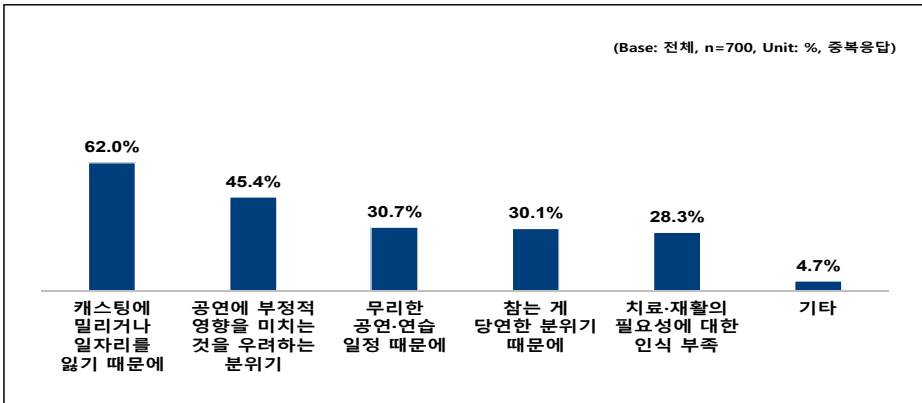
그러나 활동을 하지 않으면 당장의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예술활동을 하거나 예술교육활동(레슨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충분한 치료·재활을 받지 못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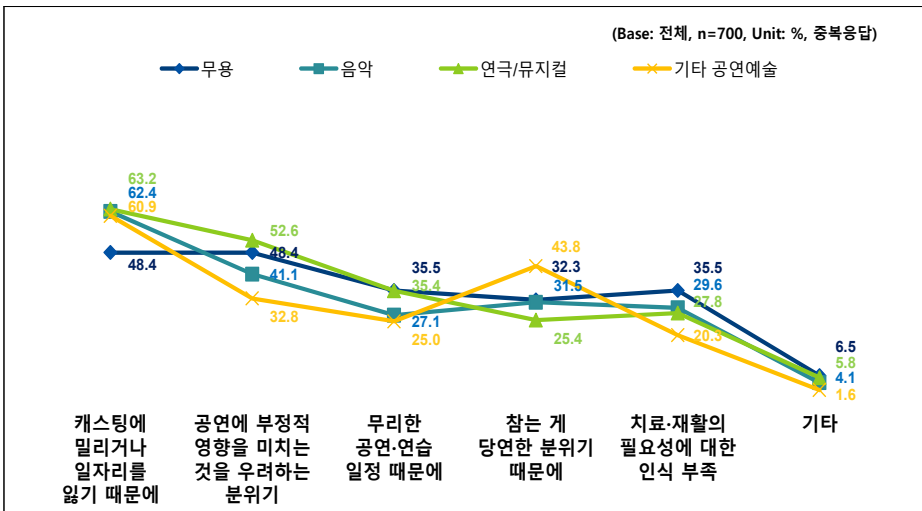
공연예술인이 충분한 치료·재활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캐스팅에 밀리거나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가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45.4%), ‘무리한 공연·연습 일정 때문에’(3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연예술인이 충분한 치료·재활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중 기타 응답으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자리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일하느라 치료시간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등을 기재해 주었다. 예술활동증명 분야별로는 ‘캐스팅에 밀리거나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와 ‘공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는 연극/뮤지컬에서 각각 63.2%,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무리한 공연·연습 일정 때문에’는 무용에서 35.5%, ‘참는 게 당연한 분위기 때문에’는 기타 공연 예술분야에서 43.8%, ‘치료·재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은 무용에서 35.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예술활동 유형별로는 ‘캐스팅에 밀리거나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는 실연에서 66.1%, ‘공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와 ‘무리한

공연·연습 일정 때문에'는 무대기술에서 53.8%, 46.2%로, '참는 게 당연한 분위기 때문에'와 '치료·재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은 창작분야에서 각각 33.5%, 33.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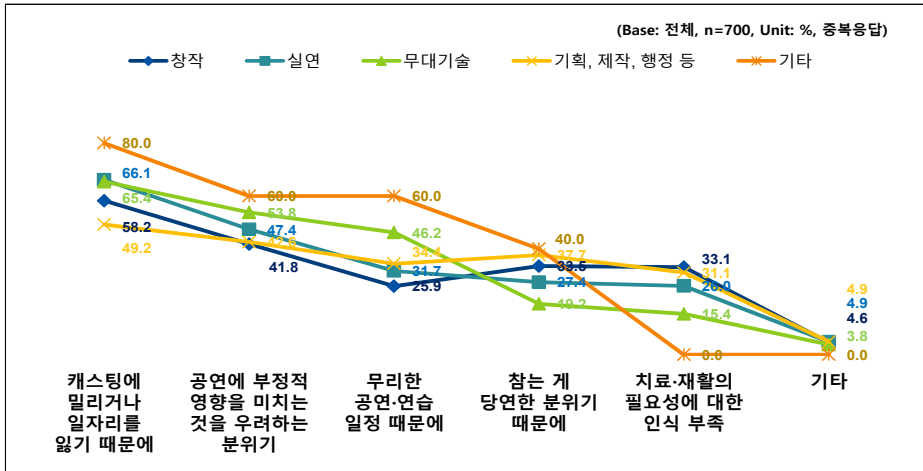
[그림 3-88] 공연예술인이 충분한 치료·재활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그림 3-89] 예술활동종별 분야별 공연예술인이 충분한 치료·재활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그림 3-90] 예술활동 유형별 공연예술인이 충분한 치료·재활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표 3-18> 공연예술인이 충분한 치료·재활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단위: %, 중복응답)

		사례수	캐스팅에 밀리거나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공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	무리한 공연·연습 일정 때문에	참는 게 당연한 분위기 때문에	치료·재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기타
■ 전체 ■		(700)	62.0	45.4	30.7	30.1	28.3	4.7
활동 기간	5년 미만	(118)	61.9	44.1	33.9	35.6	25.4	4.2
	5~10년 미만	(235)	62.6	43.4	31.5	34.9	29.8	3.8
	10~15년 미만	(156)	67.3	50.0	32.7	26.3	29.5	1.9
	15~20년 미만	(95)	62.1	51.6	35.8	20.0	28.4	6.3
	20년 이상	(96)	52.1	38.5	16.7	28.1	26.0	10.4
계약 형태	근로자	(63)	49.2	47.6	38.1	25.4	27.0	4.8
	프리랜서	(611)	63.7	45.7	30.6	30.0	29.3	4.6
	단기일용직 등	(26)	53.8	34.6	15.4	46.2	7.7	7.7
연평균 소득	연 1,000만원 미만	(274)	61.7	42.0	25.2	33.2	29.6	5.8
	연 1,000만원 이상~연 2,000만원 미만	(247)	64.8	52.2	34.0	27.1	27.9	4.5
	연 2,000만원 이상~연 3,000만원 미만	(110)	60.0	41.8	32.7	29.1	25.5	3.6
	연 3,000만원 이상~연 4,000만원 미만	(42)	61.9	35.7	40.5	28.6	23.8	4.8
	연 4,000만원 이상~연 5,000만원 미만	(18)	33.3	38.9	38.9	38.9	38.9	0.0
	연 5,000만원 이상	(9)	77.8	66.7	22.2	22.2	33.3	0.0

〈표 3-18〉를 보면 계약 형태에 따라 충분한 치료재활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의 비율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캐스팅에 밀리거나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은 역시 프리랜스와 단기일용직 등으로 정규직 예술가에 비해서 치료나 재활에 적극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내가 쉬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됩니다. 지금 일을 쉬지 않고 해서 익숙한 사람을 선호하니 계속하게 된 것인데, 특히 공연에서는 대체가 늘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놓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아파도 참게 돼요.”(음악 분야 예술가)

“예술가들이 분명히 또래보다는 생각이나 몸이 젊지만 어느 순간 누적된 사용으로 인해 신체적인 기능이 확 떨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를 알아채면 기획자들이 가장 먼저 캐스팅을 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밀려 나가게 되거든요.”(연극 분야 예술인)

해외 문헌을 살펴보면 국내와 유사한 이유로 치료나 재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매일 연습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예술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무용수들이 부상으로 인하여 연습이나 리허설에서 빠지게 되면 경쟁이 치열한 세계에서 지위를 잃게 된다는 점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이다.⁸⁰⁾ 그리고 연습이 필수인 예술가들의 직업적 특성을 이해하고 처방해주는 의사를 만나는 것도 어려워 정작 무용수들은 전문적인 의료인을 찾기보다는 다른 무용수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치료와 재활을 하는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다.⁸¹⁾

2.4. 직업생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치료·재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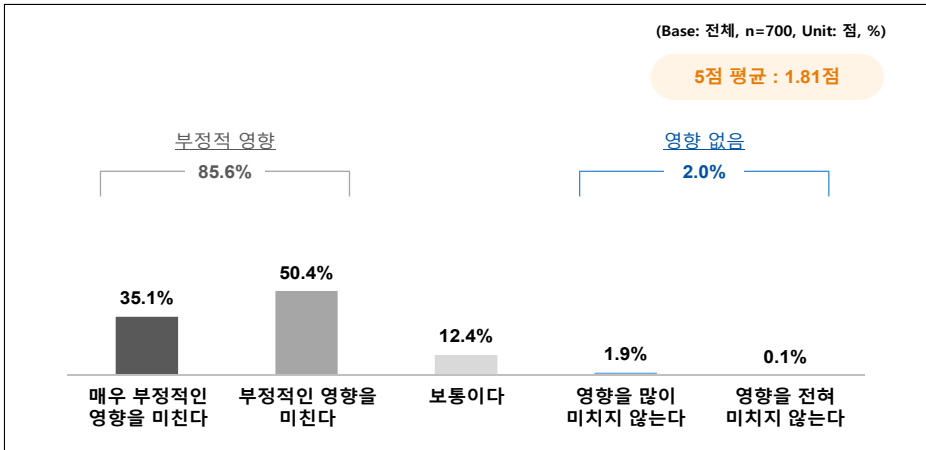
공연예술인이나 스태프들이 적절한 치료·재활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직업생명에 미치는 영향은(5점 기준) 1.81점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영향’의 합은 85.6%(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5.1% +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50.4%)로 ‘영향 없음’ 2.0%(영향을 많

80) Betty B. Kelman, MN, RN(2000). Occupational Hazards In Female Ballet Dancers. *AAOHN JOURNAL*, 48(9): pp. 430-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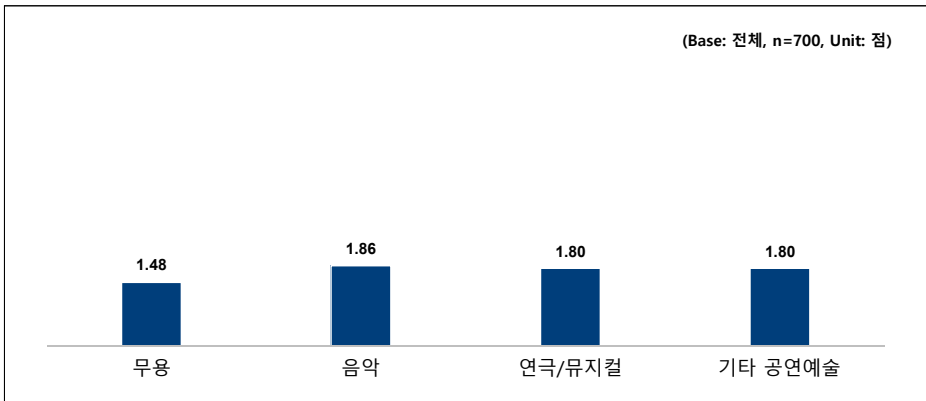
81) Krasnow, D., Kerr, Goo & Mainwaring, L.(1994). Psychology of dealing with the injured dancer. *Medical Problems of Performing Artists*, 9(1): pp. 7-9.

이 미치지 않는다: 1.9% +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 0.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예술활동증명 분야별로는 음악이 1.8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극/뮤지컬, 기타 공연예술이 각 1.80점, 무용 1.48점 등의 순으로 적절한 치료·재활을 받지 못한 경우, 직업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 유형은 창작이 1.9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획, 제작, 행정 등 1.80점, 실연 1.75점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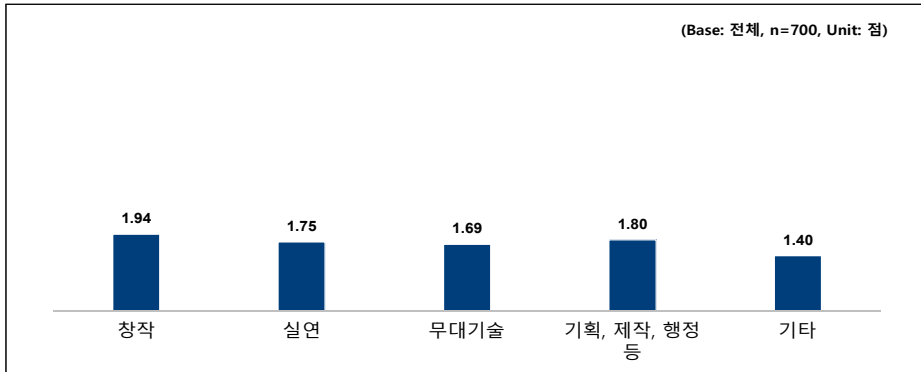
[그림 3-91] 적절한 치료·재활을 받지 못한 경우, 직업 생명에 미치는 영향



[그림 3-92]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적절한 치료·재활을 받지 못한 경우, 직업 생명에 미치는 영향



[그림 3-93] 예술활동 유형별 적절한 치료·재활을 받지 못한 경우, 직업생명에 미치는 영향



“연주 활동은 계속해서 청력이 손실되니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력 진단을 안 좋다고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넘기다보니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악기를 더 이상 연주를 못하는 수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수입 문제보다 건강 문제 때문에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국악 분야 예술가)

“요즘 전문무용수들이 개인 관리들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으니 직업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안 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치료/재활을 못 받는 것은 일정상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교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현장에서 많이 사라지는데 근황을 물어보면 4년 동안 학교 일정 소화하느라 몸을 너무 많이 무리해서 사용해서 무용이 아닌 다른 신체 활동으로 할 수 있는 직업으로 전환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학원 등을 설립해 후배 양성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무용 분야 예술가)

헤밍(M.J.E. Heming, 2004)⁸²⁾은 클래식 음악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조사응답자의 70% 이상이 악기와 관련된 부상을 입었고, 이 중 1/3은 일정 기간 동안 연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결과를 공개하였다. 또한 부상 비율이 높은 예술가들은 연습에 지장을 받고, 잠재적으로는 예술가로서의 삶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도 강조하였다. 크라스노우(Krasnow, 1994)의 논문에서는 무용수들이 건강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곳을 찾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오히려 치료를 받음으로써 나

82) M.J.E Heming(2004). Occupational injuries suffered by classical musicians through overuse. *Clinical Chiropractic*. 7(2): pp. 55-66.

빠진 몸 상태를 직면하게 되어 발레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실업자가 될 수도 있다는 압도적인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무용수들의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되어 신체적 문제가 결국 정신적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료와 재활이 예술가로서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Greben, 1992).

브로너 외(Bronner et al., 2003)가 발표한 논문⁸³⁾에 따르면 전문적인 무용수는 높은 비율로 근골격계 부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산재 보상을 받고 공연을 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져 무용수도 소속 단체도 모두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을 밝혀냈다. 무용수와 단체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건강관리 즉, 부상의 예방과 관련된 교육과 적절한 시기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산재보상의 비율이 81%에서 17%로 대폭 감소되었고, 결근일수도 60%가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산재보상과 결근이 하지의 과사용과 관련된 측면이라는 점에서 조기에 발견하고 재활을 받아 관리하는 것이 전문 무용수로서의 삶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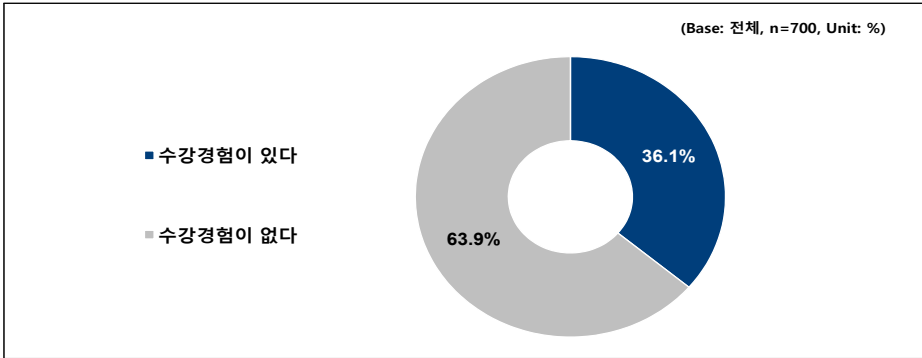
3. 불충분한 예방교육 및 보상 체계

3.1. 예방교육의 실시와 미흡한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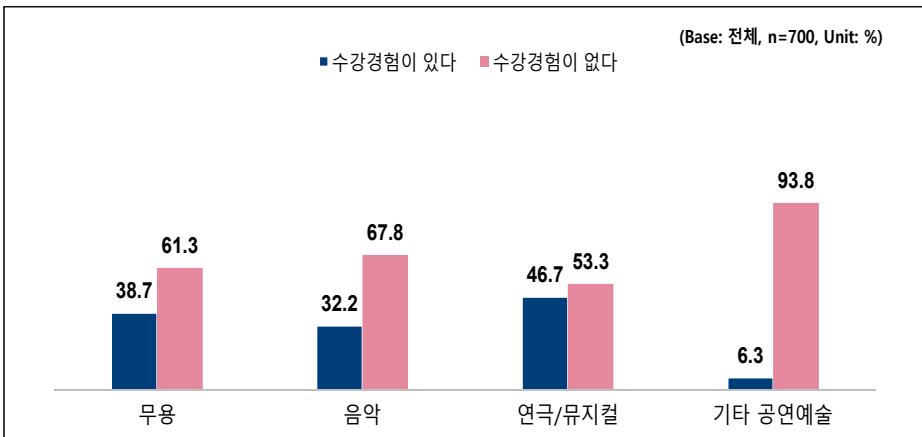
예술인들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예술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수강 여부에 대해서는 ‘수강경험이 없다’ 63.9%, ‘수강경험이 있다’ 36.1%로 나타났다. 장르별로는 국악이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극/뮤지컬(46.7%), 무용(38.7%) 등의 순으로 예술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예술활동 유형별로는 무대기술이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연(43.6%), 기획, 제작, 행정 등(2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83) Bronner S, Ojofeitimi S, Rose D(2003). Injuries in a modern dance company: effect of comprehensive management on injury incidence and time loss. *Am J Sports Med.* 31(3): 365-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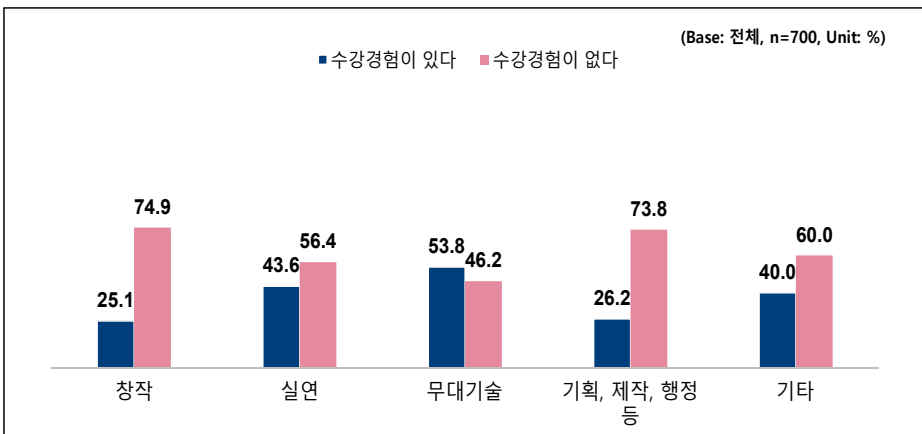
[그림 3-94] 예술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수강 여부



[그림 3-95]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예술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수강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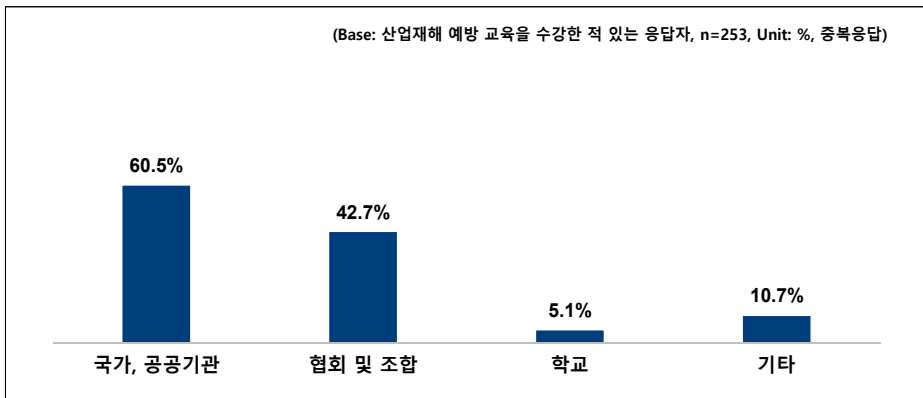


[그림 3-96] 예술활동 유형별 예술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수강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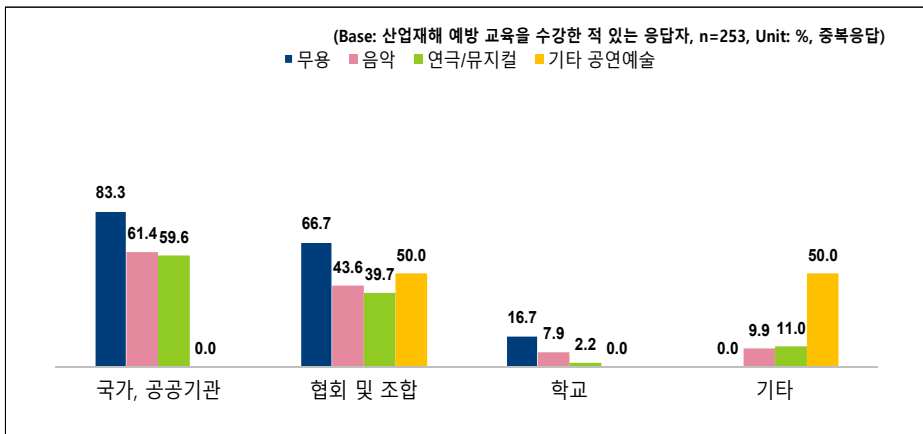


이러한 산업재해 예방교육의 장소로는 ‘국가, 공공기관’이 6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협회 및 조합’(36.1%), ‘학교’(5.1%) 등의 순이었다. 예술활동증명 분야별로는 ‘국가, 공공기관’과 ‘협회 및 조합’, ‘학교’ 각각 83.3%, 66.7%, 16.7%로 모두 무용 분야에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예술활동 유형별로는 창작 분야에서 ‘국가, 공공기관’과 ‘협회 및 조합’이 각각 73.3%, 45.0%로 가장 높았고, ‘학교’는 무대기술 분야에서 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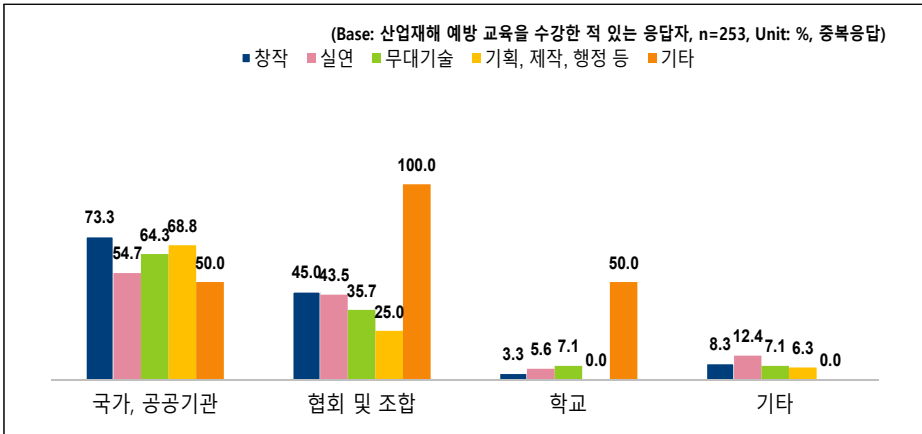
[그림 3-97] 예술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수강 장소



[그림 3-98]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예술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수강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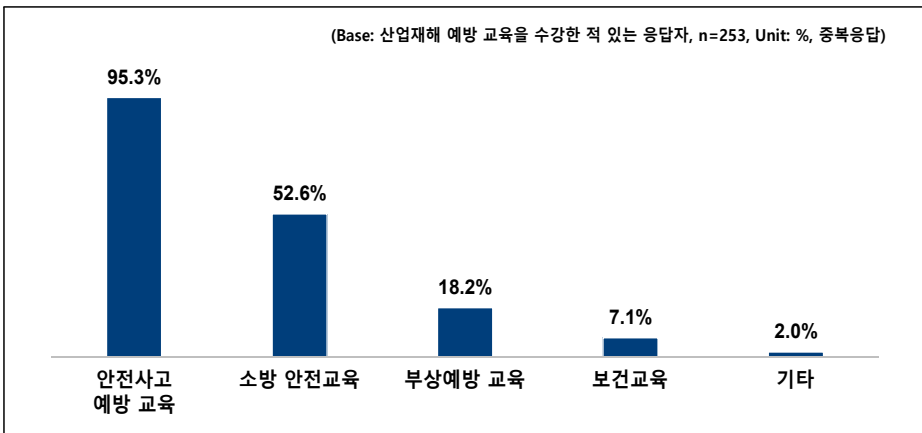


[그림 3-99] 예술활동 유형별 예술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수강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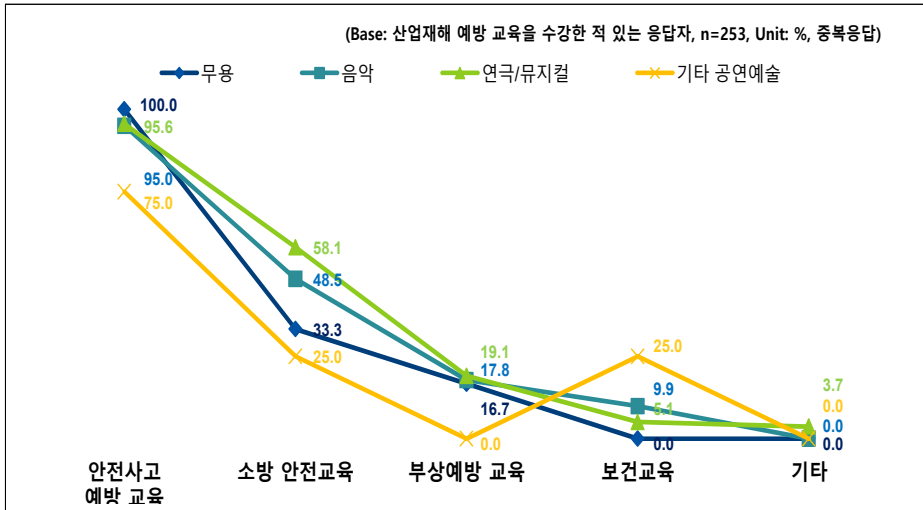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방 교육 종류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9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방 안전교육’(52.6%), ‘부상예방 교육’(18.2%)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예술활동증명 분야별로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소방 안전교육’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높지만, ‘부상예방 교육’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 유형별로는 창작, 실연, 무대기술 분야에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은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소방 안전 교육’은 연극/뮤지컬만 58.1%로 절반 이상이고, ‘부상예방 교육’은 대부분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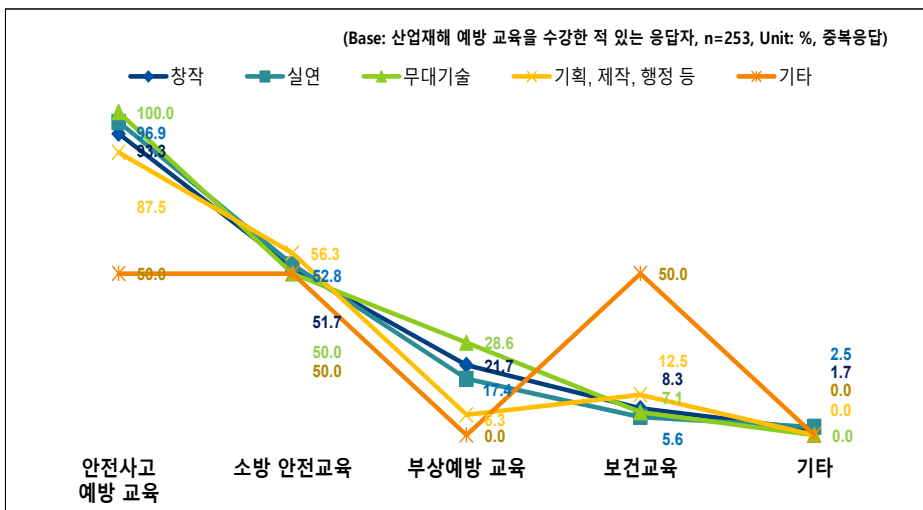
[그림 3-100] 예술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방 교육 종류



[그림 3-101]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예술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방 교육 종류



[그림 3-102] 예술활동 유형별 예술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방 교육 종류



안전사고와 관련된 교육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공연법」 제11조4항에 의거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연법」에 명시된 안전교육 관련 조항

제11조의4(안전교육)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5. 18.]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5. 18., 2019. 11. 26., 2022. 5. 3.>

1.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5. 18.>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1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2조의4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2조에 따른 수거·폐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12. 24., 2022. 1. 18.>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2.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공연장운영자등

4.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1. 28., 2018. 12. 24.>

1. 제1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 5. 18., 2018. 12. 24.> [전문개정 2011. 5. 25.] [시행일: 2023. 5. 4.] 제43조

그러나 소방안전 교육이나 부상예방 교육, 보건교육의 경우에는 「공연법」 상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연장 관리자나 공연에 참여하는 모든 예술가 및 스태프들이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들도 안전교육만 포함하고 있어 향후 소방안전, 보건 등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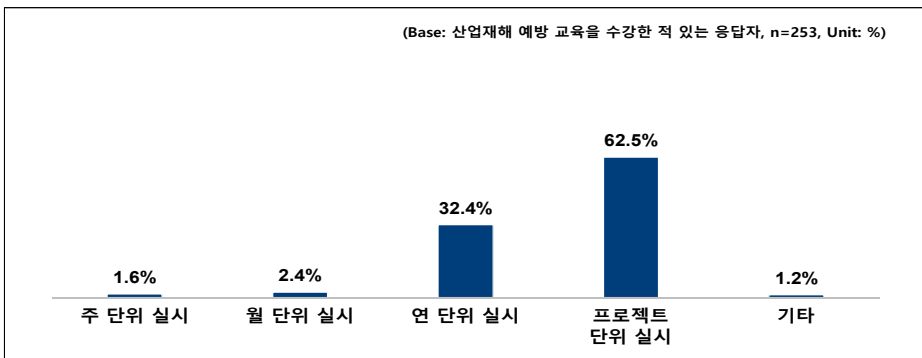
[그림 3-103]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전체교육과정				
과정명	구분	학습가능 시간	신청	
공연자 안전교육 (스텝 및 작업자 과정)	이러닝	1개월 이내	신청	▶
공연자 안전교육 (스텝 및 작업자 과정) - 수어포함	이러닝	1개월 이내	신청	▶
공연자 안전교육 (어린이 출연자 과정)	이러닝	1개월 이내	신청	▶
공연자 안전교육 (출연자 과정)	이러닝	1개월 이내	신청	▶
공연자 안전교육 (출연자 과정) - 수어포함	이러닝	1개월 이내	신청	▶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공연장 근무자)(8시간)	이러닝	1개월 이내	신청	▶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공연장 외 공연을 하려는자)(8시간)	이러닝	1개월 이내	신청	▶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 (공연장 근무자)(4시간)	이러닝	1개월 이내	신청	▶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 (공연장 외 공연을 하려는자)(4시간)	이러닝	1개월 이내	신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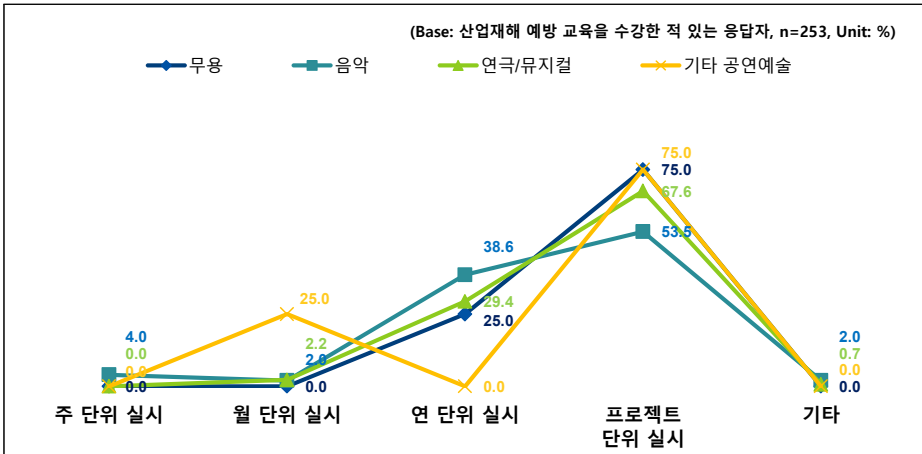
출처: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검색일 2022.08.18.)

공연예술인 및 무대기술 분야 스태프들이 수강한 예방 교육 빈도는 ‘프로젝트 단위 실시’가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 단위 실시’(32.4%), ‘월 단위 실시’(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증명 분야와 활동 유형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단위 실시’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그림 3-105]와 [그림 3-106]으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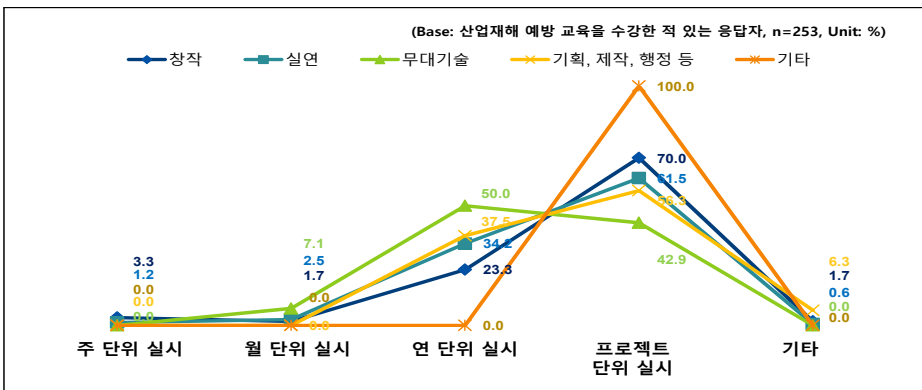
[그림 3-104] 수강한 예방 교육 빈도



[그림 3-105]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수강한 예방 교육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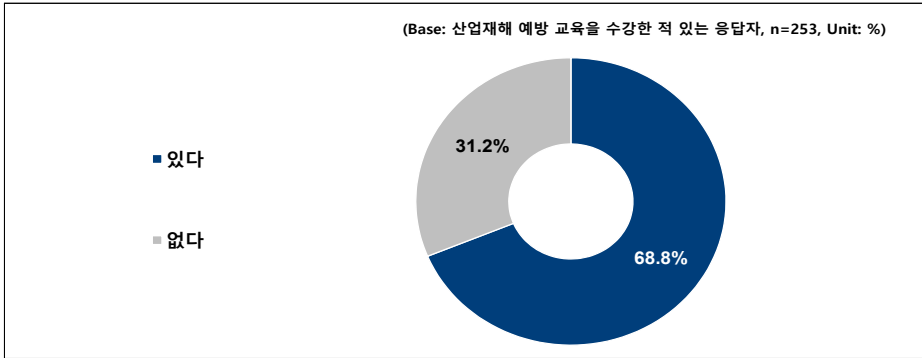


[그림 3-106] 예술활동 유형별 수강한 예방 교육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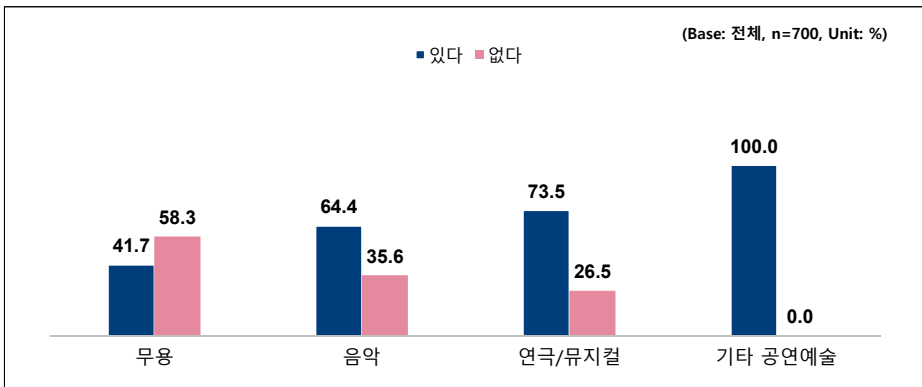


공연예술인과 스태프들은 예방 교육의 효과가 '있다' 68.8%, '없다' 31.2%로 응답하였다. 예술활동증명 분야별로는 기타 공연예술이 100.0%, 연극/뮤지컬 73.5%, 음악 64.0% 등의 순이었고, 예술활동 유형별로는 무대기술이 9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창작 70.0%, 실연 6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무대기술 분야 종사자에서 예방 효과에 대한 긍정의 응답이 높게 집계된 것은 무대환경에서 안전과 관련되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야일 뿐만 아니라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예방 교육으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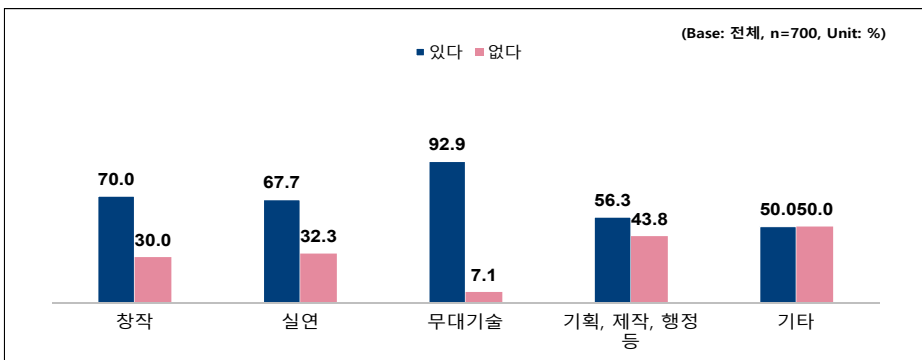
[그림 3-107] 예방 교육의 효과 여부



[그림 3-108]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예방 교육의 효과 여부



[그림 3-109] 예술활동 유형별 예방 교육의 효과 여부



예방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예술가와 스태프가 있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예방 교육의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적지 않았다. 예방 교육의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이유를 살펴보면 ‘교육 내용이 너무 이론적이다’, ‘단순 제출용이다’, ‘교육 내용이 현장과 괴리가 있다’, ‘온라인이라 집중이 안된다’ 등으로 나타나 질 좋은 교육 콘텐츠의 확보와 현장성을 담은 실질적인 교육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숙제를 주고 있다.

〈표 3-19〉 예방 교육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 이유

(단위: 명)

내용	사례수
교육 내용이 너무 이론적이다	22
단순 제출용이다	14
교육 내용이 현장과 괴리가 있다	12
온라인이라 집중이 안된다	9
강제 의무 교육이다, 비효율적이다	6
온라인 교육이 형식적이다	5
교육 내용이 재미가 없다	4
무의미한 동영상만 재생한다, 예방전에 발생 가능하지 않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다	3
영상 시청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육 내용의 중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쓸데없는 내용이 많아 집중이 안 된다, 매뉴얼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다 현장별 안전숙지 내용이 다르다, 실제로 일어날 일이 드물다	2
참여 유도형 교육이 필요하다, 인식 개선을 위한 직접 교육이 필요하다, 프린트를 이용한 교육 방식이 불편하다, 교육 내용 전달이 미흡하다, 공연장 환경에 맞는 현장 대응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장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 현장 시설이 노후하다, 비현실적이다, 불필요하다, 교육을 해도 사고는 예기치 않게 생긴다, 사업장 및 주최측이 책임을 회피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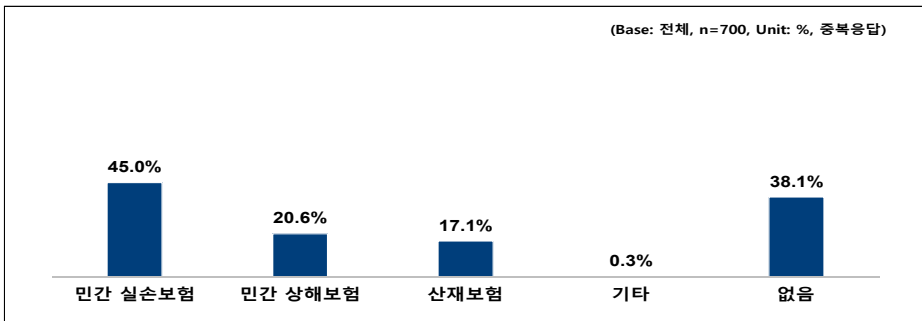
“안전교육 수수료증 발급을 위한 허술한 교육이지만, 그 이전에는 이런 것조차도 없었어
요. 요즘 어떤 공연장에 가보면 무대감독이 불러서 안전교육을 하는 경우도 생겼고요.
안전교육 수수료증을 발급받기 위한 교육 영상의 경우 실제로 내가 가서 작업하게 되는
극장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극장에 따라 지켜야
할 수칙이나 안전 매뉴얼이 각각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안하
고 싶은 것은 야외공연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야외공연에 대한 안전, 부상 예방에 대
한 교육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무용 분야 예술가)

“장르별, 분야별로 유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안전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있겠
으면 합니다. 지금의 온라인 교육은 너무 통합적이라 저에게 와 닿지 않거든요.”(연극
분야 예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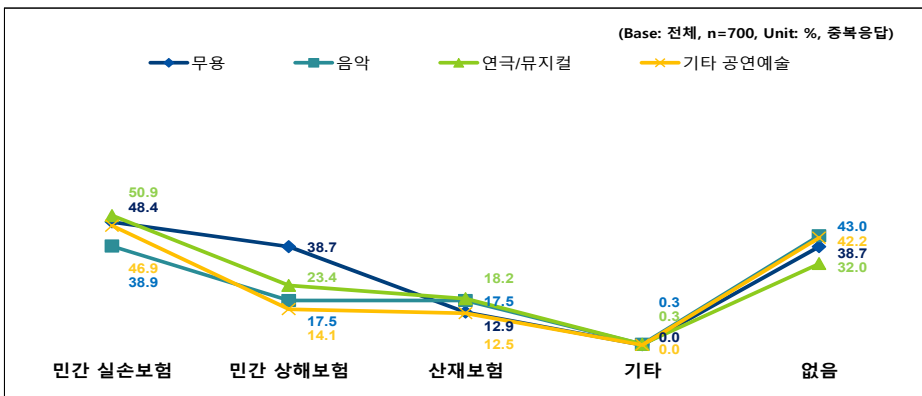
3.2. 산재보험에 대한 낮은 인식과 가입 의향

공연예술인과 스태프들이 산업재해를 대비하여 어떠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향후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우선 산업재해를 대비한 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민간 실손보험'이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 상해보험' 20.6%, '산재보험' 17.1%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예술활동증명 분야별로는 장르별로 차이를 보였다. 연극/뮤지컬은 '민간 실손보험'을 가입했다는 응답이 50.9%로 나타났고, 무용 분야는 '민간 상해보험' 38.7%, '산재보험'은 연극/뮤지컬 분야에서 18.2%로 집계되었다. 음악 분야와 기타 공연예술분야에서는 '없다'의 응답이 각각 43.1%와 42.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술활동 유형별로는 무대기술 분야가 '민간 실손보험'에 53.8%, 기획, 제작, 행정 등 분야가 '민간 상해보험' 26.2%와 '산재보험'에 31.1%의 응답률을 보였고, '없음'은 창작 분야가 4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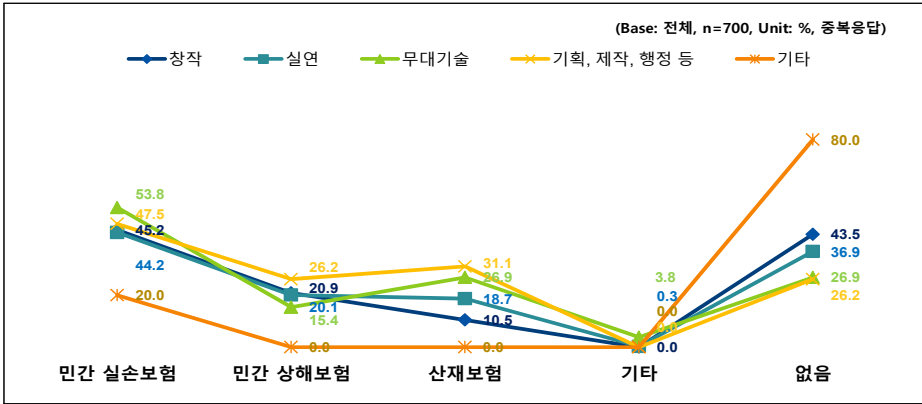
[그림 3-110] 산업재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 여부



[그림 3-111]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산업재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 여부



[그림 3-112] 예술활동 유형별 산업재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 여부



계약 형태를 보면 산재보험 가입률이 극명하게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인 공연예술인이나 스태프인 경우 49.2%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프리랜서는 14.2%밖에 되지 않았다. <표 3-20>에 의하면 프리랜서 예술인들에게 민간 실손보험이 산재보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단기 일용직의 경우에는 민간 실손보험의 가입이 절대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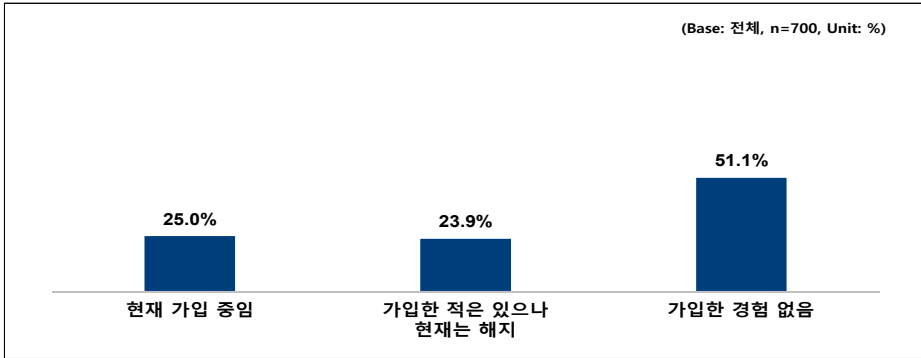
<표 3-20> 산업재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 여부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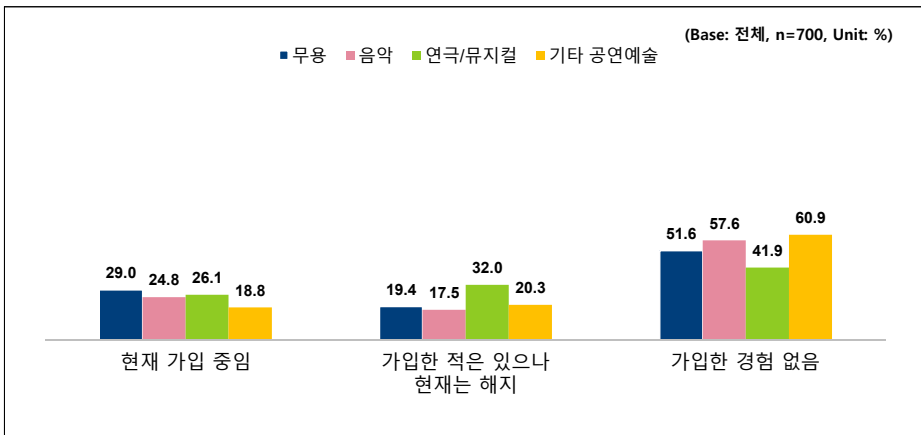
		사례수	민간 실손보험	민간 상해보험	산재보험	기타	없음
■ 전체 ■		(700)	45.0	20.6	17.1	0.3	38.1
계약 형태	근로자	(63)	36.5	23.8	49.2	0.0	28.6
	프리랜서	(611)	46.2	21.1	14.2	0.3	38.3
	단기일용직 등	(26)	38.5	0.0	7.7	0.0	57.7

산재보험 가입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가입한 경험 없음'이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가입 중임'이 25.0%, '가입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해지' 2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증명 분야별로는 무용이 '현재 가입 중임'에 29.0%, '가입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해지'는 연극/뮤지컬이 32.0%, '가입한 경험 없음'은 기타 공연예술이 6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현재 가입 중임'은 기획, 제작, 행정이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입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해지'는 실연 분야가 24.9%, '가입한 경험 없음'은 창작 분야에서 5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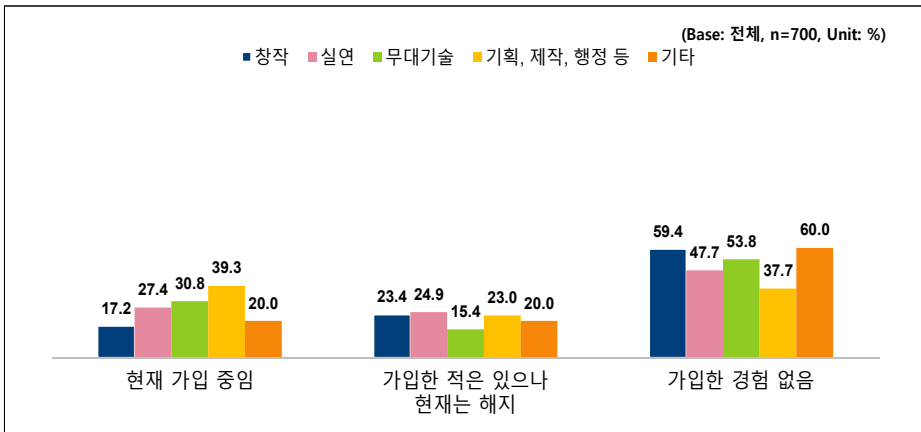
[그림 3-113] 산재보험 가입 경험



[그림 3-114]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산재보험 가입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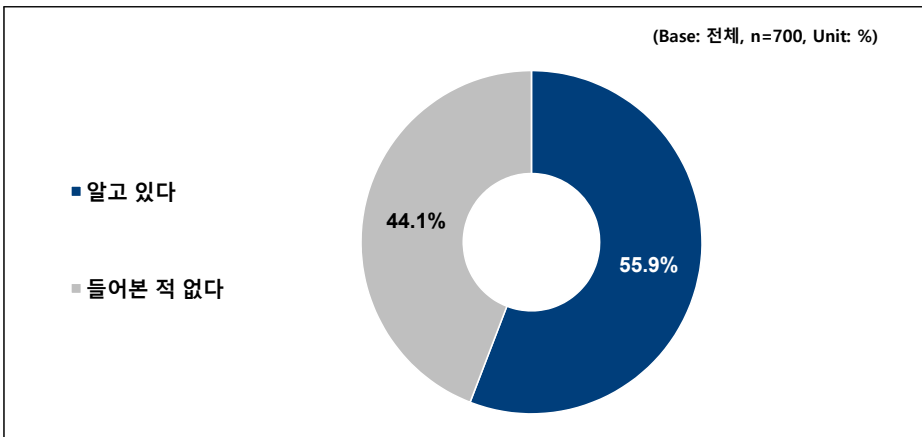


[그림 3-115] 예술활동 유형별 산재보험 가입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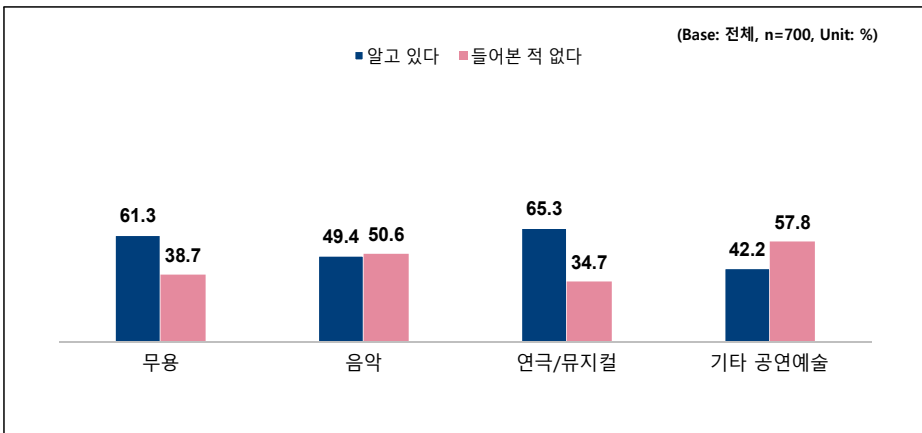


예술인들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항에서는 ‘알고 있다’가 55.9%, ‘들어본 적 없다’가 44.1%로 집계되었다. 예술활동증명 분야별로는 연극/뮤지컬 종사자의 65.3%, 무용 분야 종사자의 61.3%가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 유형별로는 무대기술 분야가 69.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기획, 제작, 행정 등이 68.9%, 실연 분야가 60.2%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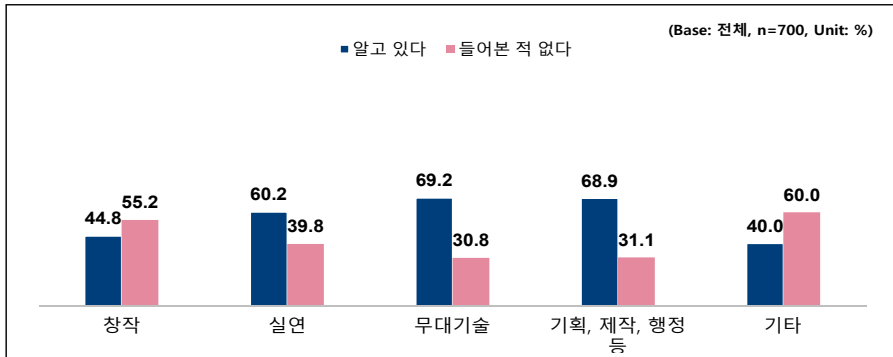
[그림 3-116]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가능 인지 여부



[그림 3-117]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가능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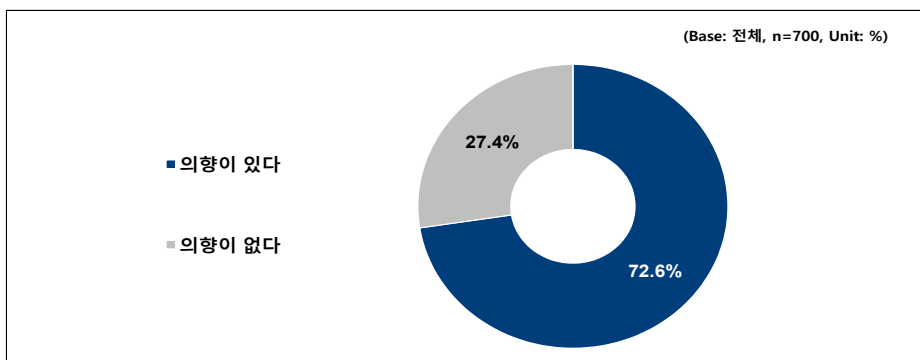
[그림 3-118] 예술활동 유형별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가능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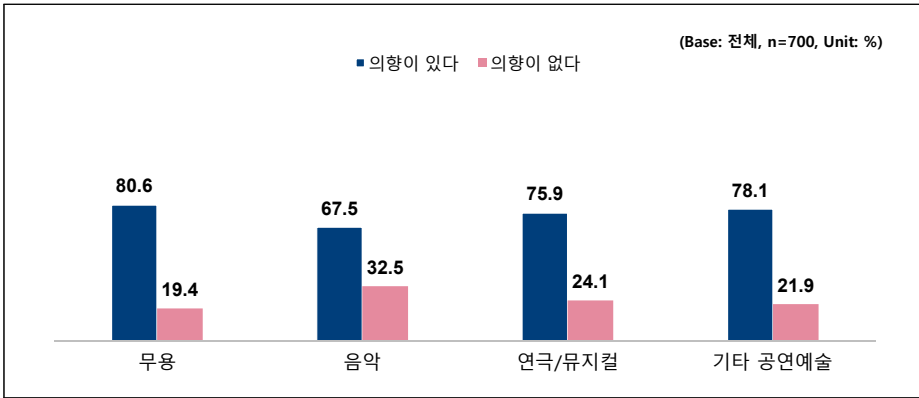
향후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향이 있다’가 72.6%, ‘의향이 없다’가 27.4%로 나타났다. 예술활동증명 분야별로는 무용이 80.6%, 기타 공연예술분야 78.1%의 순으로 향후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극/뮤지컬의 경우에도 75.9%로 높은 비율을 보여 예술인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술활동 유형별로는 기획, 제작, 행정 등이 78.7%로 가장 높았고, 실연 75.6%, 창작 66.5%의 순이었다.

“저는 지금도 주변사람들에게 산재보험 들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졌고요. 그렇지만 산재보험을 들었더라도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모르고, 산재보험을 “실제로 내가 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중간에 해지하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음악 분야 예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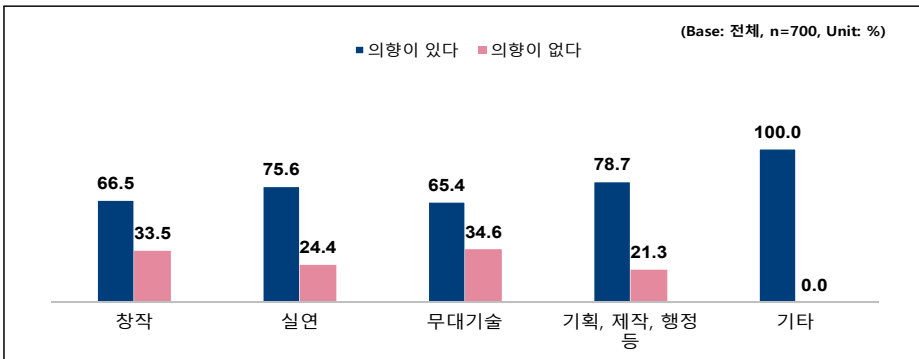
[그림 3-119] 향후 산재보험 가입 의향



[그림 3-120]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향후 산재보험 가입 의향



[그림 3-121] 예술활동 유형별 향후 산재보험 가입 의향



3.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급한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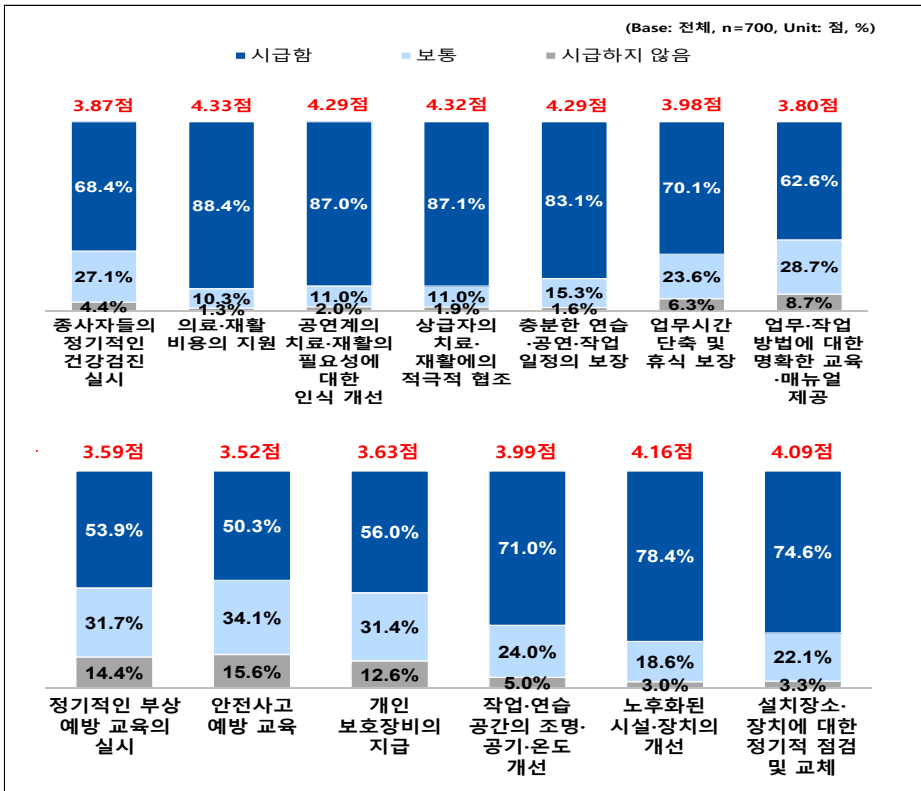
공연예술분야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예술가와 스태프들이 산업재해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공연계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의료재활 비용의 지원’이 4.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상급자의 치료재활에의 적극적 협조’ 4.32점, ‘공연계의 치료재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충분한 연습공연작업 일정의 보장’이 각각 4.29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한 ‘의료재활 비용의 지원’의 경우는 이미 산업재해를 경험한 후의 대처지원에 관련한 응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의 우선순위는 ‘상급자의 치료재활에의

적극적 협조’, ‘공연계의 치료재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충분한 연습공연작업 일정의 보장’이라고 볼 수 있다.

“뮤지컬 분야의 경우 해외 라이선스 작품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무대설치 기간이 그전에 비해서 훨씬 늘어났습니다. 불과 7~8년 전만 해도 5일 만에 끝내야 했던 무대작업을 이제는 2~3주 동안 할 수 있게 되어 훨씬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무대기술 분야 자문위원)

따라서 상급자들이 무대 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산업재해들이 일차적으로 예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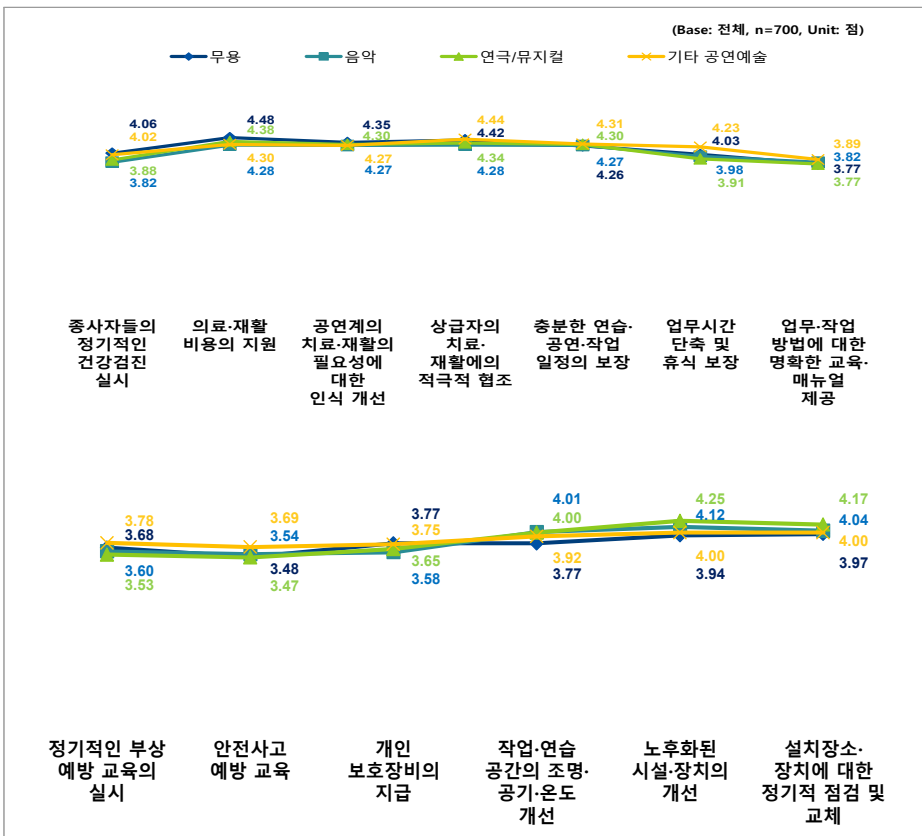
[그림 3-122] 공연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



예술활동증명 분야별로는 ‘종사자들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의료·재활 비용의 지원’, ‘공연계의 치료·재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모두 무용 분야에서 각각 4.06점, 4.48점, 4.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급자의 치료·재활에의 적극적 협조’, ‘충분한 연습·공연·작업·일정의 보장’, ‘업무시간 단축 및 휴식 보장’, ‘업무·작업 방법에 대한 명확한 교육·매뉴얼 제공’ 모두 기타 공연예술분야에서 4.44점, 4.31점, 4.23점, 3.89점으로 가장 높았다.

‘정기적인 부상 예방 교육의 실시’와 ‘안전사고 예방 교육’은 기타 공연예술에서 3.78점, 3.69점이었고, ‘개인 보호장비의 지급’은 무용 분야에서 3.77점, ‘작업·연습 공간의 조명·공기·온도 개선’은 음악 분야에서 4.01점, ‘노후화된 시설·장치의 개선’과 ‘설치장소·장치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교체’는 연극/뮤지컬 분야에서 각각 4.25점, 4.17점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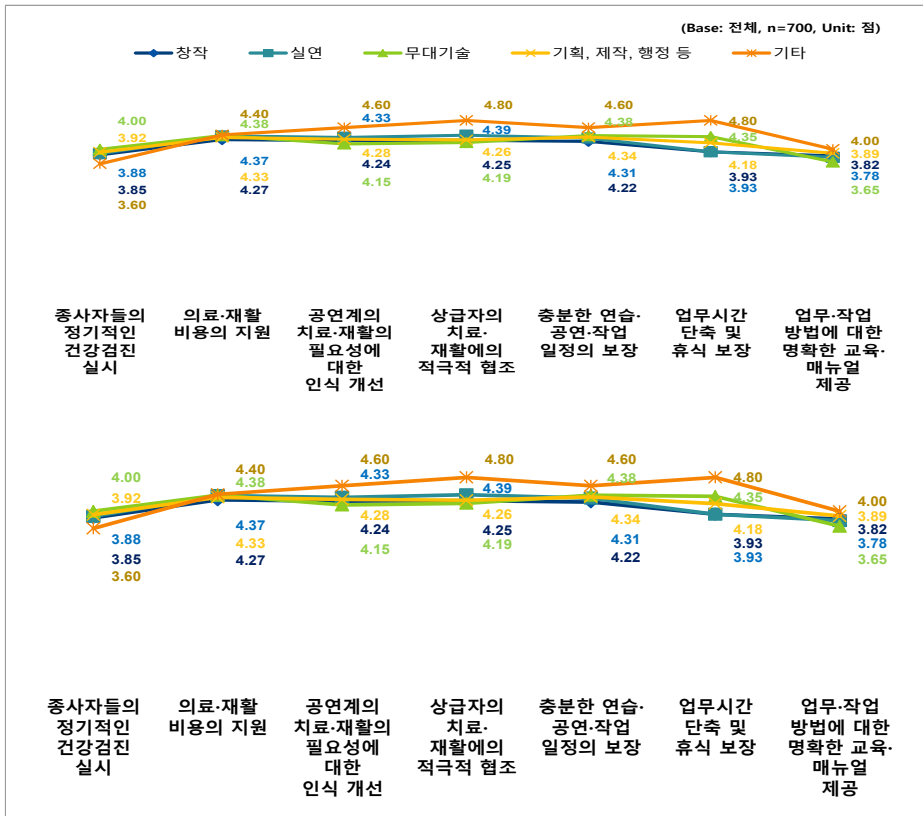
[그림 3-123]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공연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



예술활동 유형별로는 살펴보면 무대기술 분야는 ‘중사자들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와 ‘의료·재활 비용의 지원’, ‘충분한 연습·공연·작업·일정의 보장’, ‘업무시간 단축 및 휴식 보장’의 4개 항목에서 각각 4.00점, 4.38점, 4.38점, 4.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연 분야는 ‘공연계의 치료·재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상급자의 치료·재활에의 적극적 협조’가 4.33, 4.39점으로 집계되었다. 기획, 제작, 행정 등의 분야에서는 ‘업무·작업 방법에 대한 명확한 교육·매뉴얼 제공’이 3.89점으로 가장 높았다.

예술활동 유형별로는 ‘정기적인 부상 예방 교육의 실시’와 ‘안전사고 예방 교육’은 기획, 제작, 행정 등에서 각각 3.77점, 3.66점으로 집계되었고, ‘개인 보호장비의 지급’은 창작 분야에서 3.72점, ‘작업·연습 공간의 조명·공기·온도 개선’, ‘노후화된 시설·장치의 개선’, ‘설치장소·장치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교체’는 모두 무대기술 분야에서 4.04점, 4.25점, 4.23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3-124] 예술활동 유형별 공연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



“그 무엇보다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친 것도 다친 건데, 심각한 부상을 입어야만 치료를 받겠다고 생각하니깐요. 연주자나 고용자 모두 조금 다친 것도 치료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연주자뿐만 아니라 고용자도 같은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음악 분야 예술가)

“사실 예술가들도 스포츠 선수들만큼 몸을 쓰는 직업인데, 스포츠 분야만큼 내 몸을 아껴야 한다는 인식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악 분야 예술가)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연자, 창작자, 고용주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요. 특히 “예술가들은 아파도 돼” 같은 인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술가들 스스로도 다쳐도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개선될 필요가 있겠죠. (음악 분야 예술가)

인터뷰에 참여한 예술인들은 종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 공연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무조건 공연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예술가나 스태프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의 작품을 하다보면 경험하게 되는데, 그쪽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다칠 확률이 높다면 아예 안하거나 기계의 힘을 빌리는 오토메이션(automation, 자동화)을 통해 연출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매뉴얼)을 작품마다 가지고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무대기술 분야 자문위원)

예술인의 산업재해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제4장

공연예술인의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을 위한
정책대응 방향

제1절 공연예술인의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를 위한 정책대응 방향

1. 안전최우선주의를 적용한 정책방향의 개선

1.1. 안전관리 비용의 합리적 적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공연예술분야에서는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었다. 그 동안 우리 공연예술업계는 크고 작은 사고들을 겪어왔으며,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공연예술인 중 업무상 사고와 출퇴근 재해의 경험이 있는 예술인은 25.9%로 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공연법」 개정 등을 통해 관련 법률이나 규제가 마련되면서 공연 현장의 안전성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업계 종사자들의 인식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본 보고서의 조사에 참가한 전문가 및 예술인들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와 같이 공연예술분야의 산업재해의 가장 큰 장애요인 중 하나는 업계 전반의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잘못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문조사 및 자문회의, 인터뷰 등의 결과에서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된 안전예방의 미흡, 미숙함과 부주의, 부적절한 작업환경, 문화·환경의 문제 등이 모두 이러한 업계의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 부족과 문화에서 오는 문제이다. 우리 공연예술분야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더욱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러한 공연예술계 스스로의 인식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를 통해 상당수의 공연예술인들은 공연을 무대에 잘 올려야 한다는 데에 매우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다소 신체에 무리가 가는 일정도 감수하고 있었고, 공연의 성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은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예술계 전반적으로 이러한 희생을 미덕화하는 분위

기가 만연되어 있는데, 특히 집단 활동이 많고 상하관계가 엄격한 공연예술분야의 특성 상 이러한 가치에 반기를 들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자의 요구를 하급자가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안전 사항들이 묵인되고 있다.

다행히 최근에는 우리 공연예술계도 이러한 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중이다. 공연 업계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고가 종사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상급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예술인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뮤지컬 분야에서 해외 라이선스 공연의 국내 예술인과의 합동작업이 활발해지면서, 공연 안전관련 체계나 시스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설치 및 철수, 리허설 기간이 대폭 확대되었다. 계약서에 약정된 해외 라이선스 공연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조건들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간의 확대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기간뿐만 아니라 인력 구성이나 규모, 안전조직 구성과 역할 등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를 경험한 국내 공연예술인들이 국내 시장에도 점차 적용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 뮤지컬 분야를 비롯한 일부 대형 공연에서만 적용되고 있으며, 국내 공연예술분야 전반적으로는 아직은 많은 개선이 요구된다.

공연예술분야의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국내 예술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책 분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정책 영향력이 강한 국내 공연예술분야는 정책의 방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스태프 추락사건 이후 2022년 1월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공연안전과 관련한 법률 조항이 많이 추가되었다. 향후에는 안전과 관련한 정책사업의 개발과 운영이 더욱 활발해질 필요가 있으며, 산업재해에 대해 인식이 취약한 공연계의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나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특히 국내 공연예술업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 공연예술분야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운영원칙을 세우고 체계를 바꿔나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 공공 공연예술분야 또한 공연업계 전반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아 안전최우선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못하다. 그 동안 우리 공공 공연예술분야와 관련 예술정책은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비용, 인력의 투자보다는, 더 많은 수의, 양질의 콘텐츠 공급을 하고, 이를 더 많은 국민이 향유하게 하는, 수요와 공급을 활발하게 하는 측면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다.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 또한 이러한 가

치사슬의 원활화와 크게 관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공연예술분야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공연계의 문화를 개선해야 하며, 공공 공연예술분야부터 체계를 개선해 전체 공연예술분야의 인식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공공 공연예술분야의 운영방식의 개선 이 요구된다.

가. 국공립 공연장 및 공연단체의 경쟁입찰 방식의 개선

많은 공공기관이 그렇듯이, 국공립 공연장 및 공연단체도 공연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 정하는 데에 있어 ‘경쟁입찰’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경쟁입찰은 일반적으로 ‘기술점수: 가격점수’가 80:20 또는 90:10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가격점수는 기술점수보다 비중은 적지만 입찰결과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 때문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가격경쟁에 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고려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실제로 아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공공 공연단체가 무대기술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 최저가 낙찰제를 택하 고 있는데, 이는 국고의 경제적이고 효율적 활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만 안전은 확보 하기 어려워진다.

[사례] 공공예술단체의 무대 세트 제작 및 설치 용역업체 선정 기준

1. 용역개요

- (1) 용역개요 : 00무용단 정기공연 무대제작 · 운송 · 설치 · 철거 · 보관창고입고 용역
- (2) 제작 및 설치기간 : 낙찰일로부터 2022. 05. 10.(화)일한 설치 완료
(설치, 철거, 입고는 무용단 세부일정과 사전협의)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1)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 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 순서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2)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나라장터의“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공 공연예술분야에서 안전과 관련한 용역 선정의 경우 가격경쟁 점수를 대폭 축소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는 안전에 관련한 부분은 단가의 하한선을 두도록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며, 기술평가에서 안전점수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안전에 대한 대처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계획했느냐를 평가하거나 위험성 평가를 하는지, 관련 보험은 가입하는지, 안전용품은 충분히 구비하는지, 충분한 인원을 투입하고 있는지, 안전관리 조직을 구축하고 책임자가 있는지 등을 포함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경쟁입찰 방식의 개선은 현재 우리 공연예술분야의 안전을 우선하지 않는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공공 공연예술분야부터 우리 공연계의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공공 공연예술분야부터 이러한 안전최우선주의를 적용시키는 정책방향을 적용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공연예술분야 전반적인 문화를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 합리적인 수준의 안전관리비 예산 적용

안전의 문제는 비용이 수반된다.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우리 공연예술분야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무리한 일정, 과도한 근무시간 등의 문제도 사실은 공연장 대관 일정을 줄여 비용을 아끼려고 하는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 미숙련 예술인의 활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또한 숙련된 예술인만을 고용하기에는 제작비의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안전장비 및 설비, 안전대책의 마련 등도 결국은 비용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인터뷰에 참여했던 많은 예술인들도 안전상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지만 비용의 문제와 연결되므로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는 제2장에서 살펴보았던 우리 공연예술분야의 영세성과 무관하지 않다. 극히 일부 소수의 제작사나 공공 공연예술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작사, 기획사, 민간 공연장, 민간 공연단체는 극히 영세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연 제작의 예산이 충분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이에 따라 비용이 수반되는 안전에 대한 관리 및 대책 마련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공연예술분야 적용도, 건축 분야 등과 달리 공연예술분야는 원청인 제작사 등이 매우 영세한 구조라 최종책임과 과도하게 부여할 경우 국내 공연제작 위축

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민간 공연예술분야의 경우 전반적인 공연예술분야의 문화를 개선해나가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공연예술분야부터 합리적인 전예산에 대한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2년7월 「공연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제9조의2(안전관리비) 조항이 추가되었고, 공연장의 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려는 자는 예산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시행령은 공연 전체 예산의 안전관리비 최소비율을 지정하고 그 내역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때 공공 공연예술분야에서 앞선 경쟁입찰과 같은 방식으로 비용절감을 우선시한다면 본 시행령의 의미는 퇴색될 수 있다. 본 법률과 시행령 개정의 의미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안전관리비가 공공 공연예술분야에서부터 적용될 필요가 있다.

「공연법」 개정 시행령의 '안전관리비 계상'

제9조의2(안전관리비) ①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공연장운영비의 1퍼센트 이상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 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비용의 1.15퍼센트 이상
 - 나.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비용의 1.21퍼센트 이상

②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 7. 19.>

1.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2.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3. 보호장비의 구입
4. 법 제11조의4에 따른 안전교육과 그 밖의 안전교육 및 훈련
5. 법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6. 안전 관련 보험
7.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③ 공연장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장운영자: 매년 2월 말일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한 자: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1.2.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위상 제고

안전사고는 공연예술 제작의 다양한 단계, 다양한 업무의 과정에서 발생하며, 안전사고의 예방은 업무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공연 제작 업무의 특성을 이해하고,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전문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 우리 「공연법 시행령」은 2016년 5월 17일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조직의 설치 기준’을 신설하고, 이러한 전문조직을 공연장과 개별 공연 등에 조직하도록 하고 있다.

「공연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설치 기준’ (2016.05.17.)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제9조의3제1항 관련)

1. 공연장운영자
 - 가. 객석 수가 500석 이상 1천석 미만인 공연장의 경우: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 나. 객석 수가 1천석 이상인 공연장의 경우: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 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 나.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우리 「공연법 시행령」에서 언급하는 안전관리조직은 해외의 기술감독(Technical manager)을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조직을 벤치마킹한 것이었다. 해외의 경우 기술감독이 기술과 관련한 총괄적인 경영(management)을 책임지는데, 공연 제작과 철수를 위한 무대기술 전반의 운영계획, 업무분장 및 책임자 배치, 관련 예산 총괄까지 아우르고 있다. 예를 들어 공연 무대 설치의 경우, 설치 순서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각 단계의 각 파트의 책임자를 두어 관리하게 하고 기술감독이 이를 총괄하게 하는 조직을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각 단계와 파트에 필요한 안전준수 사항을 계획하는데, 각 파트의 책임자는 이러한 안전준수 사항이 지켜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공연법 시행령」 개정 이후, 우리나라도 모든 공연장과 공연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있으나, 해외의 기술감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지역문화회관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겸직하는 경우도 많고, 순환보직으로 안전관리자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많아 안전관리의 전문성도 부족하여 해외와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책임자

가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방어적인 관리로 공연제작에 장애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 예방은 단순한 시설관리 차원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안전관리는 원활한 공연제작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무조건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공공 공연예술 분야부터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며 안전관리조직의 역할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기술감독을 비롯한 안전관리 담당자의 위상 및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 해외의 경우 기술감독이 총괄경영인(general manager)나 연출가, 예술감독 등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이 과정에서 안전을 위해 연출적인 부분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며 기술감독의 위상 또한 존중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연출자, 지휘자, 예술감독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경영분야와 기술분야는 그 하위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 보니 예술적인 목적 실현에 더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받거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공공과 민간 공연예술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공연법 시행령」이 안전관리 조직 구성을 명시한 것은 단순히 관련 책임을 두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안전관리는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있어야만 예방 가능하며 이러한 관리체계는 관련 조직과 책임자의 위상이 제대로 확보되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공연예술계의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조직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필요하며, 공공 공연예술분야부터 이러한 관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공공 공연장 내 상시적인 안전관리 규칙을 세우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무대기술 전반을 이해하는 경험 있는 기술감독을 중심으로 각 파트의 전문가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 노하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공공 공연예술분야에서 체계적인 종합 안전관리 체계 및 방법의 개발은 우리 공연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 안전계획 및 관리 체계의 구축

가. 구체적인 안전계획 작성 문화 확대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조직의 구축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관리조직이 전문적으로 안전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화예술의 속성상 다양성을 전제로 하므로, 모든 공연은 주제, 특징, 방식 등이 전혀 달라진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안전관리는 공연제작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공연제작의 특징에 맞게 안전계획이 세워질 필요가 있다.

해외의 경우 공연을 위한 테크니컬 라이더(Technical rider) 작성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원래는 투어 공연을 위해 공연 시 필요한 사항을 적거나 설치 및 철수 방법, 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테크니컬 라이더에는 안전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입구 근방의 환경, 안전펜스의 설치, 전기용량, 장비 설치 방법, 작업자가 요구되는 공간 환경, 그리고 안전관리 조직 및 책임자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테크니컬 라이더에 적힌 내용들은 연출진과 경영진, 무대기술진이 협의를 통해 작성하는데, 이질적 환경에서 공연을 올려야 하는 투어의 안정적 운영뿐만 아니라 공연의 안전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한다. 국내에서는 투어에서도 이러한 테크니컬 라이더를 작성하는 경우가 드문데, 관례상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배포하는 문화가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 각 공연장과 개별 공연마다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세우기도 한다. 비상계획은 공연 제작 중 흔히 일어나는 사고의 상황이나 공연의 특성상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상상하고, 사고 발생 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는 것이다. 해외 라이선스 공연의 경우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 매뉴얼을 개발하여 장기공연 중 일어나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비상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일부 대형 공연의 무대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향후에는 우리 공연예술업계도 이러한 비상계획이나 테크니컬 라이더의 작성이 요구될 것을 보인다. 공연업계가 고도화되고 운영의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안전에 관해서도 전문적 운영이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연예술분야의 해외와의 교류가 흔해지면서, 해외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체계는 필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과 구체적인 안전계획의 작성은 향후 그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공연에

술계에는 이러한 문화가 자리잡고 있지 못하다. 공연예술 시장의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공연계의 인식관리가 필요하며, 공공 공연예술분야부터 이러한 관점 적용이 필요하다.

나. 위험성평가서 작성에 대한 인식 확대

공연예술분야의 안전과 관계하는 법률은 「공연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다. 「공연법」의 경우 공연계에 그 개정 내용과 시행령 관련 사업이 어느 정도 알려지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한 사항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내용 중 안전의 관리와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조항들이 많다.

특히 공연의 안전과 가장 크게 관련하는 것이 ‘위험성평가서’의 작성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위험성평가서는 작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것으로 공연예술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나 안타깝게도 국내 공연계의 인식이 낮아 대부분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뷰에 참여한 공연예술인 중에는 위험성평가서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공연예술업계는 내가 일하는 공연 및 연습, 사무 공간에 대한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방치하였을 시에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의 존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필요한 관리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공연예술분야부터 이러한 위험성 평가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공연예술분야 전반의 문화 개선이 요구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 평가’

-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 시켜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충분한 작업시간의 보장

우리나라의 공연시장은 국공립 기관의 전속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극장을 대관하여 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속단체를 보유한 국공립 공연장의 경우, 전속단체의 공연일정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일반에게 공고하여 대관해주고 있다. 그러나 대관 경쟁이 매우 치열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은 공연의 규모와 일정에 따라서 단체에 적합한 공연장을 대관하는 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며, 원하는 극장의 대관일정에 따라서 공연을 맞추기도 한다. 이렇게 대관 일정이 여유가 없이 진행된다보니, 단체들은 공연일수를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 무대 셋업(set-up)과 철수(strike) 시간은 최소로 잡게 된다. 공연장이 대극장이든 소극장이든 일반적으로 무대 셋업은 하루를 넘기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철수는 공연이 종료된 당일 밤에 진행되는 것이 우리 공연예술계의 오랜 관례였다. 무대 셋업기간이 하루 이상 소요되면 배우나 연주자들의 리허설 때에도 조명 설치(hanging)나 모니터 스피커 설치가 동시에 진행되는 등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무대 세팅일정으로 위험한 상황이 여러 차례 전개된다.

해외 라이선스 뮤지컬 작품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서 셋업과 리허설 기간이 길어지는 순기능을 가져오게 되었다. 7~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5일 안에 뮤지컬 무대 세팅을 끝내야 했었는데, 라이선스 팀이 합류하면서 셋업 기간도 3주 정도로 늘어나게 되었고, 배우들의 무대 리허설 기간만 한 달 정도 하는 등 여유 있는 셋업과 리허설 시간이 도입되게 된 것이다. 특히 해외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이슈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책임자가 이사회 멤버에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프로덕션의 모든 과정 속에서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가장 우선시되고 작업자들조차 안전 프로토콜을 정확하게 지키는 등 안전한 공연환경을 만드는 문화 자체가 이미 정착되어 있는 것이다.

“해외 라이선스 팀이 들어오면서 분명히 바뀐 지점이 있어요. 우리도 앞에서 보면서 조금씩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냥 ‘수박 겉핥기’ 식이지 내면의 문화까지 따라가기에는 아직 먼 것 같습니다. 그런 문화가 바뀌려면 아주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하거든요.” (무대기술 분야 자문위원)

축박한 무대작업은 스태프에게 절대적으로 위험한 상황이지만, 예술가도 피해갈 수

없다. 세팅 시간의 부족은 결국 리허설이 완벽하게 정리된 무대 위에서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무용수들은 댄스플로어가 제대로 안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습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연주자는 모니터 스피커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청력에 영향을 받거나 하는 문제들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결국 안전한 무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공연예술계 종사자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에 이러한 인식으로의 전환이 미미하게라도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하는 ‘무대제작 스태프의 안전을 위한 프로덕션 리스크 관리실무와 실습과정’이나 ‘예술가 개인의 안전을 위한 위험인지 강화교육 과정’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개설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예술인들과 스태프를 위한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자발적으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2. 안전예방 교육의 내실화 및 전문화 필요

2.1. 대상별, 상황별 구체적인 안전교육의 필요

가. 안전교육 내용의 구체성 확보의 필요

공연예술인이 공연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동영상 안전교육을 수강해야 하며 그 수료증을 제출해야만 공연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예술인 인터뷰, 자문위원 자문 등에서 이 동영상 예방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너무 보편적 다수를 대상으로 제작되어 지나치게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따라 내용의 상당수가 공연예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무화되어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형식적인 행위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또한 상급자로 갈수록 예방교육을 제대로 수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상급자일수록 안전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이해해야 하므로 이들을 위해서 더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연예술인들이 실제로 공연·작업할 공연장소 및 연습장소 등 ‘장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보편적인 온라인 교육은 장소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종료되기도 한다. 드물게 공연장에서 무대감독이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공연장소를 직접 소개하고 안전교육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각 공연장의 특징과 지켜야할 수칙 등을 소개해 안전성을 강화하기도 한다.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상 사고는 야외공연장 등 일반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가설로 세워진 세트인 만큼,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간에 대한 이해와 안전교육은 더욱 요구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해당 공연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계획에 대한 매뉴얼 교육과 부상예방 교육 등은 야외공연 작업에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장소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최근에는 국내 주요 공연장 대관자를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이 논의되고 있는데,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효과적일 수 있다. 건설업의 경우 VR 기술을 활용한 안전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활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 및 이해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고 있다.

나. 대상별 다양한 안전교육의 개발

현재의 안전교육과 관련해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것 중 하나는 대상별로 필요한 안전에 대한 수칙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이해해야 할 자신의 역할과 인식, 내용은 실연자나 무대스태프, 기획행정 스태프와 다를 수 있다. 이들은 안전에 대한 조직구성이나 예산편성의 중요성, 필요한 장비, 보험의 종류와 활용방안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연방 직업보건 및 안전법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OSHA)」에 의해 공연예술분야를 포함한 산업 안전 보건 전반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고용자의 의무인식을 강조하고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업무상 사고가 잦은 무대기술 분야의 경우, 무대기술 세부 영역에 따라 업무 단계에 따라 구체적인 수칙이나 유의할 점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은 너무 통합적이어서 각각의 단계에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에 대해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안전교육들이 대상별로 개발이 안 되어 있다 보니, 나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장르별, 분야별로 유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하니까 와 닿지도 않아요.” (무용 분야 예술인)

“다양한 사례를 드라마로 보여주는 등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연주자들에게는 와 닿지 않는 내용뿐이죠. 내 직업에서 주의해야 할 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산재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는 지 등을 자세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음악 분야 예술인)

공연예술분야의 직종과 장르가 다양한 만큼 이들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각 세부영역에서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은 공연예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내용을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변화무쌍하게 진화하는 공연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시장 변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건강 및 안전 위원회(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가 이러한 교육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영국 무대기술협회 등 현장 전문가 집단과 공동으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과 매뉴얼 개발, 그리고 기준 및 수칙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 우리 공연예술 현장에는 외국인 스태프 및 예술인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고려한 안전교육의 개발과 지원도 필요하다. 최근 일어난 ‘씨이 흠뻑쇼’ 강릉 공연 사고의 경우 이러한 외국인 스태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공연종료 후 철수 작업에 투입된 몽골인 스태프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다가 추락사한 사건이었는데, 사전에 예방교육을 받았음에도 언어적 한계로 인해 충분한 인지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연 현장에서는 외국인 스태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실감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 외국인 스태프가 급격히 늘어나는 느낌이에요. 이제 20~40% 정도 비율은 되는 것 같아요. 이들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안하는 것은 아는데 아무래도 언어적 한계로 인해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미숙련자들이 많고요. 현지에서 스태프로 일하시던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원래 하시던 방식으로 그냥 작업하시는 경우가 많아 잠깐 다른 일을 하는 사이 매우 위험하게 작업하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기도 해요. 이 분들에 대한 관리나 교육이 필요한 시기가 왔구나 절실히 느끼게 되는

첫 같아요.”(무대기술 자문위원)

이렇게 국내 공연 현장이 글로벌화 되고 외국인 스태프나 실연자 등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중에는 한국어가 아직 미숙한 이들도 많은데, 현재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어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정확한 내용 파악을 어렵게 한다. 현장 운영에 있어서도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발생하는데, 안전한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위해서는 이에 대비한 보완 방안이 절실하다. 건설업의 경우 해외 노동자의 비중이 매우 높아 외국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 및 보급하고, 현장에서 외국어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점차 높아지는 외국인 스태프 및 예술인의 안전예방을 위해서 우리 공연예술계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2.2. 공연예술인의 안전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원

공연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의 문제는 일반적인 주의사항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는 각 전문분야 또는 기술 활용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영역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안전관리는 깊은 관계를 가지는데,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여야만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무대기술 분야에서는 다양한 무대 설비와 장비를 매디는데, 어떻게 안전을 확보하며 효과적으로 매달기(rigging) 작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 해외에서는 매달기 작업을 위한 별도의 교재나 과목이 있을 만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의 전문성 확보는 현장의 안전성 확보와도 깊은 연관을 가진다.

이와 같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의 ‘안전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안전관리는 별도의 영역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인력의 전문성은 기술, 지식의 영역이고 안전관리는 이와 큰 관계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작업하는 모든 행위가 안전사고와 큰 관련을 가지므로, 각각의 개별 작업이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안전하게 구축되었느냐는 안전확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국제 무대 스태프 노동조합인 IATSE(International Alliance of Theatrical

and Stage Employees)는 조합원의 계약협상, 복지, 임금 등과 관련한 문제뿐만 아니라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UCLA-LOSH와 IATSE Entertainment & Exhibition Industries Training Trust Fund 간 협력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위한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커리큘럼 개발 프로젝트(Developing Health & Safety Training Tools for the Entertainment Industry)’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의 안전 예방을 위한 각각의 영역에서의 전문성 강화(위험 커뮤니케이션, 추락 방지 및 예방, 압축가스 안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ATSE 산하의 United Scenic Artist 또한 영화 촬영 과정에 필요한 안전체크리스트 제공이나 안전 관련한 라이브러리 제공, 인공호흡기 적합성 테스트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각각의 영역에서의 안전 경각심을 높이고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한다.

공연예술은 각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가진 이들이 한데 모여 만드는 집단 작업으로, 각각의 분야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도 전문적 작업의 내용과 관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교육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공연예술인의 안전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안전관리가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깊이 관련하다보니 이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서는 교재나 매뉴얼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실무형 예방교육’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직접 설비나 장비를 다루면서 더욱 구체적인 상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갖춘 공연예술인의 양성과 재교육을 위한 트레이닝 센터가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공연장안전지원센터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ARKO인력개발원 무대예술아카데미에서는 일부 이러한 실무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달기(Rigging), 날기(Flying), 응급조치, 목공, 특수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면서 안전관리를 교육하고 있다. 국내 공연예술인의 안전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이 보다 확대 및 정례화될 필요가 있으며, 더욱 다양한 교육 개발을 통해 국내 공연계의 전문적 안전관리를 정착시킬 수 있다.

공연예술인의 안전전문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제도’도 변화가 필요하다.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제도는 「공연법」 제14조에 의한 무대기계, 조명, 음향 분야의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제인데, 관련 예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에 관련 전문가를 확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격증은 1급~3급으로 나뉘고,

필기와 실기로 이루어지는데, 필기과목에는 공통과목으로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무대기술 일반'이라는 과목이 있다. 그러나 이 과목 내 무대안전과 관련한 부분의 비중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준보다 매우 적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안전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된 무대에서 안전전문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이에 대한 내용을 그동안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이다. 또한 안전에 대한 과목이 필기에만 있어 실기 시험에 있어서도 안전관련 내용을 평가항목에 적용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표 4-1〉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시험과목

구분	공통과목			전공과목			
	시험과목	배점	과락	시험과목	배점	과락	
무대기계 전문인	1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무대기술일반	20	8	무대기계 Ⅰ,Ⅱ,Ⅲ	80	32
	2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무대기술일반	30	12	무대기계 Ⅰ,Ⅱ	70	28
	3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무대기술일반	40	16	무대기계 Ⅰ	60	24
무대조명 전문인	1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무대기술일반	20	8	무대조명 Ⅰ,Ⅱ,Ⅲ	80	32
	2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무대기술일반	30	12	무대조명 Ⅰ,Ⅱ	70	28
	3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무대기술일반	40	16	무대조명 Ⅰ	60	24
무대음향 전문인	1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무대기술일반	20	8	무대음향 Ⅰ,Ⅱ,Ⅲ	80	32
	2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무대기술일반	30	12	무대음향 Ⅰ,Ⅱ	70	28
	3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무대기술일반	40	16	무대음향 Ⅰ	60	24

제2절 공연예술인의 업무상 질병을 위한 정책대응 방향

1. 공연예술인에 맞춤형한 예방·재활의 전문화 및 지원 확대

1.1. 정기적인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의 필요성

공연예술인의 업무상 질병은 장기간 반복적이고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누적되어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 부상의 가능성을 인지하지만 무리한 공연과 연습 일정에 따른 지연된 치료 및 비효과적 조치, 낮은 임금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을 해야 상황, 캐스팅 탈락을 우려하거나 아픈 것을 당연하기에 참아야 한다는 문화 때문에 질환을 참아내는 분위기로 적절한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만성적 과중한 업무에 따른 질환이 다수 발생하는 공연예술인의 특성상 초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요구되며, 이는 공연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인식 개선과 더불어 업무상 질병 가능성을 체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높은 수준의 신체적 능력이 요구되고 그에 따른 질병 및 부상 가능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무용 분야는 타 공연예술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상해와 관련한 다수의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질병 및 부상에 대처하는 무용수들의 태도와 인식을 지적하는 이경태(2016)의 연구⁸⁴⁾에 따르면, 무용수들은 정밀하고 창의적 신체 움직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연습에 투자한다. 예술적 완성도를 위해 통증을 일상적 상황을 받아들이고 통증에 대한 역치와 내성 역시 증가되어 있으며, 가시적 부상이 될 때까지 만성적 통증을 감내하는 경향을 지닌다. 부상이 눈에 띄고 나서야 의료적 치료를 시작하지만, 이마저도 다음의 공연과 연습을 위해서 등한시되면서 결국에는 무용수로서 직업 수명이

84) 이경태(2016), 「현장에서의 무용수 손상 예방의 중요성」, 2016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전문무용수 지원센터.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곤 한다. 그렇기에 치료보다 상해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것이 신체적 능력을 보존하고 직업 수명을 연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무용 손상 예방을 위해 필요한 5가지를 제시한 러셀(Russel)의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는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무용수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를 과거 병력, 현재 상태, 미래의 활동 계획 등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 둘째는 기술적 훈련과 별도로 코어 근육 및 장르별 필요한 근육 발달을 위한 체력 훈련을 하는 것, 셋째는 적절한 영양과 휴식을 취하는 것, 넷째는 손상 위험성을 판단하고 손상을 관리, 치료하며,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할 것, 다섯째는 의료진들이 다양한 무용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무용수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강조한다.⁸⁵⁾ 위대곤의 연구는 특히 선별검사를 초점을 맞춰 설명하는데, 선별검사는 아직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문제 또는 손상의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대처함으로써 질병과 부상에 따른 시간적, 비용적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진다. 무용수 손상 예방을 위한 선별검사에 대한 연구에 최근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역사가 길지 않기에 아직 표준화된 검사와 보고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무용 장르별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검사 개발과 결과 판정이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선별검사는 과거 병력과 가족력을 포함한 무용과 관련한 질병과 건강 문제 파악, 영양과 생활 습관에 대한 설문조사, 심리상태에 대한 문진이 이뤄진다. 측정 항목으로는 혈액검사 및 심전도 등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의학적 검사, 신체 계측, 신체의 정렬 상태, 관절운동 및 근력, 순발력, 유연성, 지구력 등 기능 평가, 심폐 기능 평가를 포함한 무용을 위한 신체 적합성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영국의 ‘무용 특화 유산소 적합성 검사(Dance specific aerobic fitness test)’ 같은 무용의 특수성을 고려한 측정 방법의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⁸⁶⁾

이러한 선별검사는 손상을 예방하는 하는 차원뿐 아니라 무용수 스스로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인지하며, 위험인자를 교정 혹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받는 교육적 효과를 가진다. 또한 선별검사는 무용수의 신체에 대한 기초자료와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용수 집단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자료를 구축하고

85) Russel, J. A. (2013), Preventing dance injuries: current perspectives, *J Sports Med*, 4, 1990210.

86) 위대곤(2016), 「현장에서의 무용수 손상 예방의 중요성」, 2016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전문무용수 지원센터.

무용수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축적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무용수뿐만 아니라 많은 공연예술인들이 의료 관계자의 진단과 처방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공연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조연과 치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치료 방법으로 단기간 또는 장기간의 활동 중단을 조연하는데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맞는 처방일 수 있으나 공연예술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연이기 때문이다. 활동 중단이 아닌 연습·훈련의 강도 조절, 연습 방식 조율, 증상 개선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물리적 요법 등 대안적 치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연예술인의 선별검사를 바탕으로 기초자료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⁸⁷⁾

공연예술인들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 여유가 없어서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연예술인들의 상해 예방 조치로서 공연예술분야에 특화된 '정기적인 건강 검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일반 사무직 근로자보다 공연예술인들은 업무상 사고 및 질병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가 대부분이기에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건강검진을 하더라도 일반적 수준의 검진에 머무르기 때문에 공연예술활동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를 미리 진단받거나 현 증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

공연예술인에게 건강검진 지원 제도 마련에 도움이 될 만한 유사한 사례로서 프로 스포츠 선수를 위한 구단의 의료 지원 체계를 살펴볼 만하다. 프로선수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는 상해보험의 보장 범위 내에서 보험금으로 충당하고 보장 범위 밖의 치료비는 구단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또한 구단에서는 선수 입단 시 선별 검사를 실시하여 건강 상태 및 부상 가능성을 파악할 뿐 아니라, 구단에 상주하는 팀 닥터와 연계된 병원이 있어서 지속적인 건강 체크가 가능하다. 훈련 중에는 선수 트레이너로부터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요소를 관리 받으며 영양사가 신체 상태와 포지션에 따라 고려한 식단을 제공받는다.

87) 위대곤(2016), 「현장에서의 무용수 손상 예방의 중요성」, 2016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전문무용수 지원센터.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중 부상 및 질병 관련 내용

제12조(선수활동과 관련된 부상, 질병) ① 선수는 선수활동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이를 즉시 구단에 알려야 한다. 선수와 구단은 치료가 필요한지, 어느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할지, 어떠한 종류의 치료(수술, 비수술, 약물 등)를 할지 등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상호 합의된 치료를 한 경우, 그 치료에 관한 비용은 구단이 전액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계약기간 동안 경기나 훈련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치료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구단은 제22조의 절차에 따라 선수를 웨이버 선수로 공시할 수 있다.

제13조(선수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상, 질병) ① 선수는 선수활동과 관련 없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이를 즉시 구단에 알려야 한다. 선수와 구단은 치료가 필요한지, 어느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할지, 어떠한 종류의 치료(수술, 비수술, 약물 등)를 할지 등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선수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상은 휴가 기간 중 발생한 부상, 개인적인 일정 중 발생한 부상 등이고, 선수활동과 관련이 없는 질병은 선천적 질병, 유전적 질병, 선수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상으로 인한 합병증 등이다. 치료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선수가 전액 부담한다.

② 선수가 제1항의 치료로 인하여 30일 이상 경기나 훈련이 불가능한 경우 구단은 31일째 되는 날부터 치료 의사의 소견상 훈련이 가능한 날까지의 일수에 연봉의 3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연봉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계약기간 동안 경기나 훈련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치료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구단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선수는 다른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의료정보의 보호, 관리) ① 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제출받거나 취득하게 되는 신체검사 결과 등의 의료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단은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의료정보를 파쇄, 삭제 등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한다. 다만, 선수와 구단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높은 수입을 창출하는 스포츠 선수를 위해 구단에서 제공하는 건강 검진 시스템을 공연예술계에 적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국공립 공연예술단체부터 협약 맺은 병원을 통해 단원들에게 공연예술분야에 특화된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하고, 상주하거나 연계된 의료진 또는 물리치료사, 트레이너와의 정기적인 검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단원들의 질병과 부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프리랜서 공연예술인들에게는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전문무용수들에게 진행하는 부상예방검진 프로그램처럼, 공연 장르별로 특화된 건강검진을 지원해주는 제도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2. 맞춤형 예방 및 재활 교육의 필요성

가. 예술 장르적 특성을 이해하는 의료진 및 재활 트레이너의 처방

공연예술인의 업무상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더불어 상해 예방 및 재활을 위한 트레이닝을 받아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무용수의 손상 예방에 관한 이경태의 연구에 따르면, 가장 효과적인 상해 예방 프로그램은 상해 원인의 분석에 근거한다. 상해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섬세한 관리를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 재활 훈련 계획까지를 포함한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⁸⁸⁾ 오조페이티미와 브로너(Ojofeitimi & Bronner, 2011)의 연구에 따르면, 무용단 내에서 무용수들에게 상해 예방 및 재활 훈련 등의 종합 관리를 제공할 경우, 무용수의 부상 유형, 발생률, 시간 손실 및 보험료와 같은 재정적 측면에서 상당한 절감 효과를 가져 오는 동시에 무용수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⁸⁹⁾ 무용수들은 무용수의 신체 활동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로부터 신뢰하는 의학적 처방 및 운동적 조언을 들을 수 있고, 안무기들은 무용수들에게 무리가 되지 않은 움직임의 수행하도록 부상 위험도가 높은 움직임을 주의를 기울 수 있으며, 부상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전문적인 재활 및 컨디셔닝을 통해 조기 복귀가 가능했다.

뉴욕시티발레단, 아메리카발레시어터, 로얄발레단 등의 해외 주요 발레단은 무용에 특화된 물리치료사와의 협약을 맺어서 물리치료사가 발레단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무용수의 신체 상태를 체크하고 근력 강화, 교정, 재활을 위한 운동법을 처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우리 국공립 공연예술단체들에 적용한다면, 단원들은 해당 장르적 특성을 이해한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의료진으로부터 치료 및 재활 관련 처방과 조언을 받을 수 있고 단원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일 것이며, 이러한 문화를 우리 공연예술계에 확산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88) 이경태(2016), 「현장에서의 무용수 손상 예방의 중요성」, 2016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전문무용수 지원센터.

89) Ojofeitimi, S., & Bronner, S. (2011). Injuries in a Modern Dance Company Effect of Comprehensive Management on Injury Incidence and Cost, *Journal of Dance Medicine & Science*, 15(3), pp. 116-122.

“운동선수는 오프시즌이 있고, 구단이 관리해주니 부담이 덜하지만, 무용수는 개인이 하는 싸움이 됩니다. 무용수들은 테이핑도 자비로 알아서 하죠. MOU를 통해 다방면으로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용수들이 재활하고 치료하는 것 이후 기능을 더 강화 시켜주고 코어를 강화 해주고 심리적인 부분도 아울러서 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 뉴욕의 경우, 링컨 센터 주변에 물리치료 하는 유명한 곳이 많아요. [제가 뉴욕에 갔을 때] 당시 물리치료사들이 협약을 맺어서 링컨 센터와 관련된 단체인 뉴욕시티발레단, 아메리칸발레시어터에 주 1~2회 가서 점검하고 필라테스를 시키고, 병원에 연결해 주기도 했어요. 링컨센터 안에 필라테스를 운영하고요. 그게 22년 전입니다. 영국 로열발레단 무용수들의 건강 관리해주는 사람들과 7-8년 전에 한국에서 세미나를 한 적도 있어요. 발레단 내부에 자이로토닉, 필라테스도 있고 센터에 와서 기구를 쓸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학교의 경우 줄리어드가 잘 되어 있어요. 아픈 친구들을 잘 연계해서 재활 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용 분야 자문위원)

로열발레단은 물리치료사, 필라테스와 자이로토닉 강사, 연조직 치료사, 스포츠과학자, 재활코치, 영양사, 스포츠 심리학자, 의사를 포함한 자체 종합 의료 전문가팀을 운영함으로써 치료 및 재활, 그리고 신체 기량 향상에 도모하고 있다.⁹⁰⁾ 2014년부터 예비시즌 검사 또는 '프로파일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기준 조치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데이터는 무용수가 부상을 입을 경우 참고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동시에 단원들의 신체 상태를 이해하는 기초 자료로서 활용된다.

나. 맞춤형 예방 교육의 대중화 및 인식 개선

개개인에게 맞춤형 예방 교육은 효과적이지만 다수에게 접근성이 낮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특히나 한국에서 국공립 단체 소속이 아닌 프리랜서 예술가의 경우, 상해 및 재활 교육을 받을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각각의 예술 장르별 활동을 바탕으로 자주 발생하는 질병 유형을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고 치료, 재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배포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90) 브라이언 말로니(2016), 「현장에서의 무용수 손상 예방의 중요성」, 2016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스포츠 분야의 경우 종목별로 다양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IOC GET SET 부상예방프로그램'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서 전 세계의 선수, 코치, 의료진, 스포츠 관람자들의 부상 예방을 돕기 위한 영상 콘텐츠로 유튜브에 게재되었다. 스포츠안전재단이 주최하는 '찾아가는 K리그 프로구단 안전 교육'은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포함한 각각의 역할에 특화된 스포츠 안전 교육 내용을 구단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한국체육대학교는 '유소년과 남녀 프로선수들을 위한 부상방지와 경기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담은 교육 영상 26편과 가이드북 4편, E-Book과 포스터 16종을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이를 참고해 공연예술단체의 규모 및 트레이너 상주 여부와 상관없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하여 예술 장르별 자주 발생하는 질병과 상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연 중 쓰러지는 사람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대비해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상해 예방을 위한 운동, 연습 시간을 논스톱을 이어가는 것을 지양하고 영양 보충을 하고 쉬는 시간을 갖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술인들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개인이 챙기고, 안무자 스케줄에 맞춰 진행되는 게 현실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상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적어도 공연 중이나 공연 리허설 때는 꼭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연 당일이나 리허설 때는 근육을 만져줄 수는 없어요 공연에 임박하면 발목이 헐거워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해줄 수 있는 것은 테이핑인데, 이럴 때 혼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테이핑 방법들을 알려줄 수 있고, 이런 사소한 것들이 부상 예방에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무용 분야 자문위원)

의료진과 재활 트레이너의 처방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의 스스로 신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지 않으면 예방 및 치료, 재활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몸 상태를 이해하고 필요시 처치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교정과 재활 훈련을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마사지만 받는 사람들은 마사지만 계속 받는데... 그러나 연습시간이 20~30분 전에

홀에 빨리 와서 해야 할 운동들을 미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용수들이 안 아프면서 오래 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무용이 팔다리를 교차하고 꺾고 들고 하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워밍업을 잘 안 해주면 허리부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선생님들한테는 늘 10~15분 전에 도착해서 밴드로 운동을 해보라 등을 조언해요. 실제 실천을 하면 좋아진다는 피드백을 받았고요. 사람마다 필요한 준비 운동은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한 준비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용 분야 자문위원)

다.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보여주듯, 공연예술인의 총 42.4%가 불안증과 불면증을 경험하고 30.9%가 우울증 및 공황장애를 경험하고 있었다. 공연이 주는 불안감, 창작의 압박, 신체적 부담감, 캐스팅 탈락에 대한 두려움, 생계 어려움에 따른 자존감 하락,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예술인복지재단은 2014년부터 한국심리학회 및 한국임상심리학회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예술인이 심리적 고충을 해소하고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예술인들의 요구가 큰 편이다. 2021년의 경우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해 2015년 대비 사업 참여 인원이 5배 증가되었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예술인들의 심리 상담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듯 2019년 이래로 경기문화재단 역시 매년 예술인 심리상담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술인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성격적으로 특징적 부분이 무엇인지, 장르별 특수성이 있는지, 심리상담 이후 변화 양상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기초 자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는 심리상담 지원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예술인 심리상담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1.3. 공연예술의학 분야 연구 개발 및 인력 양성의 필요성

공연예술인들이 치료를 지연시키는 이유 중 하나는 의료진과의 신뢰성 부족에 기인한다. 예술 장르별 특성을 이해하여 그에 맞는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 피드백을 줄 것이

리는 신뢰가 부족하고 처방의 대부분이 예술활동을 쉬라는 조언을 듣게 되는데 이를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예술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지식 및 연구 축적 및 정보 공유, 전문가 양성 및 배출은 공연예술가의 건강 예방 및 치료, 그리고 수행 능력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무용을 전공하고 재활트레이너로 활동하는 제]에게 와서 아프다고 할 때 어떤 동작하다가 아픈 거냐고 물어보게 되는데, 그럴 때 무용수들은 발레 용어로 물어볼 수 있는 등 소통에 있어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죠. 또한 문제점을 해결할 때에도 무용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황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정수기가 주변에 있는지 문의하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팩 사서 찜질을 해라 등등.. 이론적으로 쉬어야 한다는 조언 외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또한 춤을 추기 전에 해야 할 것들을 모르기도 하는데, 무용수들이 연습실 가서 스트레칭을 먼저 하는데, 사실은 필요한 워밍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발목이 안 좋으면 발목 강화 운동 먼저 해서 열을 내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해야 하는데, 무작정 스트레칭을 하면 안 좋은 부위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잘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용 분야 자문위원)

공연예술의학 전문 지식과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인지함에 따라 서유럽과 북미권을 중심으로 20세기 후반 공연예술의학(Performing arts medicine) 분야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공연예술의학은 음악가, 무용수, 배우 및 기타 공연 예술가에게 발생하는 의학적 문제, 공연 활동에 따른 근골격계 통증부터 심리적 문제까지를 포괄하여 다루는 학문이다. 공연예술가의 의학적 문제를 다룬 첫 번째 연구는 1713년 베르나르디노 라마치니(Bernardino Ramazzini)의 ‘노동자 질병(The Diseases of Workers)’이라는 논문이었으며, 1980년대 이후 조직적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학술지 「공연예술가의 의학적 문제(Medical Problems of Performing Artists)」가 1986년에 출간되었고 1988년에는 공연예술의학협회(Performing Arts Medicine Association, PAMA), 1990년에는 국제무용의학및과학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Dance Medicine & Science, IADMS)가 설립되었다. 이후 국가별, 장르별로 구체성을 가진 다양한 협회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협회를 중심으로 연구 촉진, 교육 개발, 예술가과 의학전문

가와의 네트워크 형성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공연예술분야 중 무용분야에서 업무상 질병 및 사고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많지는 않다. 전문무용지원센터는 국제 학술대회를 통해 국내외 현장 전문가들의 연구를 소개하고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무용수들에게 치료 지원금, 상해예방 교육, 건강검진 지원뿐만 아니라 무용전공자의 직업전환 기회를 제공하고 무용전문 재활트레이너를 양성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무용뿐 아니라 공연예술 전반으로 확대하여 공연예술인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의학계와의 학제간 연구 및 교육 개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1.4. 업무상 질병을 유발하는 공연예술 환경 개선 지원

공연예술인의 업무상 질병의 원인이 신체적으로 부담을 주는 활동이자 예술 그 자체가 지니는 특수성인 경우는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물리적 환경의 부적절성에 의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라면 그 환경을 개선하여 질병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다. 앞서 제3장에서 언급했듯, 부적절한 실내 공기 상태, 높은 강도의 소리와 빛, 청결하지 않은 공간, 부적절한 온도, 어두운 조명, 강력한 전자파 노출 등이 질병을 제공하는 원인이 되어 천식 및 기관지염, 시각 및 청각 장애 등의 질환을 유발한다. 따라서 공연장과 연습실의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여 질병 발생률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의 먼지, 소음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안전 규정을 마련하거나, 스모그, 레이저, 폭죽 등을 포함한 특수효과 등에 의한 위험 노출을 낮추기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배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무대 환경과 장치 면에서 안전 규정을 마련하고 지키는 것뿐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위험요소들로부터 공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 가림막 설치, 청력을 무리가지 않는 인터컴 장비 도입, 지나치게 많은 전자파를 발생하는 장비 교체 등이 가능하다. 더불어 공연자는 필요시 보호구, 보청기, 귀마개 등을 착용하는 등 스스로 신체적 위험에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직업생활 위협 예방을 위한 환경적·문화적 개선의 필요성

2.1.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의 적절한 조정

앞서 제3장에서 보듯이, 예술활동 중 겪는 질병의 주된 원인 중 업무량과 관계되어 무리한 연습, 공연, 작업 일정, 과도한 업무량, 과도한 근무시간 등이 문제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수준의 업무량과 질병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로열발레단은 공연 횟수가 무용수의 부상률과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휴식과 회복은 부상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인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무용수가 적절한 휴식과 회복 시간을 갖도록 한다고 밝힌 바 있다.⁹¹⁾

특히나 공연예술계는 시즌과 오프시즌이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는 스포츠 분야와 달리, 보통 일 년 내내 시즌이며 공연 사이에 짧은 휴식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휴식 시간은 단순히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닌 체계적인 치료, 재활, 체력 증진 등으로 활용되어야 다음 공연 연습으로 재개할 때 부상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스포츠 선수들은 시즌-비시즌이 있고 비시즌에는 쉬는 게 아니라 트레이닝을 받아요. 그런데 무용수들은 계속 시즌이기 때문에 비시즌이 온다면 쉬는 기간으로만 활용합니다. 비시즌일 때 다음 공연을 위해 트레이닝을 하고 몸은 준비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전에 쌓인 공연의 피로도를 그대로 가지고 다음 공연에 투입되는 것이 반복되는 거죠. 따라서 캐스팅에도 무용수들의 시즌을 고려해서 캐스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용 분야 자문위원)

2.2 참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 문화의 필요성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예술활동 중 겪는 질병의 원인을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분위기 때문임을 확인했다. 즉 촉박한 일정 속에서 부상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혹은 체계적인 부상 치료와 재활을 포기하더라도 개인이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 당연시된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서 제기되었던

91) 브라이언 말로니(2016), 「현장에서의 무용수 손상 예방의 중요성」, 2016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전문무용수지원센터.

문제이기도 하다.

공연예술인들은 부상이나 질병이 있더라도 공연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며 부상과 고통을 그저 삶의 일부로 인정하고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덮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고되었다.⁹²⁾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장시간 연습으로 인해 치료를 받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팔투스과 리차드(Faltus & Richard, 2022)의 서커스 공연계의 의학적 관리에 관한 연구⁹³⁾는, 공연자의 부상이 명예의 휘장으로 수용될 것이 아니라 의학적 소견을 수용하여 적절한 시간에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공연 참여에 가능하도록 공연 내용 또는 역할을 수정하는 등 제작팀과 공연자 간의 협력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통증이 발생할 경우 치료와 재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상급자에게 숨기거나 실연자의 부상이나 통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연자와 상급자가 함께 논의하고 조율을 해나가야 한다. 부상을 방지하지 않으면서도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부상을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상급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단장, 연출가, 안무가, 지휘자, 감독 등은 실연자가 부상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공연에 참여하는 것이 실연자의 직업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공연자를 위한 부상 예방 및 재활 교육이 제공하는 것이 공연자의 부상으로 인해 야기되는 재정적 문제와 비교했을 때 훨씬 효율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92) Kelman, B. B. (2000), Occupational stress in classical ballet: The impact in different cultures, *Medical Problems of Performing Artists*, 9(2), pp. 35-38.

93) Faltus J., & Richard, V. (2022), Considerations for the Medical Management of the Circus Performance Artist and Acrobat,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Physical Therapy*, 17(2), pp. 307-316.

제3절 공연예술인 산업재해 보상을 위한 정책방향

1. 산재보험 가입 증진을 위한 인식개선과 지원확대

1.1. 산재보험 가입증진과 예술계의 인식 개선

가. 공연예술인의 업무 특성에 유용한 산재보험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연예술인들이 산업재해에 대비해 가장 많이 가입한 것은 민간 보험이었다.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이 가장 많았고 제작사 등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민간보험은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사고가 업무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기부담금이 일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치료비, 수술비 등 직접적인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 치료비, 수술비 등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등이 지급된다. 산재보험의 폭넓은 보상 범위는 예술인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했을 때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술인들은 프리랜서라는 직업의 특성상 경제적인 이유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프리랜서라는 직업의 특성상 치료·재활을 위해 예술활동을 중단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치료·재활 중에 경제활동이 중단되었다는 설문조사의 결과는 이들에게 치료·재활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담되는 일인지를 보여준다. 산재보험은 다른 민간 보험과는 달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이 제공되어 예술인들의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준다는 측면에서 예술인들의 업무 특성에 매우 적합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치료와 재활 시 예술인들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수령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치료와 재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보상방식은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예술인들에게는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더더욱 예술인들이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표 2-13>과 같이 산재보험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예술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예술인들의 체감 수준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또한 산재보험이 예술인의 업무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 지레 판단해 아예 보상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통과해야 하지만 업무상 재해로만 인정된다면 그 보상 범위가 매우 넓고, 보상의 내용이 불규칙한 활동을 하는 예술인의 업무형태와 맞아 매우 유용하므로 예술인의 산업재해 대비를 위해 가장 적절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나. 예술인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각종 행정 절차를 대행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홍보자료를 발간하여 예술인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인 산재보험은 예술인의 업무환경 및 생활환경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아직 상당수의 예술인이 예술인 산재보험 사업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 2021년 기준 예술인들의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12만 8,762명의 5.01%인 6,445명에 그치고 있다.

2019년에 가입자 수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적이 있는데, 그것은 공공지원금(지역문화진흥원의 ‘청춘마이크’ 사업)을 받아서 진행되는 모든 공연에서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필수 사항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을 찾아가서 하는 공연의 경우 이동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고, 야외 공연인 비율도 높아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덕에 그동안 예술인 산재보험을 알지 못했던 예술인들에게 산재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이후 예술인 산재보험은 많은 홍보가 되어 꾸준히 산재보험의 가입률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문화예술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었던 2020년과 2021년에도 예술인 산재보험의 가입률은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꾸준히 증가했다.

〈표 4-2〉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 수(2013년~2021년)

(단위: 명)

구분	누적가입자	신규가입자	가입유지자	예술활동증명자	예술활동증명 대비 가입유지자수
2013	429	429	429	6,654	6.45%
2014	838	409	753	13,489	5.58%
2015	927	89	577	20,526	2.81%
2016	1,165	238	640	34,731	1.84%
2017	1,331	166	683	46,659	1.46%
2018	1,553	222	788	57,417	1.37%
2019	3,235	1,682	2,315	68,564	3.38%
2020	5,635	2,400	4,366	98,582	4.43%
2021	9,044	3,409	6,445	128,762	5.01%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부자료

예술인들의 산재보험 미가입 사유의 가장 큰 이유는 예술인 본인이 산재보험제도 가입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었다. 반면 예술인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위험 인지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 민간상해보험의 가입률이 상당히 높았다.⁹⁴⁾ 이렇게 예술인들의 산재보험에 대한 인지율이 낮은 것은 이들 중 상당수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4대 보험에 가입했던 경험이 낮기 때문이다. 무엇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며, 산재보험을 통해 어떤 혜택을 받는 지 등에 대해서도 미흡한 인지도를 보였다.

예술인의 대부분은 예술활동 중에 겪게 되는 재해가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리허설이나 공연 중 상해 등과 같은 사고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가능해 비교적 산업재해로 판단이 용이하지만, 예술활동의 종류와 내용이 다양한 만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예술인이 겪는 많은 질병이 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질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판단이 애매한 부분도 많아 애초에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예술계 내부에 아직 산재보험금 수급의 경험이 높지 않아, 납부하는 보험료 대비 혜택이 적을 것이라는 인식도 존재하고 있었다. 어떤 경우에 보험금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수급 사례에 대한 내용 공유도 부족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상당히 존재했다.⁹⁵⁾

94)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9). 「예술인 산재보험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 서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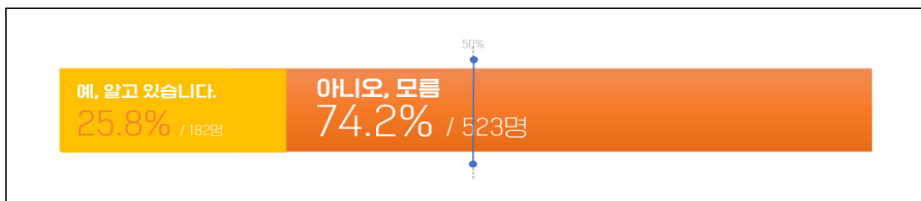
95)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9). 「예술인 산재보험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 서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여전히 현장에서는 예술인 산재보험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친구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다친다 하더라도 상해보험을 처리하거나 그냥 통증이 나아질 때까지 참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제가 처한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들을 보기가 어려워 산재보험을 가입해도 혜택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음악 분야 예술인)

“제가 만난 무용수들은 보험 하나쯤은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산재보험으로 혜택을 본 사람에 대해서는 딱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들 민간 상해보험을 드는 것 같아요.”(무용 분야 자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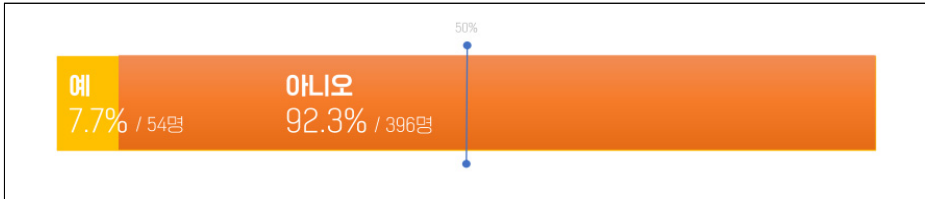
때문에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과 혜택, 그리고 보상처리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연예술계 종사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다. 현재는 예술인 산재보험의 가입자 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예술인이 자신의 주변에서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없어, 예술인들에게 산재보험은 여전히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재보험 가입 가능한지 알지 못한다’가 44.1%로 응답자의 절반가량 된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예술인 산재보험은 다른 산재보험과 달리 예술인이 100% 납부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알지 못하면 가입 자체를 할 수 없고, 산재보험을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가입 자체를 꺼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림 4-1] 산재보험 청구관련 절차 인지 여부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21). 「예술인 산재보험 보상 청구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자료」

[그림 4-2] 산재보험 청구 경험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21). 「예술인 산재보험 보상 청구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자료」

예술인들의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공연예술계 전반의 문화가 변화해야 한다. 지금은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 예술가나 스태프의 안전이나 부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술가 개인에게 희생을 감내하게 하는 문화가 퍼져 있으나, 무리한 연습과 사고의 발생이 예술가나 스태프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기획사나 제작사, 또는 단체의 대표가 인지해야 하는 것이다.

“무용단 기획자가 재활 트레이너에게 무용수가 이렇게 꼭 치료를 받아야하는지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 말은 꼭 그렇게 오랫동안 치료를 받을 만큼 심각하다는 의도로 묻는 것이거든요. 오랫동안 치료받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무용 분야 자문위원)

위의 사례처럼 예술인이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부족하여 그냥 참고 마사지하거나 다른 부위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오히려 부상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예술가들은 어린 나이부터 해당 부위를 과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과사용 증후군은 아주 흔한 질병이지만 이것이 산업재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제작사나 단체의 경우, 조직 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산재보험비의 증가나 페널티를 우려하여 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한다고 할 때 거부하는 사례들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는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산재보험비의 인상부분과 사업체·기관장에게 부여되던 페널티도 삭제하여 사업체·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

사업체·기관의 산재보험 처리를 위한 지원은 이처럼 제도적 장치로 보완이 되고 있으나, 개별 예술가들이 신청하는 산업재해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지점이 곳곳에서 발견된

다. 예를 들어 예술인들의 경우 공연 중 사고가 나서 산재보험을 신청할 때 자신과 함께 공연 또는 작업하던 동료이름을 ‘가해자’로 기입해야 하므로 부담을 느끼고 산재보험 신청을 취소하는 상황들이 종종 목격된다. 가해자와 피해자로 명명되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사고를 당한 예술인이 적극적으로 보상을 신청하기보다는 동료에게 혹시나 피해가 갈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주저하게 되는 것이다.

1.2. 산재보험 비용 지원의 확대

예술계 종사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예술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 관련 예방교육을 폭넓게 실시하며,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들을 적절하게 치료받게 해야 한다. 또한 공연이나 연습 중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치료와 재활의 과정을 통해 다시 무대로 복귀할 수 있는 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기적인 검진을 받지 않아 현재 몸 상태에 대한 인지가 낮은 상황에서 무리한 동작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부상과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이 현재 공연예술계의 실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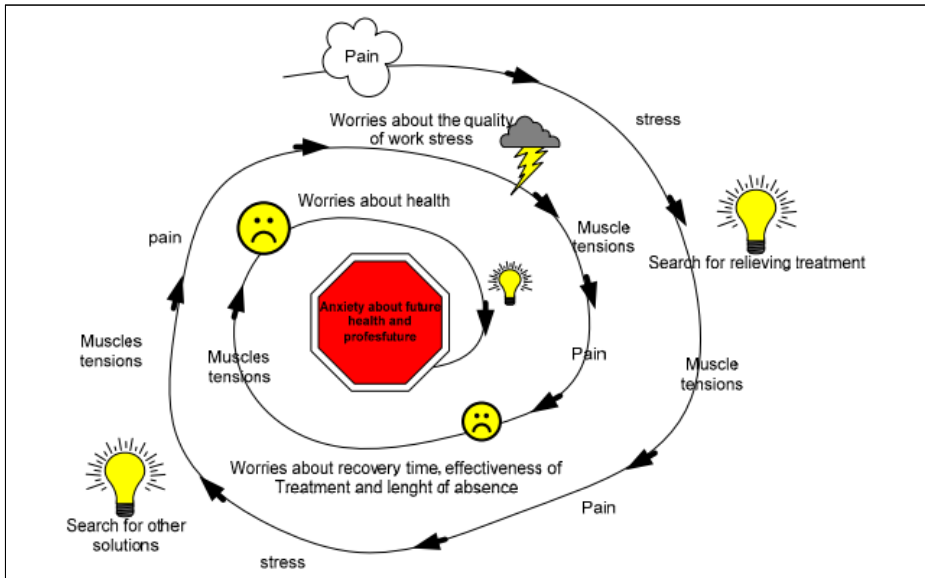
[그림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공연예술인들은 직업상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으나 마사지와 같은 일시적인 통증 경감 방법을 사용해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시 통증을 돌아오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만 반복된다. 반복의 과정 중 업무의 질적 저하, 질병으로 인한 직업 중단 등을 지속적으로 걱정해야 하며, 중국에는 미래와 건강, 직업생명에 대한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이는 모든 공연예술인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악순환으로 공연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업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 적절한 지원과 조치가 요구된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는 모두 ‘비용’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공연예술인들이 산업재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열악한 공연예술계의 환경이 종사자와 환경에 대한 안전의 문제를 알면서도 외면하게 만드는 구조라는 것이다. 더불어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음으로써, 산업재해와 관련된 대부분의 비용을 오로지 개인이 해결하게 하는 것도 문제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연예술인들은 업무적으로 발생한 질병 또는 상해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 또는 상해는 엄연히 산업현장에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이를 산업재해로 고려하고 보상 및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가 많은 공연예술계 종사자들에게는 이러한 비용의 문제는 더욱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많은 공연예술계 종사자들은 비용의 문제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다시 직업생명의 단축이나 중단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예술인들에게 산재보험과 같은 보상 및 보호 체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이 예술인의 직업안전망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3] 예술가들이 겪는 고통이 야기하는 불안의 소용돌이



출처: IRSST(2009). Occupational Risks in the Performing Arts : an exploratory study, 33쪽.

2012년 11월부터 「예술인 복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인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들이 산재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서의 정보 부족이나 행정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험 사무를 대행하고 있다. 더불어 예술인들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납부보험료를 환급 지원하는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본래 ‘사회보험료 가입 지원’으로 통합운영 되면 본 사업은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비를 지원하였으나, 최근에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민연금만 지원

하며, 산재보험 가입 지원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5년부터 지원했던 사회보험 가입 지원의 예산은 2016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5억 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은 그러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타 사업들에 비해서 증가폭이 크지 않은데, <표 4-3>를 보면 창작준비금 지원은 6.4배 사업예산이 증가한 데 비해, 산재보험에 대한 지원은 2016년부터 증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재해 발생률이 빈번하고 예술인들의 직업안정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본 사업의 특징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보다 지원액을 더욱 늘려 더 많은 예술인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보험 사무대행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공연예술인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는데,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행정사무를 대행해줄 곳이 없어 가입 전에 포기하는 예술인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원액 뿐만 아니라 홍보의 확대, 관련 인력 확대가 같이 요구된다.

<표 4-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요사업의 연간 예산 추이(2015년~2021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술인파견지원	4,569	7,760	7,732	7,685	7,685	8,065	8,085	8,145
창작준비금	10,767	12,400	12,345	13,600	16,600	46,076	69,400	60,300
산재보험 가입지원	28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예술인생활 안정자금(용자)	-	-	-	-	8,500	19,000	24,000	23,900

또한 앞서 공공지원금 수혜 조건에 산재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걸어 가입률을 늘렸던 것은, 예술인들에게 산재보험의 유용성을 인식하게 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위의 <표 4-3>의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 수 변화에서 보았듯이 2019년 지역 문화진흥원의 ‘청춘마이크’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하도록 한 이후, 예술인들의 산재보험 신규가입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가입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과 함께 유용성을 알게 되면서 신규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의 인터뷰에서도 ‘청춘 마이크’ 사업 참여 이후 예술인 산재보험에 대해 인식하고 그 이후 꾸준히 가입하였으며 주변에도 권유하였다는 사례가 많았다. 아직 예술인 산재보험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공공사업을 통한 가입유도는 예술인들의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공연예술인들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을 위한 조치와 교육이 필요하지만, 앞서 설문조사와 인터뷰의 결과에서 보듯이 사고 발생 이후 적절히 치료 및 재활을 하게 하는 것은 예술인들의 직업생명과 연결되는 매우 시급한 일이다. 이러한 제대로 된 치료와 충분한 재활·요양은 경제적 문제와 연결되는 일이므로 예술인들에게 산재보험과 같은 보상·보호 체계의 마련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산재보험에 대한 예술계 전반의 인식 부족이 산재보험 가입률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이지만,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 행정에 대한 부담 등도 역시 예술인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주저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공연예술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 가입률은 반드시 더 증가될 필요가 있고, 이는 예술인들의 직업안전망 구축이라는 예술인 복지정책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산재보험 보상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인식 개선

2.1. 공연예술인 산업재해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개발

예술인들이 산재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험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산재보험의 유용성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술인들의 산재보험 가입 증진과 함께 예술인들의 산재보험 보상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예술인들이 산재보험 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보상승인율이 높은 편이지만, 지금까지는 보상 신청 사례도 매우 적었고 상대적으로 업무연관성을 증명하는 데에 용이한 측면이 있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향후 산재보험 가입률이 증가되고 산재보험 보상 신청이 늘어날 경우,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 업무연관성 입증에 어려운 업무상 질병

예술인들의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하여 가장 업무상 관련성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가 직업병으로 불리는 업무상 질병들이다.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

용수의 경우 관절, 경추, 척추, 근육 파열 등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연주자의 경우 건초염, 레이노 증후군, 경추상환 증후군, 흉곽 측후 증후군 등 다양한 질병에 노출된다. 대체로 이러한 질병들은 일정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일반적인 근육의 가동범위나 가동숫자를 넘어서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사용 증후군은 많은 공연예술인들 사이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공연예술인들에게 어떤 질병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이것이 업무적으로 어떻게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국내 관련 연구와 전문가가 매우 적어 향후 예술인들의 산재보험 보상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의 경우 공연예술의학(Performing arts medicine)과 같이 예술활동을 오래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악가들을 위협하는 과사용 증후군이 어떤 악기 연주자의 어떤 부위에서 많이 발견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거나,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해부학적 특징, 과거 병력, 경력 등을 조사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정형외과적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연구한다. 특히 종단적 연구를 통해서 예술활동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찾아봄으로써 예술가에게 적절한 보상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의학적 내에서 공연예술의학에 대한 연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예술인들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직업병이 무엇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표 4-4〉 장르별, 유형별 승인/불승인 현황

(단위: 건, %)

예술분야	승인구분	사고		질병		출퇴근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연극	승인	46	85.2			3	75.0
	일부승인	7	13.0				0.0
	불승인	1	1.9			1	25.0
	소계	54	100.0			4	100.0
무용	승인	21	75.0		0.0		
	일부승인	5	17.9		0.0		
	불승인	2	7.1	4	100.0		
	소계	28	100.0	4	100.0		
국악	승인	3	75.0				
	일부승인	1	25.0				
	불승인		0.0				
	소계	4	100.0				

예술분야	승인구분	사고		질병		출퇴근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음악	승인	19	95.0	1	50.0	1	100.0
	일부승인		0.0		0.0		0.0
	불승인	1	5.0	1	50.0		0.0
	소계	20	100.0	2	100.0	1	100.0
총계	승인	89	84.0	1	16.7	4	80.0
	일부승인	13	12.3	0	0.0	0	0.0
	불승인	4	3.8	5	83.3	1	20.0
	계	106	100.0	6	100.0	5	100.0

출처: 근로복지공단 내부 자료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예술인의 업무상 질병 보상신청의 경우에는 총 6건 중 단 1건만이 승인이 되어 16.7%의 낮은 승인율을 보이고 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승인은 예술인뿐만 아니라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모두 승인율이 낮은 편에 속하는데, 이는 신청 상병, 질병과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일반 노동자의 사고 승인율은 96.0% 정도이고,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62.2%이다.⁹⁶⁾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질환과 업무수행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예술인들에게 많이 문제가 되는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는 반복적 작업, 누적부담, 진동작업, 부적절한 자세 등에 대한 기준과 얼마나 장기간 그러한 환경에 노출되었는지 등 다양한 항목에서의 조사가 이루어지며 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예술인의 경우에는 부적절한 자세로 얼마나 오랜 기간 어느 정도의 중량을 들고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카메라 감독의 경우 특정한 자세로 매우 무거운 카메라를 장기간 들고 있고 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 생긴다는 원인 증명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96) 일반 노동자의 질병 승인율이 높은 이유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산업분야나 제조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고 이런 경우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재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2018년도에 발표한 특집기사를 보면, 업무상 질병의 주요 재해 업종은 기타의 사업이 34.1%, 제조업 28.5%, 건설업 28.2%의 순이었으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 등 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등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했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나. 예술인의 업무상 질병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

향후 예술인들의 산업재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술인들에게 발생하는 각종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어떤 예술 장르에 어떤 부상이 많이 일어나는지를 의학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해 조사하고, 이를 산재보상을 위한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술인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지원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 분야의 전문가와 의학 분야가 연계하여, 예술 분야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의학적 지식을 결합한 학제 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예술인들이 가진 직업병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유형화하고 이를 적용한 ‘예술인의 산재보험 보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술인들은 일반 근로자와 업무 형태가 매우 다르고 신체사용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전문적인 영역과 연결되어 있어 판단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발레리나가 가진 신체적 질병이 발레의 어떠한 동작 때문인지, 발레의 특성과 그 동작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예술인의 질병에 대한 이해는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지만, 현재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는 가이드라인에는 이러한 예술인의 업무적 특성에 따른 질병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산재보험 보상 판정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이 필요한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매년 「업무상질병 판정 매뉴얼」을 발간하여 다양한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기 위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 중에서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이나 ‘발생 빈도가 높은 근골격계 6대 상병 재해조사 요령’을 보면 예술인들에게 많이 발견되는 질병과 관련된 내용이 보인다. [그림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상질병 판정 매뉴얼」은 신체부위별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병의 종류 및 대표상병을 정리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예술인들이 다수 겪고 있는 대표적인 질병이다. 또한 [그림 4-5]와 같이 각각의 근골격계마다 각도측정 방법과 어떤 경우에 이런 질병에 노출되는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 보상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업무와의 연관성 여부’이다. 산재보험은 보상범위가 매우 넓지만 ‘산업재해’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그 보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업무상질병 판정 매뉴얼」에는 위에 언급한 질병들이 예술인들의 어떠한

업무와 연관이 있는지, 어떤 상황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발생 빈도가 높은 근골격계 6대 상병 재해조사 요령’에서도 역시 상병별로 적용기준 내에 어느 직종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술인의 경우 이 직종에 빠져있는 상태이다. 아직 예술인의 업무상 특징과 질병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요구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

개정 2021.01.13. 지침 제2021-04호

정의 및 특징

- (정의)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병
- (특징) 특정된 하나의 신체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부위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조직 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조직의 변화를 동시에 가져옴

1. 인정기준

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①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 ②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 ③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 ④ 진동 작업
- ⑤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고용노동부 고시

● 근골격계 질병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다만,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그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란 업무수행 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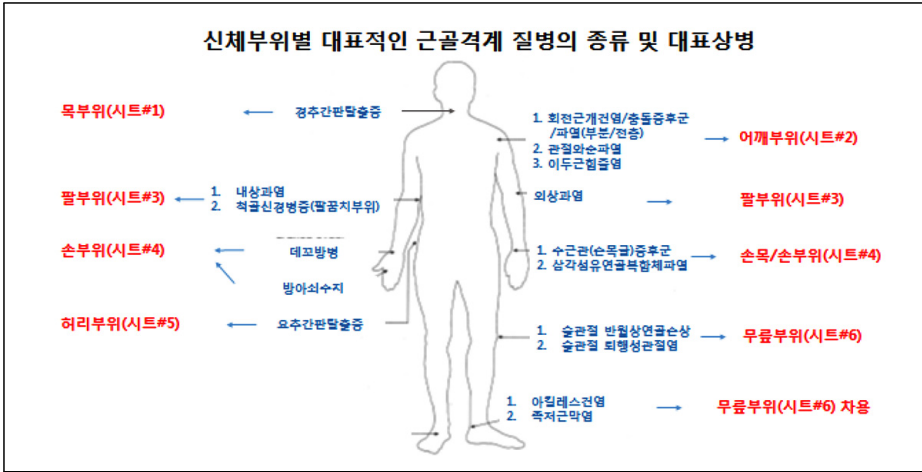
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 업무관련성의 판단

-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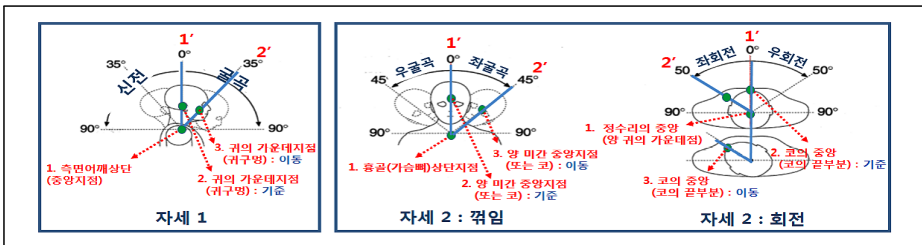
-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한다.

[그림 4-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신체부위별 대표적 근골격계 질병 종류



출처: 근로복지공단(2021). 「업무상질병 판정 매뉴얼」, 136쪽.

[그림 4-5] 목 부위 각도측정 방법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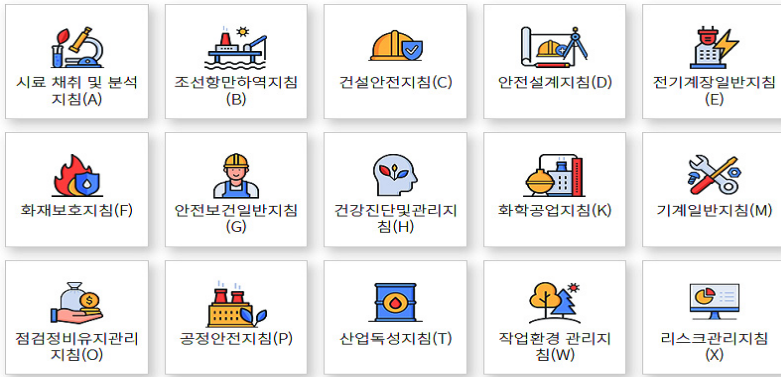


출처: 근로복지공단(2021). 「업무상질병 판정 매뉴얼」, 137쪽.

예술인이 산재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고나 질병의 경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와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잘 제출하는 것이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럴 때 예술인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으며, 안전보건공단에 예술인에 해당하는 코사코드(KOSHA CODE)⁹⁷⁾를 부여하는 등의 추가적인 작업이 요

구된다. 예술인들은 여전히 산업재해의 발생과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예술인들에게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유형화와 산재보험에 필요한 가이드가 도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4-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지침



아울러 예술인 산재보험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내 업무 담당자들의 예술인 업무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자료를 근거로 예술인의 산업재해 실태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예술인의 업무 환경과 산업재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예술인의 특성을 반영한 산재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예술인들이 산재보험에 보다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2.2. 공연예술인의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공연예술인들에 대한 산재보험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연예술이라는 업무가 가진 위험성과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공연예술분야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무대’라는 공간은 그 특성상 산업재해

97) 코샤코드(KOSHA CODE)는 선진국의 기술기준이나 국제표준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맞게 제정하여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담은 지침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분야마다 KOSHA GUIDE를 작성하여 다양한 업무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 무대 위에서는 각종 기계 장치들이 돌아가고 있고, 백스테이지(back stage)에서는 빛이 관객석으로 새어 나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두 검정색으로 칠하고 불을 꺼두는 등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종사자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무대기술 종사자들은 사다리, 리프트를 활용하여 좁은 통로의 높은 곳에서 조명이나 커튼 작업을 하는 등 위험한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다. 무대 위에서는 예술가의 경우에도 암전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무대에서 등·퇴장을 해야 한다든가, 특수효과로 인하여 폭죽이나 불꽃에 노출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 늘 안전한 상황에서 공연을 하지는 않는다. 스태프들의 경우 비숙련자들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아 어떤 곳이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을 늘 안고 있다.

극장들은 다양한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연환기가 거의 불가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내 공기가 늘 먼지로 가득 차 있다. 공연을 할 때 스모그를 쏘기도 하고, 무용수들이 뛰면서 발생하는 먼지 등은 무대 내 종사자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무대시설이나 장비들은 개관 시에 설치한 뒤 예산의 문제로 인하여 주기적으로 교체되지 못하고 노후화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무대 내의 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은 시설관리 담당이 맡는 등 종사자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지 않다. 공연 자체가 태생적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예술계 종사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을 제공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무대 뒤가 어둠에도 불구하고 상·하수 쪽에 제대로 마킹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어요. 2010년경에 아르코대극장에서 공연 할 때에는 여자 배우가 무대 뒤 유리에 부딪쳐 머리에 흑이 난 상태로 공연을 한 경우도 봤습니다.”(연극 분야 예술인)

“예술인들 중에서는 기관지염, 천식, 비염 등을 달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주로 지하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연극 분야 예술인)

본 보고서의 인터뷰에 참가한 예술인들에 따르면 일반 공연장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었다. 야외에서 진행되는 공연들은 가설 무대를 세우기만 하고 예술가를 위한 대기실조차 만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 예술가는 제대로 몸을 풀지 못하

고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연 중 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무대 위에 장비들을 올리고 난 후 케이스나 전선 등이 무대 뒤나 아래에 어지럽게 놓이면서 지나다니는 스태프나 예술인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추운 겨울 야외 공연이 잡히는 경우, 야외에서 떨면서 대기를 하다가 몸이 굳은 상태에서 무대 올라가서 다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주로 근육계통의 문제가 많이 생겼죠.” (음악 분야 예술인)

연습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대부분의 연습실은 비용의 문제로 지하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환기, 습기 등에 매우 취약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시 대피할 수 있는 안내도 제대로 되어 있는 않기도 하다. 특히 냉난방 등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연습을 할 때에도 제대로 몸을 풀지 못하고 연습에 들어가는 등 예술가들은 무대 위나 아래에서 늘 부상과 사고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예술가들은 늘 일정한 장소로 출퇴근을 하고 업무를 보는 근로자와는 달리, 장소가 변화무쌍하고 작업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공간만을 찾아서 연습을 하거나 공연을 할 수 없으며, 자신의 활동이 곧 수입으로 이어지다 보니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공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이 공연예술인들은 매우 열악하면서도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다양한 산업재해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공연예술분야는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업 등 전통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와 달리 그다지 위험성이 없는 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공연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이나 산재보험의 보상 신청 저조 등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업계가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공연예술계가 태생적으로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동안 일어난 수많은 사고들이 이러한 점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그 동안 우리 예술인들은 산업재해로부터 사회적 보호를 받는 데에 많은 한계를 가졌다. 특히 이들의 근로자성 문제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근로자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5조제2호에서 명명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하는데, 그 동안 예술인의 산업재해와 관련한 많은 소송에서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에 발생했음에도 보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행히 최근 근로자성이 인정되면서 이러한

소송이 재심을 통해 다시 인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예술인들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음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는지 알 수 있다. 완전한 예술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예술인들에 대한 산재보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우리 사회의 예술인의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성 불인정 후 인정 사례⁹⁸⁾

1.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8.08.21., (2017누89119)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 사건개요: 원고는 2015.7.26. 공연장에서 줄타기 공연을 하던 중 미끄러져 3m아래로 추락. 이로 인해 요양급여를 신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불승인 결정(1심 판결)
 3. 판결: (1심 2017구단20647 서울행정법원 원고 청구 기각), 1심 판결 취소,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원고 승소)
 4.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원고는 000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000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며 고정급의 임금을 지급받아옴. 원고는 000이 정한 시각에 맞추어 출퇴근하였고, 000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줄타기 공연을 함. 000이 지정한 날짜에 휴연할 수 있고, 000이 지정한 관리자의 통제지시를 따라야 하고, 임의로 공연하거나 000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연할 수 없었던 점, 공연에 필요한 일체의 도구를 000의 비용으로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 반면 공연의 진행여부를 기록한 공연일지와 휴연 현황표가 있으나, 원고에 대한 출퇴근관리, 복무 및 인사 등에 관리대장이 따로 없음. 원고는 공연시간 외에는 공연장 주변 청소 및 장비점검 등의 공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업무관련 보고를 하거나 점검을 받지 않음. 또한 원고는 사업장을 운영함. 기초사실과 법리 등이 비추어 원고가 상당기간 000에서 지정한 시각과 장소에서 줄타기 공연을 수행하고 고정급의 월급을 지급받은 것은 공연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000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와 000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아 원고는 000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위 인정 사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자신이 담당하는 공연시간 외에는 이와 별도로 시간적 구속을 받는 출·퇴근시간의 정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000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000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원고는 000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점, 공연계약의 내용상 원고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공연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원고를 000의 근로자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증거들에 (중략) 위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 000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98) 1심 https://sanjaecase.comwel.or.kr/service/dataView?id=2017구단20647_서울행정법원
 2심 https://sanjaecase.comwel.or.kr/service/dataView?id=2017누89119_서울고등법원

사업주의 산재 불인정 후 인정 사례⁹⁹⁾

1.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2.06.05., (2011누34452)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청구
2. 사건개요: 원고가 2011. 1. 18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그 신청 이유는, 원고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0. 11. 9. 13:00경 서귀포시 대포동에서 방송장비 설치를 위해 ○○○○○○센터로 이동하던 중 탑승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경골 개방성골절의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었다. 피고는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소외회사의 실제 경영자는 소외1이고, 원고는 소외회사의 부장으로 현장 작업을 하면서 소외1의 부탁에 따라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항소를 하였다.
3. 판결: 피고가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 (산재 인정)
4. 쟁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로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표 4-5〉 공연예술분야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강화를 위해 정책방향과 이해관계자의 역할

	이해관계자	역할
정부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방향 마련	대상별, 상황별 구체적인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개발 지원 전문적 안전교육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실무형 예방교육 개발을 위한 공간 및 교육개발 지원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제도 개선
	공공 공연예술분야 운영의 계획 및 평가 기준 개선	공연계의 안전불감증 문화 개선을 위한 공공 공연예술분야 운영 계획 및 평가 기준에 있어 안전최우선 원칙 적용
	공연장·연습실 환경개선 제도적 기준 마련	업무상 질병을 유발하는 공연장 및 연습실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준의 마련
	예술인 산재보험 보상 가이드라인 개발 지원	예술인에게 발생하는 사고 및 질병의 업무연관성을 입증하는 가이드라인 개발 지원 필요
공공기관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상별, 상황별 구체적인 안전교육 개발·운영 전문적 안전교육 커리큘럼 개발·운영 실무형 예방교육 커리큘럼 개발·운영
	맞춤형 예방 및 재활교육 개발 (전문무용수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의 장르적 특성에 맞추어 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 개발
	예술인 심리상담 확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의 심리적 문제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사업 확대

99) https://sanjaecase.comwel.or.kr/service/dataView?id=2011누34452_서울고등법원

이해관계자		역할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확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산재보험에 대한 홍보 확대 산재보험 가입 행정절차 및 가입비 지원 확대
공공 공연예술 분야	경쟁입찰 방식 개선	안전관련 내용의 단가 하한선 도입 기술평가의 안전점수 비중 높이기 위험성평가 및 안전계획 점수 비중 높이기 안전용품 구입, 관련보험 가입 여부 확인
	합리적 수준 안전관리비 적용	합리적인 안전예산 적용기준 마련 및 적용
	안전관리 전문조직 구축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 전문조직의 구축 안전관리 담당자의 위상 및 책임성 강화
	안전계획 작성문화 구축	대처매뉴얼 및 위험성평가서 작성문화 조성
	충분한 작업시간 보장	급한 세팅 및 철수과정의 안전사고 예방
공연계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충분한 작업일정 조정, 휴식시간 설정
	당연히 참는 문화 개선	질환이 있을 때 참는 것을 당연시 하지 않는 문화 조성 상급자의 인식 개선 공연의 성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문화 조성

예술인의 산업재해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제5장

결론

제1절 결론

공연예술인들이 자주 하는 말 중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The show must go on)”라는 말이 있다. 어떠한 외부적 시련이 닥친다하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공연은 지속하겠다는 말로, 무대 위에 모든 열정을 쏟고 혼을 불태우고자 하는 공연예술인들의 열정이 담긴 말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대만은 멋지게 만들고 말겠다는 이 말은 공연예술인들의 프로 의식(professionalism)과 투지가 담긴 것으로, 공연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이라면 마음에 새겨야 하는 어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 열정과 패기의 어구가 지나칠 경우 공연예술인들은 매우 가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 과도한 업무와 무리한 연습 일정으로 신체에 무리가 가더라도 촉박한 일정에 따라 감수해야 하고, 부상을 당했더라도 일단은 참고 당장 닥친 공연부터 올라가야 한다. 다소 불편하고 위험한 현장일지라도 더 나은 무대를 위해 설치 작업을 해야 하고, 더 멋진 무대에 투자하기 위해 일당백으로 뛰면서 예산을 아껴야 한다. 출퇴근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정해진 공연 일정은 소화해야 하고, 아파서 쉬려고 한다면 캐스팅에서 밀리는 것은 각오해야 한다.

이렇게 많은 공연예술인들은 직업 현장에서 매우 위험하고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만, 쇼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말로 이러한 희생을 미덕화하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다.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법제도적 지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업계의 관심은 저조한 편이다. 안전교육을 도입하고 예술인의 직업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최근 인식이 차츰 변화하고는 있지만, 집단 작업이 많고 상하관계가 엄격한 공연예술분야의 문화에서는 상급자가 쇼를 위한 희생을 요구할 경우 하급자가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로 이 과정에서 많은 공연예술인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다.

앞서 본 보고서는 공연예술인들이 겪는 수많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의 종류와 원인을 고찰하였고, 관련한 법제도와 지원 사업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수차례의 「공연법」 개정을 통해 공연 현장의 안전시설 및 장비, 관련 조직, 예산 등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예술인 복지법」 등의 개정을 통해 예술인들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고 각종 공공지원 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의 산업재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안전교육 의무화를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는 한편, 관련 재판도 재심을 통해 공연예술인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판결이 바뀌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도 눈에 띄지 않는 현장에서 공연예술인들은 위험한 환경과 문화에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이렇게 공연예술인이 산업재해의 위험에 계속 노출되는 것은 첫째 공연예술분야의 인식·문화의 문제, 둘째 비용의 문제, 셋째 교육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공연예술분야의 산업재해 예방 또는 근절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업계 전반의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잘못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안전을 최우선하기보다는 공연을 잘 올리는 것이 우선시되고, 종사자들은 당연히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분위기가 이렇다보니 정해진 예산 내에서 안전에 대한 투자보다는 멋진 무대를 만드는 데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안전 관련 예산이 줄어들면서 미숙련자를 고용하게 되고 이들에게 충분한 안전예방 교육을 제공할 시간적·비용적 여유가 없어 이들의 미숙함과 부주의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 부적절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많은 예술인들이 신체적 피로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해진 기일에 공연을 올리는 데에 집중되어 암묵적으로 침묵이 강요되고 있다. 최근 해외의 라이선스 공연과 국내 예술인들 간의 합동작업이 활발해지면서, 안전관련 환경과 시스템이 많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 공연예술계 전반적으로 인식 및 문화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공연예술인들은 높은 수준의 신체적 능력이 요구되므로 항상 질병과 부상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지만, 참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공연예술계의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이들의 건강은 계속해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만성적 과중한 업무에 따른 질환이 다수 발생하는 공연예술인의 특성상 조기 발견과 충분한 치료가 요구되지만, 공연예술인의 수명으로 평가하는 상급자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직업생명에 위협을 받는 예술인들은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다. 신체를 사용해 예술표현을 해야 하는 공연예술인들의 업무 특성상 이들의 건강상태의 관리는 이들의 직업생명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적절하게 예방할 수 있는 문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연예술분야의 인식과 문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매

우 오랜 기간 쌓인 것으로 단기간에 이를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더 건강한 공연 예술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 공연예술분야부터 시장의 인식과 문화를 바꾸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공연예술계와 같이 공공 의존도가 높은 곳에서 공공 분야의 정책방향 전환은 전체 업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며, 이를 통해 점차적으로 공연예술분야 문화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 공공 공연예술분야부터 「공연법」에 규정된 안전관리 조직을 전문조직으로 구성하고 이들의 위상을 제고해, 단순한 시설관리 차원이 아닌 전문적 조직으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 공연장이나 공연단체부터 예술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충분한 연습 및 작업 일정을 제공하고, 휴식시간과 장소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아직 인식이 저조한 예술인 산재보험의 가입을 증진하여 산업재해 발생 시 대비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문화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모든 것들은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는 것들이 많다. 이러한 비용은 열악한 공연예술계, 특히 민간 공연예술단체·사업체 등에서 감당하기에는 매우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 현재에도 안전점검 및 시설·장비 교체에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비용 지원 확대와 함께 관련한 제도 개선도 요구된다. 국공립 공연장 및 공연단체의 경쟁입찰 방식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안전관리비 예산 적용을 유도하고, 예술인 산재보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잦은 신체 부상에 노출되는 공연예술인들이 정기적으로 몸 상태를 체크하고 예방·재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제도도 필요하며, 관련한 전문 인력을 꾸준히 양성해야 한다. 그 동안 이러한 비용과 관련한 문제, 특히 부상이나 질병과 관련한 문제는 모두 개인에게 그 부담이 지워졌다. 그러나 공연예술인의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 특성으로 인한 것이므로 산업재해의 관점에서 고려하여 보상 및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연예술인들의 산업재해 판단을 도울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연예술분야의 산업재해를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교육’이 좀 더 내실화, 다양화,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에도 모든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동영상 안전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공연예술인의 각각의 업무 특성에 맞게, 공연장소의 특성에 맞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의 안전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업무가 매우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는 공연예술분야의 특성상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이러한 전문

분야의 전문성과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안전관리의 문제는 일반적인 주의 사항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는 공연예술의 각 세부 전문분야의 전문기술 활용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전문화된 안전교육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공연예술 분야는 아직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방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어떻게 더 안전한 작업방식을 구축할 수 있을지,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각각의 전문분야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계획,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해당 분야 종사자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테크니컬 라이더(Technical rider)나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의 작성방법의 교육이나 상시적인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관련 제도의 보완 등을 통해, 해당 업무와 관련한 안전 지식을 높이는 지원이 필요하다.

화려하고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멋진 공연을 위해 많은 공연예술분야 종사자들은 빡빡한 일정과 불편한 환경에도 무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무대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사람의 안전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공연을 위한 공연예술인들의 열정은 존중하고 지원하되, 안전한 환경을 우선시하는 합리적인 문화와 제도가 필요하다. 개인의 희생이 강요되는 문화로는 우리 공연예술분야의 건강한 발전에 한계가 있으며, 꾸준한 인식·문화의 개선과 비용의 제도적 지원,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공연예술계를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나영·김희경·김석지·박명주·김석환·이정숙(2005), 발레전공 여대생의 영양상태조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0권 6호, pp. 835-844.
- 김지현(2009). 「한국무용전공자의 직업병 현황에 따른 보험대책 방향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예술인 실태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공연예술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브라이언 말로니(2016), 「현장에서의 무용수 손상 예방의 중요성」, 2016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전문무용수지원센터.
- 위대근(2016), 「현장에서의 무용수 손상 예방의 중요성」, 2016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전문무용수지원센터.
- 이경태(2016), 「현장에서의 무용수 손상 예방의 중요성」, 2016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전문무용수지원센터.
- 전문무용수지원센터(2018),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 서울: 전문무용수지원센터.
- 전문무용수지원센터(2019),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 서울: 전문무용수지원센터.
- 전문무용수지원센터(2020),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 서울: 전문무용수지원센터.
- 전문무용수지원센터(2021),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 서울: 전문무용수지원센터.
- 한국산업기술시험원(2021). 「2021년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사업 실적 보고서」. 안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9). 「2019 예술인 산재보험 증장기 운영방안 연구」, 서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20). 「예술인 산재보험 혜택 이야기 : 다시 예술가로, 다시 예술현장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21). 「예술인 산재보험 보상 청구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자료」
- Amadio, P. C., & Rusotti, G. M. (1990), Evaluation and treatment of hand and wrist musicians' disorders, *Hand Clin*, 6(3), pp. 405-416.
- Betty B. Kelman, MN, RN(2000). Occupational Hazards In Female Ballet Dancers. *AAOHN JOURNAL*, 48(9): pp. 430-434.
- Brandfonbrener, A.(2000), All the World's a Stage, *Medical Problems of Performing Artists* 15(1):pp. 1-2.
- Bronner S, Ojofeitimi S, Rose D(2003). Injuries in a modern dance company: effect of comprehensive management on injury incidence and time loss. *Am J Sports Med.* 31(3): 365-373.
- Dinakaran, T., Deborah, D. R., & RejoyThadathil, C. (2018), Awareness of Musicians on Ear Protection and Tinnitus: A Preliminary Study, *Audiology Research*, 8(1), pp. 9-12.
- Evans, R. W., Evans, R. I., & Carvajal, S.(1998), Survey of injuries among West End performers,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55, pp. 585-593.
- Faltus J., & Richard, V. (2022), Considerations for the Medical Management of the Circus Performance Artist and Acrobat,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Physical Therapy*, 17(2), pp. 307-316.
- Fry, H. J. H.(1986). Incidence of overuse syndrome in the symphony orchestra. *Medical Problems of Performing Artists*, 1(2), pp. 51-55.
- Hamilton, W. G., Hamilton, L. H., Marshall, P., & Molnar, M. (1992), A profile of the musculoskeletal characteristics of elite professional ballet dancers, *The American journal of sports medicine*, 20(3), pp. 267-73.
- Hardaker, W.T. Jr. (1989), Foot and ankle injuries in classical ballet dancers, *Orthopedic Clinics of North America*, 20(4), pp. 621-7.
- Heming, M.J.E(2004). Occupational injuries suffered by classical musicians through overuse. *Clinical Chiropractic*. Volume 7, Issue 2, June 2004, pp. 55-66
- Hinkamp, David; Morton, Jennie; Krasnow, Donna H.; Wilmerding, Mary Virginia; Dawson, William J.; Stewart, Michael G.; Sims, Herbert Steven;

- Reed, Jan Potter ; Duvall, Katherine; McCann, Michael(2017). *Occupational Health and the Performing Arts,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59(9), pp. 843-858.
- Ignatiadis, I. A., Mavrogenis, A. F., Vasilas, S., Gerostathopoulos, N., & Dumontier C. (2008), Disorders of Musicians Hand, *EEEXOT*, 59(3), pp. 176-179.
 - Jung Yong Kim, Seung Nam Min, Young Jin Cho, Jun Hyeok Choi(2012). The Prevalence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of Traditional Korean String Instrument Player. *대한인간공학회지*. 제31권 제6호. pp. 749-756.
 - Kaur, J. & Singh, S.(2016), Neuromusculoskeletal Problems Of Upper Extremities In Musicians : A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Therapies and Rehabilitation Research*, 5(2):14.
 - Kelman, B. B. (2000), Occupational stress in classical ballet: The impact in different cultures, *Medical Problems of Performing Artists*, 9(2), pp. 35-38.
 - Kok, L. M.; Huisstede, B. M.; Voorn, V. M.; Schoones, J. W. & Nelissen, R. G.(2016). The occurrence of musculoskeletal complaints among professional musicians: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Archive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89(3), pp. 373-96.
 - Krasnow, D., Kerr, Goo & Mainwaring, L.(1994). Psychology of dealing with the injured dancer. *Medical Problems of Performing Artists*, 9(1): pp. 7-9.
 - Liederbach, M., Gleim, G. W., & Nicholas, J. A. (1994), Physiologic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s of performance stress and onset of injuries in professional ballet dancers, *Medical Problems of Performing Artists*, 9(1), 10-14
 - Luke, A. C., Kinney, S. A., D'Hemecourt, P. A, Baum, J., Owen, Mi. & Micheli, L. J. (2002), Determinants of Injuries in Young Dancers, *Medical Problems of Performing Artists*, 17(3), pp. 105-112.
 - Macintyre, J., & Joy, E. (2000), Foot and ankle injuries in dance, *Clinics in Sports Medicine*, 19(2), pp. 351-68.
 - Malkogeorgos, A. ; Mavrovouniotis, F. ; Zaggelidis, G. ; Ciucurel, C. (2011). Common dance related musculoskeletal injuries.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2011 Vol.11 No.3 pp. 259-266.
 - Maric, D. L.; Stojic, M.; Maric, D. M.; Susnjevic, S.; Radosevic, D. & Knezi,

N. A painful symphony: The presence of overuse syndrome in professional classical musicians. *International Journal of Morphology*, 37(3):1118-1122, 2019.

- Mickeli, L. J., & Wood, R. (1995), Back pain in young athletes: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adults in causes and patterns,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49, 15-18
- Nilsson, C., Leanderson, J., Wykman, A., & Strender, L. E. (2001), The injury panorama in a Swedish professional ballet company, *Knee Surgery, Sports Traumatology, Arthroscopy*, 9(4), 242-6
- Ojofeitimi, S., & Bronner, S. (2011). Injuries in a Modern Dance Company Effect of Comprehensive Management on Injury Incidence and Cost, *Journal of Dance Medicine & Science*, 15(3), pp. 116-122.
- Ostwald, P. F., Baron. B. C., Byl, N. M., & Wilson, E. R. (1994), Performing arts medicine, *Western Journal of Medicine*, 160(1), pp. 48-52.
- Petrucci, G. (1993),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Dance Injuries, *Orthopaedic nursing*, 12(2), pp. 52-60.
- Ramel, E., & Moritz, U. (1994), Self-reported musculoskeletal pain and discomfort in professional ballet dancers in Sweden, *Scandinavian Journal of Rehabilitation Medicine*, 26, pp. 11-6.
- Reid, D.C. (1988), Prevention of hip and knee injuries in ballet dancers, *Sports Medicine*, 6(5), 295-307; Teitz, C. (2000), Hip and knee injuries in dancers, *Journal of Dance Medicine and Science*, 4(1), pp. 23-9
- Schon, L., & Weinfeld, S. (1996), Lower extremity musculoskeletal problems in dancers, *Current opinion in Rheumatology*, 8, pp. 130-142.
- Stretanski, M. F., & Weber, G. J. (2002), Medical and rehabilitation issues in classical ballet,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Medicine & Rehabilitation*, 81(5), pp. 383-91.
- Tubiana, R., & Chamagne, P. (1993), Occupational arm ailments in musicians, *Bull Acad Natl Med*, 177(2), pp. 203-16.
- Weiker, G. (1981), Dancers for the American Ballet Theater may have more stress fractures, *Physician and sports medicine*, 9(5), pp. 36.

- 고용노동부(2021). 2021년 산업재해 발생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03.16.
- 뉴스핌 2016.02.24.기사
<https://www.newspim.com/index.php/news/view/20160224000352>
- Athletes and the Arts 홈페이지
- New Orleans Musician's Clinic & Assistance Foundation 홈페이지

ABSTRACT

Analysis on Artists' Industrial Accidents and Research on Direction of Policy - Focusing on Performing Arts -

Min-Kyung Cha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types of industrial accidents performing artists have during artistic activities, and how they are related with environmental or attributes of the job in the field of performing arts. It also analyzes the direction of the policy that is required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and reinforce the compensation.

Performing artists experience various injuries due to falling, crash, knocking down, stuck in between, etc. as well as safety related accidents such as electric shock and fire. These occupational accidents are caused by lack of safety prevention, inexperience and negligence of workers, and inappropriate working environment. In addition, performing artists suffer from various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physical diseases, which are caused by repeated abnormal movements, keeping prolonged status with heavy lifting or uncomfortable posture, and improper physical environment. Also, the culture that takes it for granted even if they have diseases makes performing artists get chronic occupational diseases.

Even though the artist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insurance is being implemented, the awareness of the system is still low, with significantly low willingness to sign for the insurance.

Keywords

Performing artists, industrial accident,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insurance, occupational disease, workplace accident

예술인의 산업재해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부록

설문지

부록

〈공연예술인의 산업재해〉 관련 예술인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22년 정책과제로 「예술인의 산업재해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 공연예술인을 중심으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예술인들이 처하는 다양한 형태의 산업재해에 관하여 예술인의 현실과 의견을 파악하여 향후 예술인 산업재해에 관한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설문에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시는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제공해주신 정보는 연구 목적의 통계 활용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주관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업체] (주)엠브레인퍼블릭

I 응답자 특성

A1. 귀하께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무용	② 음악(일반, 대중음악)	③ 국악	④ 연극/뮤지컬
⑤ 기타 공연예술()			

A2. 귀하께서 활동하시는 예술활동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창작	② 실연	③ 무대기술	④ 기획, 제작, 행정 등
------	------	--------	----------------

A3.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자	② 여자
------	------

A4. 귀하의 나이는 몇 세이십니까? (만 나이 기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이상

A5. 귀하의 연평균 소득은 어느정도입니까?

① 연 1,000만원 미만
② 연 1,000만원 이상 ~ 연 2,000만원 미만
③ 연 2,000만원 이상 ~ 연 3,000만원 미만
④ 연 3,000만원 이상 ~ 연 3,000만원 미만
⑤ 연 4,000만원 이상 ~ 연 3,000만원 미만
⑥ 연 5,000만원 이상 ~

A6. 귀하가 전문 공연예술인으로 활동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학교 재학기간 제외)

① 5년 미만
② 5~10년 미만
③ 10~15년 미만
④ 15~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A7. 귀하의 주 계약 형태는 어떤 유형에 해당합니까?

①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② 프리랜서(프로젝트별 계약)
③ 단기일용직(아르바이트) 등

II	업무상 질병/상해 경험
-----------	---------------------

Q1. 직업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업무상 질병/상해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	없다
①	②

Q2. 예술(직업) 활동으로 인해 겪는 주된 질병/상해의 종류에 대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증상은 제외)

		전혀 증상이 없다	거의 증상이 없다	보통이다	다소 증상이 있다	증상이 매우 심각하다
근골격계 질환	팔·손목의 통증·저림·골절	①	②	③	④	⑤
	목·어깨의 통증·저림·골절	①	②	③	④	⑤
	등·허리의 통증·결림·골절	①	②	③	④	⑤
	무릎의 통증·골절	①	②	③	④	⑤
	다리의 통증·저림·골절, 하지정맥류	①	②	③	④	⑤
	발목·발의 통증·골절	①	②	③	④	⑤
	기타	①	②	③	④	⑤
질병	두통	①	②	③	④	⑤
	청력 손실	①	②	③	④	⑤
	시력 저하, 안구통증	①	②	③	④	⑤
	호흡곤란	①	②	③	④	⑤
	소화불량, 위통, 복통 등(소화기)	①	②	③	④	⑤
	알레르기, 아토피 등(피부병)	①	②	③	④	⑤
	기관지염, 비염, 천식 등(호흡기)	①	②	③	④	⑤
	만성피로	①	②	③	④	⑤
기타	①	②	③	④	⑤	
정신질환	불안증, 불면증	①	②	③	④	⑤
	우울증, 공황장애	①	②	③	④	⑤
	기타	①	②	③	④	⑤

Q2-1. 기타로 응답하신 경우 구체적으로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근골격계 질환	
질병	
정신질환	

Q3. 위와 같은 질병/상해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상 연관성)

		전혀 연관성 없다	거의 연관성이 없다	보통이다	연관성이 있는 편이다	매우 연관성 높다
근골격	비정상적인 동작의 반복	①	②	③	④	⑤
	불편한 자세의 장시간 유지	①	②	③	④	⑤
	무거운 하중	①	②	③	④	⑤
외부 환경	높은 강도의 소리·빛 등	①	②	③	④	⑤
	어두운 조명	①	②	③	④	⑤
	부적절한 실내공기 상태	①	②	③	④	⑤

		전혀 연관성 없다	거의 연관성 이 없다	보통 이다	연관성 이 있는 편이다	매우 연관성 높다
	부적절한 온도	①	②	③	④	⑤
	청결하지 않은 공간	①	②	③	④	⑤
	강력한 전자파 노출	①	②	③	④	⑤
안전	업무방법에 대한 적절한 교육·매뉴얼의 부재	①	②	③	④	⑤
	안전예방에 대한 규정 부재	①	②	③	④	⑤
	안전예방교육의 미흡	①	②	③	④	⑤
	개인 보호구나 보호장비의 미흡	①	②	③	④	⑤
근태	무리한 연습·공연·작업 일정	①	②	③	④	⑤
	과도한 업무량	①	②	③	④	⑤
	과도한 근무시간	①	②	③	④	⑤
	낮음 임금	①	②	③	④	⑤
	임금체불	①	②	③	④	⑤
문화	개인의 화생을 강요하는 문화	①	②	③	④	⑤
	폭언·폭력·성희롱 등	①	②	③	④	⑤

Q4. 귀하의 직업활동 중 업무상 질병/상해의 빈도를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발생빈도가 매우 낮다	발생빈도가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다소 발생빈도가 높은 편이다	매우 발생 빈도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Q5. 업무상 질병/상해로 인해 '일(예술활동)'을 쉬 기간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___개월 ___일)

III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경험

Q6. 직업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	없다
①	②

Q7. 예술(직업) 활동으로 인해 겪는 주된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의 종류는 무엇이었습니까? (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사고는 제외)

		발생빈도가 매우 낮다	발생빈도가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다소 발생빈도가 높은 편이다	매우 발생 빈도가 높다
사고	예술인·작업자의 추락 (낙상)	①	②	③	④	⑤

		발생빈도가 매우 낮다	발생빈도가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다소 발생빈도가 높은 편이다	매우 발생 빈도가 높다
	설치물의 낙하	①	②	③	④	⑤
	충돌, 부상	①	②	③	④	⑤
	끼임, 찢림, 베임	①	②	③	④	⑤
	넘어짐, 미끄러짐	①	②	③	④	⑤
	감전	①	②	③	④	⑤
	화재	①	②	③	④	⑤
출퇴근 재해	교통사고	①	②	③	④	⑤
	자연재해	①	②	③	④	⑤
	기타	①	②	③	④	⑤

Q8. 위와 같은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상 연관성)

		전혀 연관성 없다	거의 연관성이 없다	보통이다	연관성이 있는 편이다	매우 연관성 높다
안전	안전장치(펜스, 안전바, 소화기 등) 설치의 미흡	①	②	③	④	⑤
	안전계획의 부재	①	②	③	④	⑤
	안전교육의 미실시	①	②	③	④	⑤
	관리 소홀	①	②	③	④	⑤
	안전관리 의사소통의 부재	①	②	③	④	⑤
부주의	미숙련된 예술인·작업자의 고용	①	②	③	④	⑤
	예술인·작업자의 부주의	①	②	③	④	⑤
작업 환경	시설·장치의 노후화	①	②	③	④	⑤
	설계·설치의 문제	①	②	③	④	⑤
	개인 보호구나 보호장비의 미흡	①	②	③	④	⑤
	어두운 조명	①	②	③	④	⑤
	소음·먼지·오염물질의 발생	①	②	③	④	⑤
일정	무리한 연습·공연·작업 일정	①	②	③	④	⑤
	과도한 업무량	①	②	③	④	⑤
	과도한 근무시간	①	②	③	④	⑤
기타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 등	①	②	③	④	⑤

Q9. 귀하의 직업활동 중 업무상 사고의 빈도를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발생빈도가 매우 낮다	발생빈도가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다소 발생빈도가 높은 편이다	매우 발생 빈도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Q10. 업무상 사고로 인해 일을 쉬 기간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___개월 ___일)

IV	공연예술인의 종사환경 및 산업재해 대처 현황
-----------	---------------------------------

Q11. 귀하가 참여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평균 작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___개월 ___일)

Q12. 일(日) 평균 작업(노동)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하루 ___시간)

Q13. 작업 중 일(日) 평균 휴식 시간을 기록해 주십시오(식사 시간 포함).

(하루 ___시간)

Q14. 귀하의 주된 작업 장소는 어디입니까?(최대 3개까지 복수응답 가능)

① 자택
② 개인작업실(연습실)
③ 연습실(단체 및 제작사 등 제공)
④ 사무실
⑤ 공연장
⑥ 기타

Q14-1. 기타인 경우 장소를 예시로 들어 주십시오.

※ 한 곳 이상 기재해 주세요.

Q15. 귀하의 주된 작업 장소의 안전 환경을 체크해 주십시오.

	매우 불충분하다	불충분한 편이다	보통이다	충분한 편이다	매우 충분하다
공연·연습·작업 공간의 크기는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공연·연습·작업 공간에 적절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조명·소음·실내공기·온도가 적절한 상태이다	①	②	③	④	⑤
장소·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소방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기타	①	②	③	④	⑤

Q16. 귀하 또는 귀하의 주변 동료들은 산업재해(질병/상해/사고 등)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① 그냥 참는다
② 급한 치료만 받고 재활은 받지 않는다
③ 적극적으로 치료나 재활을 받는다
④ 기타

Q16-1. 기타인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작성해 주십시오.

※ 30자 이상 작성해 주세요.

Q17. 귀하 또는 귀하의 주변 동료들은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재활의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십니까?

① 자비 부담
② 민간보험
③ 산재보험
④ 회사에서 비용 지원
⑤ 기타

Q17-1. 기타인 경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작성해 주십시오.

※ 30자 이상 작성해 주세요.

Q18. 귀하 또는 귀하의 주변 동료들은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재활 기간 중의 경제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① 경제활동 중단
② 예술교육활동(레슨 등)
③ 다른 예술활동
④ 비예술활동
⑤ 기타

Q18-1. 기타로 응답하신 경우 어떤 경제활동을 하셨는지 작성해 주십시오.

※ 30자 이상 작성해 주세요.

Q19. 공연예술인이 충분한 치료/재활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3개까지 가능)

① 참는 게 당연한 분위기 때문에
② 치료·재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③ 캐스팅에 밀리거나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④ 무리한 공연·연습 일정때문에
⑤ 공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
⑥ 기타

Q19-1. 기타로 응답하신 경우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는지 작성해 주십시오.

※ 30자 이상 작성해 주세요.

Q20. 적절한 치료/재활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이 직업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통이다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Q21. 공연계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시급하지 않다	시급하지 않다	보통이다	시급한 편이다	매우 시급하다
종사자들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①	②	③	④	⑤
의료·재활 비용의 지원	①	②	③	④	⑤
공연계의 치료·재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①	②	③	④	⑤
상급자의 치료·재활에의 적극적 협조	①	②	③	④	⑤
충분한 연습·공연·작업 일정의 보장	①	②	③	④	⑤
업무시간 단축 및 휴식 보장	①	②	③	④	⑤
업무·작업방법에 대한 명확한 교육·매뉴얼 제공	①	②	③	④	⑤
정기적인 부상예방 교육의 실시	①	②	③	④	⑤
안전사고 예방 교육	①	②	③	④	⑤
개인 보호장비의 지급	①	②	③	④	⑤
작업·연습공간의 조명·공기·온도 개선	①	②	③	④	⑤
노후화된 시설·장치의 개선	①	②	③	④	⑤
설치장소·장치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교체	①	②	③	④	⑤

Q22. 산업재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① 없음
② 산재보험
③ 민간 실손보험
④ 민간 상해보험
⑤ 기타

Q22-1. 기타로 응답하신 경우 어떤 보험상품인지 작성해 주십시오.

※ 1개 이상 작성해 주세요.

Q23. 산재보험 가입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현재 가입 중임
② 가입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해지
③ 가입한 경험 없음

Q24.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없다
①	②

Q25. 향후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의향이 있다	의향이 없다
①	②

Q26. 예술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수강한 적 있습니까?

수강경험이 있다	수강경험이 없다
①	②

Q26-1. 경험이 있으신 경우 어디에서 수강을 받으셨는지 체크해 주십시오(최대 3개 복수응답 가능).

① 없음
② 학교
③ 국가, 공공기관
④ 협회 및 조합
⑤ 기타

Q26-2. 기타로 응답하신 경우 어디에서 받으셨는지 작성해 주십시오.

※ 1곳 이상 작성해 주세요.

Q27. 수강한 예방 교육의 종류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안전사고 예방 교육
② 소방 안전교육
③ 부상예방 교육
④ 보건교육
⑤ 기타

Q27-1. 기타로 응답하신 경우 어떤 교육이었던지 작성해 주십시오.

※ 30자 이상 작성해 주세요.

Q28. 수강하신 예방 교육의 빈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주 단위 실시
② 월 단위 실시
③ 연 단위 실시
④ 프로젝트 단위 실시
⑤ 수강한 적 없음
⑥ 기타

Q28-1. 기타로 응답하신 경우 빈도를 작성해 주십시오.

※ 10자 이상 서술해 주십시오

Q29. 예방 교육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	없다
①	②

Q29-1.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를 작성해 주십시오.

※ 30자 이상 서술해 주십시오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필내역

연구책임

차민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 제2장 일부, 제3장 일부, 제4장 일부, 제5장

연구진

이정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제2장 일부, 제3장 일부, 제4장 일부

한석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제2장 일부, 제3장 일부, 제4장 일부

연구 참여

이한나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예술학부 인문정보학과 박사과정

예술인의 산업재해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발행인 류광훈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2년 10월 21일

발행일 2022년 10월 21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 S B N 978-89-6035-930-7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2.e12>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차민경·이정희·한석진(2022), 예술인의 산업재해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www.kcti.re.kr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2.e12>

